한국경영사학의 연구동향
-경영사학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The Korean Academy of Historians Perspective

黃 明 水*

目 次

Ⅰ. 머리말
Ⅱ. 경영사 및 기업가사연구의 선구자, 2세대 및 3세대
Ⅲ. 경영사 및 기업가사의 연구현황
1. 한국경영사학회의 탄생과 발전현황
2. 회사사 및 단행본 등의 현황
Ⅳ. 맺음말
참고문헌

Ⅰ. 머리말

우리나라는 1997년 11월에 「外換危機」를 맞이하여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외환위기에서 발단된 금융위기는 기업의 대량부도와 그 부도에 의한 기업의 도산(1998년 7월 현재 2만5천여 기업도산), 대량 실업자의 발생(1998년 7월 200여 만명의 실업) 등 한국경제를 디플레이션공황에 몰아 넣었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은 1만여 달러에서 6천여 달러로 급감하였고, 中産層의 대량 몰락에 의한 「머리숙인 남자(家長)」, 「노숙자(homeless people)」의 급증 등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외자의 긴급차입,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한 勞使政委員會의 설치, 공기업의 구조조정,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재벌기업의 M&A(인수·합병)의 구조조정 등 다각적으로 경제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한국경제는 멀지않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여 온 기업가를 되돌아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8·15해방 후 50여년이 지나는 동안 경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

* 檀國大學校 經濟學科 名譽敎授(經博), 本 學會 顧問.

여 1995년 10월 말에는 수출 1,0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만여 달러의 수준까지 부상하였고, 또한 세계 10대 무역국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해 온 것은 정부, 기업가, 근로자들이다. 이들 經濟主體들 중 기업가의 역할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연구는 그 의의가 큰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대부분 40년 전후의 짧은 역사 밖에 갖고 있지 않다. 京城紡織株式會社와 같이 일제시대부터 발전해 온 기업도 있으나 그 수는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기업(특히 재벌기업)의 일부는 1950년대에 기업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또 일부는 1960년대에 기업기반을 구축하였고, 1970년대에 기반을 구축한 기업도 있다. 그리하여 현재는 50대 기업진단이, 그 중에서도 특히 10대 기업집단이 한국재계를 主導하고 있다. 그러나 해방 후 50년간에 기업의 浮沈도 심하였다. 1965년도 한국의 100대 기업 중(매출액 기준) 1991년까지 100위권 안에 남은 기업은 16개 기업 뿐이었으며, 나머지 84개 기업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 나갔으며 도산한 기업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역사가 짧은 탓도 있어서 기업에 대한 연구도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과거 십여년 간에 기업과 기업가에 관한 연구는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영사·기업가사에 대한 연구업적의 하나로 韓國經營史學會의 설립(1986)과 그 학회지인 『經營史學』(1~17輯)의 발간을 들 수 있다. 『경영사학』은 제17집(1998년 6월)까지 160여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400종에 달하는 개별기업의 「會社史」, 기타 기업가에 관한 單行本, 기업가의 自敍傳 등이 다수 발간되고 있다. 이들 연구물은 연구자의 수준이나 연구목적에 따라 그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으나, 하여튼 그 연구물의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그것은 그만큼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연구도 진전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면의 연구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다. 금후에도 계속 더욱 더 많은 연구물이 출간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경영사학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영사연구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경영사 및 기업가사연구의 선구자, 2세대 및 3세대

한국의 經營史·企業家史硏究는 최근 10여년 사이에 경영사학회를 중심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경영사학회는 1986년 12월 9일에 창립되어 동년 12월 30일에 학회지 『經營史學』 창간호를 발간하였고, 이 학회지는 그후 매년 발간되어 1998년 6월까지 제17집이 발간되고 있

다. 특히 1997년에는 한 해에 3권(제14집, 제15집, 제16집)이 발간되어 경영사 연구가 빠른 속도로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에 『經營史學의 講座』가 설치된 것은 1960년대 후반기부터이지만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 많으며, 이미 설치되었던 대학에서도 1970년대에 들어서 소위 실험대학(Pilot School)제도의 도입에 따른 교과과정(커리큘럼)의 개정과 필수이수학점의 축소(170여점에서 140점으로 축소), 전공교수의 확보난 등의 이유로 인해서 경영사학의 강좌가 취소된 대학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영사에 대한 연구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몇몇의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며, 경영사학회의 창립 이후에는 그 연구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근대경제학이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초이며, 1950년대 중반부터는 대학의 교과과정에 근대경제이론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중반에는 근대경영이론도 대학의 커리큘럼에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 후반기에는 각 대학에 經營大學院이 설치되어 기업경영 및 실무자의 재교육 · 재훈련이 전개되기 시작하여 경영학의 연구는 한층 확대 · 보급되어 갔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까지 「경영사 · 기업가사 연구」는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묵묵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우리나라 학자들에 의한 한국경영사 · 기업가사에 대한 연구는 일제시대부터 몇몇의 社會經濟史學者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 연구는 경영의 특수문제라고 할 수 있는 契, 상업시장, 開城薄記 등에 국한되어 있었다[1]. 그 외에 회사, 은행업, 광업, 상업 등과 관련하여 그 경영자나 경영형태에 관한 연구도 있었으나 대부분 부정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한국의 학자에 의한 경영사 · 기업가사 연구가 민족적인 시각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8 · 15해방 이후, 특히 1960년대에 들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학자들에 의한 경영사 · 기업가사 연구를 저서 또는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 대표적인 학자로서 趙璣濬, 宋基澈, 高承濟 등 소위 경영사 · 기업가사 연구의 제1세대의 학자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경영사 연구의 선구자들인 것이다.

조기준 박사는 「한국근대기업가의 형성과 행동양식에 관한 소고」[2]라는 논제 아래 한국 근대 기업가에 관한 사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이 논문은 보완되어 그후 다시 「한국기업인평

1) 宋基澈, 『經營史』, 高麗大學校附設 企業經營硏究所, 1968년, 3판(초판, 1964년) pp. 332~333 참조.

2) 조기준, 「한국근대기업가의 형성과 행동양식에 관한 소고」, 『해운 박근창 박사 회갑기념 학술논문집』, 1970, pp.11~22.

전」이라는 논제로서 잡지 월간 「중앙」에 1970년 3월호로부터 십수차에 걸쳐 매월 연재되었다. 그 연구 방향은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영학부에 설치된 기업가사 연구소(The Research Center in Entrepreneurial History)의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 같다. 즉, 국민경제의 발전과 경제 성장의 추진자인 기업가를 콜(Arthur H. Cole) 교수나 슘페터 교수의 경우와 같이 거시적 입장에서 그 역할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그것을 우리 한국 기업가에게도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위 논문의 머리말에서 조 박사는 "한국근대기업가의 생활과정과 그 행동양식의 패턴을 연구하기 위하여 우선 구한말과 일제식민지 지배하의 한국인 기업가에 대하여 언급한다[3]"고 하면서 그 논문이 한국 기업가론의 서론 부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월간 『중앙』에서는 십수명의 한국인 기업가를 매월 한 명씩 소개하고 있다.

조기준 박사는 위의 연구물을 모아 加筆하여 『한국기업가사』(박영사, 1973년)를 발간하였고, 그 후 1977년에는 『한국자본주의 성립사론』을 발간하였다. 이외에 조 박사는 『한국경제사 신강』(일신사, 1994년) 등에서 경제사와 관련하여 경영사 · 기업가사의 내용을 취급하고 있다.

조 박사 외에 경영사학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의 한 분으로 송기철 박사를 들 수 있다. 송 박사는 그의 저서 『경영사』의 제4편에서 "한국경영의 사적 전개에 대한 一試論"이라는 논제하에 한국 경영사학의 문제를 논술하고 있다[4].

이 저서에서 송 박사는 한국 경영의 사적 발전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그 특질을 지적하고 있다. 즉, 송 박사는 주로 기업 경영의 특질과 사회경제의 배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점은 조 박사가 기업가의 기업 동기와 행동 양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 경영사 특히 근대 경영사 연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대 구분에 있어서 송기철 박사는 한국 근대화 과정의 출발이 1876년의 강화도조약부터 시작된다고[5] 보면서 그 직전인 조선조말의 경영적 특질, 일제의 식민지적 경영 특질, 8·15해방 이후의 분단적 특질, 6·25동란 이후의 戰災的 특질, 휴전 이후의 援助的 특질에 의해 시대 구분을 하여 각 시대의 경영적 특질을 연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6]. 그와 동시에 송 박사는 이러한 시대 구분이 하나의 정치적 시대 구분 내지 역사적 시대 구분과도 일치된다고 하여 그 구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7]. 이에 대하여 조기준 박사는 개화기의 기업가, 식민지 지배하의 기업가 및 해방 후의 기업가로

3) 상게서 p. 11.
4) 송기철, 『경영사』, 고려대학교 부설 기업경영연구소, 1968, 3판(초판 1964년), pp. 329~415.
5) 상게서, p. 330.
6) 상게서, p. 330~331.
7) 상게서, p. 31.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한국 근대 기업가의 성장과정을 검토하고 있다[8]. 조 박사는 특히 3·1운동 이전과 이후의 기업가의 기업 동기 및 행동 양식이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면서 3·1운동이 시기 구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9].

이렇듯 양자의 시대 구분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송 박사는 경영의 양적 측면(기업경영의 특질), 즉 기업체에 역점을 둔데 대해 조 박사는 기업 주체, 즉 기업가의 행동 양식 및 기업 동기에 역점을 둔 것에서 연유된 것이다. 두 연구자 모두 한국 근대 기업 및 기업가의 발생기를 조선조말 특히 개항 이후로 보고 있는 것은 공통된 점이다.

1974년에는 고승제 박사에 의해 『한국경영사 연구』(한국능률협회, 1974년 10월간)가 발간되어 우리 나라 경영사 연구를 일보 진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고 박사는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연구의 시대적 범위로 잡으면서 당시의 25개 사업 부문의 대표적인 기업과 기업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고 박사는 당시의 민족 기업의 형성 발전과 과정 뿐만 아니라 "창업형 경영자들에 대한 인물사적 고찰"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고 박사는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관한 사회경제사의 저변을 해명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아왔기 때문에 정치·사회·산업·종교·사상사적인 요인들을 고루 살피면서 한국 기업과 기업인들의 역사적 실태를 시대배경과 관련지으면서 밝혀 왔다[10]"는 것이다. 즉 거시적인 史觀에 입각하여 경영사도 역사의 일부분으로서 고찰하여야 한다고 고 박사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경영사 연구가들에게 기본적인 자세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고 박사는 경영사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경영사 연구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때마침 경영학이 시대의 각광을 받아가고 있다. 경영학의 육성은 경영사에 대한 시대적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경영사는 일찍부터 경제사나 산업사의 모체로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따라서 이제부터 전개되어야 할 경영사의 연구분야는 기업경영사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기업군의 경영사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의 경영사로까지 발전되어야 할 줄 믿는다[11]"고 하여 한국 경영사 연구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고 박사의 「한국경영사 연구」는 우리나라 경영사 연구에 새로운 가치를 부가한 역작인 것이다.

이 외에 고승제 박사의 경영사와 관련이 있는 저서나 논문으로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

8) 조기준, 전게논문, p.16.
9) 상게논문, pp. 16~17.
10) 고승제, 『한국경영사연구』, 한국능률협회, 1974, pp. 4~5(서문).
11) 상게서, p. 5.

을 것이다. 즉, 『한국금융사연구』(일조각, 1970년), 『근대한국산업사연구』(대동문화사, 1959년), 『한국근대화론』(사회사상사, 1976년) 등의 저서와 「3·1운동 전후 민족자본의 생태분석」,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1969년), 「한국재벌의 현주소」, 「재벌백서」(제13권, 1983년) 등의 논문이 경영사와 관련이 깊은 연구물이다.

조기준 박사와 고승제 박사의 저서나 논문은 위에서 거론한 연구물 외에도 많이 출간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특히 경영사·기업가사 연구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 것만 소개하였다.

조기준, 고승제 박사 등 경영사·기업가사 연구의 선구자 외에 경영사·기업가사 연구와 관련된 사회경제사학자·역사학자(예를 들면 김영호, 권병탁, 김종현, 유원동, 최태호, 김옥근, 이호철 교수 등)도 많이 있으나 이하에서는 경영사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몇몇의 학자를 소개하기로 한다.

한국의 경영사·기업가사 연구가 경영사학회의 창립 이래 활기를 띠기 시작했던 것을 생각할 때 현재 경영사학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학자들을 경영사·기업가사 연구의 대표자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경영사·기업가사 연구의 선구자를 제1세대 연구자라고 한다면 이들은 제2세대 혹은 현 세대 연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사학회의 창립(1986년) 이래 현재까지의 역대 학회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병하, 황명수, 김광수, 김성수, 고승희 교수(현 회장)가 역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김병하(金柄夏) 교수(제1, 2대 학회장)는 경제사상사 및 경영사상사의 연구에 역점을 두면서 기업가의 기업활동과 경영이념(기업가정신, 상인정신, 경영철학)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김병하 박사의 수많은 저서, 공저, 논문 중에서 저서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경영사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는 〈부표〉를 참조 바람).

김병하 교수의 주요저서

① 『상업사개론』, 박영사, 1962, ② 『이조전기 대일무역연구』, 한국연구원, 서울, 1969, ③ 『한국경제사상사』, 일조각, 서울, 1977, ④ 『한국경제경영사상사』, 계명대학교출판부, 대구, 1989, ⑤ 『재벌의 형성과 기업가 활동』, 한국능률협회, 서울, 1991, ⑥ 『한국농업경영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 1993, ⑦ 『한국경영이념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4.

황명수(黃明水) 교수(제3대 학회장)는 기업가의 창조적 활동과 기업가정신에 역점을 두면서 경영사학의 연구를 하고 있다. 황명수 교수는 경영사학회를 전국적인 학회로 발전시키는데 노력하였다. 황명수 교수의 주요 저서로는 ① 『경영사학』(일신사, 1972년), ② 『기업가사연구』(단국대학교 출판부, 1976년), ③ 『한국기업경영의 역사적 성격』(편저 신양사, 1992년), ④ 『한국의 시장상업사』(공저, 신세계백화점, 1992년), ⑤ 『평전 인촌 김성수』(공저, 동아일보사, 1991년), ⑥ 「6월의 문화인물 유일한」(문화체육부, 1996년 6월) 등이 있다

(이외에 경영사 관계의 저서가 있으나 생략한다. 황명수 교수의 경영사 관계의 주요 논문에 대해서는 〈부표〉을 참조 바람).

김광수(金光洙) 교수(제4대 학회장)는 경영사학회를 국제화시키는데 노력하였다. 김광수 박사의 회장 취임 후 회원의 해외 학술답사 및 해외심포지엄이 시작되었고 모범적인 기업가에 대한 「창업대상」 제도를 도입한 것도 김광수 교수인 것이다. 김광수 교수는 경제 · 경영의 사상사와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연구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의 『경제학사』는 김광수 교수가 사상사 연구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김광수 교수는 동 · 서양의 경제사 관련 저서를 다수 발간하고 있다(김광수 교수의 경영사 관련 논문은 〈부표〉를 참조 바람).

김병하, 황명수, 김광수 교수는 기업가사 연구에 속하는 학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현재 경영사학회의 고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정년퇴임 내지 정년퇴임 직전의 老學者이다. 이들이 경영사학 연구의 제2세대라고 한다면 김성수 교수, 고승희 교수는 현(제3세대)세대의 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성수(金聖壽) 교수는 경영학과 출신의 경영사학 연구자이며 경제사, 경영사, 경영이론 관계의 많은 저서를 간행하고 있다. 김성수 교수는 기업의 발달, 기업의 전략, 기업가의 경영이념 등 다각적인 각도에서 경영사에 대한 연구를 전개하고 있다(김성수 교수의 경영사학 관계 논문에 대해서는 〈부표〉을 참조 바람). 김성수 교수는 경영사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는 「광복 50주년 기념 해방동이 기업 연구」를 경영사학회의 공통 논제로 도입하는 등 시대가 요구하는 연구 제목의 선정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의 해외 학술답사 및 국제 심포지엄의 추진에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그는 행동하는 경영사 연구자라고 할 수 있다.

현 경영사학회 회장인 고승희(高承禧) 교수는 현재 경영사학회의 중심 인물로서 경영사학회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고승희 교수는 경영사학회의 초창기부터 학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회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會計史를 비롯하여 경영사 관계의 저술을 발간하는 등 의욕적으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호암 이병철의 문화정신」은 우수한 논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승희 교수의 경영사 관계 논문은 〈부표〉를 참고 바람).

고승희 교수는 중국 · 일본 · 한국의 세 나라 학자를 초빙하여 동양 3국(유교 국가)의 경영사 국제학술회의 개최(1998년 11월 14일)를 준비하는 등 경영사학회의 국제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성수 · 고승회 박사도 50대의 初老學者이다.

이상은 주로 경영사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그리고 현 부회장단으로서 이건희, 김 신, 이승욱, 이광종 교수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도 학회의 발전

〈표 1〉 한국경영사학회 임원 및 회원의 연구활동 현황(1986. 12~1998. 6)

성 명	임원 및 회원 경력	논 문 수	국내학술 연구발표수	해외학술 연구발표수	서평수	합 계
조기준	자문위원(현)	3	2			5
김병하	회 장	7(2)	4			11
황명수	회 장	9	4	1		14
김광수	회 장	6		2		8
김성수	회 장	10	5	4		19
고승회	회 장 (현)	11	4	2		17
이건희	부 회 장 (현)	7	1	3		11
박광서	부 회 장	8	5	2	1	16
김 신	부 회 장 (현)	3	1	2		6
안춘식	상임이사(현)	3	1	2		6
김상규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	5		1	1	7
이한구	상 임 이 사	4	1			5
김신웅	상임이사(현)	2	2			4
박재록	부 회 장	2				2
유병주	상임이사(현)	2(1)		2		4
이상욱	이 사	2	1			3
김인호	상임이사(현)	2(1)				2
한한수	이 사	1		1		2
이광주	회 원	1	1	1		3
안종태	이 사	1		1	1	3
최영순	이 사 (현)	3				3
강태경	회 원	3				3
감계삼	상임이사(현)	1	1			2
이호철	감 사	3(2)	2			5
이홍무	사무국장(현)	2				2
서문석	회 원	2	1			3

비고 : ① 논문수는 『경영사학』(제1~제17집)에 게재된 것임.
② 국내, 해외 학술연구발표는 한국경영사학회에서 발표한 것임.
③ ( )내는 공동연구임.
④ 합계 2점 이상만 기록한 것임.

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

〈표 1〉은 한국경영사학회의 임원, 회원 등의 연구활동 〈논문수, 국내 및 해외학술 발표수, 서평 등〉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1〉에서 보이듯이 역대의 회장단 외에도 다수의 임원 및 회원이 활발한 학회활동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자로서 이건희, 박광서, 김 신, 안춘식, 김상규, 이한구, 김신웅, 유병주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도 제3세대(현세대)의 중요한 멤버들이다. 이들은 40세대 및 50세대의 壯年과 初老의 학자들이다(이들의 논문에 대해서는 〈부표〉를 참조 바람). 이 외에도 경영사학의 연구자는 많이 있으며, 그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經營史」라는 제목의 저서(단행본)로서는 전술의 고승제, 송기철, 황명수의 저서 외에 황대석, 『한국경영론－한국기업경영사서설』(세영사, 1976년), 박재록 · 김신웅, 공저의 『현대경영사』(유풍출판사, 1981년) 및 박재록 · 박광서 · 김신웅 · 김대원 공저의 『신경영사론』(유풍출판사, 1994년) 등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기준, 송기철, 고승제 박사 등 경영사학의 선구자(제1세대)들과 그 뒤를 이은 제2세대와 제3세대(현세대)의 경영사 연구자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 오늘날 경영사 · 기업가사의 연구가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일약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경영사 연구는 짧은 기간에 상당히 진전되어 왔으나, 미국이나 일본의 이 분야 연구에 비하면 아직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12].

한국의 경영사 연구가 뒤떨어져 있는 것은 한국의 경영사 연구의 역사가 짧은 것이 그 첫째의 이유이다. 미국의 경영사학은 경영사학회가 설립된 이후 70여년의 역사가 있으며, 일본도 4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10여년의 역사 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 둘째, 한국의 경영사 연구자의 수가 위의 두 나라에 비해 훨씬 적으며, 셋째, 축적된 자료의 부족으로 연구의 대상도 주로 대기업에 대한 연구 등으로 그 연구 분야가 한정되어 있다. 넷째, 한국에서는 대학에서 조차 경영사학의 강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한국 경영사학회의 저변 확대가 늦어진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영사학이 오늘의 수준에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사학자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한국경제사학회, 한국역사학회, 한국경제학회 및 한국경영학회 등에서 경영사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경영사학회에 영입하는 일과 경영사학의 學際間의 교류의 확대가 한국경영사학회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2) 미국의 경영사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황명수, 「미국경영사학의 연구동향」, 『경영사학』(제2집, 1987년)을 참조바람. 일본의 경영사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손일선, 「일본의 경영사학계 및 연구현황」, 『경영사학』(제3집, 1988년)을 참조바람.

Ⅲ. 경영사 및 기업가사의 연구현황

1. 한국경영사학회의 탄생과 발전 현황

한국경영사학회는 1986년 창립 당시에는 經營史學會라는 명칭으로 발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1995년 10주년을 맞이하여 그 명칭을 韓國經營史學會로 개칭하였으며, 발행하는 학술의 크기도 국판에서 4·6배판으로 대형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경영사학회의 탄생 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1985년 11월 29일 김병하 교수의 주도하에 권병탁, 김용기, 김인환, 김준헌, 이호철 교수 등이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대구경영사연구회(가칭)의 설립을 결의하였고, 이어 1986년 1월 10일에는 가칭 대구경영사연구회의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어서 20명의 발기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이 해 2월 22일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정식으로 「대구경영사연구회」가 발족하게 되었으며, 회장에는 김병하 교수가 선출되었다. 이어 같은 해 12월 9일에는 전국학회인 「경영사학회」가 창립되었다. 즉 대구경영사학회는 발전적으로 해체되어 전국적인 경영사학회로 승화한 것이다. 초대 회장에는 김병하 교수가 취임하였다. 그 후 몇 차례의 전국적인 학술회의가 개최되었고 1986년 12월 30일에는 『경영사학』 창간호가 간행되었다[13].

이후 『경영사학』은 매년 발간되어 창립 10주년이되는 1996년까지 제13집(1996년 12월)이 발간되었으며, 1997년 5월에 제14집, 11월에 제15집, 12월에 제16집이 각각 발간되었다. 즉, 1997년에는 1년간 3권의 학회지가 발간될 정도로 학회 활동이 활발하였다. 그리고 금년(1998년) 6월에는 제17집이 발간되었다. 창간호의 발간 이래 제17집까지 게재된 논문은 총 155편에 이르고 있다(〈부표 1〉을 참조바람).

한편 경영사학회에서는 1986년의 창립 이래 1998년 6월 현재까지 매년 1회 내지 2회의 학술연구발표회가 개최되어 총 56편의 논문 발표와 이에 대한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경영사학회에서는 1994년에는 1997년까지 4회의 해외 학술답사 및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총 24편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표 2〉에 의하면 『경영사학』에 게재된 155편의 논문 중 기업가사(사례연구) 분야는 36.0%(57편), 경영사일반은 34.2%(53편)이다. 즉 71.0%(110편)가 기업가사 및 경영사연구

13) 김상규, 「한국경영사학회의 연구동향」, 『경영사학』 제5집, 1990년 2월, pp. 142~143.
고승희, 「한국경영사학회의 10년사 管見」, 『경영사학』 제13집, 1996년 12월, pp. 349~350.

〈표 2〉 『경영사학』에 게재된 논문의 분야별 구분(제1집~제17집)

(단위 : 편)

논문집 (호수)	기업가사 (사례연구)	경영사일반	경제사	경영학	기행문	서 평	합 계
1집	5	1	1			2	9
2〃	5	1	2			2	10
3〃	1	2	2			2	7
4〃	6	3					9
5〃	1	2	1				4
6〃		6	1				7
7〃	1	5	1			2	9
8〃	1	4	3				8
9〃	9				1		10
10〃		7	5				12
11〃	8						8
12〃	6					6	
13〃		7	5	1	2		15
14〃	6					6	
15〃	6					6	
16〃	1	9	4	3	1		18
17〃	1	6	3	1			11
합 계	57(36.8%)	53(34.2%)	28(18.0%)	5(3.2%)	4(2.6%)	8(5.2%)	(100.0%)
총합계	155(100.0%)						

비고 : 경영사일반에는 경영사연구동향 3편 포함.
자료 : 『경영사학』 제1집~제17집에 의거 작성함.

일반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사분야에 해당하는 논문이 18.0%(28편)이다. 경제사분야와 경영사분야는 서로 인접한 학문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89.0%(138편)가 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경영사학』은 이미 경영사의 전문연구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에 의하면 「경영사학」에 게재된 155편의 논문 중 기업가사(사례연구) 분야는 36.0%(57편), 경영사일반은 34.2%(53편)이다. 즉 71.0%(110편)가 기업가사 및 경영사연구 일반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사분야에 해당하는 논문이 18.0%(28편)이다. 경제분야

와 경영사분야는 서로 인접한 학문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89.0%(138편)가 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경영사학』은 이미 경영사의 전문연구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학술수준의 『경영사학』에 있어서도 1차 자료수집의 곤란, 수집된 자료의 인용 및 분석에 있어서의 객관성 입증의 곤란 등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학회지 발행수의 증가, 게재논문 수의 증가, 회원 수의 증가(1997년 400여명) 등 경영사학회의 저변 확대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게재 논문에 대한 사전 심사제(게재 허가제)가 강화되고 있어 경영사학회지의 내용면의 문제점이 해소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의 경영사 · 기업가사 연구는 1986년 경영사학회의 창립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영사연구를 모방하거나 도입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한국 자체의 경영사 연구방법을 개발하고 그것의 저변을 확대시켜야 할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2. 회사사 및 단행본 등의 현황

김동운(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1996년 8월 현재 398 종류의 會社史가 개별 기업에 의해 간행되어 있으며, 또 기업 · 기업가에 대한 학술논문(또는 단행본)이 92편 발간되어 있다고 한다[14].

더욱 개별기업의 회사사 중에서 발행연도가 확인된 390권 중 72%(281권)는 1980년 이후에 발행되었다고 한다[15].

개별 기업 회사사의 발간이 1980년 이후 급증하게 된 것은 한국 기업발달의 역사와 무관하

14) 기업이 발행한 회사사

기업의 수(개)	182	41	20	7	2	—	4	1	합계	256
회사사의 수(권)	1	2	3	4	5	6	7	8		398

발행연도(년)	1936	1950~1959	1960~1969	1970~1979	1980~1989	1990~1996		
회사사의 수(권)	1	7	27	74	143	138	합계	390

자료 : 김동운, 「한국개별기업사연구의 현황」,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제44집, 1996년 12월, p. 163에서 인용.

15) 더욱 김동운은 일제시대는 『개성전기 연혁사』(1936년), 해방 후 1950년대에는 『경성전기 55년 연혁사』, 『조선전업주식회사 10년사』, 『한국은행 5년사』, 『조흥은행 60년사』, 『제일은행 30년지』, 『한국상업은행 60년지』 등이 발간되어 있다고 한다(상게서 p. 163).

지 않다. 1970년대까지는 10여개의 재벌기업의 클로즈업되었고, 1980년대에는 30대 재벌, 그리고 1990년대에는 50대 재벌이 클로즈업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사는 그 내용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김동운의 지적과 같이 개별 기업의 회사사는 「귀중한 내부자료에 근거하여 회사사를 발행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학문적인 여과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16]. 이와 같이 회사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라기 보다는 많은 경우, 회사의 PR이나 창업자나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의 소개에 치우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17]. 그러나 『경성방직 50년사』, 『삼성 50년사』와 같이 회사사에서 시대적 배경, 설립 경위, 발전과정 등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는 회사사도 있는 것이다[18].

한편 1980년 이후에 회사사의 발간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비록 그 내용면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발행 회사나 발행 종류가 급증할수록 그 내용도 양에서 질로, 과장된 기술에서 사실 기술로 전환되어 가는 것이다. 50년대의 회사사와 근래 발간된 회사사는 그 내용이나 질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66년에 발간된 『화신 40년사』와 1988년에 발간된 『삼성 50년사』는 그 내용면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전자는 회사사에 대한 기록이 나열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후자는 각종 통계의 이용, 회사의 발자취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기록, 회사와 관련되는 여러 사건 등에 대해서도 기록하여 그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19].

개별 기업에 관한 학술 수준의 논문은 92편(1996년 8월말 현재)이며 대상 기업 · 기업가의 수는 70개/명, 기업별로 보면 58개 기업이라고 김동운은 기술하고 있다[20].

그리고 『경영사학』의 경우 1986년의 창간호 발간 이후 1996년까지 『경영사학』에 게재된 94편의 논문 중 40편(42%)이 개별기업/기업가와 관련된 논문이라고 김동운은 말하고 있다(〈표 3〉 참조).

한편 김동운은 『경제사학』(한국경제사학회 발행)이나 『경제학연구』(한국경제학회 발행)에는 개별기업에 대한 事例硏究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21].

〈표 3〉에서 보이듯이 單行本의 경우 기업 · 기업가사의 사례연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16) 상게서, p. 158.

17) 개별기업이 발간한 회사사의 경우, 그 발행 담당부서가 홍보실 또는 기획실로 되어 있어서, 자료의 활용이 편파적으로 되어 객관성을 잃거나, 또는 자료 보관이 잘 되어 있지 않아 필요한 자료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현실적인 문제점이다.

18) 『경성방직 50년』, 1969, pp. 38~275 참조. 『경방 70년』(1989년)도 같은 맥락에 서술되고 있다. 삼성의 사사에 대해서는 『삼성 50년사』(1988년)를 참조바람.

19) 『화신 40년사』, 1966년; 『삼성 50년사』, 1988년 참조.

20) 김동운, 전게서, p. 169.

〈표 3〉 개별 한국 기업/기업가를 다룬 학술 논문/단행본

	발행연도	총 논문 수	개별 기업 논문	분석된 기업의 수
-학술지-				
「경영사학」	1986~1996	94	40	30
「경제사학」	1977~1995	97	1	1
「경제학연구」	1953~1996	469	2	2
「경영학연구」	1971~1996	332	0	0
「경영실무」	1967~1976	-	(13)	(13)
「경영사례연구」	1977~1993	-	(46)	(46)
기타(McNamara)	1988	-	1	1
-단행본-				
(「학술총람」)	1945~1992	407	0	0
조기준	1974	-	18	18
조동성	1984	29	(25)	(24)
McNamara	1990	-	3	3
Eckert	1991	-	1	1
김병하	1991	16	7	7
황명수	1993	28	17	17
Janelli	1993	-	1	1
-박사학위논문-				
경제학	1945~1994	1,132	1	1
경영학	1975~1994	1,685	0	0
합 계	-	-	92(165)	82(164)-70-55

자료 : 김동운, 전게서, p. 168에서 인용.

보이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사를 비롯하여 학술논문, 단행본의 발행은 8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기업사 · 기업가사 연구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1) 「경제사학」에서는 1995년까지 게재된 논문 97편 중 1편만이 개별 기업을 다루고 있고, 1953년 시작된 「경제학연구」에는 개별 기업의 연구는 1편도 보이지 않으며, 1945~1994년 동안에 쓰여진 1,132편의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중에서도 오직 1편만이 개별 기업의 사례 연구라고 한다(상게서 p. 168).

Ⅳ. 맺음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역사가 짧은 탓도 있어 기업에 대한 연구도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과거 십여년 간에 기업과 기업가에 관한 연구는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本稿에서는 한국경영사학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영사·기업가사의 연구동향을 살펴 보았던 것이다.

한국경영사의 연구는 1960년대 말경부터 수 명의 학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경영사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6년 12월 9일의 經營史學會의 창립 이후이다.

한국경영사학회는 그 학회지인 『경영사학』을 1986년 12월 30일에 창간호를 발행한 이래 1997년 말까지 제16집을 발행하였고, 금년(1998년) 6월에는 제17집을 발행하였다. 이에 따라 제17집까지에 총 155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그리고 회원수도 해마다 증가하여 전국의 대학에서 가입한 교수의 수도 4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경영사학』에 게재된 155편의 논문 중 71.0%가 기업가사(사례연구)와 경영사일반 분야이며, 여기에 경영사학의 연구와 가장 인접한 학문인 경제사분야(18.0%)를 합하면 89.0%가 되어 있어서 『경영사학』은 이미 경영사학 연구분야의 전문학술지로서 그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사학의 연구자를 세대별로 나누어 보면, 우선 경영사학 연구의 선구자(제1세대)로서 趙璣濬, 高承濟(故人), 宋基澈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현재 80세를 넘는 고령자들이다.

다음에 경영사학회의 활동(임원경력, 연구업적 등)을 중심으로 경영사 연구의 제2세대 및 제3세대(현세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경영사연구의 제2세대로서 金柄夏, 黃明水, 金光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정년퇴임(김광수는 정년퇴임 직전)을 한 老學者들이며, 또한 한국경영사학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동학회의 고문직을 맡고 있다.

제3세대(현세대)로서는 우선 金聖壽, 高承禧(현 회장)를 들 수 있으며, 이들도 한국경영사학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50세대의 初老學者들이다. 이들 외에도 제3세대의 대표적인 연구자로서 이건희, 박광서, 김 신, 안충식, 김상규, 이한구, 김신웅, 유병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등의 임원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40대에서 50대의 壯年 및 初老學者들이다. 이 외에도 경영사학의 연구자는 많이 있으며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상은 편의상 한국경영사학회에서의 활동(주로 임원경력, 연구업적 등)을 중심으로 분류

하였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위에서 나열한 조기준, 고승제, 송기철 등 경영사학회의 선구자(제1세대)들과 그 뒤를 이은 제2세대와 제3세대(현 세대)의 경영사학 연구자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 오늘날 경영사·기업가사의 연구가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일약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경영사의 硏究誌로서는 한국경영사학회에서 발행하는 『경영사학』과 개별기업에서 발행하는 『會社史』가 있다. 전자는 학회수준의 전문지이며, 후자는 개별회사의 기관지이다. 회사사 중에는 『경성방직 50년사』, 『삼성 50년사』 등과 같이 비교적 수준이 높은 회사사도 적지 않다.

이 외에 單行本이나 학술논문의 발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金東雲의 조사에 의하면 1996년 8월 현재 398 종류의 회사사가 개별기업에 의해 발행되어 있고, 또 기업·기업가에 대한 학술논문이나 단행본이 92편 발간되어 있다고 한다. 더욱이 회사사의 72%(281권)는 1980년 이후에 발행되었다고 김동운은 지적하고 있다.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사의 발행이 1980년 이후에 급증하게 된 것은 한국기업의 발달과 無關하지 않다. 1970년대까지는 10여 개의 재벌기업이 클로즈업(浮上)되었고, 1980년대에는 30대 재벌, 그리고 1990년대에는 50대 재벌이 크로즈업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1980년대에서 1990년대 50대 대기업집단(재벌기업)이 우리나라 재계에 浮上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상에 따라 회사사의 발행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사학』誌의 경우도 1986년의 창간호의 발행이래 每號마다 6~17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왔으며, 1997년에는 亞南그룹의 창업자와 三星그룹의 창업자에 대한 특집을 포함해서 3권의 논문집이 발행되었고, 이들 3권의 논문집에 30편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금년(1998년) 6월에 발간된 논문집(제17집)에도 이미 13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고, 금년 연말에는 제18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다고 한다. 동학회지에는 지난 13년간 총 155편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규모 기업(기업집단)의 증가에 따라서 회사사, 경영사학, 기타 기업, 기업가사 관계의 단행본 및 학술논문의 발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 이후에 회사사, 경영사학 기타 학술논문 및 단행본 등의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경영사 및 기업가사의 연구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회사사의 경우 비록 그 내용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사의 발행회사 數나 발행種類가 급증할수록 그 내용은 量에서 質로, 과장기술에서 사실기술로 전환되어 가는 것이다.

『경영사학』 등의 학회지의 발간에 있어서도 발행수의 증가, 게재논문수의 증가, 회원수의 증가 등은 경영사 연구의 저변확대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 게재논

문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게재 허가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종래 종종 지적되던 내용면의 문제점(예컨대 1차 자료의 부족, 자료의 인용 내지 분석에 있어서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 등)이 점차 해소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경영사학회에 있어서의 연구활동은 1986년의 경영사학회의 창립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또 회사사의 경우도 1980년대에 들어 발행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 단행본의 경우도 우수한 역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같이 한국에 있어서의 경영사·기업가사 연구는 발전일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7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경영사학회와 40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경영사학회에 비해 한국경영사학회는 10여년의 역사 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한국경영사학회는 그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제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영사 연구방법을 모방하거나 도입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한국 자체의 경영사 연구방법을 개발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경제사학회, 한국역사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영학회 등에서 경영사 관계의 연구자를 한국경영사학회에 영입하는 일과 한국경영사학의 學際間 교류를 확대시켜야 하는 일이 한국경영사학회의 금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경영사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기 위한 소위 『經營史資料保管所』 등의 설치가 경영사학 연구자의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경영사학 연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각 대학에 『경영사 강좌』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것도 경영사학 연구자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승제, 『한국경영사연구』, 한국능률협회, 1975년.

_____, 『한국금융사연구』, 일조각, 1970년.

_____, 『한국근대화론』, 사회사상사, 1976년.

고승희, 『한국경영사학회의 10년사 관견(官見)』(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창립 10주년 특집』, 제13집, 1996년 12월 pp. 346～412.

김동운, 「한국개별기업사 연구의 현황」(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제44집, 1996년 12월.

김상규, 「한국경영사학의 연구동향」, 『경영사학』, 제5집, 1990년 12월, pp. 127～148.

김병하, 『한국경제사상사』, 일조각, 1977년

김병하, 『재벌의 형성과 기업가 활동』, 한국능률협회, 1991년
김신웅 · 박재록, 『현대경영사』, 유풍출판사, 1981년.
김용기, 「경영사연구 방법론서설」, 『경영사학』, 창간호, 1986년 12월, pp. 175~201.
송기철, 『경영사』(개정증보), 박영사, 1974년.
손일선, 「일본의 경영사학계 및 연구현황」, 『경영사학』, 제13집, 1988년 pp.187~223.
조기준, 『한국기업가사』, 박영사, 1973년.
_____, 『한국자본주의 성립사론』, 고려대학교부설 아시아문제연구소, 1973년.
_____, 『한국경제 신강』, 일신사, 1994년.
황대석, 『한국기업경영－한국기업경영사서설』, 세영사, 1976년.
황명수, 『경영사학』, 일신사, 1972년(개정판, 1977년).
_____, 『기업가사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76년.
_____, 『한국기업경영의 역사적 성격』(공저), (필산 황명수 교수 회갑기념논총), 1993년 6월.
_____, 「미국경영사학의 연구동향」, 『경영사학』, 제2집, 1987년.
米川伸一, 『經營史學—生誕 · 現狀 · 展望』, 東洋經濟新報社, 1973년.
井上忠勝, 『アメリカ經營史』, 神戶大學經濟經營研究所, 1961년.
三島康雄, 『經營史學の 展開』, ミネルウ"ァ書房, 1961년.
小玉敏彦, 『韓國工業化と企業集團—韓國企業の社會的特質』, 學文社, 1995년.
Gras, Norman Scott Brien, Business and Capitalism : Introduction to Business History, New York, 1939.
Larson, H. M., Guide to Business History ; Materials for the Studies of American Business Histroy and Suggestion for Their Use, 1948.
Chandler Jr., A. D., "Business History : What Is It About?", Journal Contenporary Business, 10, 1981.

〈부 표〉 『경영사학』 게재논문 목록

『경영사학』(학술지)의 창간호(1986년 12월)부터 1998년 6월 현재까지 연구주제와 발표자는 아래와 같다(자료 : 『경영사학』 제13집, 1996년 12월, pp. 405~444 및 제14집, 제15집, 제16집, 제17집 참조).

1. 창간호(1986년 12월 30일 발간)

〈논문〉

특집 : 성곡 김성곤 연구

① 성곡의 생애와 경영이념(김병하)

② 성곡과 정치(김순곤)

—주로 정치가로서의 그의 편모(片貌)—

③ 성곡과 육영 · 문화사업(최태호)

④ 성곡의 언론기관 운영(권병탁 · 김병하)

⑤ 성곡의 체육활동과 기업 및 체육계에 미친 영향(배수진)

⑥ 전환기의 농장경영과 노비(고승제)

⑦ 경영사연구 방법론 서설(김용기)

〈서평〉

⑧ 한국회계사연구(윤근호 저)(안윤태)

⑨ 약령시연구(권병탁 저)(김효동)

2. 제2집(1987년 12월 30일 발간)

〈논문〉

특집 : 기업활동가의 사례

① 소남 김태원의 사적과 금정금광의 경영(김준헌)

② 성곡의 기업가활동(김병하)

③ 성곡의 경영과 인맥(고재경)

④ 삼공합자회사에 관한 고찰(김병하)

⑤ 성곡과 금성방직(황명수)

⑥ 한국 시멘트공업의 전개와 쌍용양회(조기준)

⑦ 조선시대의 인구규모추계(Ⅰ)(이영구 · 이호철)

⑧ 미국의 경제사 연구(황명수)

—과거와 현재—

〈서평〉

한국광고사(신인섭 저)(김남규)

日本的經營論爭(岩田龍子 著)(이의규)

3. 제3집(1988년 12월 30일 발간)

〈논문〉

① 호암의 생애와 경영이념(김병하)

② 대동법 연구(김옥근)

③ 회계발달사고(고승희)

④ 조선시대의 인구규모추계(Ⅱ)(이영구 · 이호철)

—17, 18세기 인구증가율 추계를 중심으로—

⑤ 일본의 경영사학계 및 연구현황(손일선)

〈서평〉

⑥『현대경영사』(김신웅 · 박재록 공저)(김상규)

⑦『財閥の比較史研究』(安岡重明他 著)(이춘근)

4. 제4집(1989년 12월 30일 발간)

〈논문〉

특집 : 호암 이병철 연구

① 삼성물산의 성립과 호암의 기업가활동(황명수)

② 호암의 사업전환(김병하)

③ 호암과 제일모직(조기준)

④ 호암의 다각적 경영과 한국비료(김병하 · 최명규)

⑤ 호암과 삼성전자의 사업전개(안춘식)

—특히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⑥ 호암의 육영 · 문화사업관과 사적고찰(유원동)

—용인자연농원을 중심으로—

⑦ 戰前期 日本의 財閥所有者와 專門經營者와의 關係(安岡重明)

⑧ 財閥(史)論과 企業集團의 接點(石川健次郎)

—財閥史研究의 새로운 課題—

〈동향〉

⑨ Fuj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siness History에 다녀온 소감(김성일)

5. 제5집(1990년 12월 30일 발간)

〈논문〉

① 1979년까지의 현대건설의 자본축적과 경영이념(김병하)

② 住友財閥의 形成과 廣瀨宰平의 企業家活動(作道洋太郎)

③ 농촌주민의 구성과 존재양태에 관한 경제사적 연구(이영구 · 이호철)

—경북 군위군 A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향〉

④ 한국경영사학의 연구동향(김상규)

6. 제6집(1991년 12월 31일)

〈논문〉

① 우리나라 민족은행의 경영근대화과정에 관한 연구(민경완)
　－근대 금융기관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② 한국노동임금형성사의 정립을 위한 서설적 연구(김성수)

③ 일본－산업화 초기의 노사관계(강계삼)

④ 재벌－정부관계의 역사적 추이(柳町功)
　－삼성재벌의 사업확장과정을 중심으로－

⑤ 意思決定支援會計情報 システムの展開過程についての一考察(李盈周)

⑥ 일본자본주의 성립기의 공업구조(황완성)

⑦ 1945～1950 충남제사(주)의 경영구조(김혜수)

7. 제7집(1992년 12월 30일 발간)－箕山黃明水 박사 회갑기념논총－

〈논문〉

① 일제시대의 시장과 상업활동에 관한 연구(김성수)

② 충청북도의 공업발달과정(김신웅)

③「사사」분석을 통한 한국기업의 발전단계별 특성에 관한 연구(이종순 · 지정택)

④ 목산 허주열의 생애와 경영이념(박광서)

⑤ 해방후 민간무역에 관한 연구(유기덕)

⑥ 재래시장의 생성 · 발전에 따른 유통 근대화에 관한 연구(이상옥)

⑦ 戰後日本における企業會計制度の發展史攷(고승희)

〈서평〉

⑧ 최태호 저,「근대 한국경제사 연구 서설」(서길수)

⑨ 김종현 저,『공업화와 기업가활동』(박광서)

8. 제8집(1993년 12월 30일)－逸竹金光洙 박사 회갑기념논총－

〈논문〉

① 독일상사의 대극동진출(김광수)
　－1890년까지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② 도중(都中)에 관한 연구(김병하)
　－개성 선주전과 해주 선주전을 중심으로－

③ 한국의 생명보험산업경영에 관한 사적 고찰(박광서)

④ 염직계의 시조, 김덕창 연구(이한구)

－동양염직주식회사를 중심으로－

⑤ 금수출입의 사적 고찰(김정신)

⑥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조선경제수탈의 금융업경영(강태경)

⑦ 近代株式會社의 形成과 儒敎的 價値觀의 變化(柳町功)

－明治初期와 韓末期의 比較－

⑧ 스위스의 전통면업(최영순)

－The Microeconomic Determinants of Consolidated Firms Performace(1905~1919)－(Kang Joo-Hoon)

9. 제9집(1994년 12월 30일 발간)

〈논문〉

특집 : 유일한 연구

① 유일한의 생애와 경영이념(황명수)

② 유일한의 기업활동과 경영전략(안춘식)

③ 미국에서의 유일한의 경제·정치·사회활동(김광수)

④ 유일한의 사회사업 및 육영사업(김도경)

⑤ 유한양행의 성장과 발전(서거시까지)(김성수)

⑥ 유한양행과 한국제약사업(김신웅)

⑦ 유일한의 유업과 계승발전(박재록)

⑧ 유일한의 경제사상과 사회적 책임(박광서)

⑨ 유한양행의 경영진들(고승희)

⑩ 한국경영사학회 산업혁명지 학술조사 기행문(김상규)

10. 제10집(1995년 6월 30일 발간)

〈연구발표논문〉

① 일제하 토착면공업자본의 성격에 관한 연구(이한구)

② 동서무역의 사적 연구(김 신)

③ 한국 노조 조직형태의 변천에 관한 연구(김창의)

④ 지중해 중세 상업사 고찰(김성수)

⑤ 중세 지중해 연안의 무역경로에 관한 연구(박광서)

⑥ 중세기 유럽지역의 회계학 발전사에 관한 연구(이건희)

⑦ 이탈리아 복식부기의 회계사적 고찰(고승희)

〈일반논문〉

⑧ 독일의 산업혁명(김광수)
⑨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사적 전개과정(황준성)
⑩ 한국 재래시장의 변천과 유통근대화에 관한 연구(이상옥)
⑪ 1950년대의 공업화와 자본형성(서찬수)
⑫ 자본국제화와 한국경제(이갑영)

11. 제11집(1995년 12월 31일 발간)
〈특집 : 광복 50주년기념 해방둥이 기업 연구〉
① 정석(靜石)의 생애와 경영이념에 관한 연구(김성수)
② 한진그룹 형성과정 연구(이한구)
③ 동아건설 창업자의 생애와 경영이념(고승희)
④ 동아건설의 성장과 발전(김광수)
⑤ 중외제약의 성장과 창업이념(박광서)
⑥ 교보생명보험의 경영진들(고승희)

13. 제13집(1996년 11월 30일 발간)
〈학술발표논문〉
① An Entrepreneur Spirit in Yong-Ho Shin of Top Management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김성수)
② 회랍의 도시국가(김광수)
③ 산업표준화의 역사적 고찰(김상규)
④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자본축적과 자본유형에 관한 연구(김성기)
⑤ 고대무역구조의 특성에 관한 연구(김 신)
⑥ 고대 회계발전사 연구(이건희)
⑦ 바빌로니아시대의 상업과 상인(이광주)
⑧ 노사정보공유와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유병주)
⑨ 품질관리의 역사적 고찰
〈일반연구논문〉
⑩ 업적평가를 위한 목표관리의 효율적 활용방안(김인호)
⑪ 동양척식회사의 토지 수탈경영(강태경)
⑫ 일본적 노사관계의 특질과 형성배경에 관한 연구(이원우)
〈기타〉
⑬ 중세 지중해연안 상업주도시 학술조사(박광서)

⑭ 고대상업 및 무역도시 학술조사(최영순)
⑮ 한국경영사학회의 10년사 관견(고승희)

14. 제14집(1997년 5월 31일 발간)
〈논문〉
특집 : 아남그룹 창업자 김향수 연구
① 우곡의 생애와 경영이념의 연구(김성수)
② 아남그룹의 성장과 발전(황명수)
③ 우곡 김향수의 기업활동과 경영전략(고승희)
④ 아남그룹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사업(김광수)
⑤ 아남그룹 경영진의 기여도 분석(이건희)
⑥ 아남그룹과 한국의 전자사업(박광서)

15. 제15집(1997년 11월 15일 발간)
〈논문〉
특집 : 호암사상의 재조명 연구
① 호암의 삶의 철학과 기업의 역정(조기준)
② 호암의 경영이념 재조명(황명수)
③ 한국경제발전에 있어서 호암의 산업적 기여에 관한 고찰(김성수)
④ 호암의 경영관을 통해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김광수)
⑤ 호암의 한국경영사학에서의 위치(이건희)
⑥ 호암의 문화정신(고승희)

16. 제16집(1997년 12월 30일 발간)
〈학술회의 발표논문〉
① 한국경영이념의 애국적 전통과 21세기 기업가의 가치관(김병하)
② 영미퓨리턴(기독교)의 기업윤리와 한국 기독교 기업인의 윤리(황명수)
③ 바이킹과 북유럽상업권(김광수)
④ 유럽연합(EU)의 회계표준화 과정(고승희)
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재무이론연구(이건희)
⑥ 해외진출로의 역사적 특성에 관한 연구(심 신)
⑦ 스웨덴 경영참가제의 전환과정(안종태)
⑧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인 노무관리에 관한 연구(유병주 · 방진방)
〈일반연구논문〉

⑨ 한국 재벌의 형성 · 발전과정과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박유영)
⑩ 동은 김용원의 재계활동과 경영철학(박재록)
⑪ 귀속 면방직공장의 설립과 변화유형에 관한 연구(서문석)
⑫ 근대경제학의 스톡홀름학파에 관한 연구(이광종)
⑬ 화교의 자본형성과정과 경영전략(이덕훈)
⑭ 일본벤처기업의 생성배경과 경영과제(박경열)
⑮ 손해보험자와 운송인의 이해관계 변화에 관한 사적 연구(이홍무)
⑯ 임금협상시 회계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집단의 반응연구(홍정화 · 이환수 · 김인호)
⑰ 원가 회계의 사적 고찰(김상규)
〈기타〉
⑱ 북구 바이킹의 후예를 찾아서(최영순)

17. 제17집(1998년 6월 30일 발간)
〈논문〉
① 일제하 민족계 기업집단 형성과 성격에 관한 연구(김성수)
② 지식사회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프레더릭 테일러의 생애와 사상(이재규)
③ 중국국유기업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송재훈)
④ 러 · 중기업개혁제도의 경영사적 의미분석(조규진)
⑤ 일본의 순수 지주회사 부활(신장철)
⑥ 복식부기와 자본주의의 발달에 관한 문헌사적 연구(고승희)
⑦ 지리상 발견이 유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김 신)
⑧ 한국금융시장의 국제화과정에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황남일 · 김유상)
⑨ 일본의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의 역사적 고찰(이홍무)
⑩ 일제하 토착면공업자본의 성격에 관한 연구(2)(이한구)
⑪ 해방이후 귀속재산의 변동에 관한 연구(서문석)
⑫ 성공적인 연봉제 도입과 운영방책(김인호)
〈자료〉
『경영사학』(한국경영사학회), 제1집~제17집에서 발췌.
고승희, 「한국경영사학회의 10년사 관견」, 『경영사학』, 제13집, 1996년 12월, pp. 41~63 참조.

The Korean Academy of Historians Perspective

Hwang, Myong-Soo*

要　約

本稿は、韓國經營史學會の活動を中心に、韓國の經營史・企業家史研究の動向を檢討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

韓國經營史の研究は、1960年代末頃から數名の學者によって個別的に研究が行なわれてきたが、同研究が本格的に行なわれ始めたのは、1986年12月9日の韓國經營史學會の創立以後である。韓國經營史學會では、その學會誌である『經營史學』の創刊號を1986年12月30日に發行しこ以來今年(1998年)6月まで第17輯を發行しており、同學會誌には、これまで總計155編の論文が掲載されている。會員數も400余名に達している。

經營史の研究者を世代別に分けると次の通りである。經營史研究の先驅者として先ず、趙璣濬、高承濟(故人)、宋基徹等をあげ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趙璣濬は『韓國企業家史』(1974年)の著者であり、高承濟は『韓國經營史研究』(1975年)の著者であり、宋基徹は『經營史』(1974年(改訂版))の著者である。なお、彼等は現在80才以上の高令者である。

次に經營史學會での活動(役歷、研究業績等)を中心に經營史の研究陣を紹介すると、金柄夏(初代、2代 會長)、黃明水(3代 會長)、金光洙(4代 會長)を經營史研究の第2世代としてあげられるであろう。彼等の『經營史學』第17輯までの掲載論文の數は、それぞれ7編、9編、6編であり、この他にいくつかの著書がある。彼等は定年退職者(金光洙は定年直前)の老學者であり、韓國經營史學會の中心人物として活躍してきたのである。彼等は現在韓國經營史學會の顧問でもある。

第3世代(現世代)としては、金聖壽(前會長、掲載論文 10編)、高承禧(現會長・11編)をあげることがでさる。さらに李建憲(副會長、7編)、朴光緖(前副會長、8編)、金相圭(前事務局長、5編)、李漢九(理事、4編)、安春植(常務理事、3編)、金新(副會長、3編) 等も第3世代(現世代)の主要なメンバーとしてあげられるであろろ。彼等のほとんどは、學會掲載論文の他

* 檀國大學校 經濟學科 名譽教授, 本 學會顧問

に著書なども發行している。なお、彼等(第3世代)は、40～50才台の壯年ないし初老學者である。

この他にも經營史の研究者は多く存在してこおり、その數も毎年增加している。ただ本稿では便宜上韓國經營史學會でのこれまでの活動(役歷、 研究業績等)を中心に分類したのである。

經營史關係の研究誌としては、先ず韓國經營史學會發行の 「經營史學」をあげることができる。この他に 『會社史』 がある。前者は學會水準の專門誌であり、後者は個別會社の機關誌であるが、なかには、かなり水準の高い會社史もある。例えば、『京城紡織50年史』、『三星50年史』等は、かなり高い水準の會社史である。これらの他に、經營史關係の單行本や學術論文などの發行も毎年增加している。

金東雲の調査によると、1996年 8月 現在 398種類の會社史が個別企業によっと發行されており、企業・企業家に關する學術論文ないし單行本も92編發行されているという。なお、會社史の72%(281卷)は、1980年 以後に發行されていると述べている。

個別企業による會社史の發行が1980年以後急增しているのは、 韓國企業の發展と無關係ではない。1970年までは10個の財閥企業(企業集團)がクローズ・アップ(浮上)されていたが、1980年代には、それが30大財閥に、そして1990年代には50大財閥がクローズ・アップ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な大規模企業集團の浮上とともに會社史の發行も增加しているのである。

『經營史學』の場合も、1986年の創刊號の發行以來、毎年1回發行される同學會誌に6～17編の論文(少ない年には6編、多い年には17編)が掲載されてきたが、昨年の1997年には、亞南グループと三星グループに對する特輯をも含めて1年間に3卷の論文輯が發行されており、これら3卷の論文輯に總計30編の論文が掲載されている。今年(1998年) 6月に發行された第17輯には、 13編の論文が掲載されており、 今年の年末には第18輯の發行が計劃されているといわれている。

上記のように大規模企業(企業集團)の增加につれて、『會社史』、『經營史學』、その他の經營史に關する學術論文や單行本の發行が增加しているのである。 1980年以後 「會社史」や「經營史學」などの發行が增加しているのは、 經營史の研究に對する認識が、 それだけ高まっていることを表しているのである。

會社史の場合、たとえその內容において問題點が少なくないとしても、會社史の發行會社數や會社史の種類が多くなれば多くなるほどその內容は量から質に、 誇張記述から事實記述に轉換して行くのである。

『經營史學』等の學會誌の發行においても、發行數の增加、掲載論文の增加、會員數の增加

などは、經營史研究の底辺裾拡大が急速に行なわれていることを表している。さらに、掲載論文に對する事前審査制度(掲載許可制)も強化されているため從來しばしば指摘されてきた內容面での問題點(例之ば1次資料の不足、資料の引用ないし分析の客觀性に對する疑問等)は、徐徐に解消されている。

一方『經營史學』に掲載されている155編の論文のうち、5, 71% が企業家史(事例研究)と経營史一般の分野であり、これに経營史學の研究に最っとま近い 経濟史の分野(18%)と合わせると89%になり, 経營史は、既に経營史分野の專門誌として、その地位を構築しているのである.

上記のように韓國における經營史・企業家史の研究は、比較的短期間に早い速度で發展しているのである。

70年の歷史をもつアメリカ經營史學會や40年の歷史をもつ日本經營史學會に比して、 韓國經營史學會は、わずか10余年の歷史しかもっていないけれども、この短期間にかなり早い速度で發展しており、 今や韓國は、アメリカや日本の經營史の研究方法の模倣や導入の段階から韓國獨自の經營史の研究方法を開發できる時點に到達していると思われるのである。

さらに、韓國經濟史學會、韓國歷史學會、韓國經濟學會、および韓國經營學會等における經營史關係の研究者を經營史學會に迎入することや、經營史學の學際間の交流を擴大することが、韓國經營史學會の今後の課題であるといえるであろう。

また, 経營史研究の資料を收集し, 保管するための「経營史資料保管所」の設置なども経營史研究者の課題であり, さらに経營史研究の底辺拡大のため、各大學た「経營史講座」の開設を 積極的に推進することも経營史研究者の課題であるといえるであろう.

Key-words : 韓國經營史學會, 經營史學 企業家史, 會社史

韓國 財閥의 經營史的 硏究
-특히 財閥의 改革과 新展開를 위하여-

Historical Study for Korean Chaebol Companies

金 聖 壽*

目 次

Ⅰ. 序 論
Ⅱ. 財閥의 理論的 考察
1. 財閥의 槪念
2. 財閥의 成立條件
3. 韓國財閥의 特徵
Ⅲ. 財閥의 經營史的 時代區分 問題
Ⅳ. 韓國財閥의 經營史的 展開過程 分析
1. 第1期 : 胎動期
2. 第2期 : 創立과 基盤構築期
3. 第3期 : 跳躍期(形成期)
4. 第4期 : 成長期
5. 第5期 : 轉換期的 安定期
6. 第6期 : 構造調整期 및 解體期
Ⅴ. 韓國財閥의 經營史的 性格
Ⅵ. 結 論
參考文獻

Ⅰ. 序 論

지금 韓國은 IMF體制下에서 21세기 千年을 위하여 企業構造調整을 통한 財閥의 改革으로 經營史의 新 展開를 필요로 하는 매우 중요한 時期에 있다.

財閥의 改革은 財閥의 解體를 의미하는 것이고, 世界的 競爭力을 갖기 위하여 企業集團이라는 經營史學的 意味를 갖는 새로운 빅 비즈니스 그룹(Big Business Group)을 體系的으로 定立해야 하는 企業發達의 再照明을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 政府는 지난 1998년 4월 15일 30大 大企業集團을 指定하여 財閥들의 經營成績表를 발표하면서 財閥을 解體하여 大企業集團만이 存在하는 틀을 만들어 每年 企業集團別로 順位를 評價하여 발표하겠다고 하였다[1]. 그러기 때문에 財閥들도 빨리 構造調整을 통하여 競爭力있

* 慶熙大學校 經營學部 敎授, sskm@nms.kyunhee.ac.kr

1) 公正去來委員會, 30대 企業集團指定, 발표문건, 1998년 4월 15일.
본 硏究의 方法은 經營史學的 硏究方法論을 採擇하여 文獻과 資料, 統計, 考證, 旣存의 硏究業績 등을 基礎資料化하여 客觀的으로 綜合分析하는 實證的 資料 中心의 文獻硏究 方法論을 사용한다.

는 '빅딜'을 展開함으로서, 財閥을 解體하고 巨大企業으로 特性化 하도록 大企業政策을 전환하는 産業政策을 改革하고 있다.

이러한 時代的 要請에 따라 본 硏究는 韓國財閥의 經營史的 再照明을 통하여 韓國財閥의 解體와 企業集團의 再編成이라는 財閥 改革의 問題와 新 展開의 當爲性을 提示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따라서 本 硏究를 效率的으로 展開하기 위하여, 먼저 財閥의 理論的 考察을 중심으로 財閥의 槪念, 財閥의 成立條件, 財閥의 特徵 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財閥의 經營史的 時期區分 問題, 韓國財閥의 經營史的 展開過程 分析, 그리고 이를 통한 韓國財閥의 經營史的 性格을 導出하고 財閥의 解體와 企業集團의 再編成 問題를 檢討하고자 한다.

Ⅱ. 財閥의 理論的 考察

1. 財閥의 槪念

財閥의 硏究는 最近 日本에서 활발하다[2]. 그러나 이미 1927년에 美國 하버드대학 經營大學院(Harvard Business School : HBS)에서 經營史 講座가 開設되면서 經營史學은 눈부시게 발전을 하였으나 韓國에서는 이 分野가 일부분 學者들의 斷片的인 硏究가 있을 뿐 用語와 批判的 視覺은 무수하나 槪念조차 定立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韓國經營史學會에서 國際세미나의 一環으로 이 問題를 다루게 되어 지금까지 斷片的으로 硏究하던 企業集團의 問題들을 財閥이라는 東洋的意味의 用語, 日本과 韓國에서 重要하게 시사하던 企業集中 形態를 西洋的 意味를 담은 企業集團과 연계시켜 國際化, 世界化로의 意味를 가지게 되어 이 問題의 提起부터 經營史學的 意義를 가지게 되었다.

財閥史硏究을 하는 학자들은 財閥의 槪念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體系的으로 定立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3]. 財閥의 槪念이 나라에 따라서 定型化되어 있지않는 것은 財閥이 生成되고 發展한 歷史的, 社會的 環境이 다르기 때문에 認識의 差異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韓國에서 通用되는 財閥의 槪念도 外國의 그것과 一致하지 않다. 이와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金柄夏敎授는 財閥의 形成과 企業家活動(1991)에서 財閥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즉 財閥이란 家族이나 親族支配下의 다각적 大企業集團이다. 韓國에서는 大企業集團뿐만 아니라 莫強한 實力을 가진 그 總帥를 財閥이라고 通稱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創業主 또는 總帥의 莫強한 地位에서 연유한다고 생각된다[4].

2) 安岡重明, 財閥 比較史的 硏究, 同志社大學, 人文科學硏究所, 1985, pp. 5~7.

3) 金柄夏, 財閥의 形成과 企業家 活動, 韓國能率協會, 1991, p. 16.

즉, 財閥이 마치 個人의 排他的 所有로 認識되는 社會에서 專門經營者보다 創業主의 나이 어린 直系後孫에게 企業그룹이 맡겨지는 현상은 集團과 個人이 희석될 수 밖에 없고 競爭力을 잃어가는 것은 "閥"자 뜻의 含蓄性 때문에 그와같은 용법이 가능한 것이다.

財閥의 閥은 派閥이나 門閥과 같은 集團性을 意味하지만 學閥, 軍閥, 族閥 등과 같이 共通的인 人緣, 學緣, 地緣 등의 關係로 서로 뭉치는 勢力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財閥의 경우에도 閥은 集團을 意味한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家族, 親戚 등이 支配하는 大企業集團이 財閥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점에서 日本의 安岡重明 敎授는 財閥이란 家族 또는 同族이 出資하여 支配하는 多角的 事業體이며, 그 중에서 大規模的 事業部分 또는 國民經濟, 地方經濟에 큰 影響力을 미칠 정도의 規模를 갖는다라는 定義를 하고 있어 示唆하는 바가 크다[5].

財閥을 이상과 같이 定義하면 政治와 결탁한 단순한 富豪層(Plutocracy)과 구별되며, 더구나 獨占資本과 同義語일 수 없다. 財閥이 아닌 金權政治的 富豪階級과 獨占資本家가 存在해 있기 때문이다.

財閥이란 말은 中國的인 表現이지만 日本에서 널리 사용하여 자이바쯔(Zaibatsu : 財閥)'라는 새로운 用語(Terminology)가 생겨났다. 그러나 歐美學者들은 오래전부터 Big Business Group 또는 Financial Clique 라는 用語를 활용하였다. 물론 日本의 財閥은 第2次大戰에서 패전한 뒤 美國占領軍에 의하여 解體되었고, 그 後 再編成된 大企業集團은 그룹이란 말을 사용하여 歷史的 槪念으로서 戰前의 財閥과 區分하는 것이 一般的이다[6].

즉, 兩者 사이에는 內容의 差異가 있다.

財閥解體 후 戰前의 財閥企業이 構造調整을 통해 再結合되었지만, 문어발식의 企業集團이 아니라 競爭力과 特性化를 지닌 大型企業으로 成長하는 異質的인 企業集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第2次大戰이 終結된 時期까지 日本의 財閥은 軍部와 結託하여 戰爭을 挑發하고 수행하였다고 論爭하던 風潮는 사라지고, 財閥이란 開發途上國이 工業化를 推進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傾向이 濃厚하다. 따라서 後進的인 戰前의 財閥과 戰後의 大企業集團은 구별이 되어야 한다.

이제 韓國도 文民政府의 市場經濟體制에서 過去와 같은 政經癒着으로 企業을 문어발식으로 키우던 時代는 사라지고 世界的 企業으로 競爭力을 갖춘 專門企業集團으로 거듭나는 財閥의 新槪念의 定立이 필요하다.

---

4) 上揭書, p. 16 參照
5) 上揭書, p. 17 參照.
6) 金柄夏, 前揭書, p. 18 參照.

2. 財閥의 成立條件

財閥은 家族이나 親戚支配하에서 多角的 經營을 하는 企業集團의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는 總帥라고 定義한다면, 財閥의 成立條件은 우선 血緣的 紐帶關係와 大企業集團을 形成시킨 經濟 社會環境을 들 수 있다. 財閥의 形成過程은 先進國보다도 後進國의 工業化과정에서 實現될 可能性이 크다[7]. 資本蓄積이 되어있지 않고 技術이 落後되어 있으며, 經營이 合理化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市場經濟의 原理에 따라 工業化가 추진될 경우 利潤動機가 강하고 競爭原理에 충실한 革新的 企業家 중에서 經營에 성공하여 財閥을 形成하는 경우가 많다.

韓國財閥의 生成은 日帝下에서 그 胎動의 싹이 트고 解放 이후 歸屬財産處理法을 통하여 敵産財産의 拂下過程과 1961년 5.16軍事革命, 그리고 1960年代의 經濟開發計劃으로 일대 轉換點을 이루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財閥이 成立되는 條件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6.25戰爭으로 말미암아 종래의 大地主와 大企業家가 沒落하였거나 富가 縮小되어 先進企業家의 進出이 容易해졌다. 둘째, 美國의 進駐와 經濟援助로 이 分野에 관여한 企業, 또는 政府 保有달러를 유리하게 拂下 받은 貿易業者가 急成長하였다. 셋째, 戰爭의 影響으로 市場的 機會에 큰 變化를 招來하여 그것을 잘 捕捉하고 金融, 稅制 등 特惠을 받으면서 革新的으로 經營한 企業家가 成功하여 財閥로 浮上하였다. 넷째, 1962년 이후 經濟開發計劃 施行過程에 參與한 産業과 企業들이 輸出드라이브政策에 便乘하여 金融, 稅制, 行政 등의 支援 特惠와 政府의 庇護로 政經癒着的 企業家行態가 財閥로 成長하는 경우가 많았다[8].

다섯째, 1970년대부터 效率性과 衡平性이라는 經濟政策의 兩大價値尺度 中에서 效率性의 달성을 地上命題로 삼아 소수 大企業을 集中支援하는 財閥中心의 成長政策의 追求가 契機가 되었다[9].

3. 韓國財閥의 特徵

韓國財閥은 外國의 財閥과 類似한 점도 있으나 韓國的 特徵을 發見할 수 있다.

첫째로 韓國은 世界에서 가장 급속하게 財閥이 成長한 나라에 속하며 財閥에 대해서 批判的이다. 韓國은 財閥이 生成된지 30여년만에 世界 有數國의 財閥이 되었고, 經濟力 集中度가 매우 높다. 현재 30大 財閥의 賣出額은 製造業의 約 45%, 附加價値의 比重은 42%, 總資産의

7) 日本의 中川敬一郎 敎授는 財閥을 後進國 工業化過程에서 나타나는 特有한 企業集團으로 規定하였다.

8) 金柄夏, 前揭書, p. 18 參照.

9) 效率性과 衡平性에 관한 論議 : Arthur Okun, Effciency and Equality,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5. 참조.

51%나 차지하고 있다. 1996년말 賣出額은 現代그룹 74조7천억원, 三星그룹 75조원, LG그룹 60조원, 大宇그룹 55조원 등 30大財閥의 賣出額은 平均 國民總生産額의 83.7%를 차지하였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1988년에는 國民總生産 對比 30大財閥 賣出額의 比率이 70.1%와 比較하면 이 期間 동안에 財閥이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10].

그러나 韓國의 財閥은 國民으로부터 많은 批判을 받고 있다. 그 理由는 政經癒着에 의한 各種特惠, 不動産投機, 문어발식 經營의 膨脹 등과 分配正義를 實現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國家權力과 密着되어 있다는 特徵을 提起할 수 있다. 外國에서도 工業化過程에서 政商型企業家가 財閥로 上昇하는 例가 있지만, 韓國에서는 歸屬企業體의 拂下 뿐만 아니라 政府主導型 經濟開發計劃의 施行過程에서 權力과 癒着하고 金融 및 外換 등의 特惠에 의하여 財閥이 되는 것이 一般的이다[11].

셋째로 輕工業부터 重化學工業, 流通部門에 이르기까지 多業種을 一貫工程主義로 經營하는 콘체른형 財閥과 소위 船團式 財閥이 많다는 것이다.

넷째로 韓國에는 金融財閥이 비교적 발달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이다. 財閥이 地方銀行이나, 제2金融圈에는 많이 진출하고 있으나 主要 市中銀行을 支配하는 金融財閥은 발달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財閥企業間 相互支給 保證이 惡性負債을 만들어 내어 銀行 不實을 만드는 特徵이 있으며, 銀行不實은 國民經濟를 惡化시키는 要因으로 나타났다.

다섯째로 持株會社가 없고 財閥이 相續에 의한 分解, 縮小될 可能性이 있다. 그리고 家父長的 家族制度 및 門中의 共同體的 影響으로 企業集團에 대한 家族이나 親戚의 支配力이 強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Ⅲ. 財閥의 經營史的 時期區分 問題

韓國財閥의 經營史的 時期區分은 韓國財閥의 生成時期를 日帝下로 보느냐, 또는 解放以後와 60년대의 經濟開發過程으로 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韓國의 資本主義 形成過程으로 본 財閥의 形態를 日帝下에 두는 學者도 있고, 解放以後 工業化過程에 두는 學者도 있다[12].

10) 趙東成, 韓國財閥, 每日經濟新聞社, 1997. 11, pp. 78~79 參照.
11) 金柄夏, 前揭書, pp. 23~25 參照.
12) 金聖壽, 日帝下 民族系 企業集團 形成에 관한 硏究, '98年度 定期學術發表會, 韓國經營史學會, 1998, 6, pp. 7~8 參照.

본 硏究에서는 韓國財閥의 胎動은 日帝下에 두고 있으며, 時代區分은 現在(1998년)까지 6期로 區分하였다.

第1期는 胎動期로서 日帝時期를 規定하며, 第2期는 創立과 基盤構築期로서 1945~1960년까지 戰後 復興期까지의 時期로 규정하였다. 第3期는 跳躍期로서 1961~1971년까지 經濟開發과정에 財閥形成이 이룩되었기에 形成期라고도 할 수 있다. 第4期는 1972~1979년까지로 韓國經濟의 高度成長期로서 재벌들이 重化學工業에 참여하여 成長期를 맞는다. 그러나 第5期는 1980~1987년까지로서 安定期로 규정하였다. 그 理由는 70年代에 重化學工業 主導의 成長爲主의 經濟政策에서 安定, 福祉 中心의 經濟運營의 중심으로, 財閥도 成長期를 지나면서 轉換期的 安定期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第6期는 1988~1999년까지로 財閥의 構造調整期 및 解體期로 규정한다. 이 시기는 政府主導型의 經濟政策에서 民間主導型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는 韓國財閥의 改革時期로서 특히 IMF體制의 克服을 위한 財閥의 構造調整으로 財閥의 解體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企業集團의 再編成이 進行되는 時期이다.

위와 같은 韓國財閥의 時期區分을 胎動期, 創立과 基盤構築期, 跳躍期(形成期), 成長期, 轉換期的 安定期, 構造調整期 및 解體期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時期區分은 韓國 財閥이 生成과 成長 그리고 解體라는 經營史學的 過程을 겪는 意味를 지니고 있으며, 21世紀에는 韓國財閥의 新 展開가 어떤 形態이던지 再編 될것으로 展望하는데 意義를 가진다.

Ⅳ. 韓國 財閥의 經營史的 展開過程 分析

1. 第1期 : 胎動期

韓國에서 財閥이 企業集團이라는 形象 形態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日帝下에서 나타난 것이며, 그것은 民族的, 內在的, 生產力의 自主的 發展에 基因한 民族資本形成의 問題로 集約된다[13].

그러나 日帝植民地政策과 結付된 外來資本主義 侵奪로 民族系 企業人의 正常的인 行動樣式에는 植民地的 買辦的 性格이 露呈되었음을 認知할 수 있었다.

그러나 日帝下의 企業集團은 오늘날의 財閥과는 다른 性格을 가지고 있으나 大規模의 資本金과 親族中心支配, 創業者의 世襲專橫, 企業所有主의 大株主 또는 血族, 親族이 經營權을 행사한다는 점에서는 오늘날의 財閥과 같은 槪念的 定義를 가지고 있다.

이런 財閥의 槪念的 屬性으로 볼 때 日帝下에서 民族系 財閥이 形成되었음을 立證할 수 있다. 그와같은 實態는 日帝下에서 1938년 현재 5,413個의 企業體가 있었는데, 朝鮮 民族系 企業體數가 2,278個로서 42.1%의 構成比를 차지하고 있었다[14]. 그 中에서 民族系 財閥로 硏究

13) 金聖壽, 日帝下 韓國經濟史論, 經進社, 1985, p. 13 參照.

되어진 代表的 事例가 貴族出身으로 金融界의 大株主 閔泳徽系의 財閥形成이고, 大地主出身 京城紡織의 金季洙系 財閥形成이며, 서민출신 화신백화점의 朴興植系 財閥形成, 그리고 오늘날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선의 交通運輸業界의 代父 方義錫系 財閥形成이다[15].

당시 閔氏系 財閥은 同一銀行 등 5個의 企業과 徽文義塾 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金季洙系는 오늘날까지 이어진 京城紡織, 三養社 등 10個의 企業을 거느리고 있었다.

朴興植系는 和信百貨店을 비롯하여 6個의 企業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庶民出身 方義錫系는 共興株式會社 등 12個의 企業을 이끌고 있었다. 여기에서 提示한 이런 企業들은 大部分이 資本金이 당시 50萬圓 以上의 企業만을 調査한 企業 數이다[16].

〈表 1〉에서와 같이 日帝時期에 民族系財閥이 形成되어 韓國資本主義 形成史의 根源이 되었으나, 대부분 民族系財閥의 性格은 典型的인 植民地的 二重性으로 發見되고 있다.

〈表 1〉 日帝下에서 形成된 民族系財閥 事例

財 閥 名	形成期間	創 業 主	代表的 企業數
閔氏系 財閥	1915~1935	閔永徽系 閔大植, 閔奎植 等	同一銀行 등 5개의 大企業
金季洙系 財閥	1919~1940	金季洙系 金性洙 等	京城紡織(株) 三養社 등 10개의 大企業
朴興植系 財閥	1926~1940	朴興植系	(株)和信 등 6개의 대기업
方義錫系 財閥	1920~1942	方義錫系	공흥주식회사 등 12개의 大企業

資料 : 筆者가 資料를 調査하여 정리하였다.
參考資料 : 金聖壽, 日帝下 民族系 企業集團形成과 性格(98年度 定期學術發表論文), 韓國經營史學會, pp. 22~33 參照.
東亞經濟時報社(1942), 東洋經濟新聞社(1942), 民衆時論社(1938), 趙璣濬, 韓國企業家史(1973).

植民地的 二重性이란 創業者는 民族系로서 民族主義 使命感을 지닌 代表的 韓國 企業人인데 그 行動樣式은 變質된 企業家로서 親日協力的 變質性을 지닌 性格을 보였다. 그것은 財閥로서 成長하고 發展시키기 위하여 日本帝國主義 政策理念 協力과 朝鮮總督府의 庇護나 特惠 등 각종 金融, 稅制支援 아래서 企業活動을 하였으며, 日本獨占資本과 結託하는 買辦性도 서슴치 않았다.

14) 朝鮮殖産銀行, 朝鮮殖産月報, 1940. 1, 第20號 參照.
15) 金聖壽, '98 學術發表論文, 韓國經營史學會, pp. 23~24 參照.
16) 東亞經濟時報社(1942), 東洋經濟新聞社(1942), 民衆時論社(1938)에서 調査 拔萃함.

그러나 오늘날 財閥로서 成長한 三星, 現代, LG, 雙龍, 斗山 등 우리나라의 代表的 企業들은 創業의 始作이 대부분 日帝時代에 商業資本으로 胎動하여 産業資本으로 成長하였다. 따라서 韓國財閥의 經營史的 意味의 時代區分에서 日帝時期는 韓國財閥의 胎動期라고 規定할 수 있다.

本 硏究를 進行해 가면서 우리나라의 主要한 財閥의 創業期를 調査하여 본 바에 의하며, 三星財閥은 1936년 湖巖 李秉喆이 三星商會을 始作으로 胎動하였으며, 現代財閥은 1938년 峨山 鄭周永이 福興商會를 引受하여 京一商會로 이름을 바꿔 胎動하였다[17].

LG 財閥은 1931년 蓮庵 具仁會가 具仁會商店을 創業하여 胎動하였으며, 雙龍財閥은 1939년 省谷 金成坤이 三共油脂合資會社를 創業하여 胎動하였다.

斗山財閥은 1898년 舊韓末 때에 梅杆 朴承稷이 朴承稷商店을 開業하고, 1937년 蓮崗 朴斗秉이 昭和麒麟麥酒를 引受하여 1947년 6월 東洋麥酒(株)로 商號를 開稱하였다[18].

이상과 같이 韓國財閥의 대표적 企業들이 日帝下에서 商業資本으로 胎動하여 오늘의 世界的 大企業그룹으로 成長하였다. 따라서 日帝下를 韓國財閥의 胎動期라고 規定한다.

〈表 2〉 韓國 主要財閥의 最初의 胎動期的 現況

財閥名	創業者	胎動期	最初의 會社
三星	李秉喆	1936년	三星商會
現代	鄭周永	1938년	福興商會 引受 京一商會로 이름바뀜
LG.	具仁會	1931년	具仁會商店
雙龍	金成坤	1939년	三共油脂合資會社
斗山	朴承稷 朴斗秉	1898년 1937년	朴承稷商店 昭和麒麟麥酒 引受

자료 : 筆者 直接 調査함.

2. 第2期 : 創立과 基盤構築期(1945~1960)

韓國財閥의 經營史的 時代區分의 第2期는 創立과 基盤構築期로서 1945년부터 1960년까지로 규정하였다. 이 時期는 韓國經濟가 植民地的 支配構造에서 脫皮하여 市場經濟體制를 경험한 시기로서, 韓國經濟의 復興期로서의 役割과 韓國動亂의 慘禍로 그나마 存在하였던 經濟基盤도 喪失하였고, 뿌리부터 다시 始作하는 企業의 새로운 創立과 基盤構築期가 되었다.

17) 現代建設株式會社, 現代建設 50年史, 第1卷, 1982, p. 640 參照.
18) 朴承稷, 深夜中自筆, 蓮崗 朴斗秉, 1975, pp. 25~27 參照.

이러한 經濟環境의 變化는 한편으로 政府의 經濟管理能力의 限界를 露出시켰으며, 跛行的인 企業成長과 財閥形成의 새로운 創立과 基盤構築을 하는데 集中 되었다[19].

이 時期는 韓國戰爭의 激變期를 거치면서 대부분 破壞되었으며, 1955년을 前後하여 製糖, 製粉, 紡織, 縫製 등 消費財工場 등이 建設되면서 財閥의 再創立이 시작되었다. 現在의 財閥中에서 大字그룹을 除外한 나머지 大部分의 財閥들이 1950년대 後半期에 이미 상당한 規模의 企業을 形成하였거나 創業한 상태였다[20].

이 時期에 나타난 企業은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三星과 三養, 樂喜 등을 除外하고는 대부분 獨占業種에 專門化되어 있는 상태로 企業集團의 體制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나 財閥로 跳躍하기 위한 基盤構築은 이 時期에 이룩되었다.

이 시기의 財閥들은 새로운 創立과 基盤構築을 위한 施設擴張에 主力하고 있었으나, 資本蓄積이 微弱하고 工場建設 機資材가 不足한 상태여서 대부분 外國의 援助 및 政府支援을 기초로 生産活動을 展開하였다. 당시 戰爭 이후의 經濟復舊과정에서 工業化를 指向하기 위하여 財閥들은 經濟發展에 寄與하였다. 그러나 GNP는 20억달러, 1인당 國民所得은 70달러, 輸出은 약 4千萬달러에 불과한 실적이 당시의 經濟實情이었다.

〈表 3〉 韓國財閥의 創立과 基盤構築期의 現況 (單位 : 개, 千圓)

財閥名	代表者	保有事業體數	備 考
三星	이 병 철	삼성물산등 17개사	한일은행, 조흥은행 소유 1950년 2월 삼성물산공사창업
現代	정 주 영	현대건설 등 3개사	
三護	정 재 호	삼호무역 등 7개사	제일은행 支配주
三養	김 연 수	삼양사 등 9개사	고려대학교, 동아일보
樂喜	구 인 회	락희화학 등 5개사	현재, LG
開豊	이 정 림	대한양회 등 7개사	기아산업 운영
大韓	설 경 동	대한전선 등 6개사	
和信	박 흥 식	화신산업 등 4개사	
東洋	이 양 구	동양시멘트 등 4개사	
雙龍	김 성 곤	쌍용시멘트 등 2개사	

資料 : 朴炳潤, 財閥과 政治, 韓國良書, 1982, pp. 154~158 참조.
歐洲經濟調査協議會, 韓國의 經濟, 1964. p. 44.
趙東成, 韓國財閥, 每日經濟新聞社, 1997, p. 101 참조.

19) 金炳夏, 財閥의 形成과 企業家 活動, 韓國能率協會, 1991, pp. 615~619 參照.
20) 趙東成, 前揭書, 1997. p. 100 參照.

그 당시의 財閥蓄財의 源泉은 內部收益이나 經營能力에 의한 資金調達이 아니라, 對政府關係活動에 의한 資源獲得이었다[21].

企業活動은 商業이나 貿易活動과 美軍關係기관의 納品 정도가 대부분이었으며, 輸入原資材의 國內加工을 중심으로 輸入代替消費財産業이 主導하였다.

이 시기 財閥의 特徵은 商業資本主義的 流通上의 利益과 歸屬財産의 拂下나 外國援助 등의 政府特惠와 결부하여 資本蓄積이 이루어졌다. 특히 消費財 중심의 外國援助物資와 輸入物 配定原則에 따라 企業이 製糖, 製粉, 紡織 등 輕工業분야에 置重함으로써 여기에 聯關企業들은 財閥로 成長하는 動因이 되었으며, 不動産, 低金利資本의 획득, 貴金屬 등의 投機資産 추구 등의 非生産的 要因과 經營外的인 能力이 財閥로서 成長하는 經營風土가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財閥形成의 性格은 經濟的 原理보다도 經濟外的 要因의 影響을 받았으며, 資本主義的 經濟秩序의 未成熟과 市場機構의 不安全性으로 인하여 資本을 形成하는 과정에서 跛行性을 지니게 되었다.

3. 第3期 : 跳躍期(形成期, 1961~1971)

韓國財閥의 經營史的 時代區分 第3期는 跳躍期(形成期)로서 1961년부터 1971년까지로 규정한다. 5.16軍事구데타로 政權을 잡은 朴正熙將軍은 1962년부터 第1次經濟開發5個年計劃을 수립하여 內資調達을 위한 貨幣改革을 단행하였다. 經濟開發期로 불리우는 이 時期는 적극적인 借款導入, 輸入代替産業育成, 輸出드라이브政策에 의한 金融, 租稅, 行政支援 등의 政府主導型 經濟政策에 힘입어 經濟成長을 促進하였으며[22], 특히 政府主導型 經濟政策은 越南戰으로 인한 特需景氣, 國內景氣 好轉 등 國內外的인 經濟環境의 변화에 편승하여 旣存의 財閥들은 跳躍期를 맞고, 새로운 財閥등을 多數 登場시키는 韓國財閥史의 形成期를 맞게 된다.

이미 1950年代에 生産基盤을 마련하였던 三星, 럭키, 雙龍, 大韓電線, 現代, 新進, 鮮京, 코오롱, 효성, 韓一合纖, 韓國化學, 新東亞, 聯合鐵鋼, 삼미그룹, 東國製鋼, 起亞産業 등이 이 시기에 韓國財閥로서의 기초를 굳히고 跳躍을 하였다, 그리고 越南 및 輸出드라이브政策에 힘입어 韓進, 天友社, 韓國生絲, 慶南企業, 東明木材, 盛昌企業들이 새로이 跳躍하기 始作하였으며, 糧穀 年拂輸入으로 대동, 元豊産業 등이 급격히 성장하였다.

經濟開發計劃은 當初 目標値 5%를 超過하는 高度經濟成長率(第1次 7.9%, 第2次 9.6%)을 示顯하였으며, 鑛工業 成長率은 第1次 14.3%, 第2次 19.9%의 높은 成長率을 達成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經濟成長에 便乘하여 OB, 금호, 韓國유리, 國際商事, 신일, 롯데, 해태, 삼미사, 漢陽, 江原産業, 三陟産業, 碧山, 大韓製粉, 味元, 三養食品 등이 주로 消費財産

21) 趙東成, 前揭書, p. 102 參照.
22) 金聖壽, 韓國經濟의 理解, 學文社, 1994. p. 152.

業을 중심으로 成長하였다. 한편으로 越南特需와 建設景氣에 便乘하여 現代, 大林, 東亞建設 등이 急成長하였다.

따라서 跳躍期末(1971년)에 形成된 10大 財閥 등을 提示하면 〈表 4〉와 같다.

〈表 4〉 韓國財閥의 跳躍期(形成期)의 現況

財 閥 名	財閥들의 主力産業
三 星	食品産業, 電子産業, 石油産業 등
럭 키	化學産業, 電氣産業, 電子産業, 精油産業
韓 進	航空産業, 陸·海·空 등 運輸産業
雙 龍	시멘트産業, 海運産業, 製紙産業
現 代	建設産業, 自動車産業
韓國火藥	火藥産業, 精油産業
大 農	纖維産業, 糧穀輸入業, 流通産業
新 進	自動車産業, 機械産業,
極 東	造船産業, 海運産業
大韓電線	電氣. 電線産業, 家電産業

資料 : 金柄夏, 財閥의 形成과 企業家活動, 韓國能率協會, 1991, 參照.
趙東成, 韓國財閥, 每日經濟新聞社, 1997. 參照.
註 : 開豊(이정림), 大韓(설경동), 三養社, 판본(태창방직), 코오롱, 和信 등 財閥그룹들이 형성됨.

서울대학교 趙東成 敎授는 1961년에서 1971년까지에 財閥의 成長基盤이 되었던 資本의 蓄積의 特性을 다음과 같은 4가지로 說明하고 있다[23].

첫째로는 獨寡占的 利益의 享有를 통한 資本의 蓄積으로 보았다. 後進國 經濟가 가지는 市場의 不安全性, 落後性은 獨寡占的 集中에 의한 利益의 享有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政府는 資本效率을 提高하고, 過熱競爭에 따르는 集團倒産을 막는다는 趣旨하에 投資認可政策을 통해 競爭을 制限하였다.

둘째로는 內外資 資本配分上의 特惠 享有를 통한 資本蓄積이다. 企業資金의 源泉으로 銀行借入, 外資借入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으므로 銀行融資 및 外資導入時의 特惠는 財閥의 成長 및 資本蓄積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3) 趙東成, 前揭書, pp. 106~111 참조.

셋째로는 輸出促進策을 통한 資本蓄積이다. 輸出드라이브政策으로 金融, 稅制, 關稅 등의 支援과 特惠조치는 資金不足과 高金利에 시달리는 輸出企業으로서는 資本蓄積의 機會이었으며, 稅制와 關稅의 減免 및 免稅는 韓國財閥이 輸出企業으로 자리 매김한데 決定的인 役割을 하였다.

넷째로는 特需로 인한 資本蓄積이다. 越南特需로 인한 運輸用役産業, 建設業 등으로 한 財閥들의 資本蓄積 및 成長이 成功하였다. 그리고 不動産 投機도 높은 인플레이션의 影響으로 資本蓄積을 하는데 결정적 契機가 되었음을 지적한다.

이 時期에 또 한가지 特性은 不正蓄財者 事件 이후 第1金融圈의 支配를 抛棄할 수 밖에 없었던 財閥들이 第2金融圈의 進出을 本格化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이 韓國財閥들에게 貿易會社, 金融, 製造業體를 系列化하는 産業複合體로서의 跳躍을 하는 契機가 되었다는 점이다.

4. 第4期 : 成長期(1972～1979)

1960年代(1962～1971)는 第1, 2次經濟開發計劃의 成功으로 韓國經濟는 量的成長을 이룩하였다. 특히 1969년도에는 15.9%의 高度成長率을 記錄하는 등 成長의 基盤을 造成하였다. 이어서 1970年代에도 1972년의 10월維新으로 政權의 延長과 더불어 經濟成長은 量的擴大에 主力하였으며, 重化學工業化 政策으로 高度成長을 지속하였다. 그러한 高度成長政策 過程에서 우리나라 財閥들은 重化學工業에 參與하여 成長期를 맞이하였다.

財閥들은 各種의 特惠金融 措置와 重化學工業에 참가하고, 특히 政府의 綜合貿易商社政策에 대한 支援으로 少數의 財閥들을 급속히 成長시키는 契機가 되었다.

한편 政府는 1973年 1月 重化學工業育成方案을 마련하여 鐵鋼, 電子, 精油, 造船, 機械, 非鐵金屬 등을 主要 育成産業으로 選定하였다. 그러나 同年 10月末에 石油波動으로 일시 中斷되었다가 1976년부터 拍車를 可함에 따라 財閥은 自動車, 造船 등 重工業投資를 競爭的으로 증대시켰다.

이 時期의 韓國財閥들은 이런한 重工業의 대거 參與에 의하여 成長을 促進하였으며, 1975년 지속적으로 輸出을 增大시키기 위하여 財閥을 중심으로 綜合貿易商社를 設立하였으며, 이때부터 財閥의 輸出窓口로서 1979年度에는 全體 輸出의 33.9%를 차지하는 輸出增大의 牽引車 役割을 수행하였다[24].

또한 이 時期 財閥들은 競爭的인 中東市場 進出로 인해 受注額이 1979년 65億달러로 증대되었으며, 1975～1979년에는 年平均 76.1%의 增加率을 記錄하는 등 海外建設을 통한 財閥

25) 全國經濟人聯合會, 韓國經濟年鑑, 1980, 參照.

〈表 5〉 財閥의 重化學工業 參與

重化學 工業 參與	財閥의 參與
自動車 工業	現代, 大宇, 起亞
造 船 工業	三星, 現代, 大宇
電 子 工業	三星, 럭키금성, 大韓電線
重機械 工業	現代 三星, 大宇
엔진 工業	現代, 雙龍, 大宇, 起亞
發電設備	現代, 三星, 大宇, 효성
建設用重裝備	現代, 大宇
機 關 車	大宇, 現代

의 成長이 特徵的으로 나타났다. 또한 財閥들은 第2金融圈으로 擴張, 不動産投機, 獨寡占的 市場支配, 各種 金融特惠와 規制緩和 등의 惠澤을 누리면서 成長主力産業에 參加하여 財閥들은 富를 蓄積하였다.

이와같이 이 成長期에 財閥들은 놀랄만한 成長을 이룩하였다. 經濟成長에 대한 政治的 壓力은 經濟成長을 可視化하기 위한 成長戰略의 採擇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그 成長戰略의 核心的 내용은 財閥들의 重化學工業化, 綜合貿易商社와 輸出드라이브정책, 海外建設事業의 成功 등이 要因이 되었다.

5. 第5期 : 轉換期的 安定期(1980～1987)

韓國財閥의 經營史的 時代區分의 第5期는 1980년부터 1987년까지 5共和國의 時期이다. 이 時期는 始作부터 두 가지의 큰 事件을 맞이하였다. 그 하나는 第2次 石油波動이고, 다음은 朴正熙大統領의 暗殺사건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問題는 經濟環境의 불안으로 經濟開發實施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成長을 記錄했다. 따라서 第5共和國 政府는 政策基調를 轉換期적 '安定 속의 成長'을 目標로 하였다.

그러나 1985년 이후 世界的으로 低金利, 低油價, 低換率 등 所謂 3低現象으로 1987년에는 國際收支 史上 처음으로 약 100億달러의 黑字를 記錄하였다[25]. 이 期間 중 50大 財閥은 賣出額이 1980년 약 28조5천억원에서 1987년은 86조2천억원으로 3倍가 成長하였다. 따라서 50大財閥의 資産總額도 80년의 24조2천억원에서 87년에는 71조5천억원으로 역시 3倍가 成長하

25) 金聖壽, 韓國經濟의 發展, 前揭書, p. 20 參照.

〈表 6〉 主要財閥의 海外建設 實績(1966~1980)

(單位 : 百萬달러)

主要財閥	海外建設 實績
現代	7,756
大宇	1,128
大林	2,972
韓進	848
國際	586
三星	528
韓國化學	326
雙龍	245
럭키금성	234

資料 : 海外建設協會

는 記錄을 示顯하였다.

특히 韓國信用評價 財閥分析報告書에 의하면 이 時期 10大 財閥의 系列企業數를 보면 1990년에 現代 42개, 三星 48개, 럭키금성 62개, 大宇 24개, 鮮京 26개, 雙龍 22개, 韓國化學 27개, 한진 22개, 효성 14개, 롯데 32개로 나타나고 있다[26].

이 安定期에 나타난 財閥의 特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10大財閥의 경우 資産成長 중 52.8%가 製造業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 91.1%가 重化學工業에서 달성되었다.

둘째로, 이 時期 財閥은 尖端産業分野로의 진출과 技術開發投資의 增大에 寄與 하였다. 半導體, 新素材, 精密化學, 遺傳工學, 컴퓨터, 航空宇宙事業, 通信事業 등 尖端産業分野에 財閥의 進出 및 投資가 增大되어 發展에 寄與하였다.

세째로 建設業과 綜合貿易商社에서 10大 財閥이 차지하는 比重은 49.8%, 37.4%이다. 그리고 第2金融圈의 支配는 50大 財閥에서 38個社나 되었다. 이 時期에 財閥들은 市中銀行의 株式買入과 企業結合 및 不實企業 引受를 통한 成長을 지속하였다.

넷째로 1981~1984년까지 일어난 877件의 企業結合 중 30大 財閥에 의해 행해진 企業結合은 429건으로 全體의 48.9%나 되었으며 政府의 規制로 1982년부터 漸次 減少하였다.

26) 韓國信用評價院, 財閥分析報告書, 1988, 參照.

다섯째로 海外投資 增加는 財閥이 全體의 97.8%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3低現像에 적절히 副應하면서도 政府의 規制는 繼續되었다[27].

以上과 같이 이 時期에 財閥은 系列企業의 新規擴張보다는 旣存系列社를 중심으로 新規事業 進出 및 賣出 增大에 主力하였던 點이 特徵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時期에 韓國財閥들은 轉換期的 安定을 찾기 위해서 문어발식 膨脹을 自制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第6期 : 構造調整期 및 解體期(1988~1998)

1987년 6.29宣言과 民主化의 氣勢는 獨裁政府의 終焉을 告하고, 經濟的으로는 새로운 틀을 짜야 하는 獨占資本의 限界를 招來하였다. 또한 1990年代의 WTO體制의 등장으로 韓國經濟는 소위 無限競爭時代로 轉換하면서 일부 財閥들은 構造調整을 손대기 시작하였다[28].

〈表 7〉 財閥 系列企業 數의 變化

(單位 : 個)

26財閥名	1980~1982	1976
現 代	31	34
三 星	33	37
럭 키 금 성	43	62
大 宇	34	28
鮮 京	14	18
雙 龍	20	21
韓 國 化 學	18	23
韓 進	14	16
효 성	24	15
롯 데	18	26

資料 : 韓國信用評價, 財閥分析報告書, 1988, 參照.

그러나 이 時期에 30大 財閥들은 1992년에서 1995년 사이에 GNP는 41% 增加하였으나 賣出額 및 總資産은 73%나 增加하는 記錄을 보였다. 政府는 産業競爭力 強化를 위하여 所有權分散과 專門經營體制 確立, 經營透明性 確立, 財閥들의 相互債務保證 制限, 非業務用 不動

27) 大宇經濟硏究所, UR과 韓國經濟, 韓國經濟新聞社, 1994, 參照.
28) 金聖壽, 韓國經濟發展, 前揭書, p. 563 參照.

産規制의 強化, 業種專門化施策 등 構造調整期的 企業政策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97年末 30大 財閥의 系列企業社 數는 819個나 되었으며, 1992年 596個보다 약 37%나 增加하는 船團式 膨脹一路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IMF體制는 財閥의 이와같은 船團式財閥 經營體制에 따른 政府依存型 經營에 改革을 要求하고 나섰다. 이 時期에 財閥은 解體期를 맞게 되고, 財閥의 不渡事態와 破産狀態는 全體 財閥의 危機經營意識을 갖게 하면서 生存을 위한 企業集團의 再編成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表 8〉 韓國 財閥의 系列社 數 現況(順位 : 總資産 基準)

(單位 : ( ) : 個)

區 分	系列社 數 內容
10大 財閥	現代(57), 三星(80), 엘지(49), 大宇(30), 鮮京(46), 雙龍(25), 韓進(24), 起亞(28), 한화(31), 롯데(30),
11大－20大財閥	錦湖(26), 漢羅(18), 東亞建設(19), 斗山(25), 大林(21), 한솔(23), 曉星(18), 東國製鋼(17), 眞露(24), 코오롱(24)
21大－30大財閥	高合(13), 東部(34), 東洋(24) 해태(15), 뉴코아(18), 亞南(21), 韓一(7), 거평(22), 味元(25), 신호(25)
總 30大 財閥	系列社 數 : 819個

資料 : 公正去來委員會, 1997년 4월 1일 기준 발표.

한편 이 時期에 30大財閥들은 電氣, 電子, 半導體, 新素材, 精密化學, 遺傳工學, 컴퓨터, 航空宇宙事業, 通信分野 등 尖端産業분야로의 進出 및 投資를 계속 增大시켰다. 이 부문에 대한 硏究開發投資나 技術獲得, 海外企業과의 戰略的 提携도 增大되었다.

그러나 財閥構造의 變化가 오기 始作하였다. 財閥의 脫落과 新規進入의 波高가 일기 시작하면서 財閥의 隔差가 深化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 한솔과 뉴코아가 30大企業集團으로 進入한데 반해, 1997년에는 한보, 삼미 등이 不渡를 내거나 法定管理 狀態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남, 거평, 신호 등이 30大財閥로 進入하면서 벽산과 극동건설을 30위권 밖으로 밀어내는 財閥의 變化를 보였다.

1997년 10월부터 시작된 IMF體制는 韓國財閥의 地殼變動을 가져오는 企業合竝, 事業交換의 빅딜, 事業構造의 再構築, 構造調整等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財閥의 解體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政府도 1998년 4월 15일 公正去來委員會를 통하여 이제 財閥順位는 없어지고, 大規模 企業集團만이 存在하는 競爭力있는 企業들만의 經營成績表를 發表하겠다고 하였다[29].

29) 公正去來委員會(1998, 4. 15) 發表資料 參照.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오늘의 時期에서 韓國財閥의 經營史的 意味는 財閥의 構造調整을 통하여 國際信認度와 競爭力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하는 길이다. 따라서 이 時期에 財閥을 解體하여 世界的인 競爭力있는 企業으로 發展시키는 企業集團의 再編成이 先行되어야 한다.

V. 韓國財閥의 經營史的 性格

지금까지 韓國財閥의 經營史的 展開過程의 分析을 통하여 發見된 性格은 다음과 같다.

1. 財閥의 興亡盛衰的 性格

韓國財閥은 그 系列企業社의 壽命으로 볼 때, 즉 生存率은 30年 동안 16%에 지나지 않는다. 1965年 100大企業이 1990年代(1991년) 現在 16個에 不可하다. 1975年의 100大企業은 現在 25個만 生存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찰하여야 할 것은 1965년 100大企業이 16個만 남고, 100位圈에서 탈락한 企業은 어떻게 되었는가, 100位圈에서 脫落한 企業은 84個인데, 이 가운데 46個 企業은 倒産하였으며, 3,000大企業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38個 企業中 500位圈에 있는 企業은 21個, 1000位圈에 있는 企業이 6個, 명맥을 維持하고 있는 企業이 11個이었다[30].

1994年 5月 13日 朝鮮日報는 大統領諮問機構인 21世紀 委員會에서 펴낸 '21世紀의 韓國'이라는 報告書를 引用하여, 현재 10大財閥은 앞으로 15年안에 5~7個그룹이 脫落할 것으로 豫測하였다[31]. 결국 主力業種인 自動車, 電子, 컴퓨터 등의 産業을 하는 企業만이 살아남게 될 것임을 示唆하고 있다. 본 硏究의 結果도 이 豫測에 同意한다.

이와같이 財閥企業은 永續性을 維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挑戰 받고 淘汰되는 性格을 가지고 있다.

〈表 9〉 100大 企業의 生存率(%)

基準/比較年度	1965年	1975年	1985年	1991年
1965年	100	22	19	16
1975年	100	30	25	
1985年	100	74		

資料 : 공병호, 21世紀 企業變身을 위한 韓國企業興亡史, 명진출판, 1993. p. 16.

30) 공병호, 21世紀 企業變身을 위한 韓國企業興亡史, 명진출판, 1993, p. 16. 참조.

2. 財閥의 政府依存性과 借入經營構造의 非合理性

韓國財閥의 經營史的 性格은 韓寶, 起亞, 삼미, 大農, 眞露, 한라 등 大型不實이 代辯하듯이 數拾兆에 이르는 不實債券의 累積에 있고, 그 不實債券은 財閥의 放漫한 非合理的 政府依存型 借入經營構造가 原因이 되었음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1997年 不渡난 財閥中에 한보가 5兆원, 起亞가 10兆원, 한라 6兆원 등과 같이 몇個의 財閥이 50兆~100兆원의 不實債券을 만들어 내었다.

3. 財閥의 經營透明性 缺如와 惡性財務構造의 深化

財閥의 間接相互出資, 相互支給保證, 財閥의 非獨立經營制 등 많은 問題点을 露出시키고 있었으며, 財閥들의 惡性財務構造는 國際信認度를 落後하게 만든 原動力이 되었다.

平均負債比率이 450%에 달하는 財閥 系列企業들에게 無制限으로 돈을 빌려주는 官治金融의 行動樣式을 韓國財閥의 歷史的 性格으로 評價하기에는 問題点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한다.

4. 財閥의 政經癒着性

外國에서 韓國財閥의 性格中 가장 먼저 論議되는 것이 政經癒着性 問題이다. 政經癒着이란, 문자 그대로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할 政治權力과 財閥이 떳떳치 못할 方法으로 密着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財閥은 經營史的 意味로 볼 때 지난날 政治權力의 庇護와 特惠 등 公正性을 깨는 變則으로 事業을 하였다.

바로 이런 結果는 政治權力에 의한 經濟秩序의 破壞와 政治權力의 腐敗의 原因이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財閥은 國民意識의 否定的 性格으로 賣渡되었고, 財閥은 執權與黨의 政治資金 下手人으로 轉落하는 共犯者로 經營史속에 點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5. 財閥의 支配構造性과 世襲의 變則性

韓國財閥의 經營史的 性格은 財閥의 所有支配構造의 非合理性의 擡頭이다. 지난날 財閥의 企業支配構造는 總帥와 그 家族, 血族이 專橫하는 所有者 經營制度이다. 이것은 無條件的인 韓國財閥의 2世, 3世의 世襲制度의 問題이다. 따라서 專門經營人의 存在는 經營學理論에서 찾아보는 理論的 價値이다. 특히 變則相續, 贈與를 通하여 2世, 3世에게 넘겨지는 財閥의 支配權의 世襲化는 오늘의 危機를 招來하였다고 IMF 關係者도 指摘한 바 있다.

31) 朝鮮日報, 1994年, 5月 13日字.

Ⅵ. 結 論

지금 韓國은 財閥그룹의 빅딜(Big deal)로 業種別 競爭力 및 版圖變化가 예상되는 가운데 大規模 事業交換이 進行되고 있다. 이제 財閥의 改革은 世界的 競爭力을 갖춘 새로운 企業集團의 形成을 要求하는 時代的 背景에 어느정도 副應하면서 世界超優良企業으로 發展해야 한다. 이에 따라 本 硏究는 韓國財閥의 時代的 展開過程을 檢討하여 韓國經營史的 性格을 發見하고, 이를 통한 財閥 解體의 當爲性과 企業集團 再編成의 새로운 틀을 짜는데 基礎資料가 되고자 하는데 意義를 두었다.

먼저 韓國財閥의 經營史的 時代區分을 6期로 規程하였다. 第1期는 胎動期로서 日帝下에 財閥의 形象形態를 갖추기 시작한 時期부터 始作하였으며, 第2期는 創立과 基盤構築期로서 1945年부터 1960年까지로 解放과 韓國動亂의 混亂속에서 經濟復興期를 맞아서 財閥이 創立되었고, 旣存의 財閥들은 跛行的이나마 基盤構築을 하던 時期이다. 第3期는 跳躍期(形成期)로서 1961年부터 1971年까지로 第1, 2차經濟開發計劃을 成功的으로 이룩하였고, 越南特需와 輸出드라이브 政策에 힘입어 財閥들이 跳躍期를 맞으면서 財閥形成이 名實공히 이룩된 時期이다.

第4期는 成長期로서 1972年부터 1979年까지로 財閥들은 重化學工業 參與와 綜合貿易商社의 設立으로 成長期를 맞게 된다. 특히 財閥들의 競爭的인 中東市場 進出로 1975~1979年에는 年平均 76.1%의 높은 增加率을 記錄하는 海外建設은 成長期로서의 役割을 하는 契機가 되었다. 이 時期 財閥들은 第2金融圈으로 擴張하고, 不動産投機, 獨寡占市場支配, 各種特惠와 規制 等의 緩和로 말미암아 成長主力産業에 參加하여 富를 蓄積하였다.

第5期는 轉換期的 安定期로서 1980年부터 1987年까지로 5共和國의 時期이다. 初期에는 經濟環境의 不安으로 經濟開發計劃 實施以後 처음으로 마이너스成長을 記錄했다. 따라서 5共和國政府는 政策基調를 轉換期的 安定 속의 成長으로 目標를 設定하였다. 1985年 世界的인 3低現像(低油價, 低金利, 低換率)으로 1987年에는 經常收支 史上 처음으로 100億달러의 黑字를 記錄하였다. 이 期間中에 50大財閥의 賣出額은 約 28兆원에서 87년에는 86兆원로서 약 3倍가 成長하였으며, 資産總額도 約 3倍가 成長하는 記錄을 보였으며, 財閥의 系列企業社數는 문어발식으로 膨脹되어 갔다.

第6期는 構造調整期 및 解體期로서 1988年부터 1998年까지로 1987년 6.29 民主化宣言을 基点으로 獨裁政府의 終焉과 1990年代初 WTO體制의 登場, 1997年 10月부터 IMF體制의 고통과 試鍊 등으로 韓國財閥은 構造調整으로 一大 改革을 斷行하지 않으면 안되는 試鍊期를 맞고 있다. 결국 財閥은 構造調整을 통하여 競爭力을 갖추는 企業集團으로 再編成을 斷行해

야 하면 철옹성같은 문어발식 系列社를 정리하여 財閥을 解體하지 않으면 안되는 時代的 轉換期를 맞고 있다.

이와같은 財閥의 經營史的 展開過程 分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性格의 結論을 發見할 수 있었다.

첫째, 財閥은 永遠할 수 없으며 興亡盛衰的 性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1965年 100大企業이 30年 뒤인 1995年에는 16個 企業만 生存해 있다는 사실이다. 과연 오늘의 財閥이 앞으로 10年, 20年, 30年 뒤에 몇個나 生存하게 될 것인가의 問題도 提起된다.

둘째, 財閥의 政府依存性과 借入經營構造의 深化 問題이다. IMF의 原因으로 몰고 온 韓寶, 起亞, 삼미, 大農, 眞露, 漢羅 等은 數拾兆에 이르는 不實債券은 非合理的 政府依存型 借入經營構造가 發端이 되었으며, 惡性財務構造를 만드는 要因이 되었다.

셋째, 財閥의 經營透明性 缺如와 政經癒着性을 持續하고 있었다는 問題点이다.

政治資金의 供給者로서의 財閥은 政治權力과 結託하는데 서슴치 않았으며, 政治資金과 特惠를 去來하는 行動樣式을 갖고 있었다. 政經癒着은 政治權力에 의한 經濟秩序의 破壞와 政府權力의 企業隷屬化가 屬性化 되었다.

넷째, 財閥의 支配構造性과 世襲의 變則性이 財閥 行動樣式의 行態가 되었으며, 또한 企業承繼 段階에서도 紛爭發生이 尖銳化 되었다.

지난날 韓國財閥의 支配構造는 總帥와 그 家族과 血族이 專橫하는 前近代的인 所有者經營制度가 問題로 발견되었다. 韓國財閥은 政府의 大規模的인 不實債券을 지녔으면서도, 2世, 3世의 世襲制度의 承繼가 無條件的으로 이루어졌으며, 무려 22個 財閥에서 承繼와 관련된 紛爭事例가 있었으며, 創業主와 長男間의 紛爭이 發生하고, 異腹兄弟間에 分家가 이루어지는 事例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같이 韓國財閥의 構造的特徵은 單一家族 및 血族所有, 所有와 經營의 未分離, 支配構造上의 不合理性, 閉鎖的 經營構造, 所有權 및 富의 集中, 政經癒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韓國財閥이 當面한 對策은 大規模性에서 惹起되는 性格을 財閥 解體로서 풀고, 企業集團으로 再編成하는 方案이 創出되어야 한다. 그리고 韓國財閥은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높으나, 規模나 出荷에 비해 낮은 收益性과 資本生産性이 問題点으로 發見되고 있기 때문에, 政經癒着에 의한 獨占的 資本蓄積이 企業經營의 不實化, 財務構造 惡化, 國內市場에서의 過當, 不公正競爭, 不實企業整理 등을 招來하고 있다. 이제 韓國財閥도 大企業의 本質的 機能과 倫理側面을 中心으로 企業家의 經營學的 理論에 忠實한 경영을 해야 하며, 主力事業中心으로 多角化하여 世界的 超優良企業으로 成長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21世紀에는 韓國財閥이 社會의 批判的 視覺을 克服하고 國民에게 사랑받는 새로운 企業集團으로 成長하도록 政府와 財閥, 國民과 財閥, 財閥 또는 大企業 所有經營者 自信이 問題의

深刻性을 認識하고 經營의 專門化, 個人이 아닌 社會全體를 위해 企業活動을 實踐하는 意志를 가져야 한다.

參考文獻

1. 金柄夏, 財閥의 形成과 企業家活動, 韓國能率協會, 1991.
2. 趙東成, 韓國財閥, 每日經濟新聞社, 1997.
3. 강철규외, 財閥, 비봉출판사, 1991.
4. 김상권, 獨占과 企業集團, 韓國經濟硏究院, 1996.
5. 金聖壽, 日帝下 韓國經濟史論, 經進社, 1995.
6. _____, 日帝下 民族系企業集團 形成과 性格에 관한 硏究, 韓國經營史學會, '98定期學術發表會, 1998. 6.
7. _____, 韓國經濟의 發展, 學文社, 1996.
8. 박병윤, 財閥과 政治, 한국양서, 1982.
9. 공병호, 21世紀 企業變身을 위한 韓國興亡史, 명진출판, 1993.
10. 정병걸 · 양영식, 韓國財閥部門의 經濟分析, 韓國開發硏究院, 1992.
11. 鄭求鉉, 韓國大企業集團의 所有 및 支配構造, 季刊思想, 1996, 봄호.
12. 公正去來委員會, 30大 企業集團 指定, 1998. 4.
13. 歐洲經濟調査委員會, 韓國의 經濟, 1964.
14. 商工部, 重化學工業育成計劃, 1972.
15. 全國經濟人聯合會, 韓國經濟年鑑, 1980.
16. 大宇經濟硏究所, UR과 韓國經濟, 韓國經濟新聞社, 1994.
17. 韓國信用評價(주), 財閥分析報告書, 1988.
18. 趙東成, 韓國財閥의 問題點과 對 財閥政策의 改善方案, 季刊思想, 1996, 봄호.
19. 安岡重明, 財閥の比較史的 硏究, 同志社大學, 人文科學硏究所, 1985.
20. 中川敬一郎, 第2次大戰の 日本における産業構造および企業活動, 三井文庫論叢, 第3號, 1969.
21. 鈴木武雄, 朝鮮統治の性格と實績, 東洋經濟時報社, 1942.
22. 東亞經濟時報社, 朝鮮銀行, 會社, 組合要論, 1942.
23. 東洋經濟新報社, 年刊朝鮮, 1942.
24. 民衆時論社, 朝鮮人物大系, 1938.
25. 趙璣濬, 韓國企業家史, 大旺社, 1974.

27. Evans, D.,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 Growth, Size, and Age : Estimates for 100 Manufacturing Sector,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June, 1987.
28. Yoo, S. J. & Lee, S. M., Management Style and Practice of Korean Chaebol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29. No. 4, 1987.
29. Williamson, O. E., The Modern Corporation Origins, Evolution, Attribut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981.
30. Cole, A. m., An Approach to the Study of Entrepreneurship in Enterprise and Charge, ed, by Lave F. C. 1953.
31. Kim, S. S., The Colonial Characteristics of Korean Industrialization Under Japaness Rule, Seminar in Economics, Harvard Extention Mono-Grapy, Harvard Univ. Combridge Massachusetts, 1981~1982.
32. Arthur Okun., Efficiency and Equality, Washin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e, 1975.

Historical Study for Korean Chaebol Companies

Kim, Sung-S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usiness Historical Study on the Korean Big Business Group(chaebol's).

The reform of Korean Big Business has significance in the developmental liquidation of Korean chaebol's.

In the past April 15. 1998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30th event of large Big Business Group Saving Troubles Business administration result in order to disintegrate those ones with no efficient management result. Instead help Big Business Group prosper and become extremely successful.

Through this study, the Re-illumination of todays Korean's chaebol's can be seen: the developmental liquidation of chaebol's and instead increasing Big Group's planning through Business re structuring. Therfore, with respect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The Business Historical study in Korean chaebol's can be divied in to six major periods : the first period(1920~1945) can be characterized as the quickening period of Korean enterprises under the Janpanese colonial rule.

The second period(1945~1960) was the period of creation since the establishment and construction period till the post war restoration stipulated. The third period(1961~1971) was the period of take-off the modernization of industrial and acceleraiton of self-sustaining economoy.

The foruth period(1972~1979) was the period of rapid growth for the purpose of build of export oriented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promotion of science and management technology and increase in productivity of Korean Business Group and chaebol's. The fifith period(1980~1987) was the period of turning point in the stab-

* Professor, School of Internaitonal Management,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ilized growth, through the stabilization, efficiency, and balance, completion of the maximization of investment efficiency in the Big Business Group's.

The six period(1988~1999) was the period of re structuring in the Korean chaebol's for the purpose of Re-illumination in the Big Business Group's and Korean chaebol's trouble problems begin getting controled and regulated by releasement in the system.

In this period of time, the government dependence style of economic policy has been converted to the private dependence style of economic policy. This has been the Korean Big Business Group innovation, specially the overcoming of the IMF system.

What has been discussed on the Business Historical chaeracteristics of Korean Big Business Group(chaebol'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ife cycle of Korean chaebol's are always in a stage of rise and fall, and maintain a progress attitude. The 100 enterprised that were established in the year 1965, had decrease to 16 enterprises after 30 year later, 1995. These native capital of chaebol's cooperating with the political power authorities, become the vicious financial structure of irrational financial cliques.

Second, Borrowed management structure and irrational dependence mode of political power, privileged loans and Government Business Collusion, result of bank-related irregularities.

Third, vicious financial structure and the fragmentations of the financial management as well as fall of international credit degree.

Fourth, the drop of transparency on the managment of Big Business Group and the hereditary transmit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of irregular method in the Korean chaebol's.

After all, these Korean Big Business Group's troubles crisis have been faced on today's IMF probelm: which has greatly thrown an impact and become to be topic to discuss and criticize about.

Key-Words : Korean Chaebol's, Business History, Business Res Tructuring, Big Business Group, Re-illumination of Chaebol's History, Government-Business Collusion

上州・民間器械製糸の先駆者
星野長太郎の伊仏蚕糸業視察（1）

——明治初期海外進出の企業者活動——

On inspection of Hoshino-Chotaro for the silk-reeling Industry in Italy and France

加　藤　　隆*

1.

周知のように，「安政の開港」以来，日本の生糸は主要な輸出品の一つとなった。横浜の生糸売込問屋には，各地から生糸が寄せられ，生糸市場相場は活況を呈した。

当時の生糸市場相場の中で，優位を占めていたのは，第1表から明らかなように上州（群馬県）産の生糸である。この生糸は「前橋提糸（さげいと）」と呼ばれていた。安政6年（1859）8月，横浜生糸売込問屋中居重兵衛は前橋提糸を外商に売込んだとされており，これが日本の提糸輸出の最初であるともいわれている[1]。

ところで，上州では享和年間（1801～1804）から座繰り製糸が始まり，その後繰糸器に改良が加えられ，開港当時には「二つ取坐繰」「一つ坐繰」が普及していた[2]。前橋提糸は，前橋藩（藩主松平直克・17万石）が藩財政の

* 日本 明治大学 教授

（1） 群馬県蚕糸業史編纂委員会編『群馬県蚕糸業史』上巻（群馬県蚕糸業協会，昭和30年）640頁参照。

提糸（さげいと）とは，生糸の結束の仕方が提げるように束ねられたものであり，元結1本をもって2綛（かせ，枠糸がもつれないように糸留して枠からはずした生糸＝綛糸）を通し，50綛をもって1提としている。

（2） 加藤宗一『日本製糸技術史』（製糸技術史研究会，1976年）47～48頁参照。

窮乏を補うため，藩士にこれらの座繰りによって生産させたものである[3]。

第1表　横浜生糸市場相場の推移

（1擔当りの$）

種　別		文久3年11月（1863）	慶応元年11月（1865）	慶応4年6月（1868）
前　橋	極上	－	－	930～950
	上等	550～560	850～855	850～870
	中等	530～540	830～850	770～800
	下等	510～520	－	630～700
信　州	極上	－	－	930～950
	上等	550～555	－	850～870
	中等	530～540	830～850	770～800
	下等	510～520	750～800	630～700
奥　州	極上	－	－	900～920
	上等	530～545	850	770～800
	中等	500～520	－	680～700
	下等	不明	－	600～630
江　州	上等	490～500	760～780	
	中等	465～475	740～750	
	下等	450～460	－	
美　濃	上等		840	－
	中等		－	650～670
	下等		－	600～630
甲　州	上等			－
	中等			720～760
	下等			620～670
越　中	上等		－	
	中等		660～690	
	下等		－	
越　前	上等			－
	中等			600～650
	下等			550～570
八王子				520～600
愛　知		465～485		

〔典拠〕　文久3年11月，慶応元年11月は，大日本蚕糸業会編『日本蚕糸業史』（第1巻）昭和9年8月，75～77頁，慶応4年6月は，群馬県蚕糸業史編纂委員会編『群馬県蚕糸業史』（上巻）昭和30年8月，639頁より作成。

（注）　1擔＝100斤＝60kg

（3）　前橋藩は，関東譜代の雄藩であったが，利根川の洪水による城郭破壊の危険が続いたため，明和4年（1767）来武蔵国川越に移城していた。そのため所領は分散しており，「前橋城付領約7万5000石は分領として陣屋支配を受け……

その「規格は不統一であり，品質にもムラがあったが，一般農家の自家製糸に比較すると良質であり，開港当初の声価を高めた」[4] とされている。

しかし，当時の上州産の生糸は，こうした座繰りよりも，いまだ手挽きによるものが主体であった。すなわち，

「文久元年（1861），上州の生糸は前橋盛んにして，その他伊勢崎，大間々，高崎，安中，富岡，下仁田等に些少の市をなせり，その製糸法に於ても開港以前より坐繰を用ひたるもの甚少し。その他はすべて，糸口を左の手にかけ，右の手にて枠を廻しくりたるものなり。」[5]

とある。したがって，上州産の生糸の品質が不統一であった点は免がれなかった。

加えて，上州産の生糸に限らず，日本の生糸が拡大する海外の需要に応えるためには，すでに在来の器具では生産の限界に達しており，粗製濫造とならざるをえなかった。また，取引量の増大を図ろうとする商人の奸策・不正も，それに拍車をかけるところとなったのである[6]。こうした事態に対応す

武蔵国内には11万4000石余（加増後）あったが城付領は約8万石にすぎず，他は10郡下に分散，さらに相模・安房・上総・近江などに小分領」（山田武麿『群馬県の歴史』山川出版社，昭和56年，145頁）があった。こうした所領の分散が，一藩体制の弱体化・財政の慢性的窮乏をもたらし，「安政元年（1854）には借財53万両という破局的事態」（同前，147頁）にあった。

このような状況の中で，文久2年（1862）に襲封した松平直克は，翌年に前橋城再築・帰城の許可を取り付け，元治元年（1864）に着工し慶応3年（1867）にようやく竣工・還封となっている。その間，前橋藩の財政はさらに窮乏し，それを補うために藩士の内職として坐繰り製糸を行っている。糸質は良好であり，生産量も多かった。これが前橋提糸である。

前橋城が竣工しえた資金源泉は，この前橋提糸を取り扱った前橋の在方生糸貿易商人（下村善太郎・勝山宗三郎・竹内勝蔵・江原芳右衛門など）が，横浜生糸貿易によって蓄積した資本の出資であったといわれている（前掲『群馬県蚕糸業史』上巻，625頁参照）。

（4） 前掲『群馬県蚕糸業史』上巻，625頁。

（5） 前掲『日本製糸技術史』50頁（原典『群馬県蚕糸業沿革調査書』）。

（6） 幕末期には，生糸の生産形態は問屋制家内工業段階に入り，マニュファクチュ

るため，幕末期にいたり，幕府では生糸の粗製濫造の取締りを通達している[7]が，効果を挙げるまでにはいたっていない。

明治期に入り，生糸はますます国際的商品となるにともない，品質はもちろんのこと，「多量の一様な製品」にたいする需要が高まってきた。欧米機業において，手織機から力織機への移行が進む[8]につれ，織布生産の向上のために精巧な生糸を必要としたからである。当然，海外から粗製濫造の非難・抗議をうけていた日本の製糸技術も，厳しく改良をせまられるところとなった。この問題を最初に取り上げたのは，維新政府である。明治3年（1870）2月，政府は，標榜する「富国強兵」「殖産興業」を達成するための一環として，「本邦製糸ノ方法ソノ宜シキニ適セザルヲ以テ，革新ノ議ヲ民部大蔵ノ両省ニ下ス」「生糸ノ製ヨロシカラズ，西洋ヨリ繰糸器械ヲ取リ寄スベキ説」[9]を布告し，洋式技術の移植による改良の方向を示唆した。

これと相前後して，まず前橋藩が器械製糸の導入を図っている。前述のように同藩では，開港当初より藩士が生産した生糸を前橋提糸として横浜生糸

ア段階への移行も見られていたが，技術的には手工業的要素が多く，生糸の品質はもっぱら手先きに依存するところが多かったため，粗製は免かれなかった。

本文で触れたように，上州では「二つ取坐繰」が普及していたが，「当時急速に高まりつつあった生産強化の要求に応じて出現したもの」である。小枠が2つのため労働強化となり，さらに「国際的信用感覚を欠いた商人の跳梁もあって，生糸の粗製濫造に拍車をかける結果」（前掲『日本製糸技術史』48頁）となったのである。

（7） 幕末期における生糸の粗製濫造にたいする幕府の取締りは，たとえば慶応元年（1865）の老中松平周防守康直による「生糸取締之儀」，翌2年の松平和泉守による「生糸取締達書」などにみられる。

（8） たとえば，当時の主要な蚕糸業国であったイタリア機業の場合をみれば次のとおりである。力織機が着実に普及してたことを知りえよう。

年 次	織 機 数					
	合 計	%	手織機	%	力織機	%
1870年	3,050台	100.0	3,000台	98.4	50台	1.6
1880年	3,400	100.0	3,000	88.2	400	11.8

〔典拠〕『農商務省商工局臨時報告（一海外ニ於ケル蚕糸製糸状況視察復命書）』（農商務省商工局，明治30年）42頁より作成。

（9）「養蚕試験方法布告」（明治3年2月）。

売込問屋に出荷していた。さらに，明治元年（1868）10月より準備を進め，翌2年2月には，藩内の生糸を独占的に取り扱う生糸直売所（敷島屋庄三郎店）を横浜に設置していた[10]関係上，欧米生糸市場に関する情報の入手も早かったからであろう。

この生糸直売所の設置に活躍したのは，前橋藩士速水堅曹であるが，彼はまた生糸改良についての調査もすすめていた。明治3年（1870）3月，たまたま横浜のスイス領事館において領事H・シーベルと「生糸精製ノ策ヲ談」じ，「教師ヲ可雇」べきであると示唆され，「其手続ヲ審問」している[11]。次いで，彼は外人教師を探索した結果，神戸在留のスイス人C・ミュラーが，イタリアにおいて生糸製造に従事し，製糸に精通していることを知り，政府の許可をえて雇用（雇用期間は4ヵ月）した。明治3年6月のことである。直ちに，速水はミュラーの直接指導のもとに木製洋式器械3台を据付け（前橋・細ヶ江），器械製糸を試みた[12]。試験的であったとはいえ，日本では最も早い器械製糸の開業である。

同年9月末にいたり，速水はこれを移転（前橋・観民）して藩営前橋製糸所（明治4年7月の廃藩置県により県庁主管となり，同時に「大渡製糸所」

(10) 群馬県史編纂委員会編『群馬県史』資料編23，昭和60年，269頁参照。
なお，前橋藩の生糸直売所は，藩名を表面に出すことを憚り，架空の店名として敷島屋庄三郎店と呼ばれたが，実際の名義人は同藩士鈴木昌作である。

(11) 前掲『群馬県史』262頁参照。

(12) 前掲『群馬県蚕糸業史』上巻，668～669頁参照。
速水は，生糸商C・ミュラー（Caspar Müller）がスイス人ではあるが，イタリアにて13年間生糸製造に従事し，製糸に精通していることを知り，スイス領事H・シーベルに謀り、前橋藩に雇用した。このミュラー雇用の背景には，明治2年5月にイタリア人一行が上州蚕糸業を視察しており，一行の中でミュラーの経歴を知る「テラトールの推薦によるものかも知れない」とされている。
ミュラーは，「俸給一ヶ月墨銀三百枚づゝ，期限を四ヶ月」として，前橋藩に雇用された。速水は，ミュラーの雇用期限に達した明治3年「本月（10月――引用者）九日同人ヲ船ニテ召連レ，同十二日横浜ニ着，コンシールニ引渡」（前掲『群馬県史』270頁）している。また速水は，この報告もかねて「同十八日渋沢（栄一――引用者）大蔵少丞宅ニ行，新製ノ糸ヲ一覧セシメ，及将来ノ目的ヲ申達」（同前）しており，かなり行動的であったことを知りうる。

と改称）を設立し，木製洋式器械12台を設置して本格的な生産を開始した。同所の繰糸は，イタリアで製糸に従事した経験をもつミュラーの指導によって，ケンネル式（イタリア式）を採用し，動力は初め人力（明治4年8月より水力）であった[13]。同所の開設は，ミュラーの雇用期間が終る直前のことであり，速水が短期間のうちに器械製糸技術を習得し，公益を目的とした企業活動を展開したことは大いに評価されるべきであろう。

かくして，上州・前橋に設立された前橋製糸所は，日本における器械製糸の先駆となり，たまたま速水・ミュラーラインによってイタリア式製糸技術が導入されるところとなった。これにたいし，やや遅れて前橋とは直線距離にして約20kmの地点にある富岡に設立された官営模範工場富岡製糸場（のちに富岡製糸所）では，尾高惇忠（民部省官吏）とフランス人P・ブリューナが中心となってフランス式製糸技術を導入している。つまり，上州では近接する二つの地域において，しかも相前後する時期に，それぞれ交流をもった外人教師によってイタリア式，フランス式の製糸技術が導入されおり，後発国の工業化過程にみる技術導入の特質がうかがわれる。

ここで，藩営前橋製糸所と官営富岡製糸場の業態を比較してみるならば，第2表のとおりである。前者は地方官庁の管轄下にあり，後者に比して確かに小規模経営であって設備も貧弱ではあるが，操業は2年先行している。また，前者の注目すべき点として，前述したところでもあるが繰糸はケンネル式（イタリア式）であり，後者のトモヨリ式（フランス式）と異って，「緒数（繭の糸口数――引用者）の増減が1緒でも2緒でも自由に加減できるのに対し，トモヨリ式のように，はじめから緒数が偶数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った不便がなかったから，高次の装置であった」[14]ことを挙げうる。

---

(13) 前掲『日本製糸技術史』100頁参照。
藩営前橋製糸所は，廃藩置県後，県庁の主管となり「大渡製糸所」と改称される。明治5年7月に小野組に払下げられたが，7年11月に小野組破産・閉店となったため，一時内務省勧業寮で所管した。8年6月にいたり，前橋生糸貿易商人勝山宗三郎が所有し，ボイラーの新設・釜数の増加などにより，「タチバナ」印で優良生糸を生産している。

(14) 前掲『日本製糸技術史』100頁。

第2表　前橋製糸所・富岡製糸場の業態

	藩営前橋製糸所	官営富岡製糸場
設立地	前橋・観民	甘楽・富岡
外人教師名	スイス人　C・ミュラー	フランス人　P・ブリューナ
操業開始日	明治3年9月	明治5年10月
繰糸器械数	木製洋式器械12台（12釜）	鉄製洋式器械300台（300釜）
揚返器数	—	156窓
繰糸方式	ケンネル式（イタリア式）	トモヨリ式（フランス式）
工女数	31名	404名
動力	人力→水力	蒸気力

〔典拠〕 前掲『日本製糸技術史』88～91，99～100頁より作成。
（注） 工女数は，前橋製糸所の場合は師婦1名，上女13名，中女2名，小女15名の合計である。また富岡製糸場の場合は，操業開始の翌6年2月の数字である。

このような特色をもった藩営前橋製糸所において，速水から直接に器械製糸を学んだ一人の人物がいる。ここで取り上げる星野長太郎がその人に他ならない。やがて，彼は上州で民間としては最初の器械製糸所を設立し，またアメリカへ生糸を直輸出している。こうした彼の企業活動については，すでに筆者もある程度紹介を試みたことがある(15)。

そこで本稿では，この点については略述するにとどめ，主として彼が明治20年代初めに伊仏蚕糸業を視察した内容について触れることにしたい。彼にとっては，これが最初の洋行であったため，カルチュア・ショックを受けながらも，実見した評価をきわめて鮮やかに家族・知人宛の書簡で伝えてお

ケンネル式，トモヨリ式の優劣論は，導入された当時から論議を呼んでいたというが，信州地方の製糸工場ではフランス系統であっても，早くからケンネル式が圧倒的に普及している。トモヨリ式を最初に導入した富岡製糸場は，明治29年（1896）に124釜を増設したが，ケンネル式4口を採用し，同33年には残りの釜もすべてケンネル式3緒に変えた。また京都・郡是製糸工場では，31年までにすべてをケンネル式に変更している。トモヨリ式は大正年代に入るまでには消滅したようであり（同書，101頁参照），ケンネル式の方が優れていたといえよう。

星野長太郎は，たまたまではあったが速水堅曹を介してケンネル式を導入したことにより，幸運にも当初より優良糸の製出が可能であったと思われる。

（15） 拙稿「明治初期における生糸直輸出の展開」（「明治大学社会科学研究所紀要」25－2），加藤隆・阪田安雄・秋谷紀男編『日米生糸貿易史料』第1巻史料編1，近藤出版社，1987年，の「解題」。

り，これを通して彼の企業者としての意識・能力の一端を明らかにしうると考えたからである。それはまた，明治初期に海外進出を試みた企業者活動の分析に関して，一つの素材を提供することにもなろう。

2.

星野長太郎（明愷）は，同家11代目として弘化2年（1845）2月に上州・勢多郡水沼村（現黒保根村水沼）で出生した。星野家は，代々同村の村役人を勤め，かたわら足尾御用銅山世話役の任にあり，苗字帯刀御免・給人格の家柄である[1]。

さて，長太郎は明治初年に家督を相続しているが，当時の星野家の土地所有状況をみれば第3表のとおりである。243町5反余の所有地は，居村および周辺13ヵ村に広がっており，この地域の地主として隔絶した地位にあった。所有地の構成は，田畑51町1反余のうち，田は僅かに1町2反余，まったくの畑勝ちであり，山林が大半を占めている。この地域は，別名「山中入（さんちういり）」と呼ばれ，「赤城山脈ノ半腹ニ位シ，四面皆山ニシテ水田ニ乏シク，多ク磽确ノ粗畑ノミ」[2]とあるが，それは星野家の土地所有の在

第3表　明治初期の星野家土地所有状況

	反　別	%	地　価	%
	反		円	
田	12.017	0.5	503.720	8.3
畑	499.006	20.5	4,198.884	69.3
宅　地	9.216	0.4	208.638	3.4
山　林	1,897.202	77.9	1,147.981	18.9
原　野	8.615	0.3	1.931	0.0
畦畔その他	9.215	0.4	—	—
合　計	2,435.411	100.0	6,061.124	100.0

〔典拠〕 星野家所蔵「所有地壱筆限調帳（明治23年6月現在）」より作成。
（注） 調査時における抵当地・非抵当地の総計。

（1） 星野家所蔵「書物留」（天保4年）参照。
（2） 星野家所蔵「星野長太郎履歴書下書」（明治16年頃）。

り方にも反映しているといえよう。

同家の田畑経営をみれば，自作分の田7反余を除いて，あとはすべて畑小作（桑抜のウェイトが高い）である。小作人（明治8年〈1875〉には125名）の4割近くは1反以下の小作であり，この地域の平均反収が5斗7升程度ときわめて低かったため，彼らは桑売・養蚕に依存するところが大きかった。

次いで，当時の星野家の収支状況をみれば（第4表参照），まず収入面においては，幕末期には貸金利・質物利が大きく小作利を上回っており，地主資本としてよりはむしろ，前期的金融資本として存立していたことが知れよう。それは，前述したような零細小作農層による資金需要，また水沼村では天領・旗本領が入り組んでおり，御用金貸付，村方御用金・年貢先納金の立替などがあったからである。明治期に入って貸金利・質物利が急減しているのは，恐らく領主制と密着した金融部門の破綻によるものであろう。これにともなって，同家資本は性格の転換をせまられることになる。

この他，収入面で幕末期に一定のウェイトを占めていた酒造利が，明治期に入って急激に低下しているのは，当時の「酒造株改」[3]と関連があろう。これとは逆に山林利の場合は，明治期にやや増加傾向がみられる。その時期には，貸金利・質物利・酒造利が減少しており，立木売りによってそれを補塡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

収入面において，たえず主要な地位にあったのは桑売利である。星野家では養蚕を自営せず，前述のように狭小で疲瘠な土地からの小作料収入を，零細小作人たちが経営する養蚕業に桑を販売することによって把握・吸収し，安定化を図っている。その傍ら，寛政年間（1789～1801）以降，繭市場が未成熟であった山中入地域の原料繭を低廉に購入し，問屋制賃挽製糸を始め、他方では在方荷主的商人としても活躍する。しかし，新しい独立生産者層，ないしは糸繭商人の抬頭による繭市場構造の変化により，漸次経営規模を縮小し，ついに安政年間（1854～1860）には経営を放棄している。その間，天保年間（1830～1844）以降，桑入小作にかえて桑抜小作の拡大を図り，桑の

（3） 星野家所蔵「日記」（慶応4年～明治元年）参照。

第4表 星 野 家

	収					入			
	小作利	貸金利	質物利	流質利	山林利	酒造利	無 尽	桑売その他	計a
文久元年 (1861)	105 (9.8)	228 (21.3)	168 (15.7)	13 (1.2)	130 (12.1)	162 (15.1)	6 (0.6)	259 (24.2)	1,071 (100.0)
〃 2年 (1862)	125 (9.6)	276 (21.1)	266 (20.3)	7 (0.5)	103 (7.9)	142 (10.9)	74 (5.7)	315 (24.1)	1,308 (100.0)
〃 3年 (1863)	127 (12.8)	295 (29.8)	197 (19.9)	6 (0.6)	24 (2.4)	160 (16.2)	44 (4.4)	137 (13.8)	990 (100.0)
元治元年 (1864)	128 (9.2)	324 (23.2)	221 (15.8)	1 (0.1)	36 (2.6)	232 (16.6)	116 (8.3)	340 (24.4)	1,396 (100.0)
慶応元年 (1865)	139 (11.1)	293 (23.4)	224 (17.9)	—	76 (6.1)	232 (18.5)	13 (1.0)	277 (22.1)	1,254 (100.0)
〃 2年 (1866)	141 (8.1)	411 (23.5)	224 (12.8)	—	28 (1.6)	435 (24.9)	—	510 (29.2)	1,749 (100.0)
〃 3年 (1867)	336 (13.5)	212 (8.5)	284 (11.4)	—	88 (3.5)	979 (39.2)	100 (4.0)	497 (19.9)	2,496 (100.0)
明治元年 (1868)	115 (8.9)	96 (7.4)	46 (3.6)	—	137 (10.6)	630 (48.6)	22 (1.7)	249 (19.2)	1,295 (100.0)
〃 2年 (1869)	160 (15.2)	87 (8.2)	63 (6.0)	34 (3.2)	60 (5.7)	72 (6.8)	—	576 (54.5)	1,056 (100.0)
〃 3年 (1870)	332 (24.4)	218 (16.0)	105 (7.7)	33 (2.4)	101 (7.4)	59 (4.3)	—	514 (37.7)	1,362 (100.0)

〔典拠〕 星野家所蔵「安政3年元勘定大宝得」より作成。

販売体制を強化した[4]。幕末期には養蚕業の展開にともなって桑が高騰し，桑売利が増大を続け，明治期にかけて同家収入の半ば近くを占めるまでにいたっている。

支出面についてみるならば，借入金利が計上されていることに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前述した貸金が，必ずしもすべて自己資本によるものでなかったことを意味するからである。しかも，この金利負担は大きく，明治期に入って借入金利が貸金利を上回っており，経営の破綻を示している。また，幕末期のインフレーションを反映して，年貢をはじめ小遣（生活費）・飯米代などの急増がみられる。このため家計は圧迫され，明治期の収支はいよいよマイナスに転じていたのである。

（4） 山田武麿「近世養蚕地帯における地主制の展開と賃挽製糸形態」（『土地制度史学』1－2）参照。

経営の推移

（単位：両）

支出								a－b
年貢	小遣	飯米	借入金利	給金	無尽掛金	その他	計b	
89 (13.2)	207 (30.7)	34 (5.0)	143 (21.2)	41 (6.1)	148 (21.9)	12 (1.8)	674 (100.0)	+397
55 (6.5)	355 (42.2)	45 (5.3)	158 (18.8)	44 (5.2)	137 (16.3)	48 (5.7)	842 (100.0)	+466
97 (11.8)	331 (40.4)	40 (4.9)	158 (19.3)	52 (6.3)	138 (16.8)	4 (0.5)	820 (100.0)	+170
93 (6.4)	554 (38.0)	65 (4.5)	157 (10.8)	34 (2.3)	134 (9.2)	422 (28.9)	1,459 (100.0)	−63
117 (7.8)	823 (55.2)	110 (7.4)	205 (13.7)	65 (4.4)	141 (9.5)	30 (2.0)	1,491 (100.0)	−237
118 (9.8)	510 (42.3)	157 (13.0)	217 (18.0)	43 (3.6)	123 (10.2)	37 (3.1)	1,205 (100.0)	+544
151 (9.2)	737 (44.9)	110 (6.7)	186 (11.3)	65 (4.0)	50 (3.1)	400 (24.4)	1,639 (100.0)	+857
175 (6.1)	1,613 (56.3)	145 (5.1)	152 (5.3)	60 (2.1)	63 (2.2)	657 (22.9)	2,865 (100.0)	−1,570
141 (11.3)	558 (44.7)	184 (14.7)	238 (19.1)	50 (4.0)	63 (5.0)	14 (1.1)	1,248 (100.0)	−193
							3,161 (100.0)	−1,799

（注） ① 両未満は切り捨て。
② 明治3年は，支出分の明細に関する史料は欠落。

すでに明らかなように，長太郎が家督を相続した当時の星野家は，地主として隔絶した地位にはあったが，内実は家政立直しを要する程の状況にあった。では，長太郎がいかにしてこの課題に取り組んだか，次にその点を追ってみることにしたい。それは，彼の企業動機の究明にもつながる。

長太郎は，幕末の一時期を「江戸入，林大学所邸修学」[5] に過している。いうまでもなく同所は，朱子学のメッカであり，彼はここで大いに儒教的な大義名分論を学んだものと思われる。この点は，その後の彼の思想と行動に反映することになる。間もなく彼は帰村するが，直ちに父弥平（七郎右衛門朋信）とともに農事改良に従事する。その理由を挙げれば，山中入地域の農民の零細性は「耕耘ノ術全ク其精ヲ尽サス，収穫ノ料穀少ナキノ致ス処」にあると考えられるので，自身で「其ノ如何ヲ実際ニ試験セン」[6] とするとこ

（5） 星野家所蔵「星野長太郎歴」（年不詳）。

ろにあった。

すなわち，まず手作り経営において実験を試み，零細農家の生活安定の方法を策定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もちろん，それが，いわゆる一人一村的地主であった星野家の地主経営の安定にもつながるものであった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しかし，彼らの試みは，「未熟ノ動作ニ付キ常農家ノ収穫ニモ如カス，出ル処常ニ入ルヲ不償」[7] という状態であり，不調であったが，やがて転機を迎えた。

明治元年（1868）9月，長太郎は短期間であったが，県（当時岩鼻県）の公用掛に就任した。彼は，早速在村時の課題であった零細農家の生活安定を実現するため，「草莽局」を開設し，管内の「国役金」（税金）の調査に従事する[8]など，行政の立場から積極的に民生に係わり合っている。その間，しばしば前橋へ出向する機会があり，ここで前述したような前橋提糸の評価・速水堅曹の活動についての情報にも接し，啓発されるところが多かったと思われる。

数ヵ月で官を辞した長太郎は，帰村するやこれまで採ってきた「区々躬耕ノ迂策ヲ転シ，憤然蚕糸改良繁殖ノ途ニ就」[9]くことにした。もともと水沼村においては，「疲瘠ノ畑地ハ善ク桑樹ニ適シ，到ル処養蚕ヲナサヽルナク，又地方ノ渓水能ク製糸ニ適シ，古来より有名ノ精糸ヲ出タセリ，此二業ヲ拡張セバ又大ニ経済ノ補助ヲ為スベシト思考」[10] したからに他ならない。明らかに，前橋での情報をふまえての発想の転換である。実行に当たり，まず「養蚕ハ製糸ノ元ナレハ，良糸ヲ得ルハ養蚕ヲ改良スルニ如カス，然レトモ軽薄射利ノ細民目前ノ小利ニ汲々タレハ，養蚕ノ根元改良ニ着手センヨリハ，製糸ノ改良ヲ先ニシ利益上ヨリ勧誘スルニ如カストシ，養蚕ノ業ヲ弟七十郎ナルモノ以テ是ヲ担当」[11] させた。

他方，長太郎自身は，「製糸ノ改革タル多年ノ積弊ニ付，改良ノ緒ヲ求ムルニ洋式ノ器械ニ依ラサレハ為シ得サルモノト信ジ」[12]，その技術を習得す

（6）（7） 前掲「星野長太郎履歴書下書」。

（8） 前掲「日記」。

（9）（10）（11）（12） 前掲「星野長太郎履歴書下書」。

るため，明治5年（1872）7月，当時開業二年目を迎えようとしていた藩営前橋製糸所に速水堅曹を訪ねている。水沼村における蚕糸業展開の速効性を高めるため，前述のように弟七十郎には養蚕を担当させ，彼自身は製糸を担当することにして，兄弟で業務分担をするという経営戦略を立てての行動であった。彼が訪ねた折の速水の日記には，

（明治五年壬申）七月二日

星野長太郎製糸所ヲ開カント欲シ，爾来当所ニ寓シテ伝習スルヲ乞フ[13]

とある。行間に長太郎の器械製糸に寄せる情熱を読み取ることができよう。

長太郎は速水の許しを得て，同5年9月より前橋製糸所に滞在し，イタリア式繰糸の習得に勤めた。その傍ら，同所の施設・営業・人事・労務管理などについて調査し，個人で製糸所を開設する場合の計画を立てている。それによれば，「外国人ヲ省キ家作ヲ粗ニシ蒸気之器械ヲ除キ水車ヲ用ヒハ，纔之入費ニテ出来スヘシ」[14]とある。要するに彼は，個人経営で器械製糸を成立させるためには，まず経費の軽減が必要であると考えており，①人件費を押えるために外国人技師を雇用しない，②工場・建物を簡素化し，また動力は蒸気ではなく，水力を利用する，などとしている。まず，①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イタリア式繰糸の熟練者を殖すことが必要であった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それを安価に，しかもスピーディーに実現するため，彼は同6年2月に「妻及工女三名ヲ率ヒ供ニ該場ニ入レ，伝習ヲ受ケ粗製糸ノ順序ヲ得」[15]ている。

（13） 前掲『群馬県史』272頁。

（14） 星野家所蔵「洋方製糸場調書」（明治5年頃）。
調査項目は多岐に渡っており，「製糸場出来之事・繭置場并婦人滞在所出来ノ事・物置出来之事・車廻シ湯沸器械之事・土蔵出来之事・飯米搗之水車之事・会所壱ヶ所出来之事・外国人壱人御雇之事・社内八局ニ分別シ市中秀逸之商人八人ニ預ケ渡ス・会所詰之事・取締方弐人・局主ヨリ出金之事・毎局人数之則」などである。

いよいよ長太郎は，同6年11月にいたり水沼村において製糸所の建設に着工する。その間，当時速水は同じイタリア式繰糸を採用する二本松製糸所設立（福島・二本松村，48釜・水力）の指導に当っていたが，「大概（明治6年――引用者）九月中旬迄ニ者帰県，都而御補翼可仕ト奉存候」[16] と書簡を寄せ，さきの②の問題に関連して，「一　釜ハ煉瓦ニ限候事，一　器械ハ五拾乃至二十五可然事，一　前橋之ニ大同小異ニシテ器械処ニハガラス窓附肝要也是ハ虚ニ非ス雨天之節之実用也，一　置繭処新規可然古土蔵ハドツト不仕様奉存候……運転ハ水車ニ限リ可申工女ハ爰元ニ而不足ト申場ニ至リ申候」[17] などと具体的に指示している。

また速水は，同書簡の中で「青山者何れニモ相成可申歟ニ候得共，令ノ改意ニ而無理ニモ差止候哉難量，何レニモ尽力召連候心得ニ御座候」[18] として，各地における器械製糸所の設立が，行政レベルによって抑制されることのないように尽力したい，と記している。さらに，器械製糸所は「会社ト申テモ有名無実，迚も御骨折損ニ可有之」[19] かも知れないが，「作事一人之正忠昊天上帝ノ所知，有志力ヲ尽サヽルヲ不得ニ至ルヘシ」[20] と，器械製糸の発展に関心ある者が，協力し合うことの必要を説く。器械製糸の実践的指導者であった速水の見解に，長太郎も共鳴するところがあったであろう。時に速水35歳，長太郎27歳であり，ともに活動力溢れる少壮の域にあった。

長太郎の水沼製糸所は，早くも明治7年（1874）「二月落成シ（製糸所2棟・水車場・糸取扱所・繭置所・糸置所各1棟――引用者），器械三十二台ヲ据付ケ其月二十一日ヲ以テ開業セリ」[21] とある。その間，問題となったのは創業資金の調達と労働力の確保であった。

とくに前者についてみれば，すでに速水は，明治6年6月の時点で長太郎にたいし製糸所創業資金として，「先ツ普請皆済迄四五千円之御見入可然，併繭仕入等も有之候間，拝借ハ七千金不残ニ而可然能々金子整」[22] へるよう

(15)　前掲「星野長太郎履歴書下書」。
(16)(17)(18)(19)(20)　星野家所蔵「速水堅曹書簡」（明治6年6月21日）。
(21)　前掲「星野長太郎履歴書下書」。
(22)　前掲「速水堅曹書簡」。

に示唆した。つまり，当面準備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資金は，7,000円であったのである。そこで長太郎は，これに基づいて「製糸器械築造費用其見積書」を作成した（第5，6表参照）。これによれば，操業に先立って必要な建物・繰糸器械などの設備費を3,004円と試算している。前述のように，彼は工場・建物を簡素化する計画であったところから，速水が示唆した設備費よりかなり低い。とはいえ，要用の設備費として，3,000円余りを準備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また，操業にあたり繰糸工女・糸口出し小女ら77名分の給料・賄料などの諸経費（3,434円）および購繭費（20,736円）のうち，一部は当

第5表　水沼製糸所設備費・年間経費見積り

（単位：円）

設備費		年間経費	
内訳	金額(%)	内訳	金額(%)
建物（6棟）	2,100（69.9）	給料（77名分）	1,490（43.4）
繰糸器械（32台）	240（8.0）	〈繰糸工女32名〉	800 23.3
繰糸銅鍋（32個）	144（4.8）	〈糸口出シ小女32名〉	384 11.2
紡掛器械（32台）	128（4.3）	賄料（77名分）	1,405（40.9）
繭・生糸試験器械等	100	燃料（薪）	414
その他	292	器械修繕費	100
		その他	25
合計	3,004（100.0）	合計	3,434（100.0）

〔典拠〕 国立公文書館所蔵「製糸器械築造費用其見積書」（明治6年11月23日）より作成。
（注） 円未満は切捨て。

第6表　水沼製糸所年間収支見積り

（単位：円）

収入		支出	
生糸販売高	27,000（622貫）	上繭購入費	20,736（622石）
		上繭仕入諸掛り	622
		資本金7,000円年利	1,050
		年間経費	3,434
		器械建築諸費6ヵ年賦償却費	500
		輸出税其他出港費用年間積立金	690
合計	27,000	合計	27,032

〔典拠〕 国立公文書館所蔵「製糸器械築造費用其見積書」（明治6年11月23日）より作成。
（注） 円未満は切捨て。

第7表　水沼製糸所創業時借入金

	借用日	借用金額	借用条件	返済日	備考
速水堅曹	明治6年11月15日	1,000円	「利子1ヶ月金100円ニ付1円ノ定メ」	明治7年3月30日	
熊谷県（勧業資金）	明治7年5月15日	3,000円	「明治7年ヨリ同9年迄3ヶ年置据同10年ヨリ同14年迄無利足5ヶ年賦1ヶ年金600円ツツ上納」	明治14年11月	明治6年11月23日に熊谷県令宛に「水沼製糸所新築諸費拝借願」提出。明治7年4月下旬にも「製糸所建設資金早期拝借嘆願書」を提出。
速水堅曹	明治7年8月7日	500円		明治7年8月31日	

〔典拠〕 星野家所蔵「借用証書」より作成。

然準備を必要としたのである。

長太郎は，取あえず必要とされる創業資金を4,500円（7,000円の64.3%）と算出した。この資金は，前述したような家政状況下にあったため，第7表にみられるごとくすべて借入金によって調達されている。速水からの借入金がなければ，着工もできなかったことが知れよう。また熊谷県からの借入金は，再度に渡る嘆願の結果，ようやく実現したものであった。嘆願書には，「愚臣之素願不相違義者，乍残念是非モ無之次第ニ候得共，県令公愛民之御思翻而偽製贋作家之器械製糸を誹る之口実と成，此者共之笑ヲ招くのミならす，併セテ官府之御沙汰をも軽悔するに到り，将来勧業之妨碍とも相成候」[23]とある。つまり，彼には蚕糸業の展開が国策に沿う事業であるという儒教的な大義名分論があり，したがって当時の企業者の多くが，まず金融機関を設立して資金調達するという方策を，あえてさけたものと考えられる。

その後，操業が順調であれば問題はなかったであろうが，前述のように長太郎は明治7年2月11日に水沼製糸所を開業したものの，実際に繰糸器械32台が設置されたのは翌8年1月であり，それが完全に稼動するためには同年秋まで待た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このように経営が不安定な中で，営業資金として官公勧業資金の借入れが遅延したり，不調であった場合には，

(23) 星野家所蔵「製糸所建設資金早期拝借嘆願書」（明治7月4日下旬）。

たちまち経営危機に直面することになる。最初の危機は，早くも明治9年（1876）9月に訪れた。「開業以来爰二三年，其中糸価之低下及ヒ不馴之場合ヨリ執業疎拙毎度損失」[24]が多く，「此侭従事シ居テハ微薄之家産忽チ蕩尽，家名立トコロニ断絶シ，老父母ヲシテ路頭ニ迷ハシメ余殃親戚ニ及」[25]ぶことになる。そこで「多年之志願一朝ニシテ相止メ候ハ遺恨至極ニ御座候共，今日ニシテ父母ヲ安スルハ工場ヲ閉ツルニ如ス，殖産増物ハ国家ニ尽ス義務ト雖トモ，父母之意ヲ破ルハ又人類ノ情ニアラス，号泣シテ随フハ之其分也，依之工場及ヒ諸器械現在糸繭抵当不動産差出，猶不足候ハヽ家産悉皆没入シ，官金御貸下之分御返納相願職業相止メ申渡」[26]として，閉鎖願を県庁に提出している。ここにおいても，彼の儒教的な大義名分論がうかがわれる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

これにたいし，県庁では「篤ク協議戮力将来維持成業候様可致，尤製糸工業上改革ヲ要シ面目一新」[27]のため，水沼製糸所に担当官を派遣し，再建策を講ずると約している。そのため，長太郎を初め「舎中一同奉感泣，昼夜奮励将来ノ繁盛ヲ期シ」[28]，県庁による再建策の指示を待つことで，この場合は解決をみた。同所の繰糸の評価は，「糸之元質者最上なれと，ほこり抔之汚物ありて美麗ならず，然れとも其元質富岡（官営富岡製糸場――引用者）ニ比すれハ大ニ超越シ，是を好むもの十中七ニ居ル」[29]ところから（とはいえ「世界製糸之品等ニ較スレハ第二等」であった），その後，やや収益をみるにいたった[30]が，借入金の金利負担が大きく，経営は不安定な状況を続

(24)(25)(26) 星野家所蔵「水沼製糸所閉鎖願」（明治9年9月）。

(27) 星野家所蔵「群馬県指示書」（明治9年9月25日）。

(28) 星野家所蔵「星野長太郎嘆願書下書」（明治9年秋頃）。

(29) 星野家所蔵「星野長太郎書簡」（明治8年4月14日）。

(30) 星野家所蔵「水沼製糸所開業以来営業成績」（明治13年）によれば，「損益」

	損益金		損益金
明治7年（1874）	−813円	明治11年（1878）	806円
8年（1875）	−1,175	12年（1879）	216
9年（1876）	1,169	13年（1880）	1,569
10年（1877）	1,321		

（注） 円未満切り捨て。

けている。同所の経営については，秋谷紀男「星野長太郎と水沼製糸所」[31]に詳しいので，それに譲ることにしたい。

ところで，長太郎は明治8年（1875）6月にいたり，「生糸ノ需要上ニ就考案スレハ，精粗素より同一ノ価格アルノ理ナシ，現ニ我地方桐生ノ如キ従前ノ製糸ヲ以て桐生機屋ニ販売スルニ，其品位ニよって格段ナル価ノ差アレハ海外ノ織絹家ト雖豈其情ニ差アランヤト，爰ニ於テ始メテ海外直売ノ念ヲ起シ，其織絹需用ノ適度ニ応製造輸送センコトヲ企図」[32]し，まず横浜・英八十九番キントン商会を介して，試験的に生糸300斤程度を売込んだ。当時，水沼製糸所の経営は最悪の状況にあり（注30を参照），それを打開するための試みであったと思われるが，経営危機の時期に新規な事業に着手した彼の活力に驚ろかざるをえない。

長太郎によるこの試みは，「何分不案内ノ依托ニ付仕向先キ其他ノ細報ヲ聞クニ由ナク，価格ハ相当ニ売捌キタルモ輸出諸費ノ為メ利益ヲ収ムル能ハス」[33]とあり，海外市場にたいする情報・経験不足のため，不調に終った。しかし，たまたま「千葉県士族佐藤百太郎米国より帰朝シ，茶及雑貨又ハ生糸ヲ該国ニ直輸シ売捌キヲ為サントスルヲ聞，往テ之レヲ図ルニ，氏ハ米国市場景況ヲ詳説セラレ十分其売捌ヲ負担スベシト諾サレタリ，此ニ於テ弟新井領一郎ヲ随行セシメ該業ニ従事」[34]させることになる。彼の場合もそうであるが，後発国による海外市場への進出の実現には，もちろん可能性の有無にかかってはいるが，かなり偶然的な要素が大きいといえよう。明治9年（1876）3月，彼は弟領一郎（新井系作家養子）をアメリカ・ニューヨークに送り，生糸直輸出を始めたが，それは勧商局による推進（明治9年9月）に先立つものであった。

として，下表のように指摘されている。しかしこの計数は，年に仕上高と仕上元価との差額を記したものであって，借入金の利息返済分を差引いた場合には，どの程度の収益となっているか不明である。

(31) 前掲『日米生糸貿易史料』所収の「解題」。

(32)(33)(34) 前掲「星野長太郎履歴書下書」。

新井領一郎については，阪田安雄「新井領一郎の渡米」「生糸直輸開始」（前掲『日米生糸貿易史料』所収の「解題」）を参照されたい。

弟領一郎は，兄長太郎と10歳違いであり，渡米当時は21歳である。明治4年から5，6年にかけて「郷里ニ在住シ，重ニ生糸及ビ繭販売ニ従事」[35]していたが，6年末来，英語・簿記などを学習し始めた。それは，長太郎が水沼製糸所の設立に着手した時期でもある。したがって，長太郎は，同所で生産した器械糸を横浜の外商と取引きするために，領一郎に英語・簿記を学ばせたに違いない。それが偶然のチャンスから，アメリカ・ニューヨークでの生糸直売の道が開け，ここに兄弟でそれぞれ養蚕・製糸・販売を担当するという長太郎の経営戦略は，一層の整備をみるにいたったといえよう。この経営戦略の中で，長太郎の器械製糸はしばしば資金調達で齟齬を来したが，アメリカ・ニューヨークで生糸直売の基盤を築いた領一郎との連携により，長太郎を核とする彼らの海外進出の企業者活動は実現したのである。

長太郎の器械糸は，いよいよ領一郎を介してアメリカ・ニューヨーク市場で直売されたが，「其平均ノ価直百斤ニ付殆ト一千〇弐拾六円ノ高価ニ至リ，爾時（明治9年――引用者）横浜ニ売却スルトハ総額千七拾九斤ノ量ニシテ金三千三百四拾円ノ差」[36]があり，彼は直売の方が有利であることを知った。しかし彼は，いくら「器械製ノ益浩大ニシテ其ノ法ニ依ラサルノ理ナシ」[37]ではあったとしても，当時の上州の情況下で「各所ニ器械ヲ起スモ担当ノ人物ニ乏シク，資本ニ苦シミ到底行レ難シ」[38]と判断した。それに加えて，いま一つの問題があった。

確かに，当時の上州における器械糸は，価格において座繰糸・改良座繰糸よりも高かったが（第8表参照），器械糸については，

第8表　上州生糸相場　（1円当り斤数）

年　　次	器　械　糸	改良座繰糸	座　繰　糸
明治11年(1878)	20.22	20.80	27.25
12年(1879)	17.22	18.50	26.00
13年(1880)	15.00	18.00	23.27
14年(1881)	11.42	14.80	18.94

〔典拠〕 前掲『日本製糸技術史』70頁。
（注） ① 改良座繰糸は，洋式技術の導入によって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捻造による座繰糸。
② 座繰糸は，提造によるもの。

「原料繭が粗悪であれば，当時の洋式機械はその性能を発揮できず，座ぐり機の方がかえって手取ばやく経済的であった……」[39]

「坐繰製糸に於ては，たとへその原料繭は多種多様であっても，工女の技術さへ熟練しておれば，繭に応じて適宜の繰糸をするからよろしいが，之に反して機械製糸に於ては，これに適良なる一定の原料繭をうるにあらざれば不可である。」[40]

第9表　上州生糸生産高推移

（単位：斤）

年　次	器械糸	改良座繰糸	座繰糸	合計
明治11年(1878)	17,692(2.7)	24,492(3.7)	619,888(93.6)	662,072(100.0)
12年(1879)	13,426(2.1)	105,194(21.6)	477,655(76.3)	626,275(100.0)
13年(1880)	14,235(1.9)	194,171(26.3)	530,149(71.8)	738,555(100.0)
14年(1881)	12,175(1.8)	204,447(30.2)	460,480(68.0)	677,102(100.0)

〔典拠〕 前掲『日本製糸技術史』70頁より作成。
（注） ① 改良座繰糸，座繰糸については，第8表を参照のこと。
② 1斤は160匁，600グラムである。

と指摘されている。つまり，器械糸が展開するためには，原料繭の精選という課題があったのである。それが未解決であった当時の実態を示せば第9表のとおりであり，器械糸の停滞を知りえよう[41]。

この当時，欧米生糸市場での要請に応えるためには，生糸の大量生産・標準化が必要であった。しかし，前述のような課題も抱えていた上州・器械糸

(35) 新井家所蔵「新井領一郎履歴書」（昭和3年6月15日）。

(36)(37)(38) 国立公文書館所蔵「生糸精製勧奨のため資本金貸下指令」（自明治十一年至明治十二年・太政類典第三拾七巻）。

(39) 前掲『日本製糸技術史』60頁。

(40) 前掲『日本製糸技術史』63頁。
優良繭が生産され，器械糸が展開するのは，大正3年（1914）に蚕の一代交配品種が出現するまで待た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41) 蚕糸県である長野においては，器械製糸が大いに発展したのにたいし，同じ蚕糸県でありながら，上州では器械製糸が発展していない。その理由として，上州では座繰製糸を改良できたかである，と指摘されている場合が多いが（たとえば，丑木幸男・宮崎俊弥『群馬県の百年』山川出版社，1989年，63頁），それとともに優良繭の確保が困難であった点も考慮すべきであろう。

によっては，この要請に応ええないことは明らかである。そこで長太郎は，座繰の共同組織化を図り，この要請に応えようとした。明治10年（1877）3月，彼はこの計画を，まずアメリカ・ニューヨークの領一郎へ次のように書き送っている。

「……当地提糸一層注意相改買送り可申見込ニ付，鹿角（かずの）・系作君（新井系作，領一郎の養父――引用者）ト組合ニ而亘瀬川会社ナルモノヲ起シ，各村座繰取之内同志のものを加入セシメ，専ら貴地適当之頃合ニ製糸セシメ，会社ニ精密ノ綾取（あやとり）ヲ成シ得ル大サ二メートル之揚篋（あげわく）ヲ備置，各製糸家よりハ水篋之侭会社江取集メ，此揚篋ニ揚返シ転々テトロ（繊度――引用者）ヲ様シ，成的一様ナラシメ，本年新糸之節より追々逓送致ス可キニ付，其見本トシテ今回壱括差送リ申候，尤提造（さげづくり）ハ相止メ捻（ねじ）（造（づくり））ニいたし，三十六本ヲ以壱括トシ，別ニマークヲ造り括毎ニ是ヲ附スヘシ……群馬県製糸ト唱へ亘瀬川会社改メト称スヘシ，扨今般送ル所ノモノハ，足下も御詳知之通り目今之枯繭故其光沢ハ甚宜シカラズト雖トモ，新繭ニ至リ製造スルモノハ該品より余程上等ナルヲ信ス，頃合ハ十四より十五六（テトロ）迄必揃フ可シ，ムラハ多クナシト雖此多少節（ふし）アルヲ免レス，揚返シハ請合ナリ，事業盛大ニ至ルニ随而揚返場ハ各村へ設立シ，質直之監守人ヲ撰テ是ヲ担任セシム

如斯改メシ品ヲ以引続キ逓送セハ如何ノモノカ，此見本ヲ以貴地商人ニ為試売捌方御掛合被下度，尤徐々事ヲ運候心組ニ付，毎月壱回ノ送高分量弐百斤位ナルヘシ，此見本実地ニ適シ評判宜敷クン者加入人者沢山可有之候間，毎月四五百斤ハ無疑と存候……荷着之節ニ時価御捌被下度候事，右景ニ而目今之相場及将来之都合等委敷御申越被下度，次第ニより官庁へも申立多少保護ヲ乞フノ見込ナリ」[42]

---

(42) 星野家所蔵「星野長太郎書簡」（明治10年3月8日）。

史料中の「テトロ」とはイタリア語の「Titolo」である。「『テトロ』トハ糸ノ長サト量トヲ以テ其細サヲ定ムルナリ」とあり，450メートルで重さ0.05グラムあるものを1テトロと定義している。これは現行のデニール（繊度――

すでに明らかなように，長太郎は居村水沼の座繰農家を組織して組合を結成し，各農家で繰枠に巻取り乾燥する以前の生糸を，組合において2メートルの揚枠（大枠）に揚げ返し，生糸の太さ（織度）を整える。生糸の束装は，提造（前節の注1参照のこと）が目方において不正が多く不評であるため，捻造（生糸を整一にして綛糸を捩った捻糸の36綛分を紐で束ねて1括とする）に改め，新たに商標を付けて出荷する予定であり，今回見本として1括を送付するのでニューヨーク市場での評価を連絡せよ。評価が高かければ，参加する農村も増加するであろうから，各村に揚返場を設け，厳正に監督し，14～15，16デニールの生糸を出荷できる可能性があり，毎月400～500斤（240～300キログラム）の出荷量を確保できる。ニューヨーク市場の評価によって，官公勧業資金を借入れて事業に着手したい，というものである。

これにたいし領一郎からは，取引商人の間で「別段直段ハ不申，乍併如此キ種類之糸ナラ引続キ相送リ呉候ハヽ，時々相場ニ依而何程ニ而も相求メ度旨被申タリ」[43]「渡瀬川糸ハ二メートルニ而ハ少々長過キ可申，水沼製糸之長サハ頃合宜敷……此後当地江向ケ御作リ之糸のデニールは，13/15・15/16位之品尤適当ナルベシ，尤19/20と中品も売レ方よろし」[44]という連絡があった。次いで，渡瀬川糸が打金なしの現金で，「英量1斤ニ付七＄七拾銭相当トノ儀ニテ，多量ノ荷高ヲ請求」[45]してきた。長太郎の試算によれば，「是ヲ横浜当時ノ相場ニ比較スルトキハ，和量百斤ニ付凡弐百五拾円ノ差」[46]益が出ることになる。そこで彼は，揚返工程・生糸処理法などを中心とした製品規格化のための新経営体「改良座繰結社亘瀬会舎」を開業（明治10年8月）した。

長太郎による亘瀬会舎の開業に刺激されて，周辺町村にも改良座繰結社が

糸の太さ）と同様である（『わが国の製糸技術書』千曲会，昭和57年，126～125頁参照）。

これによって，星野長太郎の水沼製糸所がイタリア式の製糸技術を導入し，術語もイタリア語を使用していたことを知りうる。

(43)(44) 星野家所蔵「新井領一郎書簡」（明治10年5月7日）。

(45)(46) 星野家所蔵「新井領一郎書簡」（明治10年6月10日）。前掲「生糸精製勧奨のため資本金貸下指令」。

進み，さらにそれらを統合して精糸会社（明治10年8月，前橋）――精糸原社（明治11年4月，前橋）が開業した。亘瀬会舎は亘瀬組としてこれに加盟し，長太郎は同組頭取の地位にある。ここで，原社の機能を「前橋精糸原社規則」から追ってみるならば，各組合では共同出資し，繭の買入れは「同一ノ糸品ヲ要スル為メ互ニ申合，繭掛リノ世話方一途ニ買入レ，品柄見計ヒ数品合併シテ不公平ナキ様分配」する。「製糸ノ細太ハ原社ノ告知スル『テトロ』ニ応スル様，糸掛リ世話方厚ク注意」し，「糸ノ細太ヲ一様ニシ，其精粗ヲ改ムル為メ一組必ラス揚返所」を設け，「各家ニ製スル糸ヲ小枠ノ侭該所ニ一括シ，枠毎綿密ニ『テトロ』ヲ試シ揚返シ」をする。「製糸目的ノ斤量出来上リ候ハヽ，世話方ニ於テ見極メノ上，精細ニ上中下ノ区分ヲナシ出荷」し，「売却ハ欧米直売ヲ主目トシ，一切本社ニ於テ担当」し，「売揚代価到来セハ，精細ニ計算シ諸費ヲ引去リ，純益金ノ内二割ヲ積金トシ残本価ヲ各家ニ配当」する。つまり，原社に加盟する各組合は，共同揚返場を設立し，また検査・出荷・販売も共同することによって，座繰農家の生糸の標準化・大量化を図り，欧米生糸市場の要請に応えようとしたものであったのである。

改良座繰結社の展開により，前掲第9表から明らかなように，生産高において器械糸，座繰糸（提造）の占めるウェイトが停滞的であったのに比し，改良座繰糸（捻造）のそれは漸増傾向にある。改良座繰の組織化を図った長太郎の役割が，いかに大きかったかを知りえよう。もっとも，第10表にみられるように彼の亘瀬組は，他組合生産高の急増によって，そのウェイトは

第10表　上州改良座繰糸生産高の推移

	明治11年（1878）	明治12年（1879）	明治13年（1880）
上州総生産高　a	3,918 貫	21,631 貫	31,067 貫
亘瀬組生産高　b	621	887	1,170
b/a　%	15.9	4.1	3.8

〔典拠〕上州総生産高は，前掲『日本製糸技術史』70頁，亘瀬組のそれは，星野家所蔵「亘瀬組創業以来精算表（明治15年6月）より作成。
（注）① 貫未満は切捨て。
② 亘瀬組の中には，山田組・黒川組分が含まれる。

低落を示している。とはいえ，亘瀬組（明治11年の組合員数113名）に加入している零細製糸農家にとっては，前述の規則にしたがって，収益のうち20%を積金として差引いた残金が分配されるため，年度によって異っているが平均して年間30円程度の収入が確保されることになった（第11表参照）。

こうして，長太郎は器械製糸の導入・改良座繰の推進・生糸の海外直売など，積極的に企業活動を展開していった。しかしその半面では，水沼製糸所の設備・営業資金の調達にあたり，前述のように官公勧業資金を借入れ，さらに不動産担保による借入れあるいは不動産を買却しており，そのため明治20年代半ごろの星野家土地所有状況は，第12表のように急激な減少がみられる。すなわち，明治初期の土地所有243町5反（第3表参照）と比較すれば，実に70.3%の喪失である。しかも差引き72町3反の約60%までが担保となっている。ハイ・リスクは初期企業者活動にとって避けえなかったとは

第11表　亘瀬組の経営の推移

（単位：円）

	明治11年（1878）	明治12年（1879）	明治13年（1880）
支　出 a	28,581	52,153	71,520
収　入 b	32,577	56,233	82,970
b−a	3,996	4,080	11,450

〔典拠〕前掲「亘瀬組創業以来精算表」より作成。
（注）① 円未満切捨て。
② 亘瀬組の中には，山田組・黒川組分が含まれる。

第12表　明治中期の星野家土地所有状況

	反　別 a	内抵当分 b	b/a
	反	反	%
田	8.922	7.804	87.6
畑	418.301	351.116	83.9
宅地	14.910	3.205	21.4
山林	272.910	71.525	26.2
原野	−	−	−
畦畔その他	8.121	−	−
合計	723.204	433.720	59.9

〔典拠〕星野家所蔵「耕宅地山林収支概表」（明治24年8月調）より作成。

いえ，長太郎の現実は余りにも厳しいものであった。

それにもかかわらず，長太郎は明治20年代初めに先進伊仏蚕糸業の視察に出発する。資金は領一郎に負うところが大きかったようであるが，家政事情が悪化していたこの時期に，彼を洋行に駆り立てた動機は何か。かつて彼は，領一郎をアメリカ・ニューヨークに送り出す際の書簡において，

……我等も少シク洋学出来候ハヽ，決而足下抔ニ不譲候へとも，実ニ千悔不及残念此事也[48]

と記している。恐らく，洋行は彼の夢であり，水沼製糸所へ導入したケンネル式（イタリア式）の繰糸を，実見したいというロマンを抱き続けてい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47) 星野家所蔵「前橋精糸原社規則」（明治11年4月）参照。

(48) 星野家所蔵「星野長太郎書簡」（明治8年12月6日）。

On inspection of Hoshino-Chotaro for the silk-reeling Industry in Italy and France

Kato, Ryu*

요 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동아시아제국(본 발표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한다)에서,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각기 「東道西器」, 「中体西用」, 「和魂洋才」라고 하는 유사한 슬로건을 내걸고 공업화를 진척시켜 왔다.

그런데 당시 이들 3국은 각각의 조약국 간에 법권(法權)·관세자주권 등의 면에 있어서 불평등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들 3국의 공업화는 그 주도자들이 기업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상기의 슬로건을 내걸었다고 해도 선진 구미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성이 있었을 것이다.

본 발표는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례 연구이다. 여기에서 언급한 것은 일본거류지 요코하마에서 외국상인과의 생사거래에 대항해서 민간기계방적공장(民間器械製糸所)을 설립하고, 미국 뉴욕으로 생사의 직수출을 추진한 한 생사업자(星野長太郎)의 기업활동이다. 이와 같은 기업활동은 동일하게 거류지 무역을 피할 수 없게 된 중국의 생사업자 사이에서도, 또 한국의 생사업자 사이에서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표는 앞으로 공동연구의 실시에 의해 19세기 후반의 이들 3국을 소위 비구미제국으로서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공업화를 주도한 기업가의 경제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성에 주목하기 위한 소재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Key-words : 공업화, 생사업자, 星野長太郎

* Proffessor of Meji-University in Japan

中國國有企業改革的曆史性考察

A Historical Study on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Reforms

劉曙野·許桂娟*

目　次

Ⅰ. 導　言
Ⅱ. 中國國有企業制度的簡單回顧
Ⅲ. 中國國有企業的改革曆程
Ⅳ. 國有企業改革的難點
Ⅴ. 今后的方向
要　約

一，導　　言

衆所周知，1949年中華人民共和國成立以來，中國人在戰爭的廢墟上建立了社會主義制度，取得了令世界矚目的成就。從全國解放的1949年起到中國共產黨的十二屆三中全會總結曆史經驗，作出「中共中央關于經濟體制改革的決定」的1984年爲止進行計算，社會總產值比1949年增長了22倍，工農業總產值增長了21倍，國民收入增長了14倍，按可比价格計算的年平均增長速度，在1952-1984年間，社會總產值爲8%，工農業總產值爲8.2%,國民收入爲6.2%。這種長達三十多年的高速增長在世界上是較爲罕見的。否認這一點，就不能眞正全面了解中國改革開放的曆史基礎。

在社會主義社會，經濟管理，尤其是對國有企業的管理占有突出的地位。鄧小平于1978年12月23日在中國共產黨曆史上占有重要地位的十一屆三中全會上所作的"解放思想，實事求是，團結一致向前看"的講話中，要求全黨和全國人民研究新情況，解決新問題，尤其是要注意研究管理方法，管理制度，經濟政策這三個方面的問題。從鄧小平要求重新研究和解決經濟管理的新問題提出開始，我國的國有企業開始了企業制度的改革，其間經曆了一系列成功和挫折，積累了正反兩方面的經驗和教訓。到中國共產黨十四屆三中全會，在理論和實踐上終于出現了重大發展，明確提出了企業改革的目標是建立和完善現代企業制度。

* Proffessor of Chang－Chun Shui－Wu University

二，中國國有企業制度的簡單回顧

中國的社會主義企業制度是在50年代初形成的。在1949年到1952年的國民經濟恢復時期，中國政府沒收了官僚資本主義企業，并把它改變爲國營企業，對這些企業進行了民主改革和生產改革，初步改變了企業制度，企業的機構和經營管理制度，把共產黨在戰爭時期興辦公營企業的成功做法移植到了這些企業。主要內容有：

(一)在企業中堅持共產黨的領導，加强政治思想工作(這是至今仍然有效的做法)；

(二)確立了企業的指導思想，卽以生產爲中心，用生產來保證市場的供應和支持新生的紅色政權(當時經濟基礎薄弱，物資缺乏，急需大量生產)；

(三)在企業中實行三大民主制，卽政治民主，經濟技術民主和管理民主(當時，所有職工都參加企業的決策過程，人人搞技術革新，都參加企業管理)；

(四)發揚自力更生，艱苦奮斗，勤儉辦企業的精神(從解放后到改革開放之前，'自力更生，艱苦奮斗'一直是中國經濟建設的主要精神力量，隨着改革開放的不斷深入，一方面提倡自力更生，艱苦奮斗，另一方面也提倡'自己爲主，外援爲輔'，這無疑是正確的。勤儉辦企業的思想至今仍是應該提倡的)。

在這一時期，對一些民族資本的私營企業雖然沒有改變其原有的企業制度，但也采用了多種形式，發揮工人的監督作用。主要有兩種形式：一種是設立"工人維持委員會"，這是由于一些資本家不了解共產黨的政策而出走，或在"五反運動"中有個別資本家因嚴重違法而被判處徒刑造成部分私營企業當時處于無人管理，無人負責所采取的辦法。當時的工會組織與職工群衆在共產黨和政府的支持下，承擔起直接管理企業的責任，推選出代表，建立起"工人維持委員會"。另一種形式是私營企業中設立"增產節約委員會"。這種情況主要是在"五反運動"之后，絶大多數職工政治覺悟空前提高，爲了團結和監督資本家搞好生產，在私營企業中普遍建立了"增產節約委員會"。對企業生產，經營和行政管理中的重大問題，如生產財務計划，人事任免，職工工資，生活福利設施，企業領導制度等，都由該委員會討論。

到1952年底，恢復國民經濟的任務已經完成。1953年起，進入大規模經濟建設時期，開始執行第一個五年計划。國家集中大量人力，物力，財力，開始興建北京火車站，人民大會堂，長春第一汽車制造廠等156項重點工程，并在全國範圍內全面地引進蘇聯的企業制度。由于當時國家建設資金不足，技術力量缺乏，就需要對國家集中人力，物力，財力所進行的重點建設實行統一管理，制訂統

一計划。蘇聯幫助建設的這156項建設和由限額以上的694個建設項目的統一管理爲中心，建立起集中統一的管理體制，制訂了第一個五年計划，并且對這些基建項目實行了以中央各部門爲主進行管理的方式。中國的國有企業引進蘇聯企業制度模式最早是東北地區(即遼寧省，吉林省，黑龍江省)。早在全國解放前夕，東北地區的公營企業就已經采用了蘇聯企業制度模式了。這種企業模式使東北地區的公營企業在贏得解放戰爭勝利和國民經濟恢復方面發揮了極爲重要的作用。所以在第一個五年計划初期，東北的經驗在全國逐步得到了推廣。

當時，全面學習蘇聯，主要學習蘇聯的管理原則和企業制度模式。蘇聯的經濟管理原則是：1，民主集中制原則，即列寧所說的民主基礎上的集中，集中指導下的民主；2，經濟核算制的原則，經濟核算是一個社會主義的經濟範疇，它反映國家，企業和職工之間的經濟利益關系；3，一長制的原則，中國從1951年到1954年間，部分企業學習蘇聯的管理經驗，開始推行一長制，正式名稱叫"廠長負責制"。至今大部分工廠仍實行廠長負責制或黨委領導下的廠長負責制。所謂黨委領導下的廠長負責制是指日常工作由廠長作出決策，重大問題由黨委集體研究決定，廠長往往是黨委的主要成員之一，在黨委會上有很大的發言權和決定權；4，經濟責任制原則，總負責人對工廠的經濟問題負全部責任；5，責任和利益相結合的原則，把個人利益同責任，經濟效益結合起來；6，社會主義物質利益原則，重視獎金的作用。

"第一個五年計划"期間，中國的企業制度基本上是蘇聯企業制度的翻版。具體特點有以下几點：

(一)企業的主要經濟活動，即生產，建設，供應，銷售，收入分配，新產品開發，服務以及職工待遇等，完全實行指令性計划，企業只不過是上級主管部門的活的工具，只能按主管部門的意志行動；

(二)按照責任制的原則，在企業內部普遍實行嚴格的計划管理，推行生產作業計划制度，建立起了生產責任制度；

(三)實行技術管理，推行工藝流程，技術檢查制度，制訂技術標准，勞動定額等，建立起技術工作秩序；

(四)建立了企業經濟核算制和指標考核體系，使對企業承擔的國家計划任務有了明確的考核標准；

(五)開展了社會主義勞動競賽，貫徹了物質利益原則，實行了各盡所能，按勞分配的分配制度；

(六)在部分企業的領導制度中，推行了蘇聯的"一長制"經驗。

以上六個特點中，有些特點是至今仍是有效的，但是在根本的問題上存在着嚴重的弊端。病因所在就是"國有國營"，高度集中的計划管理，而這個"計划"往

往是表面上的計划，實際上只不過是主管部門最高領導人的主觀意志。當時，八年抗日戰爭和三年解放戰爭剛剛結束，中央最高領導層自不用說，各部門的領導也大都是剛脫下軍裝的部隊轉業干部，他們缺乏經驗，缺乏知識，不顧中國的實際情況而照搬硬套蘇聯的模式，以天眞的想法和美好的理想制訂企業的生產及銷售計划。國家的各職能部門和各級地方政府既是企業的擁有者，又是企業的經營者。每個企業不過是全國這個大工廠的一個車間，一個職工生，死，老，病，傷，殘無所不包，無所不管的小社會。以"一五"期間建設的中國最大最早的汽車廠--長春第一汽車廠爲例，該廠近有十萬職工，廠方負責職工的一切福利，包括住房，醫療等一切日常生活的服務項目，還負責安排子女，親屬的工作，還要辦子弟學校，商店，郵局，儲蓄所，派出所等等。總之，全廠五十多萬家屬的生活由廠方負責。一個廠不知不覺中變成了小城市。其中包括大城市所具備的一切條件，眞可謂"麻雀雖小，五臟俱全"。

這種企業制度的主要弊端是：1，在一個相當長的時間，對我國長期存在商品經濟和价值規律及所發生的作用在理論上認識不淸，因而對企業的地位，職能認識不淸，企業的地位往往隨着國家宏觀經濟政策的調整而發生變化；2，否認企業是一個獨立的經濟實體，認爲企業不具有自己獨立的財產，財產一律都是國家所有，企業沒有所有權，企業是上級主管部門的附屬物。企業并不是一個獨立的市場主體，沒有任何決策權，生產什么，怎么生產，生產多少，怎么銷售等都由上級主管行政部門決定，企業根本無法隨着市場的變化對資源進行優化分配；3，企業的廠長或經理是上級行政機關指令的執行者，其任免本身也是上級決定的。因此，他不需要研究市場，不需要研制適銷對路的產品，不需考慮經濟效益的好壞，只是按上級的指示行動就行。廠長，經理本身沒有產值，產量，成本，利潤，銷路，服務等最基本的經營觀念。上級主管部門任命廠長經理時也不考慮被任命者的經營思想，經營能力等因素，只是把它當作一種待遇，什么行政級別的干部就擔任什么行政級別的企業的領導，把企業按行政級別分爲副科級，科級，副處級，處級，副廳級，廳級等；4，國家統一規定企業的分配，并以政策法規的形式加以固定化，企業無條件服從，卽所謂"國家調撥"。企業對自己生產的產品沒有銷售權，只是把根據上級主管部門的指示生產出來的產品悉數交給上級主管部門就萬事大吉，由于上級的指示有變化而積壓造成的損失也不承擔經濟責任，出現的虧空當然由上級補貼。企業完全沒有競爭的壓力，職工也沒有失業的壓力。因爲由上級決定企業使用多少職工。因此，管理者(嚴格地說是上級命令的執行者)和勞動者都沒有改善經營，降低成本，使用新技術，開發新產品的積極性和主動性。

自從1953年的第一個五年計划時期開始的這種企業制度，一直持續。進入

第二個五年計划時期，又掀起了一系列既不完全是經濟振興運動，又不完全是政治運動的不倫不類的運動。政治運動中危害最大的是1957年開始的"反右運動"。這次運動把几十萬敢說實話的大有作爲的知識分子打成右派。以1958年的"大躍進"爲例，當時的不少人頭腦發熱，要在十五年內趕上并超過美國和英國。全國城鄉用土爐大煉鋼鐵。"一五"期間開始形成的上述企業制度几乎毁于一旦。無論是什么企業，都要參加大煉鋼鐵的運動。當時的企業制度完全被大躍進這個運動所取代。當人們對這樣狂熱的運動有所認識，頭腦剛剛開始清醒的時候，又來了一場更大的災難性的運動--文化大革命。1966年開始的這場運動，把企業制度，企業管理，企業經營，追求利潤，市場營銷，新産品開發等一切經濟活動都當作資本主義的"毒草"全部鏟除。企業是按"革命"的邏輯運營的。長達十年之久的這場災難性的狂熱運動，把中國的經濟推向了崩潰的邊緣。到文化大革命結束的1976年10月爲止，可以說，中國几乎沒有企業制度可言。這樣一算，中國的企業制度只是在"第一個五年計划"期間建立的蘇聯模式。這個存在許多問題的企業制度，嚴格地說，也只維持了五年。經過1976年10月--1978年12月中國共産黨十一屆三中全會之間的兩年反思與整頓時期，中國開始着手進行現代企業制度的建立。在中國共産黨的曆史上，十一屆三中全會占有非常重要的地位。

三，中國國有企業的改革曆程

從1979年開始進行的中國國有企業改革大致可以划分爲以下几個階段：

第一階段

擴大企業經營自主權，增强企業的活力，不僅是城市經濟體制改革的出發點，也是城市體制改革的目的。企業改革的第一階段包括1978年末到1980年。以擴權試點爲突破口，着重調整國家與企業的經濟關系，其主要內容是擴權，減税，讓利，使企業擁有一定的自主財産和經營權力。與以往的企業只是上級主管部門附屬物的那個時候相比，是一次很大的飛躍。

擴大企業自主權的試點工作，最先出現在四川省。1978年10月，四川省委在重慶鋼鐵廠，成都無縫鋼管廠，寧江機械廠，四川化工廠，新都氮肥廠和南充綢廠等六家企業開始擴大企業自主權的試點，規定企業在完成國家指令的增産增收目標以后，可以提留少量利潤。1979年初，四川省委在總結六家擴權企業經驗的基礎上，把試點面擴大到100家，并擬定了新的産權辦法，主要內容有：企業在全面完成國家計划的前提下，按照需要可以挖掘潛力，組織生産來料加工；

在征得主管部門同意之后，可以銷售商業，物資，供銷部門不收購的產品；試制新產品可以自銷和組織展銷，接受用戶檢驗；分別不同情況，企業按工資總額或計划利潤指標，進行計划內利潤留成和超計划利潤留成；折舊基金歸企業部分由40%提高到60%；流動資金試行全額信貸；除經常性生產獎外，企業還可以根據超額完成經濟技術指標的情況，提取超額獎；經省主管部門同意后，可以引進新技術新設備，可以利用外資，對外裝配加工；企業中層以下干部由企業黨委任免，報上級有關部門備案，不再報批。

在四川省擴大擴權試驗的同時，1979年5月，國家有關部門也在北京，天津，上海選擇首都鋼鐵公司，天津自行車廠，上海柴油機廠等8家企業進行擴權試驗。1979年7月，國務院頒布了「關于擴大國營工業企業經營管理自主權的若干規定」，「關于國營企業實行利潤留成的規定」，「關于提高國營工業企業固定資產折舊率和改進折舊費使用辦法的暫行規定」，「關于開征國營工業企業固定資產稅的暫行規定」，「關于國營工業企業實行流動資金全額信貸的暫行規定」等五個文件，并要求各地區，各部門選擇少數企業進行試點。到1979年底，全國擴權試點企業增加到4200家，1980年又增加到6600家，占全國國營工業企業總數的16%，產值和利潤分別占60%和70%。1984年5月，在總結前几年擴權試點工作經驗的基礎上，國務院作出了「關于進一步擴大國營工業企業自主權的暫行規定」，在生產經營計划，產品銷售，產品价格，物資選購，資金使用，機構設置，勞動人事，工資獎金，聯合經營等十個方面進一步擴大了企業自主權。

此階段的改革雖然比以往的企業制度大有改善，但還很不完善，主要問題有：1，企業仍然是上級主管部門的附屬物；2，產銷計划仍然由上級部門制定；3，企業自主權是國家指令前提下的自主權；4，最高領導層的任免權仍屬于上級部門；5，所產生的利潤不能自由支配；6，企業的市場競爭意識沒有形成；7，企業的總的指導思想仍是計划經濟，企業經營的首要目的是完成國家計划；8，改革只停留在試點階段，大部分企業仍在原有企業制度下運作；9，企業的經濟效益仍然低下。

第二階段

包括1981年到1982年，主要內容是試行經濟責任制。所謂經濟責任制就是在國家計划指導下，以提高經濟效益爲目的，把經濟責任，經濟權力，經濟利益結合在一起，正確處理國家，企業，勞動者三者經濟利益關系的綜合性管理制度。從1980年開始，國家在部分地區，企業試行了多種形式的盈虧包干責任制和記分計獎，計件工資，浮動工資等辦法，逐漸形成了以責，權，利爲特征的經濟

責任制。從1981年起，在擴大試點的基礎上，對工業企業試行以利潤包干爲主的經濟責任制。這種經濟責任制以提高經濟效益爲目的，同時也調動了企業的積極性，因而企業擴權改革又進了一步。但是這一階段的改革還有以下問題：1，企業還是上級部門的附屬物，許多決策必須經過上級部門才能作出；2，各種經濟關系沒有理順；3，少數人鑽政策的空子大發橫財；4，國家集中的財力過少；5，資金過于分散，浪費嚴重；6，企業仍是國家計划的實行者，在產，供，銷等方面還是沒有自主權。

第三階段

包括1983年到1986年，主要內容是利改稅。以前的向國家上繳利潤的方式存在許多弊端，國家無法准確把握每個企業的利潤情況，國家和企業之間的利益關系沒有固定，實踐中出現了不少矛盾。這主要表現爲企業之間留利非常不平衡，有的企業上繳的多，有的企業以種種理由少繳或不繳，出現了苦樂不均的現象。爲解決這個矛盾，1983年6月，在各地試點的基礎上，在全國範圍內實行了以利稅并存爲特點的第一步利改稅。主要內容是：把國營企業過去上繳國家的利潤改爲按55%的比例向國家交納所得稅，稅后利潤在保證企業留利后分別按固定比例，定額包干，遞增包干，調節稅等八種不同辦法上繳國家。第一步利改稅對企業留利作了適當調節，把國家與企業的利益分配關系用稅的形式固定下來，取得了較好的效果。據政府統計，實行第一步利改稅的全國國營工業企業1993年完成產值比上年增長9%，利潤增長10.9%。但是，第一步利改稅有不完善的地方，主要是稅種單一(只有企業所得稅)，難以發揮稅收調節經濟的作用；稅后利潤分配辦法比較復雜，企業與國家的利益分配關系沒有定型，企業之間留利相差懸殊，苦樂不均現象仍然嚴重。爲解決這個矛盾，國家又進行了第二步利改稅。第二步的特點是把稅利并存過渡到以稅代利。1984年國務院批轉財政部「關于在國營企業推行利改稅第二步改革的報告」，要求從當年10月1日起試行。第二步利改稅將當時的工商稅按照納稅對象划分爲產品稅，增值稅，鹽稅和營業稅，獎第一步利改稅設置的所得稅和調節稅加以改進，增加資源稅，城市建設費，房產稅，土地使用稅和車船使用稅。

利改稅改革是比較成功的。具體意義在于：1，較好地解決了國家與企業的利益分配關系，并且以法令，法規的形式加以固定，保證了國家財政收入的穩定增長；2，打破企業內部的"大鍋飯"，企業照章納稅之后，可以自己支配利潤；3，有助于价格體制改革，緩解了因价格體系不合理所帶來的矛盾，使企業能大致公平地競爭；4，企業不再按隸屬關系上繳利潤，有利于減少行政干預；5，使企

業逐步減少對行政機關的依附關系。

盡管第三階段的利改稅改革取得了良好的成績，但企業的計划經濟的根本性質沒有變，執行國家指令的作用依然如舊，隸屬關系沒有改變，行政干預仍然嚴重，企業在生產，銷售，服務，新產品開發等基本經營活動中的自主權還遠遠沒有得到保障。因此，此次的改革也是一次計划經濟大框架里邊的較細致的修補而已。

第四階段

包括1987年到1991年，主要內容是完善企業的經營機制。這時，企業改革進入了全面推行以承包制爲特征的轉換企業經營方式階段。1987年國務院在「政府工作報告」中明確指出，以后改革的重點放在完善企業經營機制上，根據所有權與經營權相分離的原則，實行多種形式的承包經營責任制。到1988年，工商企業的承包比例已達90%，其中大中型企業達到50%。同時，各地區不同行業也進行了租賃制，股份制。"兩保一掛"(一保上繳稅利，二保技改任務，工資總額與上繳利稅掛鉤)承包經營責任制，工資總額與經濟效益指標掛鉤承包制，上繳利潤基數包干或遞增包干，單位產品(或產值)工資含量包干，投入產出包干制，利潤包干或虧損包干責任制等。上述各種包干制的共同特點是：1，都有確定的上繳利潤基數和遞增比例，上繳利稅任務必須完成，否則由企業自由資本補齊；2，企業完成上繳任務之后，剩余利潤留給企業；3，等于國家把國有資產有代价地交給企業經營和使用，即與農民交公糧之后留下余糧自由支配是一個道理；4，國家與企業的責權利關系均通過契約關系，減少對企業的行政干預。

以上改革受到了良好的效果，有几個實例說明這一點。實例一，從1979年到1986年，首都鋼鐵公司實現利潤連續8年平均遞增20%，人均創稅1978年爲4717元，1985年提高到12355元，居全國同行業首位。實例二，全國冶金系統1986年先后對42個大中型企業實現利稅共25.8億元，比上年同期增長18.4%，而未承包的企業只增長4.8%。實例三，吉林省是全國實行承包制最早，效果最好的省份。該省重點抓的實行承包制的鐵合金廠，碳素廠，吉林化學工業公司，長春紡織廠等職工人數一萬人以上的十個大型企業，1987年上半年實現利稅比前一年同期增長39%以上，上繳利稅增長27.2%，比上年淨增利稅1.96億元，占全省預算內工業利稅增長額的72.4%。

承包制改革在曆次改革中效果是顯著的，它對調動企業的經營積極性和保障國家財政收入方面起到了積極的作用。但是，它有許多不完善的地方，還是沒有根本上擺脫計划經濟的框框。具體問題有：1，上繳利稅的任務是國家下達的，

盡管與下達產量，品種，銷量，价格，售貨對象等做法相比進步了許多，但根本上講，企業還是以完成國家任務爲主要目的，企業自主權還是國家計划，指令指導下的自主權。企業的生死問題還是靠國家來決定。因此可以說，此次改革是一次計划經濟框架之內的較全面的修改和修補；2，由于實行限期目標責任制，出現了行爲短期化的問題。承包人爲了在自己的承包期內盡可能多創利稅，拼設備，拼消耗，只顧眼前利益，不注重企業的長期發展；3，由部門承包帶來的行政干預問題。各個主管部門爲了使自己下屬企業完成國家指標而經常下企業干預生產，銷售等一系列正常的經營活動，反而給企業帶來了不必要的負擔；4，國家與企業"一對一"談判來確定承包基數。這是一種不科學的方法。國家一方想方設法多收利稅，相反，企業一方卻千方百計地少上稅，多留成。而且確定基數沒有准確地把握企業的現狀和潛在的能力，因而造成了國家與企業利益分配上的不公平現象。

第五階段

以1992年鄧小平的"南巡講話"爲起點，中國的企業改革加大了力度，加快了步伐。鄧小平在此次講話中，首次提出了計划經濟不是社會主義，社會主義也有市場，資本主義也有計划的觀點。1993年召開的中國共產黨十四大根據鄧小平的理論明確了中國經濟體制改革的目標是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而且還明確了建立現代企業制度是國有企業改革方向。這個時期企業改革的特點是：按照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的目標要求，建立適應市場經濟要求的產權明晰，責權明確，政企分開，管理科學的現代企業制度，把國有企業塑造成獨立的法人實體和市場經濟主體。從1992年，中國開始了股份制，公司制的試點與推廣，把國有企業改造成公司制，股份制企業。1994年初，國家經貿委在全國工商企業中實施了"轉機建制，萬千百十"的企業改革規划。其主要內容是：1，在一萬多戶國有大中型企業中不折不扣地貫徹落實國務院于1992年7月頒布的「全民所有制工業企業轉換經營機制條例」，實行"企業財務通則"和"企業會計准則"，進行清產核資；2，對一千多戶國有大中型骨干企業及企業中的國有資產，通過委派監事會形式來實施監管；3，選擇一百多戶大型骨干企業進行建立現代企業制度的試點；4，選擇18個城市進行企業"優化資本結構"試點。

四，國有企業改革的難點

衆所周知，國有企業是中國國民經濟的支柱，是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系

的基石，國有大中型企業在中國經濟中仍然占有絶對重要的地位，甚至可以說，國有大中型企業改革的成敗將決定中國經濟改革的成功與否。中國的財政收入，能源，交通，主要原材料，新產品開發，加工技術，技術裝備等主要經濟因素都是由國有大中型企業提供的。因此，中國政府把改革的重點放在國有企業上，力爭在本世紀內初步建立起現代企業制度。但是，由于中國長期實行了封閉的計划經濟體制，几十年來積累起來的問題也很多，難以一次性全部解決。可以說，國有企業改革的過程就是克服和消除以往的各種弊端的過程。國有企業改革的難點也在與此。以下介紹几個主要難點：

1，思想沒有解放，觀念仍然陳舊

由于傳統計划經濟體制的長期影響，人們對于企業改革過程中出現的新事物尙難完全接受，仍然在姓"社"姓"資"的問題上徘徊不定，不敢大膽想，大膽創新。企業領導人怕犯錯誤，普通職工怕丢飯碗，不少人總是顧前顧后，心有余悸。

2，企業的自主權沒有完全落實

改革企業，搞活經濟，首先要解決企業的自主權的問題。但是，在近二十年改革過程中，企業的眞正自主權問題仍未徹底解決。關于這個問題，中央政府已發布不少文件，但仍有以下三種情況：一是5項自主權(生產經營決策權，產品定价權，產品銷售權，物資采購權，留用資金支配權)多數企業已經或基本落實，二是有5項自主權(資產處置權，人事管理權，機構設置權，聯營兼并權，工資獎金分配權)到位難度大，只有部分落實。三是4項自主權(投資決策權，進出口權，勞動用工權，拒絶攤派權)基本沒有落實。

3，企業負擔過重

目前，中國的不少國有企業活力不足，效益下降，原因是多方面的。如政企不分，行政干預，原材料漲价，管理不善，技術老化，資金短缺等。除此之外還有一個重要原因，就是企業負擔過重。有以下几個方面：

(1)債務負擔重

以前的企業把所創利潤全部上交國家，需要擴大再生產的資金也由國家撥付，企業沒有債務。但是，在目前的財稅體制下，企業盈利的80%要上交國家，企業的留利和自由資金極少，連簡單再生產也難以維持。這就不得不全部依賴于銀行貸款。如今國有企業85%以上的流動資金來自銀行貸款，國有企業的資產負債率達70--80%，遠遠高于50%的正常水平，不少企業已達100%以上。

(2)職工安置負擔重

由于曆史原因，國有企業成爲安置勞動力的主要場所，長年累月，導致了企業內部機構臃腫，人浮于事，富于人員過多。在現有國有企業中，在崗多余人員在30%以上。由于目前社會保障制度不健全，企業中的富于人員還難以全部推向

社會。

(3)社會負擔重

企業辦社會，是我國國有企業的通病。由于傳統體制的影響，國有企業并不是單純的生產經營單位，而是基層政權單位和社會單位，擔負着許多社會職能。一是承擔一些政府職能，企業中設有公，檢，法機構，五講四美辦公室，計划生育機構，武裝部等等。二是承擔了服務職能，如商店，醫院，學校，托兒所，食堂，招待所，電影院等。三是承擔了社會福利職能，如職工的生老病死，衣食住行用等。

(4)企業內部管理不善

國有企業活力不足，效率低下的重要原因，是企業內部經營管理不善。具體表現爲：1，浪費嚴重；2，消耗大；3，新產品開發能力弱，產品更新換代周期過長。長春第一汽車廠老"解放牌"卡車三十年如一日生產一種型號的汽車是一個典型實例；4，產品質量差，經濟損失大；5，財務管理制度不健全，執行中存在很多人爲的因素。

(5)政府的職能尙未完全轉變

新中國成立以后，由于長期照搬蘇聯模式，建立了高度集權的計划經濟體制，政府實際管了許多不該管，管不了，管不好的事情，使企業淪爲行政機關的附屬物。經過1979年以來的一系列改革，這種局面有所改變，但政府職能沒有發生根本性的轉變。由于政府旣擁有國有資產所有權，又擁有企業經營決策權，企業很難做到自主經營，自負盈虧，自我發展，自我約束。因此企業還沒有完全向市場主體轉變，市場發育不充分，市場機制也起不到應起的作用。

五，今后的方向

經過近二十年的改革，國有企業的面貌發生了深刻的變化。但如上所述，還存在許多問題。要繼續深化改革，使國有企業成爲眞正的市場主體，就必須做到以下几點：

一是從單項改革轉向配套改革。改革開放初期企業改革的特點是對某一突出的問題進行專項性改革。如對企業無權無利的問題只進行擴大企業自主權的改革。應從多方面，多層次，多角度進行配套改革。

二是改革的方式由單一性轉向多樣性。各行業，各地區，各企業都要根據自己的特點選用適當的改革方式，不能只用那種"先試點，后推廣"的辦法，應該在以公有制爲主體的前提下，積極發展個體經濟，私營經濟等。

三是由重視現有利潤分享轉向注重資產經營，正確處理經濟利益關系。

四是改革的手段從政策性調整轉向制度創新。

五是要徹底轉變政府職能。政府必須從具體的企業管理中撤出來，取消上級主管部門，不要干預企業的正常經營活動。

六是政府要爲解決失業等社會問題付出更大的努力。

A Historical Study on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Reforms

Liushuye · Hsu, Kuei-Chuan*

要 約

1949년 10월 1일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한 중국은 해방 전의 관료자본주의 기업을 몰수하여 그것을 국유기업으로 만들고 거기에 구소련식 기업경영방식을 접목시켜 철저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수립하였다. 그 당시 기업경영의 경험이 없었던 중국정부로서는 유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구소련 모델의 특징은 첫째, 생산, 건설, 공급, 판매, 수입분배, 제품개발, 서비스, 투자 등 기업의 주요한 활동은 완전한 계획에 의해 실시되며 정부부처의 지시에 따라 기업을 운영, 둘째, 책임제의 원칙에 따라 철저한 계획관리를 실시하여 생산의 계획성을 강조, 셋째, 기술관리 제도와 계획성 원칙하의 기술관리제도를 도입, 넷째, 기업의 경영핵산제와 지표도달기준을 설정, 다섯째, 사회주의식 노동경쟁제도를 도입, 일부 기업에서는 일장제를 실시.

이러한 특징을 가진 기업경영제도는 그 당시의 사회제도나 경제적 기반으로 보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경영방식임은 틀림 없었다. 병근(病根)은 시장의 가치법칙을 무시한 관료주의식 관리방식에 있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 생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정부(지방정부를 포함)가 결정하며 기업은 정부부처의 부속기관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기업의 최종 목적인 이윤추구는 있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투성이인 기업경영 메커니즘도 사실상 제1차 5개년계획 시기인 1953~1958년 사이에만 그런대로 실시되고 그 후에는 "반우파투쟁", "대약진" 등 일련의 정치운동에 의해 기업경영의 기반자체가 붕괴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1966년에 시작되어 1976년에 끝난 "문화대혁명"은 건국 이후 최대의 내란이었으며 위기였다. 그 시기에는 경제활동 자체가 큰 죄로 취급받았으므로 기업경영제도가 없어져 버렸으며 중국의 경제 전체가 붕괴에 직면해 버렸다.

1978년 등소평의 복귀와 11기 3중전회가 중국 개혁개방의 기점인 동시에 기업개혁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1978년에 시작된 기업경영제도의 개혁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단계는 1978년말부터 1980년까지 기업의 경영자주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두번째 단계인 1981년부터 1982년 사이에는 이른바 경제책임제의 실시가 주요 특징이며,

* Proffessor of Chang-Chun Shui-Wu University

세번째 단계인 1983년부터 1986년 사이에는 이윤납부를 세금납부로 대체하는 개혁이었다. 네번째 단계인 1987년부터 1991년 사이에는 기업의 경영메커니즘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든 국유기업을 상대로 전면적인 도급제를 실시하였다.다섯번째 단계는 1992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등소평의 "남순강화"를 계기로 더욱 철저하고 전면적인 개혁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1993년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4차 대표대회에서 정식으로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키로 하였으며 그로부터 중국은 사회주의란 규정어가 붙은 시장경제체제에 돌입하였다. 그때로부터 이전의 "국영기업"을 "국유기업"으로 개칭하고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시키고 있다.

국유기업은 중국 국민경제의 기둥이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초석이기도 하다. 중국의 개혁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결국 국유기업 개혁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의 개혁에 최대의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건국 후 몇십년 동안 실시해 온 폐쇄된 계획경제의 병폐들도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아직도 계획경제의 낡은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기업의 경영자주권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투자권, 수출입권, 외자도입권 등 중요한 권한들이 아직까지 기업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 재산 처분권, 인사권, 기구설치권, 합병권 등 권한도 아직 완전히는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기업의 부담이 과중하다. 주요하게는 채무부담, 종업원의 일자리 안치부담, 사회적 부담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기업의 경영수준이 낮다. 낭비와 소모가 많고 신제품의 개발능력이 약하며 제품의 질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제도도 미비한 점들이 많다. 다섯째, 정부의 기능이 완전히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므로 기업경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여년간의 개혁을 거쳐 국유기업의 모습은 크게 변하고 있다. 향후의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 두 개 분야의 개혁이 아닌 종합적 개혁을 실시해야 하며, 둘째, 업종별, 지역별로 각자의 특성에 맞는 개혁방안을 모색하고, 셋째, 자산경영을 중시하고, 넷째, 이왕의 정책성 조절에서 벗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다섯째, 정부의 기능을 철저히 개변시켜 정부가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를 마련하며, 여섯째, 정부는 실업대책마련에 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Key-words : 관료주의, 중국의 개혁, 국유기업

한국기업의 對중국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상품소비시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cheme for Advancement of Korean Firms toward the Chinese Market
-Centering Around the Commodity Consumption Market-

송 재 훈**

目 次

Ⅰ. 머리말
Ⅱ. 최근 중국의 소비시장환경
Ⅲ. 중국 소비시장의 특성
1. 소비시장 특성
2. 소비자구매 특성
Ⅳ. 한국기업의 중국소비시장 진출방안
1. 당면 문제점
2. 진출확대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Ⅰ. 머리말

1996년 2월말 미국 CIA가 의회에 제출한 「세계 10대 경제권 변화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재미있는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 내용 중 국가별 경제규모의 순위변동에 의하면 앞으로 약 20년 후인 2020년에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무려 20조40억달러로 단연 세계 최고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이 시기가 되면 미국의 경제규모는 중국의 67.8%, 일본은 중국의 25.7%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예측이다. 이러한 예측을 근거로 할 경우 중국은 2000~2010년의 기간 동안에도 약 7.5%의 평균성장율이 유지되고, 국내소비시장 규모도 약 5,00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정부도 이와 같이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자국경제력의 위상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들어 경제정책을 성장위주에서 질위주의 정책으로 바꿈과 동시에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WTO가입과 관련,

* 본 논문은 1998년도 우석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중국통상전공) 교수, jhsong@core.woosuk.ac.kr

관세인하, 외국업체의 투자설비 우대조치 철폐, 증치세(增値稅)환급율인하, 외환관리조례의 개정 등 대대적인 제도의 개혁을 통해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경제분야에 있어서 제도개혁에 따른 시장환경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對중국시장진출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78년 경제분야에서의 개혁 개방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중국의 소비시장을 대상으로 최근 소비시장의 현황 및 소비자의 구매특성 그리고 중국 소비시장의 문제점, 특히 과거의 생산물시장에서 소비시장으로의 전환과정 중 나타난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원인 또한 향 후 예상되는 중국 시장환경 변화의 전망을 통해 '기업활동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점증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對중국 소비시장진출과 관련, 이에 대한 전략수립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최근 중국의 소비시장환경

중국은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나오고 있다. 1996말 기준으로 GDP규모는 6,330억달러로 전년대비 10.2%의 성장율을 기록했고, 또한 대외무역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8.8% 증가한 3,2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1996년말 현재 세계 제8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했으며, IMF가 산출한 구매력 평가방식으로 계산할 때 중국은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예측을 근거로 할 경우 중국은 2000년대에 이르러 국내소비시장[1] 규모도 약 5,00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토대로 향 후 예측되는 시장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사실 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곧 소비수준의 증가와 소비패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중국의 경우 1996년의 1인당 연평균 수입은 도시주민의 경우 인민폐 4,377원이며 농촌주민은 약 1,926원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시주민의 경우 1인당 평균소비지출액은 하루 8.7원을 벌어 7.8원을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에는 전국민의 평균 소비지출액이 1,700원 수준에 달하게 되고, 이 경우 엄청난 소비시장이 형성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소득의 증가에 따라 소비의 질이 향상되었음은 중국인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들의 변화추이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중국인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던 물건도 소득 수준의

1)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소비시장의 개념은 중국의 전통적 계획경제체제하의 생산요소의 결합에 의해 생산된 물자인 산품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물시장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화폐에 의해 교환되어지는 상품 및 유통까지도 포함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증가에 따라 변하여 왔다. 1970년대에는 「老三件」(라디오, 재봉틀, 흑백 TV)에서 1980년대에는 「新三件」(컬러 TV, 오디오, 세탁기)으로 변화했고, 1990년대 들어와서는「新新三件」(에어컨, 주택, 자동차)으로 바뀌었다. 또한 「食, 衣, 住, 用, 行, 樂」이라는 중국인들의 6대 소비대상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어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한 최근 중국의 시장환경변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식생활비가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엥겔계수가 현재 54%에서 2000년대에는 40%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삶의 질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의 공간확보 선호와 중국정부의 주거환경개선 정책으로 도시주민 평균주거면적이 1996년의 8.4평방미터에서 2000년대에는 12평방미터로 늘어나 상당한 생활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 진다. 생활용품과 내구용품의 소비는 급격하게 늘어나 전화보급율은 40%, PC보급율은 20%, VCR 600만대와 컬러TV 2,030만대로 대부분의 농촌가구도 이들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2000년에 이르면 가전제품의 총생산액은 약 1,750억 인민폐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진다[2]. 또한 여행과 레저에 대한 소비수준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여행이나 레저에 지불하는 비용도 2000년대에는 전체소비 지출액의 15%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비록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유지에 따라 아직도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도시와 농촌간의 발전격차 및 소득수준 차이로 인해 도시유입인구 및 유동인구의 증가는 어쩔수 없는 현상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와 농촌의 발전격차, 소득수준차 및 경제력발전에 따른 민주화 요구 등에 의해 중국정부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점차로 도시거주인구 억제정책을 완화시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도시인구의 증가추세 및 주민들의 주택수요를 감안할 때 중국의 주택건설시장은 2000년대 최대의 시장이 될 것이며 주택관련용품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견된다.

세번째로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관련시설의 낙후 및 서비스관념의 부족으로 인하여 중국에서의 여행 및 레저산업은 상당히 요원한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1996년 기준으로 중국인들의 여행, 레저분야에 대한 도시주민의 면평균 소비지출은 전체수입에서 14%를, 농촌주민의 경우 9%를 차지하여 이 분야에 대한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3].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관광·레저산업을 9·5계획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설정해 호텔을 제외한 외국자본의 부동산투자를 금지해 온 기존의 정책을 변경해 전국 8개 지역에 외자유치를 통한 관광리조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골프장, 경마장 등 위락시설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였다. 또한 지역별 관광명소 및 소수민족문화의 개발 등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개편정책 추진은 향 후 중국내 관광산업의 발전추세를 경제성장속도 만큼이나

2) Price Waterhouse, China, Hong Kong Office, *Doing Busines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Hong Kong : Price Waterhouse, 1997), pp. 12~17.

3) Ibid, pp. 19-20.

급격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번째로 항공 및 우주과학분야에서 이미 세계 선두그룹에 속하며 통신위성을 2개나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통신분야는 현대적 유선통신과 첨단 무선통신의 동시발전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각종 최신 통신기기, 장비, 기술의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모토롤라가 자사의 아시아 지역 목표시장을 당초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전하게 된 배경에도 이러한 예상이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중국의 신세대들은 전화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최신통신용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1996년 「年經人群(20~30세 연령층) 소비자 구매의향도 조사」에 의하면[4] 핸드폰의 구매의향도는 에어콘(17.4%), 오디오(15.8%)에 이어 제3위(13.7)를 차지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 신세대들의 성장에 따라 음성정보통신, 호출기, 핸드폰, 팩스 및 무선전화기 등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향 후 중국 소비시장의 특성은 비록 외국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비록 높은 진입장벽과 불완전한 이중적 시장구조(Dual market system) 그리고 시장경쟁과 정부통제가 병존하는 미성숙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소득불균형도를 보여 주는 지니(GINI)계수와 엥겔계수의 감소추세로 미루어 볼 때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상품소비시장으로의 성장이 예상되어 지고 있다.

Ⅲ. 중국 소비시장의 특성

1. 소비시장 특성

지난 20여년의 경제분야의 개혁·개방을 거치는 동안 중국의 소비시장은 비록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아직도 시장은 초보적이고 불완전하며 미성숙된 시장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타난 이같은 시장 상황의 문제점을 정리해 그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은 최근 WTO 가입과 관련, 각종 개방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쇄적이며 다양한 형태의 진입장벽(Entry barrier)이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중국의 소비시장에서는 선발진입자(특히 자동차나 유통시장 등)의 이익이 큰 시장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시장경쟁과 정부통제가 병존하는 미성숙시장(Immaturity market)의 형태를 지니

4) Ibid, pp. 22~25.

5) 1997년도 중국의 국가통계국 발표에 의하면 1996년도를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의 46.7%에서 37.5%로 줄어 들었으며 상대적으로 비국유부문이 21.1%에서 35.4%로 늘어나고 있다.

고 있다. 즉 산업 각 부문의 지속적인 개혁조치에 힘입어 비국유부문이 급성장하고 있으나[5]. 유통구조의 미정착, 관리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제품별 초과공급 및 초과수요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시장가격비중이 85% 이상 달하는 전환기 시장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가격결정의 형태가 정부결정가격(공정가격), 정부지도가격, 시장가격의 세 종류로 주요 농산물, 일부 공산품(휘발유, 담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제품의 가격이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결정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중국은 전통적인 공급자시장(Supplier's market)에서 수요자시장(Buyer's market)으로의 급격한 전환기시장을 맞고 있다.

셋째,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PLC)가 매우 짧은 시장의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과거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시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유행했던 상품과 패션 그리고 디자인 등이 최근 북경, 상해,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개월 내에 변화하는 짧은 제품수명주기로 인해 기업의 시장환경 적응에 큰 곤란을 겪고 있다.

넷째, 지적 재산권 보호의 미흡에 따른 복제품시장이 널리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복제품시장이 널리 형성되게 된 배경에는 중국의 기업이 생산수단과 기술을 공유하는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여 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소유개념'이 근본적으로 미약한 데 기인한다. 따라서 중국은 최근들어 상표법(1982), 특허법(1985), 저작권법(1990) 등을 제정·공포하였고, 파리조약 등 각종 국제협약에도 가입이 되었지만 무형자산에 대한 공짜의식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WTO가입을 앞두고 중국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에서 외국기업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 사례[6]가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 소비자구매 특성

다음으로 최근 중국 소비시장에서의 소비자구매 특성을 살펴 보면

우선 展示소비성향(Veblen Effect)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급 외제상표에 대한 강한 선호 및 선택구매경향은 중국갤럽의 조사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 바, 1997년도 조사에 의하면 중국인을 대상으로 중국 소비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상표는 가전제품의 경우 소니·도시바, 신발은 나이키, 승용차는 벤츠나 BMW 등으로 조사되어 상위 10종의 상표가 모두 외제 고급상표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 소비자들이 상품의 실용성과 가치보다는 고급브랜드의 선택을 통한 전시효과를 염두에 둔 소비패턴으로 제품구매성향의 도미노

6) 각종 분쟁해결사례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는 중국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판례집(1997년도) 및 노무라연구소(일)의 「중국시장에서의 분쟁해결절차」(1997년도)를 참조하기 바람.

7) 중국갤럽, 「1996년 중국시장에서의 상표인지도조사」(1997) pp. 24~25.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특징이 있다.

두번째로는 비교적 높은 상표충성도(Brand Royalty)의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공유경제체제로 인해 유통시장이 발전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시장경로(Market Channel)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단순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개혁에 따른 소비시장의 개방은 이러한 시장경로의 붕괴현상으로 이어져 다양한 형태의 경로시스템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8]. 그러나 이와 같은 구매선택 폭의 확대에 따른 상표선택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상표선택성향은 「기존에 경험이 있던 상표의 선택」(31.5%), 「유명상표의 선택」(27.7%) 등이 「광고」(19.2%)나 「친지의 권유」(11.6%)보다 높게 나타난 사실[9]은 중국인의 높은 상표충성도를 보여 주는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세번째로 구매형태를 살펴 보면 「휴일일괄구매」가 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에 의하면 중국인의 64%가 「일주일 동안 필요한 식품과 일용품을 주말에 한꺼번에 구입한다」는 휴일일괄구매의 형태로 나타났고 「주중일괄구매」(25%), 「분산구매」(11%) 등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구매방법의 경우 「직접구매」(41%), 「주문배달」(22%), 「우대서비스」(14%), 「기타」(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10].

Ⅳ. 한국기업의 중국소비시장 진출방안

1. 당면 문제점

중국이 경제분야에 있어 대외개방을 시작한 이래 외국기업의 對중국 직접투자는 주로 제조업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서비스업의 경우는 호텔업과 일부 부동산 시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외국기업의 진출이 봉쇄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1992년 이후 개방폭의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의 간접투자(증권이나 주식부문)를 허용하고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소비시장을 개방하는 등 서비스업에 대한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있다[11].

---

8)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시장경로로는 集市貿易(도시정기시장), 商場(백화점, 할인점 등), 위탁판매, 전시판매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9) Price Waterhouse, China, Hong Kong Office, Doing Busines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Hong Kong : Price Waterhouse, 1997), pp. 28~29.

10) 한중리서치, 「중국경제라인」(1996) pp. 173~174.

11) 1992년 등소평의 南巡講話이후 중국정부는 우선적으로 증권시장, 주식시장 등과 같은 금융시장개방을 단행했고, 다음 단계로 1996년 소비시장에서 유통업부문, 외국기업의 무역업개방 등과 같은 조치를 허용하기에 이르렀음.

중국 소비시장의 본격적인 형성은 일부 지역에 소매유통 외자기업의 설립을 허용한 1992년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시장의 현대화·국제화를 위하여 계속 개방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유기업의 개혁으로 인해 발생한 유휴노동력을 흡수하는 차원에서도 국내소비시장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개방은 이미 대세로 굳어졌으며 외국기업의 참여폭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 홍콩 및 동남아 화교기업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중국내 소비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상해, 북경, 광주 등을 중심으로 백화점, 전문점, 슈퍼마켓 등에 외국기업의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前장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의 소비수준이 계속 향상되고 있고 내수시장이 상당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세는 점점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중국내 소비시장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취약한 정보수집력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현지법인 및 지사, 국제화된 인력, 자금조달 등 여러 측면에서 선진국가들에 비해 절대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은 지역적으로 광활한 뿐만 아니라 민족, 언어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대외무역 권한의 지방위임 정도에 따라 지역별 우대정책 및 제도가 相異하다. 1997년말 현재 10,000여개의 외국기업이 중국내에 진출해 약 30,000여개의 현지법인, 지사, 사무소 등의 형태로 기업활동을 운영하고 있다[12]. 중국내에서 현지법인 등의 형태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ㅇ홍콩 : 2,510개사	ㅇ일본 : 1,548개사
ㅇ미국 : 1,742개사	ㅇ독일 : 740개사
ㅇ대만 : 1,268개사	ㅇ한국 : 385개사[13]

일본의 경우 종합상사가 주요 도시마다 평균 7.8명의 주재원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 기업은 1~2명만을 지사원으로 두고 있어 현지시장의 기회적 시포착을 위한 정보수집능력이 취약한 실정이다[14]. 반면 일본의 다국적 유통그룹인 야오한, 스위스 식품그룹인 네슬레, 네덜란드의 마크로, 스웨덴의 아케아, 미국의 맥도날드등 세계의 유명 유통업체들이 거대한

12) Price Waterhouse, China, Hong Kong Office, *Doing Busines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Hong Kong : Price Waterhouse, 1997), pp. 33~34.

13) 한국의 경우 정부측자료(전국은행연합회)는 '97년말 현재 對중국 직접투자가 3,494건으로 투자 한건당 현지법인 1개 계상했으나 실제로는 인력을 파견하지 않은 경우와 1개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본사가 다수의 현지자회사, 법인등을 운영하는 관계로 그 수치가 차이가 나고 있음.

14) Price Waterhouse, China, Hong Kong Office, *Doing Busines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Hong Kong : Price Waterhouse, 1997), p. 35.

내수소비시장을 놓고 자체정보망 설치에 치열한 정보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야오한 같은 경우는 중국 소비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1989년 당시 본사를 과감히 홍콩으로 옮겨 오는 2010년까지 중국내에 1,000여개의 수퍼마켓을 출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으로 본사를 옮김으로서 실무적인 중국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야오한은 상품정보, 공동경영참여 의뢰, M&A, 정치활동 등 외국 유통업체 중국유통시장 진출 제1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세계 최대의 소매업체인 미국의 Wal-Mart사와 일본의 소매업계 수위인인 이토요카도와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제휴 방안을 모색키로 한 것은 중국 소비자들의 良質, 低價에 대한 철저한 구매성향 파악과 세계적으로 소비재의 모든 분야에서 가격혁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감안해 추진한 것이고, 이러한 요구과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시스템의 확립이 결국 중국소비시장 진출의 확실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파악하여 결정한 사례이다[15].

둘째,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다.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brand로서의 이미지 역시 매우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하다. 한국은 최근에 공업이 급속히 발전한 나라로 88올림픽을 치를 만큼 잘살게 되었으니 중국상품을 많이 사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고작이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을 잘 모르고, 중국을 다녀온 사람조차도 겉모습만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낙후된 나라로만 인식하는 오류를 자주 범하는 것도 사실이다. 선진국가에 비해 각종 전시회, 교역회, 정보교류 세미나의 부족에서 또한 기인되기도 했다. 중국의 소비자는 소비재를 구입할 때 우선 브랜드로 선별하는 경향이 강하다. SONY의 상표가 좋다고 해서 SONY의 세탁기를 지명해서 사려오는 소비자들이 많고, 벤츠의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도 많다. 즉 제품의 품질보다는 브랜드로 결정해 버리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중국 소비자들이 소비재를 구입할 때 그 자체의 사용가치보다는 그 제품을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우월감, 이른 바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상징으로서 효용을 중시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든지 모두에게 인정받는 상표가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TV광고가 중국 소비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신뢰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최근 「中國廣播電視報」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표 1〉 신문 및 TV광고

【신문광고】	
· 거의 보지 않는다	2.1%
· 대부분 본다	15.9%
	68.7%

15)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업의 對중국투자 성과분석」(1996), pp. 115~125.

· 흥미있는 것을 선택하여 본다13.3%	68.7%
· 거의 모든 광고를 대충 본다	13.3%
【TV광고】	20.2%
· 흥미가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	3.1%
· (광고가 나오면)곧 채널을 바꾼다	5.8%
· TV를 켜 놓고 다른 일을 한다	9.5%
·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것만 선택하여 본다	1.4%
·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기다린다	

자료 : 대한무역진흥공사, 중국통상정보, 1995, 3월호 p. 65.

〈표 2〉 광고의 접촉빈도와 신뢰도

【광고의 접촉빈도】

매체종류	매일접촉(%)	가끔 접촉(%)
신 문	92.0	4.1
방 송	73.5	13.4
TV	31.0	31.8
잡 지	27.2	44.5

【광고에 대한 신뢰도(%)】

매체종류	가장 믿는다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TV	77.4	10.9	5.6	2.1	1.3
신 문	13.0	45.3	26.7	10.5	2.6
방 송	1.9	25.6	35.7	20.5	12.7
옥 외	3.4	6.4	11.8	23.1	51.9
잡 지	2.5	8.7	16.9	40.4	28

자료 : 대한무역진흥공사, 중국통상정보, 1995년. 3월호 pp. 66~67.

〈표 3〉 광고별 관심도

【광고별관심도】

광고종류	큰 관심을가짐(%)	관심이없음(%)
상품광고	88.4	11.7
서비스광고	55.2	44.9
금융광고	17.5	82.6
부동산광고	7.9	92.1
모집광고	41.9	58.2
공익광고	47	53
공고	22.7	77.4

자료 : 자료:대한무역진흥공사, 중국통상정보, 1995. 3월호 p. 68.

이상의 조사 분석은 중국의 약 20년에 걸친 개혁개방의 결과 광고가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소비자의 소비부분으로 자리잡고 있고, 소비자의 소비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소비자의 광고에 대한 의식분석을 통하여 광고매체의 선택, 광고효과의 극대화 등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효율적인 광고전략수립에 어떤 요인를 중시할 것인가에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기업의 對중국 진출속도가 빨라지고 규모 또한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지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기업 홍보나 상품이미지 확립은 미국, 일본, 유럽, 대만 등의 기업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시장 확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점에서 위의 조사결과는 현지 소비시장 진출을 위한 광고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파트너 활용이 부진하다.

중국 소비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합작파트너의 선택이 진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단독 진출보다 합작선과의 동반진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수시장에서의 시장정보제공 내지 마케팅능력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의 기업경영은 현지기관, 업체 등의 협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숱하게 많은 기관과 기업중 과연 어떤 곳이 우리 기업의 협력자가 되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항상 투자의 고려대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내려줄 수 있는 곳은 없다. 그러나, 중국내에 있는 각종 기관과 기업들의 행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분명한 기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중국 소비시장에의 진출인 경우 시장역사가 매우 짧은 관계로 성실성과 의욕이 없는 상대를 배경만 보고 파트너로 선택하기 보다는 미국, 일본, 동남아, 화교권 기업 등과의 동반진출을 고려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16]고 할 수 있다.

넷째, 특정업태에 편중되어 있다.

현재 한국기업의 중국 소비시장 진출의 현황을 보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이 중국의 주요백화점인 성향백화점, 화련백화점과 합자·합작을 통한 직·간접진출을 하는 등 백화점 진출이 가장 두드러진 상황이며 두산그룹, 진로그룹이 외식업에 일부 진출하고 있다. 식품업체로는 (주)미원, 고려당, 오뚜기식품 등이 제조와 판매를 병행하는 형태로 중국의 식음료업 소비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17].

16)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송재훈著「한국기업의 對중국 직접투자 특성에 관한 연구」(1998)을 참조바람.

17) 대한상공회의소,「한국기업의 對중국투자 성과분석」(1996), pp. 127~130.

기타 서비스업으로는 (주)쌍용이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여 임대형식으로 부동산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진도(주), (주)LG상사 등이 파크, 호텔, 콘도미니엄 건설, 임대분야에 최근 동남아 화교들과 제휴·신규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진출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을 위주로 하는 백화점 및 외식업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진출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한국기업의 진출지역 집중현상은 對중국 외국인 투자기업의 약 70%가 광동성을 중심으로 한 화남지역과 상해 경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화중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18]. 한국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진출은 발해만, 동북3성(길림, 흑룡, 요녕)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기업들은 진출 핵심사업을 연해지역 위주에서 내륙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소비시장은 이제 점점 내륙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내수시장 진출에 있어 내륙지역으로의 진출은 절대적인 고려사항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먼저 중국소비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진출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진출확대방안

중국의 소비시장은 일부지역에 소매유통 외자기업의 설립을 허가한 199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소비시장의 현대화, 국제화를 위하여 중국 정부는 시장의 개방과 정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일본, 홍콩 및 동남아국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중국 소비시장에서 유통업 등에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상해, 북경 등을 중심으로 백화점, 전문점, 슈퍼마켓 등의 외국기업의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비해 자금력, 정보력, 인맥 등에서 일본, 홍콩기업에 뒤지고 있는 한국기업의 경우 진출초기에는 여러 형태의 진입장벽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내수시장이 상당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점점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기업이 중국의 소비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정보수집력의 강화

한국기업이 중국 소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소비시장 현황과 향후 소비시장 개방과 관련된 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시장의 개방에 대한 각종 시책이 법규형태가 아닌 관련 당국자의 발표 혹은 지방정부의 방침 등을 통해 추진

18) 송재훈, 「한국기업의 對중국 직접투자 특성에 관한 연구」(1998), 한국북방학회논집 제4권, pp. 247~248.

되고 있는 등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시장의 개방과 관련된 정보 중에서 기초적인 것은 대외경제무역합작부 그리고 성·시정부의 해당부서 등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며, 중국의 컨설팅회사를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제품인지도 제고을 위한 광고전략의 실시

현재 우리나라는 對중국 교역 및 투자가 러시를 이루고 있으나 사실상 몇몇 대기업체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중국내 시장에서의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는 광고전략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의 상품 수출입업무는 수출입권이 있는 수출입회사(進出口公司)나 이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받은 상품공사 등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들 수출입 업무담당 기관에 대한 홍보 및 광고가 특히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연간 상품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이들 4,000여개의 수출입공사, 상품공사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 중 상위 500대 기업이 총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19]. 이들 企業에 대한 광고 및 홍보는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우수한 파트너의 선정전략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업과는 달리 개인차원의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파트너 선정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시아 중화경제권의 활용 즉, 華商의 활용은 투자기업들에게 자못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일본의 경우 華商과의 협력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일본경제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지난 93년 이후 「차이나클럽」[20]을 구성해 지금은 일본의 중국비지니스가 북경, 대련, 상해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과 華商간의 관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한국기업의 중국비지니스는 조선족이라는 인적자원이 몰려있는 동북3성에 집중되어 있다. 또 단독진출이나 중국과의 합작위주이다. 특히 광동과 복건성 등 시장규모가 크고 華商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에 진출하려면 그들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한·중간의 경제협력 규모가 날로 증가되고 투자리스크가 커지는 시점에서 우리기업이 중국의 소비시장에서 한발 앞서 가려면 무엇보다도 華商과 같은 우수한 파트너의 활용이 필수적일 것이다.

4) 업태별 다양한 시장진입전략의 수립

19) Price Waterhouse, China, Hong Kong Office, Doing Busines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ong Kong : Price Waterhouse, 1997), pp. 52~53.

20) 한중리서치, 「중국경제라인」 (1996), p. 125

현재 중국정부는 소비시장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장임을 감안, 일부업종 특히 국내 도·소매업 등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외국기업의 단독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설립허가를 획득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으나, 일단 허가를 득할 경우 중국 국내기업과 마찬가지의 여건에서 광범위한 형태로 중국내 소비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는 커다란 이점이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우선 제조업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한 뒤, 다음 단계로 국내시장에 능통한 중국기업과 합작형식으로 유통업분야와 같은 쪽으로 제조업－유통업을 연계시킬수 있다면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수시장에 대한 마케팅능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지역의 다각화 추진

중국내에서 소비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이 상해, 북경, 광주 등의 세 지역으로 이 지역은 현재 중국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추진중인 외국기업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며 중국진출 대형 유통업체는 대부분 이들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기업 역시 가능한 한 이들 세 지역을 공략하여 진출초기에는 전국적인 상표지명도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지역이 홍콩과 일본기업에 선점되어 있고 후발주자인 우리 나라 기업들이 이들 기업과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코스트를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별로 기존상업지역과 신흥상업지역으로 구별하여 공략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예컨대 기존상업지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건물을 재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신흥지역의 경우는 소매유통업의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건물신축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등 어느 지역이 한국기업의 진출에 비교적 용이한 가에 대한 비교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광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경우 향 후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앞으로의 기업발전에 지역선택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기업차원의 지역별 전문가를 양성, 해당지역의 시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선정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각 지역의 진출상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 진출의 잇점을 과대평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과소평가할 경우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 일반적인 정보와 현장정보의 갭이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입지비교에서 임금코스트의 변수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은 오류이다. 사회간접 자본시설 등「하드웨어」가 좋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소프트웨어」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각 지역의 투자환경과 영업환경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일 것이다.

V. 맺음말

현재 중국에서 외국기업들이 소비제품 내수시장에 진입하여 성공적인 판매활동을 전개하기란 제조업에 투자하여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것보다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은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여전히 제조업 위주의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외국자본의 중국내 소비시장 진출에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이 중국의 내수판매경영권을 취득하기란 우선 그 신청과 심사 및 허가가 상당히 까다로우며 사실상 중국정부가 외국기업들의 對중국 소비시장 진출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중국의 상품소비시장은 복잡다단하고 중국의 각종 정책이 외국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을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지만, 최근 개혁·개방정책의 가속화에 힘입어 중국경제가 날로 급성장하고 있어 머지않아 소비재에 대한 내수시장의 전면개방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소비시장에서도 유통업의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중국진출이 제조업에서 유통업으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유통업개방이 유통산업의 발전과 최근 국유기업의 개혁에 따른 유휴인력에 대한 새로운 고용창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바, 중국은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유통업분야의 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견된다.

그리고 거대한 내수시장과 향 후 발전가능성에 대비 외국기업들이 중국 소비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이 소비시장을 개방한다고는 하나 여전히 개방 스케줄이 불투명하고 외국기업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여러 제약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일본, 홍콩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 소비시장 진출을 시작한 지가 얼마되지 않는 한국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비혁명으로 불리면서 시장규모의 확대, 소비패턴의 고급화와 다양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국 소비시장에 우리 기업이 본격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인지도 제고를 위한 광고전략, 중국과의 직접협력, 정보수집력의 강화 그리고 거대한 자금력과 넓은 인맥을 갖추어 현지사정에 능통한 중화경제권, 특히 華商과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진출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에 대중국진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동기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원자재를 이용한 제3국 수출상품 생산에 주안점을 두고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앞으로는 단순노동지향형 투자의 패턴으로부터 벗어나 중국의 12억 내수시장과 연계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 및 서비스분야 등에 대한 투자로 점차 확대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기업보다 한발 앞서 중국의 내수소비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홍콩 및 일

본기업들의 성공사례를 他山之石으로 한 치밀한 내수시장 진출전략을 수립·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Price Waterhouse, China, Hong Kong Office(1997), Doing Busines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ong Kong.
2. J. Kornai(1989), Economics of Shortage, Vol B, North-Holland.
3. A. Nove(1990), Problems of the Planned Economy, London, Macmillan Press.
4. 대한상공회의소(1996), 「한국기업의 對중국투자 성과분석」, 서울.
5. 대한상공회의소(1994), 「중국의 유통산업 현황과 진출전략」, 서울.
6. 대한무역진흥공사(1995), 「중국통상정보」, 서울.
7. 송재훈(1998a), 「한국기업의 對중국 직접투자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북방학회논집』, 제4집, 서울.
8. ____(1998b), 「중국 금융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유통통상연구』, 제2집, 서울.
9. 전국은행연합회(1998),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서울
10. 중국갤럽(1997), 「1996년 중국시장에서의 상표인지도조사」, 중국 북경.
11. 한중리서치(1996), 「중국경제라인」, 서울.

A Study on the Scheme for Advancement of Korean Firms toward the Chinese Market

-Centering around the Commodity Consumption Market-

Song, Jae-Hoon*

Abstract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try to group for the effective advancement scheme of Korean firms toward the Chineses commodity consumption market by analyzing and understanding the present situation, the new direction and folw and prospect of change in Chinese consumption market.

In fact, that the foreign enterprises unfold the successful sales activity by advancing toward the domestic demand market of consumption products in China now lies in the difficult situation rather than being employed in the production activity by investing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still by attracting the foreign capital and is showing very discreet attitude about the advancement of foreign country toward the consumption market in China, as for the fact that the foreign businesses acquire the management right of domestic sales of China.

According as the 2nd consumption revolution is called, for the full-scale advancement of our firms toward the consumption market of China Which is showing the expansion of market scale, the high-class tendency of consumption pattern and aspect, the diverse advancement schemes such as the co-operation with the greater China which is skillful for onsite situation, namely, Chinese merchant etc, will have to be examed.

Through the advancement of Korean firms toward China is increasing rapidly, the case that it is performed by aiming at the production of export commodity of the 3rd nation to use the cheap labor and raw material of China is most still in the

* Ph. D., Proffessor Woosuk University.

investment motive.

So, in the future, we will have to expand and convert into the investment about the high value added and the service fields etc. to sublate the labor which can be linked to Chinese domestic consumption market.

Key-Words : Chineses Commodity Consumption Korean firms toward china

斗山그룹의 형성 과정, 1952~1996년*

The Historical Formation of Doosan Group of Companies, 1952~1996

김 동 운**

目 次

Ⅰ. 머리말
Ⅱ. 2대 朴斗秉시대, 1952~73년
Ⅲ. 鄭壽昌시대, 1974~80년
Ⅳ. 3대 朴容昆시대, 1981~96년
Ⅴ. 맺음말

Ⅰ. 序 論

1996년 斗山그룹은 창립 100주년을 성대히 자축하였다. 한국기업사에 있어서 최초의 일이다. 1995년 4월 현재, 두산그룹은 27개의 계열회사에 4조8,080억원의 자산, 3조6,710억원의 매출액을 가진 한국 12(자산)-13위(매출액)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1]. 이는 종래 자연발생적으로 불리던 'OB그룹'이 1978년 1월 '두산그룹'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의 규모(10개 계열회사, 1,499억원의 매출액)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 아닐 수 없다[2]. 1978년의 규모 그 자체 또한 OB그룹의 명칭을 가져다 준 OB맥주가 제조되기 시작한 1952년의 그것과는(2개 계열회사, 1954년 현재 자산 1억원, 매출액 1억원)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3].

1952년 불하된 적산기업 東洋麥酒주식회사(1933년 昭和麒麟麥酒(주), 1948년 동양맥주(주))는 이후 OB맥주를 생산하면서 자산, 자본, 매출액, 고용인원, 순이익 등 모든 면에서 OB그룹/두산그룹의 중심기업이 되어 왔다. 그러나 1952~96년 간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온 모태는 1952년 당시 또 하나의 계열회사였던 斗山商會주식회사로부터 배양되고 있었다. 운

* 본 논문은 한국경영사학회 주최 제5회 경영사학 국제학술심포지움(1998. 11. 14)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충북대 김성기교수와 참가자들께 감사드린다.
**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전임강사

1) 매일경제신문(1995. 4. 1).
2) 〈斗山〉 (1978. 1), 29면.
3) 〈두산그룹사〉, 150, 295면. 'OB'라는 상표명이 Oriental Brewery의 약자로서 처음 등장한 것은 1948년이다(같은 책, 175면).

수업, 물품판매업 등을 위해 1951년에 시작된 두산상회주식회사(1953년 두산산업(주), 1993년 두산상사(주))는 이전의 주식회사朴承稷商店이 개편된 것이었으며, 박승직상점은 1896년에 시작된 포목상이었다.

따라서 두산그룹 100년의 역사는 크게 1896~1951년의 박승직상점시대와 1952~96년의 OB그룹/두산그룹의 시대로 나눌 수 있다. 1896년 시작된 박승직상점은 창업주 박승직에 의해 경영되었다. 1936년 이후에는 장남인 박두병이 상무취체역으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였으나, 박승직은 1950년 타계할 때까지 사장직에 남아 있었다. 박두병의 시대는 1951년의 두산상회주식회사-1952년의 동양맥주주식회사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이는 1973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어졌다. 이후 한 동안은 전문경영인인 정수창이 OB그룹/두산그룹을 이끌어 왔으며, 박두병의 장남 박용곤이 그룹회장이 된 것은 1981년이었다. 1991~2년 간의 2년 동안에는 정수창이 박용곤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그룹을 이끌어 나갔다. 즉, 두산그룹 100년 역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박승직상점시대는 1대인 박승직의 시대였으며, 이후 45년의 시간 속에서 2대 박두병, 3대 박용곤에 의한 대물림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두산그룹은 한국 최초의 3대 계승 기업이기도 하다.

1대 박승직시대(1896~1951)는 이미 다른 지면을 통하여 자세히 고찰된 바 있다[4]. 본 논문에서는 OB그룹/두산그룹시대(1952~96)를 2대 박두병시대(1952~73), 전문경영인 정수창시대(1974~80), 3대 박용곤시대(1981~96년 ; 1991~2년 간의 정수창시대 포함) 등 세 시기로 나누어 그 성장과정을 개관하려고 한다.

Ⅱ. 2대 朴斗秉시대, 1951~1973년

1952년 5월 22일 박두병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82번지 소재 동양맥주주식회사의 귀속 주식 59,540주(기린맥주주식회사 소유 대지 16,352평 포함)를 34억 1,366만 6,360원에 정부로부터 불하받았으며, 1954년 7월 20일까지 대금을 완납하였다. 그간의 상황을 박두병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5].

1. 동양맥주주식회사는 일제시대 때 소화기린맥주주식회사라 불리던 일본기린맥주주식회사의 자매회사였다.
2. 해방 이전에 본인의 선친이 소화기린맥주주식회사의 유일한 한국인 취체역이었던 연고로 본인이 그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

4) 김동운(1996, 1997).
5) '귀속재산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서'(1961).

3. 1948년 3월에 회사 명칭을 동양맥주주식회사로 바꾸었으며, 1948년 7월에 귀속기업체에 중역제가 실시되어 당시 관리인이었던 본인이 취체역사장으로 피선되었다.
4. 1950년 북한괴뢰군이 후퇴할 때 맥주공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製品場(瓶詰場)에 방화하여 건물 및 기계 일체가 소실되었다.
5. 1.4후퇴로 적군이 재차 서울에 침입하였을 때 그들은 중요 기계 일체를 약탈하여 갔기 때문에 그 당시 공장은 해골같은 건물과 파괴된 파편만 남아 있었다.
6. 수복 이전 아직 서울에로의 왕래가 곤란할 때 2개 맥주회사의 불하가 결정되어 본인은 전기한 상태의 동양맥주공장을 불하받았다.

박승직은 경성방직주식회사의 취체역 김연수와 더불어 소화기린맥주주식회사의 두 명 뿐인 한국인 주주였으며, 1941년에는 그 회사의 대리점으로서 맥주위탁판매업을 포목업에 추가하기도 하였다[6]. 이런 연유로 박두병이 맥주회사에 관여하게 되었으며, 1952년의 불하는 이러한 과정의 자연스러운 마무리였던 동시에 박승직상점의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박두병, 윤현두, 손기원, 석순균, 김용관 등 귀속재산 매수자 5명과 다른 5명으로 구성된 경영진(대표취체역－박두병, 상무취체역－박우병·윤현두, 취체역－최인철·김용관·손기원·석순균·박선기·박필회·방용운)은 1960년까지 동양맥주공장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7]. 1961년 6월 공장의 재건된 모습을 박두병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8].

1. 건물－6.25동란으로 완전 소실되었던 製品場은 완전히 수리되었으며,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던 공장의 기타 부분도 완전히 수리되었다.
2. 기계－제품장의 파괴로 대파되었던 3대의 제품기는 완전한 2대로 수리, 개조되었으며, 또 다른 1대가 도입되어 현재 3대가 완전가동되고 있다.
3. 원동기－파괴되었던 변전시설은 수리되었고, 도난당했던 大小馬力전동기가 새로 설치되었으며, 파괴되었던 냉동시설이 복구 증설되었다. 또, 악화되었던 전기사정에 대비하여 300마력 발전기 2대가 신설되었다.
4. 양조시설－파괴되었던 양조시설은 복구 개량되었고, 맥주저장탱크 42개가 증설되어 맥주생산능력이 증가되었다.
5. 고급청량음료수 생산 개시－서독 시날코회사의 한국대리점으로서 고급청량음료수 시날코를 제조하고 있다.

6) 〈두산그룹사〉, 88~90, 169~79면.
7) 위의 책, 179면, '귀속재산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서' (1961).
8) '귀속재산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서' (1961).
9) 〈OB뉴스〉 (1971. 5), 2면.

이상과 같이, 불하받을 당시의 공장에서 면목을 일신하고 능률적인 생산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

1952~61년까지의 10년간을 박두병은 '戰禍로 파괴된 공장시설의 복구작업, 제품생산기술의 습득과 시장개척을 위한 擧社的인 피나는 노력으로 점철된 격동 속에 지나온 搖籃期'로 규정하면서, 이를 발판으로 두 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1962~71) 동안 맥주업계에서 단연 우위의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9].

동양맥주공장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면서, 1960년 동양맥주의 첫번째 계열회사이자 OB그룹의 세번째 구성원이 되는 동산토건(1993년부터 두산건설)이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합동통신사(1945년 창립)가 그룹에 편입되었다. 이후 계열회사의 설립 또는 인수가 계속되어 1973년 박두병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두 13개 회사가 OB그룹에 속해 있었다. 이는 1952~95년 사이에 설립 또는 인수된 46개 기업들 중 약 1/3(28%)에 해당된다. 그리하여 1959년까지 두산상사와 동양맥주 등 2개 뿐이던 OB그룹의 계열회사 수는 10년 후인 1969년까지 10개로 늘어났으며, 1973년까지 10~14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표 1〉. 1973년 5월 10일 현재 주요 계열회사들의 불입자본금 규모는 다음과 같다. ① 동양맥주(회장 박두병, 사장 정수창)-15억원, ② 한양식품(대표 박용곤)-8.46억원, ③ 한국병유리(박우병)-3억원, ④ 합동통신사(이원경)-2.17억원, ⑤ 금강용단(명주현)-1.535억원 ⑥ 두산산업(정수창)-1.42071억원, ⑦ 동산토건(한상억)-0.8억원 ⑧ 동방여운(이원경)-0.3억원, ⑨ 윤한공업사(황영식)-0.11억원[10].

이러한 외형 성장을 겪으면서, 동양맥주 창립 18주년이 되는 1970년 박두병 회장은 계열회사들 간의 결속을 강조하였다[11].

> "동양맥주주식회사를 주축으로 한 여러 자매회사의 업무성격이 다양화해지고 양도 가속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는 지금 각 분야의 업무를 검토해서 시정과 개선을 기하는 작업은 더욱 중요하게 되고 시급한 과업으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용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를 명실공히 건전한 회사로 발전시킨다는 신념 하에 정수창 사장을 중심으로 하여 경영진과 사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전력을 다한다면 능히 이 작업을 수행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13개 계열회사들 중, 한국맥아공업(1958년 풍국화학공업으로 창립, 1961년 인수, 1962년 이후 한국맥아공업)과 대관농산(1963년 설립) 등 2개 회사는 1972년 동양맥주에 합병되었

9) 〈OB뉴스〉 (1971. 5), 2면.
10) 〈사보OB〉 (1973. 5), 6~7면.
11) 〈OB뉴스〉 (1970. 5), 2면.

〈표 1〉 두산그룹의 계열기업, 1952~1995년 : 1. 계열/설립/소멸기업 수

년 도	계열기업 수	설립/인수기업 수	소멸기업 수
총계(1952~1995)		46	21
3대 박용곤시대(1981~95)		19	10
95	26		
94	26		
93	23		
92	22		
91	22		
1990	22		
89	22		
88	23		
87	23		
86	22		
1985	23		
84	17		
83	16		
82	16		
81	18		
정수창시대(1974~80)		14	9
1980	19		
79	20		
78	21		
77	19		
76	13		
1975	14		
74	13		
2대 박두병시대(1952~73)		13	2
73	12		
72	14		
71	11		
1970	11		
69	10		
68	9		
67	9		
66	8		
1965	7		
64	7		
63	6		
62	5		
61	5		
1960	4		
59	2		
58	2		
57	2		
56	2		
1955	2		
54	2		
53	2		
52	2		

출처 : 〈표 2〉

으며, 7개 회사는 정수창시대(1974~80년)에 합병 또는 매각되었다. 이 9개 회사들 중 합동통신사(1960~80년)를 제외한 나머지 8개 회사는 6~11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존속하였다. 반면, 박두병시대에 생겨나 1995년까지 활동 중인 계열기업은 동양맥주(1952년 인수), 두산건설(1960년 동산토건으로 설립, 1993년 이후 두산건설), 두산음료(1966년 한양식품으로 설립, 1985년 두산식품, 1992년 이후 두산음료), 두산기계(1967년 윤한공업사로 설립, 1976년 윤한기계, 1978년 이후 두산기계) 등 4개 회사로서 28~43년의 역사를 유지하고 있다〈표 2〉. 이 4개 회사 중 동양맥주, 두산건설, 두산음료는 1995년 4월 현재 27개 계열회사들 중 지정된 5개 주력기업들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나머지 2개는 두산종합식품과 두산개발), 두산건설과 두산음료는 동양맥주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그 기능의 일부가 독립적인 기업화된 것이었다[12].

〈표 2〉 두산그룹의 계열기업, 1896~1995년 : 2. 설립/소멸년도, 설립/소멸형태

이 름	설립년도	소멸년도	존속년수	설립형태	소멸형태
1대 박승직시대(1896~1951)					
1) 두산상사	1896	–	99	설립	–
2) 두산상회	1946	1950	4	설립	해산
2대 박두병시대(1952~73)					
3) 동양맥주	1952	–	43	인수	–
4) 두산건설	1960	–	35	설립	–
5) 합동통신사	1960	1980	20	인수	매각
6) 한국맥아공업	1961	1972	11	인수	합병
7) 대관농산	1963	1972	9	설립	합병
8) 금강융단	1964	1975	11	인수	매각
9) 두산음료	1966	–	29	설립	–
10) 두산기계	1967	–	28	설립	–
11) 만보사	1969	1975	6	설립	합병
12) 한국병유리	1970	1979	9	인수	합병
13) 동방여운	1972	1978	6	설립	매각
14) 동양상사	1972	1978	6	인수	매각
15) 삼성관광	1972	1978	6	인수	매각
정수창시대(1974~80)					
16) 두산개발	1974	1981	7	설립	합병
17) 두산농산	1975	1992	17	설립	합병
18) 두산유리	1976	–	19	인수	–
19) 동양컴퓨터시스템	1977	1979	2	인수	합병
20) 오리콤	1977	–	18	인수	–
21) 두산전자	1977	–	18	인수	–

이 름	설립년도	소멸년도	존속년수	설립형태	소멸형태
22) 두산요업	1977	1982	5	인수	합병
23) 대진전자공업	1977	1985	8	인수	합병
24) 정공사	1977	1981	4	인수	합병
25) 두산개발	1978	–	17	인수	–
26) 정우실업	1978	1980	2	인수	합병
27) 두산제관	1979	–	16	설립	–
28) 두산종합식품	1979	–	16	인수	–
29) 오비씨그램	1980	–	15	설립	–
박용곤시대(1981~90, 93 이후 ; 정수창시대 1991~2)					
30) 두산농산	1981	–	14	설립	–
31) OB베어스	1983	–	12	설립	–
32) 두산컴퓨터	1984	1988	4	설립	합병
33) 동아출판사	1985	–	10	인수	–
34) 동아출판사	1985	1988	3	인수	합병
35) 대아지기공업	1985	1989	4	인수	?
36) 백화	1985	–	10	인수	–
37) 베리나인	1985	1992	7	인수	?
38) 두산기업	1985	–	10	인수	–
39) 한국네슬레	1987	1992	5	설립	?
40) 덴쯔영엔드루비컴코리아	1989	–	6	설립	–
41) 두산창업투자	1990	–	5	설립	–
42) 경월	1993	–	2	인수	–
43) 두산렌탈	1993	–	2	설립	–
44) 한국쓰리엠	1993	–	2	인수	–
45) 한국코닥	1993	–	2	인수	–
46) 두산정보통신	1994	–	1	설립	–
47) 삼화왕관	1994	–	1	인수	–
48) 두산엔지니어링	1994	–	1	설립	–

출처 : 김용성, '두산그룹 90년 통사'(1987), 두산그룹, 〈두산그룹사〉 (1989), 매일경제신문사, 〈회사년감〉 (1979~94), 두산그룹 영업보고서, 1987~94, 두산그룹기획실 작성 내부 자료.

1) 1896, 박승직상점 설립－1925, (주)박승직상점－1941, 삼목상사(주)－1945. 9, 폐쇄된 후 법인은 존속－1945. 10, (주)박승직상점－1951, (주)두산상회－1953, 두산산업(주)－1993, 두산상사(주).

2) 1946, 두산상회 설립－1950, 해산.

3) [1933, 소화기린맥주(주) 창립－1945, 박두병이 관리지배인이 됨－1948, 동양맥주(주)－] 1952, 박두병이 불하받음－1973, 기업공개.
4) 1960, 동산토건(주) 설립－1975, 기업공개－1993, 두산건설(주).
5) [1945, (주)합동통신사 창립－] 1960, 인수－1980, 폐업.
6) [1958, 풍국화학공업(주) 창립－] 1961, 인수－1962, 한국맥아공업(주)－1972, 동양맥주(주)에 합병.
7) 1963, 대관농산(주) 설립－1972, 동양맥주(주)에 합병.
8) [1955, 금강음단(주) 창립－] 1964, 인수－1975, 매각.
9) 1966, 한양식품(주) 설립－1975, 기업공개－1985, 두산식품(주)－1992, 두산음료(주).
10) 1967, (주)윤한공업사 설립－1976, 윤한기계(주)－1978, 두산기계(주)－1988, 기업공개.
11) 1969, 만보사 설립－1975, 합동통신사에 합병.
12) [1969, 한국병유리(주) 창립－] 1970, 인수－1979, 대한유리공업(주)(1979부터 두산유리(주))에 합병.
13) 1972, 동방여운(주) 설립－1978, 매각.
14) 1972, 동양상사 인수－1978, 매각.
15) 1972, 삼성관광 인수－1978, 매각.
16) 1974, 두산개발(주) 설립－1981, (주)합동에 합병(합동의 이름이 두산개발(주)로 변경).
17) 1975, 동양농산(주) 설립－1978, 두산농산(주)－1992, 두산유업(주)에 합병(두산유업의 이름이 두산농산(주)로 변경).
18) [1956, 해남초자공업(주) 창립－1962, 대한유리공업(주)－1972, 기업공개－] 1976, 인수－1979, 두산유리(주).
19) [1975, 동양컴퓨터시스템(주) 창립－] 1977, 인수－1979, 동양전산기술(주)(1979부터 오리콤)에 합병.
20) [1975, 동양전산기술(주) 창립－] 1977, 인수－1979, (주)오리콤.
21) [1974, 한국오－크공업(주) 창립－] 1977, 인수－1986, 두산전자(주).
22) [1974, 가전요업(주) 창립－] 1977, 인수－1977, 두산요업(주)－1982, 동산토건(주)(1993부터 두산건설(주))에 합병.
23) 1977, 대진전자공업(주) 인수－1985, 두산컴퓨터(주)에 합병.
24) [1961, 정공사 창립－1974, (주)정공사－] 1977, 인수－1981, 두산기계(주)에 합병.
25) [?, 한국위재공업(주)－1978, 덕수개발(주)－1978, 덕수종합개발(주)－] 1978, 인수－1988, 동현건설(주)－1993, 두산개발(주).
26) 1978, 정우실업(주) 인수－1980, 대진전자(주)에 합병.
27) 1979, 두산제관(주) 설립.
28) [1955, 동양식량공업(주) 창립－1958, 천일곡산공업(주)－1975, 기업공개－] 1979, 인수－1980, 두산곡산(주)－1992, 두산종합식품(주).
29) 1980, 오비시그램(주) 설립－1981, 오비씨그램(주).
30) 1981, (주)합동 설립－1981, 두산개발(주)－1988, 두산유업(주)－1992, 두산농산(주).
31) 1983, (주)OB베어스 설립.
32) 1984, 두산컴퓨터(주) 설립－1988, 두산산업(주)(1993부터 두산상사(주))에 합병.
33) [1943, 동아동사소 창립－1945, 동아프린트사 출판부－1951, 동아출판사－1956, (주)동아출판사－1980, 동아인쇄공업(주)－] 1985, 인수－1988, (주)동아출판사.
34) [1980, (주)동아출판사 재창립－] 1985, 인수－1988, 동아인쇄공업(주)((주)동아출판사로 상호 변경)에 합병.

35) [1979, 대아지기공업(주) 창립)-] 1985, 인수-1989. 4. 1 현재 없어짐.
36) [1917, 조선주조(주) 군산공장 창립-1946, 조선양조(주)-1951, 대한양조(주)-1967, 백화양조(주)-1974, 기업공개-] 1985, 인수-1990, (주)백화.
37) [1982, (주)베리나인 창립-] 1985, 인수-1992. 12. 31 현재 없어짐.
36) 1985, (주)풍전기업 인수-1987, 두산기업(주).
39) 1987, 한국네슬레(주) 설립-1992. 12. 31 현재 없어짐.
40) 1989, (주)에이치디엠코리아 설립-1991, (주)덴쯔영앤드루비컴코리아.
41) 1990, 두산창업투자(주) 설립.
42) [1926, 강릉합동주조(주) 창립-1971, 동해합동주조(주)-1973, 경월주조(주)-1991, (주)경월-] 1993, 인수.
43) 1993. 두산렌탈(주) 설립.
44) [1977, 한국쓰리엠 설립-] 1993, 인수.
45) 1993, 한국코닥(주), 인수.
46) 1994, 두산정보통신(주) 설립.
47) 1994, 삼화왕관(주) 인수.
48) 1994, 두산엔지니어링(주) 설립.

1990년대 초부터 두산그룹의 계열회사들은 정보유통사업, 생활문화사업, 기술소재사업 등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13], 이 기준에 따르면 박두병시대의 14개 계열회사(1896년의 박승직상점 후신인 두산상사 포함) 중 64%에 해당되는 9개가 정보유통사업이었다(무역/유통 5개, 정보/문화 4개〈표 3〉). 특히 금강음단(1955년 창립, 1964년 인수)은 두산그룹 100년 역사 동안 그룹의 전신인 박승직상점의 취급품목이었던 직물류를 생산·판매한 유일한 계열회사로서, 1971년 현재 한국 유일의 종합 카페트제조업체였다[14]. 그러나 정보유통 관련 9개 회사 중 두산상사를 제외한 나머지 8개는 1980년까지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한편 생활문화사업에는 동양맥주와 두산음료 등 2개 회사가, 그리고 기술소재사업에는 두산건설, 두산기계, 한국병유리 등 3개 회사가 관련되어 있었다. 이 중 한국병유리(1969년 창립, 1970년 인수, 1979년 합병)를 제외한 4개는 1995년 현재까지 활동 중이며, 동양맥주, 두산음료, 두산건설은 주력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OB그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룹의 주력기업은 동양맥주주식회사였으며, 한양식품과 함께 생활문화사업(그 중에서도 양조/음료영역)을 형성하여 매출액, 자산, 자본금, 당기순이익 등의 모든 면에서 59~76%의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였다〈표 5-1〉. 그러나 동양맥주가 정상화단계에 있었던 1950년대에는 정보유통사업(그 중에서도 무역/유통분야)인 두산상사

12) 매일경제신문(1995. 4. 1), 4면, 〈두산그룹사〉, 224~5면.
13) 다음을 참조 : 〈斗山〉 (1993. 2), 31면, 〈斗山四季〉 (1995).
14) 〈OB뉴스〉 (1971. 5), 22면, 〈두산그룹사〉, 96~7, 157면.

〈표 3〉 두산그룹의 계열기업, 1952~1995년 : 3. 사업영역별 설립년도

년도	정보유통사업		생활문화사업		기술소재사업	
	무역/유통	정보/문화	식 품	양조/음료	기술/소재	건설/환경
3대 박용곤시대						
	4개	8	1	3	2	1
94		두산정보통신			삼화왕관	두산엔지니어링
93	한국쓰리엠	한국코닥		경월		
	두산렌탈					
90	두산창업투자					
89		덴쯔영엔드				
87			한국네슬레			
1985		두산기업		백화		
		동아출판사		베리나인(90)		
		동아출판사(88)				
		대아지기공업(89)				
84					두산컴퓨터(88)	
83		OB배어스				
81	두산농산					
정수창시대						
	3개	1	1	1	6	2
1980				오비씨그램		
79		오리콤	두산종합식품		두산제관	
78	정우실업(80)					두산개발
77	두산요업(82)				두산전자	
					동양컴퓨터(79)	
					정공사(81)	
					대진전자(85)	
76					두산유리	
75	두산농산(92)					
74						두산개발(81)
2대 박두병시대						
	5개	4	0	2	2	1
72	동양상사(78)	동방여운(78)				
		삼성관광(78)				
1970					한국병유리(79)	
69		만보사(75)				
67					두산기계	
66				두산음료		
64	금강융단(75)					
63	대관농산(72)					
61	한국맥아(72)					
1960		합동통신사(80)				두산건설
52				동양맥주		
51	두산상사					

주) : 1) 계열기업들을 정보유통, 생활문화, 기술소재 등 세 가지로 분류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의 영업 보고서부터이며, 이에 준하여 그 이전의 계열기업들을 재분류한 것임.
2) 괄호 안의 숫자는 소멸년도이며, 괄호가 없는 회사는 95년 현재 영업 중임. 출처 : 〈표 2〉

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그룹을 이끌어 나갔다. 반면 기술소재사업과 관련된 두산건설과 두산기계는 10% 이내의 매우 낮은 비중 밖에 차지하지 못하였다.

박두병시대(1952~73년) 때의 OB그룹은 21년 동안 년평균 68.4%의 자산증가율, 91.4%의 매출액증가율, 그리고 7.7%의 매출액순이익율을 기록함으로써 정수창시대(1974~80년)와 3대 박용곤시대(1981년 이후)에서는 달성되지 못한 높은 성장율을 구가하였다〈표 4〉.

〈표 4〉 두산그룹의 영업실적, 1953~94년: 자산, 매출액의 년평균 증가율, 년평균 매출액순이익율(%)

	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순이익율
3대 박용곤시대(93~4)	19	15	0.3
정수창시대(91~2)	25.5	14	–
3대 박용곤시대(81~90)	17.6	19.6	0.8
정수창시대(74~80)	53	49.3	2.5
2대 박두병시대(53~73)	68.4	91.4	7.7

출처 : 53~87, 〈두산그룹사〉; 88~94, '두산그룹영업보고서'.

총자산의 규모는 동양맥주의 재건이 한창이던 1954년에 671%, 1955년에 154%의 급속한 속도로 늘어났으며, 1961년(−14%)과 1962년(−60%)의 마이너스 성장과 1972년의 제로 성장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17~97%) 증가추세를 보였다. 매출액 증가의 경우도 대체로 비슷한 상황이었으나, 1950년대 후반에 보다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한편 매출액에 대한 순이익의 비율은 마이너스의 성장이 없는 가운데, 1965년까지의 13년 동안 반 이상인 7개 년도에는 10~16%의 두 자리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1965년과 1966년에 1%대의 증가율로 곤두박질쳤으며, 이후 꾸준히 성장세가 만회되어 1973년까지 7.6%의 증가율로 회복되었다.

2대 박두병시대(1954~73)의 세 가지 주요 재무비율을 정보유통사업, 생활문화사업, 기술소재사업 등의 사업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표 5-2〉. 첫째, 년평균 매출액 증가율의 경우, 정보유통사업에서는 박두병시대(71%)가 정수창시대(95%)보다는 조금 뒤떨어졌지만 3대 박용곤시대(24%)보다는 월등히 높았다. 반면, 다른 두 사업분야에서의 증가율(62%, 70%)은 뒤의 두 시대에 비해 우위를 유지하였다. 둘째, 자산증가율에서는 박두병시대(66%, 53%)가 정보유통과 기술소재분야에서 정수창시대(79%, 95%)에 상당히 뒤떨어진 반면, 세 분야 모두에서 박용곤시대보다 월등히 높았다. 셋째, 한두 분야에서 정수창시대보다 매출액 혹은 자산의 증가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에 대한 순이익율

〈표 5〉 두산그룹의 영업 실적, 1953~94년 : 매출액, 자산, 자본금, 당기순이익의 사업영역별 평균구성비율과 평균(증가)율 (%)

5-1. 평균구성비율

	정보유통사업			생활문화사업			기술소재사업		
	무역/유통	정보/문화	합계	식품	양조/음료	합계	기술/소재	건설/환경	합계
(매출액)									
E. 3대 박용곤시대(93~4)									
	17	6	23	4	44	48	11	19	30
D. 정수창시대(91~2)									
	15	4	19	5	47	52	12	17	29
C. 3대 박용곤시대(81~90)									
	21	4	25	4	45	49	11	15	26
B. 정수창시대(74~80)									
	10	1	10	4	70	72	6	13	19
A. 2대 박두병시대(53~73)									
	18	0	18	0	76	76	2	8	9
(자산)									
E.	10	8	18	5	35	40	17	26	43
D.	9	6	15	5	37	42	18	25	43
C.	14	8	22	6	35	41	18	18	36
B.	9	1	9	6	68	69	10	12	22
A.	41	0	41	0	60	60	1	4	4
(자본금)									
E.	19	10	28	5	24	29	20	23	43
D.	16	6	22	5	29	34	23	21	44
C.	15	5	20	9	34	43	18	20	38
B.	8	1	8	4	64	66	9	17	26
A.	35	0	35	0	64	64	1	5	5
(당기순이익)									
C. (81~86)									
	8	11	19	2	−7	−5	−27	47	20
B.	−2	3	−1	5	60	61	9	31	40
A.	39	0	39	0	59	59	3	7	9

5-2. 평균증가율

	정보유통사업			생활문화사업			기술소재사업		
	무역/유통	정보/문화	합계	식품	양조/음료	합계	기술/소재	건설/환경	합계
(매출액증가율)									
E.	22	38	25	8	9	9	18	19	18
D.	–	–	–	–	–	–	–	–	–
C.	19	86	22	22	18	18	28	24	22
B.	94	72	95	80	41	43	120	54	66
A.	71		71		62	62	61	69	70
(자산증가율)									
E.	27	33	29	11	15	15	14	23	19
D.	–	–	–	–	–	–	–	–	–
C.	22	78	28	25	12	13	14	31	21
B.	75	51	79	73	44	46	158	72	95
A.	66		66		57	57	62	53	53
(매출액순이익율)									
C. (81~86)									
	0.4	4.4	0.7	0.3	0	0.1	−3.7	2.3	1.0
B.	1.0	3.6	1.0	0.6	2.4	2.4	6.5	3.9	4.2
A.	16.6		16.6		6.6	6.6	4.7	4.5	4.4

출처 : 1953~87, 〈두산그룹사〉, 1988~94, '두산그룹영업보고서'.

의 증가에 있어서는 박두병시대가 세 분야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였다. 넷째, 박두병시대에 한해서 보면 매출액과 자산이 정보유통사업(두산상사)에서는 플러스성장과 마이너스성장이 둘쭉날쭉하게 진행되는 매우 불안정한 추세를 보인 반면, 생활문화(동양맥주와 두산음료)와 기술소재(두산기계와 두산건설) 분야에서는 몇개 년도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이고 높은 플러스 성장을 경험하였다. 한편 매출액순이익 증가율의 경우는 세 사업분야 모두 플러스성장을 하였으며, 특히 정보유통분야는 1954~60년 사이에 10~57%의 높은 두 자리 성장율을 기록하였다.

박두병은 세상을 떠나기 1년여 전인 1972년 5월 동양맥주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날에 대해 깊은 만족감을 표시하였다[15].

15) 〈사보 OB〉 (1972. 5), 2면.

"내가 사업을 대하는 태도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택하였으면,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는 한눈을 팔지 않고 총력을 그 일에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20년 동안 유혹과 권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끝까지 내가 택한 한가지 일에 골똘해 왔다. 돌이켜 봐서 후회를 할만한 이유가 없다. 큰 욕심없이 제힘에 알맞게 일해왔기 때문에 도리어 기업의 根基가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어 동양맥주의 임직원에게 '成年을 맞아 成人다운 산업역군이 되기를' 당부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난히 강조하였다. 박두병의 이러한 기업관은 1957년 1월 서울상공회의소 상임의원이 된 이후 1967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피선, 1970년 아세아상공회의소연합회회장 피선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재피선 등으로 이어지는 그의 활발한 사회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을 것이다[16].

1972년 8월 3일, 60년대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무리한 시설확장을 하면서 악화된 기업의 재무구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 15호로서 취해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소위 8. 3조치)에 즈음하여, 박두병은 다음과 같은 각오를 다지면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17].

1. 기업인은 각자의 온갖 정성과 역량과 재력을 기업에 집중, 경주하여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각기업의 정관이나 사규까지도 개정하겠다.
2. 경영과 관련없는 일체의 동·부동산의 취득을 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기존 재산은 조속히 처분하여 기업의 내실을 기한다.
3. 일체의 비생산적 소비와 투자 및 사치행위를 배격하며,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부채를 진 자로서의 겸허하고 검소·근면·力行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기업풍토 쇄신을 기한다.
4. 이번 긴급재정명령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게 될 혜택과 생산성 향상,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얻어지는 이득을 궁극적으로 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하여 저물가정책에 자발적으로 협력한다.
5. 특히 사채권자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기업회계 내에 특별계정을 설정하고, 잉여금의 일정율을 우선 적립하는 등 구체적이고 성실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실천한다.
6. 일반사채권자가 요구할 경우, 기업은 調整채권의 출자 전환에 응할 것을 권장한다.
7. 국민경제의 견지에서 불건전하고 장래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예외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6) 〈연강박두병〉, 420~31면, 박두병 자필 이력서(1973), 박두병 장례식에서의 약력보고(1973).
17) 박두병 친필 메모(1972).

1969년 박두병은 동양맥주의 회장에 취임하면서 사장직을 정수창에게 물려 주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경영의 일선에서 물러나고, 기업경영의 전부를 전문경영자들에게 맡김으로써 자본과 경영의 분리를 시도'한 것으로 박두병은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18]. 그러나 20년 동안 한 가지 일에 몰두하였다는 자신의 회고로 보나, 3대 박용곤의 궁극적인 그룹회장 취임으로 보나, 오너의 회장 취임을 자본과 경영의 본격적인 분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박두병 자신 사회활동에 몹시 분주하였고, 동양맥주는 이제 정상궤도에 올라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유능한 창업동지인 정수창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하여 OB그룹의 내부 일을 맡기고 박두병 자신은 그룹의 대외관계에 보다 몰두한 말하자면 역할 분담이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어쨌거나 63세의 나이로 타계할 때까지 박두병은 선친의 회사인 박승직상점에서 경영수업을 받은 후 동양맥주를 불하받아 성공적으로 재건함으로써 오늘의 두산그룹의 토대를 견고히 하였다.

Ⅲ. 鄭壽昌시대, 1974~1980년

전문경영인 정수창의 시대는 1973년 8월 박두병이 세상을 떠난 후 1981년 3월 박두병의 장남 박용곤이 두산그룹의 회장이 될 때까지 7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정수창은 중심기업인 동양맥주주식회사의 사장으로서 계열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갔으며, 1977년 3월 동양맥주의 사장직을 최인철에게 넘겨주면서 그룹의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였다.

1919년 경상북도에서 출생한 정수창은 박두병의 경성고등상업학교 9년 후배로서(1941년 졸업), 1945년 동양맥주에 입사할 때까지 만주의 흥업은행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20년 동안 동양맥주에 몸담았으며, 1965년 11월에서 1969년 11월까지는 동양맥주를 떠나 새한제지공업주식회사,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 삼성물산주식회사 등의 경영에 관여하였다[19]. 4년 간의 외도 후에 1969년 12월 박두병이 동양맥주의 회장으로 옮겨 앉으면서 정수창은 사장으로 영입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장 취임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20].

"박두병회장님 사장 퇴임은 그 분이 年晩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직무가 동양맥주주식회사 사장 직무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어 우리나라 상공업계의 발전에 지장을 주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취하신 결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회장님께서는 아주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일선에서 물러나 우리들을 뒤

18) 〈사보OB〉 (1972. 5), 2면.
19) 〈OB뉴스〉 (1969. 12), 4면, 동아일보(1993. 11. 22), 11면('緣'시리즈 6번).
20) 〈OB뉴스〉 (1969. 12), 6면.

에서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장에 취임하기 6개월 전, 삼성물산 사장이던 정수창은 자신이 동양맥주로 되돌아 갈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20년 동안 고락을 같이했던 옛 직장을 그리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충고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1981년까지 그의 동양맥주/두산그룹 경영철학에 다름 아니었다[21].

"…OB는 1957년경부터 업계에서 지도적 지위를 확보하였고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해 올 수 있었다. 지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창의를 하고 더 많은 기회를 개척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앞선 기술, 지식을 도입하고 개발하느냐는 등의 모든 가능성을 널리 찾고 깊이 탐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OB가 상대방보다 더 효과를 얻음으로써 비로소 그러한 지도적 지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1969년 12월 이후 3년여 동안의 潛伏期을 지나 OB그룹의 정상에 오른 정수창은 7년여의 짧은 기간에 14개의 새로운 계열회사를 그룹에 편입함으로써 급격한 성장을 달성하였다. 이는 20년 계속된 박두병시대의 13개나 1981년 이후 14년 동안 지속된 박용곤시대의 19개와 비교하면 놀라운 계열회사 수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하여, 박두병시대의 마지막 해인 1973년 12개이던 계열회사 수는 1977년 19개로 늘어났고, 이후 1980년까지 19~21개의 그룹 구성원을 유지하였다〈표 1〉. 14개의 회사 중 71%에 해당되는 10개 회사는 기존회사를 인수하였고 나머지 4개 회사만 신설하였는데, 이러한 인수율은 박두병시대의 54%(13개 회사 중 7개)나 박용곤시대의 53%(19개 회사 중 10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었다〈표 2〉.

정수창시대에 생긴 14개 회사 중 동양컴퓨터시스템(1977년 인수, 1979년 합병)과 정우실업(1978년 인수, 1980년 합병) 등 2개는 정수창시대 때 다른 계열회사(동양전산기술=오리콤, 대진전자)에 합병되었으며, 5개는 1981년 이후의 박용곤시대 때 합병되었다. 이 7개 회사 중 두산농산(1975년 동양농산, 1978년 두산농산, 1992년 두산유업에 합병-두산유업의 이름이 두산농산으로 변경)을 제외하고는 2~8년의 짧은 기간 동안만 존속하였다. 반면 정수창시대에 설립 또는 인수되어 1995년까지 남아있는 기업은 7개로 15~19년의 엇비슷한 연륜을 가지고 있다. ①두산유리(1976년 대한유리공업 인수, 1976년 인수, 1979년 두산유리), ②오리콤(1977년 동양전산기술 인수, 1979년 오리콤), ③두산전자(1977년 한국오-크공업 인수, 1986년 두산전자), ④두산개발(1988년 동현건설, 1993년 두산개발), ⑤두산제관(1979년 설립), ⑥두산종합식품(1979년 천일곡산공업 인수, 1980년 두산곡산, 1992년 두산

21) 〈OB뉴스〉 (1969. 5), 3면.

종합식품), ⑦오비씨그램(1980년 오비시그램 설립, 1981년 오비씨그램). 이 중 두산개발과 두산종합식품은 1995년 현재 27개 계열회사들 중 지정된 5개 주력기업들 중에 포함되어 있다(나머지 3개 주력기업인 동양맥주, 두산건설, 두산음료는 박두병시대의 기업들이다).

늘어나는 계열회사들을 통합, 조정할 필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1975년 9월 10일 그룹의 최고기구로서 그룹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5년 전 박두병은 이러한 기구의 필요성을 이미 강조한 바 있었다. 이 위원회와 그 사무국인 그룹기획실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22].

그룹운영위원회

1. 설치 목적 : 동양맥주그룹이 꾸준히 성장, 발전하여 그룹회사의 수와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그룹적인 입장에서 그룹회사 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경영전략을 수립, 그룹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룹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그룹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 구성 : 그룹운영위원회는 동양맥주주식회사의 이사진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회장은 동양맥주 이사회 회장이 된다.
3. 관장사항 : ①그룹이념 및 정신의 확립, ②그룹 경영목표의 설정, ③그룹 장기운영방침의 수립, ④각부문별 장기계획의 수립, ⑤예산 편성 지침, ⑥신규사업계획, ⑦조직의 개선, ⑧인력수급계획, ⑨임원의 선임, 퇴임 및 그 대우에 관한 사항, ⑩급여정책, ⑪공통 사규의 제정, ⑫종합자금계획, ⑬그룹판매촉진계획

그룹기획실

1. 설치목적 : 그룹기획실은 그룹운영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그 실무를 담당한다.
2. 조직 및 직무
   1) 실장－최인철
   2) 부실장－고종진
   3) 기획조사반－경영정보의 수집, 가공 및 처리, 장기경영계획의 수립, 신규투자계획의 수립, 그룹 홍보
   4) 인력관리반－인력관리, 사원교육, 사규 및 法務
   5) 경영관리반－재무관리, 판매관리, MIS 도입
   6) 경영지도반－감사, 경영진단

이러한 조직 정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978년 1월 1일 '두산그룹'이 공식 발족되었다. 이 역사적인 변신을 정수창회장은 이렇게 선언하였다[23].

22) 'OB그룹현황'(1976), 3~6면.

"…종래까지 불리어오던 OB그룹이 외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것이라면 두산그룹은 우리 스스로 제정한 이름입니다…….

우리 그룹은 그 동안 장구한 세월 속에 온갖 애환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발전하면서 기업체의 수도, 규모도, 사업분야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노력의 결정으로 그룹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났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산그룹은 이제야 붙일 수 있는 우리들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제 두산그룹은 소비재 위주의 기업군이라기 보다는 기계, 건축, 전자, 컴퓨터, 무역 등 생산재 치중의 새로운 계획과 경영으로 성장하면서 조국 중흥에 이바지하는 힘찬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그룹 매출액 중 맥주, 콜라 등 소비재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OB그룹이라고 불리워도 무방하였다. 그러나 그 비중이 1977년에 45%로 떨어졌고, 1978년에는 소비재 1/3, 무역, 기계, 건설, 화학공업 2/3로의 구조 전환이 예상되어 그룹의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978년 이후의 경영 전략은 '소비재산업의 최대한 성장과 건설, 기계공업의 적극적 성장'으로 잡혔으며, 이에 따라 소비재산업은 20%의 완만한 성장, 건설, 기계공업 등은 60~70%의 고속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다[24].

'斗山'이라는 이름을 택한 데 대해서 정수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斗山이라는 말은 故 박두병회장의 선친이신 박승직씨가 박두병회장에게 앞으로 사업을 할 때에는 '斗山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斗山이란 말이 '한 말, 두 말 모아서 산같이 만든다'는 깊은 뜻도 있고 해서 斗山그룹으로 그룹의 명칭을 정한 것입니다[25]." '斗山'이라는 명칭은 이미 1946년에 斗山상회라는 이름으로 박승직일가의 가업(운수업)에 붙여진 바 있었으며, 1951년 10월에는 문을 닫고 있던 주식회사박승직상점이 주식회사두산상회로 업종 전환되어 정식 법인으로 등록됨으로써 斗山의 명칭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터였다.

소비재그룹에서 생산재그룹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하여 정수창시대에 설립 또는 인수된 14개 회사 중 절반이 넘는 8개(57%)가 기술소재사업이었으며, 4개 회사(29%)와 2개 회사(14%)는 각각 정보유통과 생활문화에 관련된 사업들이었다〈표 3〉. 반면 박두병시대 때 생긴 13개 회사 중 기술소재사업은 3개(23%) 뿐이었으며, 9개(64%)가 정보유통사업이었다. 마찬가지로 박용곤시대에 설립/인수된 19개 회사 중에서도 기술소재사업의 비중(3개, 16%)은 매우 낮았고, 정보유통사업의 비중(12개, 63%)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정수창시대의 8개 기술소재 관련 회사에는 2개 건설/환경 회사와 6개의 기술/소재 회사가 포함되어 있었

24) 〈斗山〉 (1978. 4), 16~7면.
25) 〈斗山〉 (1978. 4), 16면.

다. 이 중에서 동양컴퓨터시스템은 1979년 다른 계열회사인 오리콤에 흡수되었고, 1974년의 두산개발·정공사·대진전자 등의 3개는 1980년대 초에 다른 계열회사에 각각 흡수·통합 조정되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 매출액, 자산, 자본금, 당기순이익 등에서 차지하는 기술소재사업의 비중이 박두병의 시대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에 활동했던 모든 계열기업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두산그룹으로의 변신한 모습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1986년 현재 생존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중심으로 그 대강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뿐이다〈표 5-1〉. 기술소재 관련 회사에는 정수창시대의 8개 중 두산개발, 두산전자, 두산유리, 두산제관 등 4개와 박두병시대에 생긴 두산건설과 두산기계 등 6개 계열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 생활문화사업에는 정수창시대의 2개(두산종합식품과 오비씨그램)와 박두병시대의 2개(동양맥주와 두산음료) 등 4개 회사가 모두 고려되고 있다. 정보유통사업에는 정수창시대의 4개 중 두산농산과 오리콤 등 2개와 박두병시대의 9개 중 두산상사 1개 등 3개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정수창시대에 있어서의 생활문화사업의 비중이 박두병시대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출액이 76%에서 72%로 조금 낮아졌을 뿐 자산(60%에서 69%로), 자본금(64%에서 66%로), 당기순이익(59%에서 61%로) 등에서는 오히려 그 비중이 높아졌다. 네 기준 모두에서 60~70%의 절대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기술소재사업의 위상은 현저히 향상되었다. 매출액 비중은 2배 이상(9%에서 19%로), 당기순이익은 4배 이상(9%에서 40%로), 자산(4%에서 22%로)과 자본금(5%에서 26%로) 5배 이상 각각 늘어난 것이다. 특히 당기순이익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1979년에는 기술소재사업(58%)이 생활문화사업(40%)을 처음으로 능가하였으며, 1980년에는 그 차이가 95% 대 27%로 벌어졌다. 매출액, 자산, 자본금 등도 1980년에 가까워지면서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결국 기술소재사업 성장의 많은 부분은 정보유통사업의 희생 하에 이루어진 셈이 된다. 정보유통사업에 속하는 두산상사는 이미 1960년대 초부터 그룹 내에서의 역할이 미미한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두산농산과 오리콤은 생긴 지 얼마되지 않아 제 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년 평균 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순이익율 등 주요 재무비율을 보면 정수창시대의 성장세(53%, 49.3%, 2.5%)가 박두병시대의 그것(68.4%, 91.4%, 7.7%) 보다 상당히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981년 이후의 박용곤시대에 비해서는 2~3배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표 4〉. 1974~80년 동안 자산은 년 평균 30~79%의 비율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은 1976년(8%)을 제외하고는 23~88%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다. 매출액에 대한 순이익의 비율은 1980년의 0.4%를 제외하고는 1.8~4.1%의 증가를 나

타내었다.

재무비율을 정보유통, 생활문화, 기술소재 등 사업영역 별로 살펴보면 정수창시대의 특징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표 5-2〉. 무엇보다 기술소재사업의 급속한 성장이다. 박두병시대의 두산기계에 더하여 정수창시대에 두산전자, 두산유리, 두산제관 등 3개의 기술·소재 관련 회사가 추가됨으로써, 년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박두병시대의 61%에서 정수창시대에는 2배인 120%를 기록하였다. 자산증가율도 62%에서 158%로 급증하였다. 특히 1976~79년간에는 106~342%에 달하는 세 자리수의 년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매출액순이익증가율은 4.7%에서 6.5%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편, 건설·환경 분야에서는 박두병시대의 두산건설에 두산개발이 추가되어 자산증가율은 다소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나, 매출액과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술·소재와 건설·환경을 포함하는 기술소재사업은 자산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증가한 반면, 매출액증가율과 매출액순이익율은 다소 둔화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둘째, 생활문화사업의 주축인 동양맥주와 두산음료의 성장세는 박두병시대에 비해 자산, 매출액, 매출액순이익율 모두에서 둔화되었으며, 특히 매출액순이익율의 년평균 증가율은 6.6%에서 2.4%로 2배 이상 낮은 비율을 보였다. 셋째, 정보유통사업의 중심인 두산상사는 매출액, 자산, 자본금,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한 중에서도, 매출액과 자산은 박두병시대 보다 높은 비율로 늘어났다. 그러나 매출액순이익율은 1976년 이후 1% 미만의 몹시 저조한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7년여의 재임기간 동안 정수창은 그룹운영위원회의 구성, 두산그룹의 정식 출범, 생산재사업 비중의 대폭 강화 등 두산그룹 100년 역사에 길이 남을 획기적인 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1972년 6월 정수창은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로부터 전문경영인으로서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한 공로로 최우수경영자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전문경영인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26].

> "전문경영인은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예가 극히 드문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존재다.
>
> 자본가가 아닌 사장으로서 경영의 총책임을 맡고 어떻게 하면 기업의 성과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해나갈 수 있느냐는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정열과 능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되도록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전문경영인이다.
>
> 그는 또한 종업원의 행복과 고객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과 사회에 대한 책임 등을 동시에 최대한으로 만족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편파적이어서는 안된다."

26) 〈사보OB〉 (1972. 7), 9면.

그는 또한 경영자 여하에 따라 기업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면서, 경영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세를 강조하였다[27].

1. 公私의 구분을 엄격히 할 수 있고, 사회발전을 가장 우선해서 생각하는 태도와 기업발전에 모든 정열을 불태우는 자세.
2. 조직은 그 성격상 냉혹하므로, 이 차디찬 조직 속에 따뜻한 피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인간미와 인격.
3. 日進月步하는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항상 자기 계발에 힘쓰는 태도와 정보를 수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지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자세.

1981년 초 그룹회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정수창 그 자신 이러한 자세를 견지했음을 신년사, 창립기념사, 강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8]. 1981년 이후 정수창은 동양맥주의 회장으로서 두산그룹의 경영에 계속 관여하였다.

Ⅳ. 3대 朴容昆시대, 1981~1996년

박승직의 장손이자 박두병의 장남인 박용곤이 두산그룹의 회장에 취임한 것은 1981년 3월 2일이었다. 49세의 늦은 나이였다. 이후 1996년까지 15년 동안 그룹을 이끌어 오고 있다. 1991년 4월부터 1993년 2월까지의 2년 동안은 잠시 회장직을 정수창에게 넘겨주기도 하였으나 박용곤의 경영노선은 견지되었다.

1932년 박두병이 경성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하던 해 태어난 박용곤은 1945년 경동중학교에 입학하였다. 1951~3년 동안 해군에서 복무한 후 미국 유학 길에 올라 1959년 워싱톤대학 상과를 졸업하였다. 바로 귀국하여 한국은행 조사부에서 근무하였으며, 1963년 4월 동양맥주에 업사함으로써 가업에 처음으로 접하였다[29]. 3년 후인 1966년 동양맥주의 첫 계열회사인 한양식품(현재의 두산음료)의 사장에 취임하여 본격적인 경영수업을 받기 시작하였다. 1969년 정수창을 동양맥주사장으로 지목했을 때, 박두병은 자기 아들이 아직 큰 덩치의 회사를 무리없이 이끌어 가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을 지도 모른다. 1966년 이후 14년 동안 여러 계열회사의 최고경영자로서 연륜을 쌓은 후 결국 1896년 시작된 가업을 이어받게 된 것이었다.

27) 위의 글.
28) 예을 들어 정수창의 다음 글을 참조 : 〈사보OB〉 (1975. 10), 2~4면 ; 〈사보OB〉 (1976. 5), 14~5면 ; 〈사보OB〉(1976. 6), 18~9면 ; 〈斗山〉 (1978. 1), 12~3면.
29) 〈연강박두병〉, 421~6면.

박용곤은 취임식에서, 자신의 그룹회장 취임으로 경영과 소유가 통합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각 계열회사의 최고경영자에게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이양할 것을 명백히 하면서, '자아의 실현, 기업의 성장, 사회에의 봉사' 등의 그룹이념을 충실히 지켜나가기 위해 세가지 경영방침을 제시하였다[30].

1. 두산그룹을 '모든 사원이 그 일생을 걸어서 후회없는 직장'이 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회사의 번영과 개인의 행복이 일치되도록 경영하겠으며, 특히 신용협동조합의 강화, 인재 육성 등을 통하여 사원의 물질적 대우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각자의 능력과 형편에 맞는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 두산그룹을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그룹'이 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는 범그룹적으로 품질관리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값싸고 좋은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할 것이다. 또, 앞으로 매년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연구개발에 돌려 신규사업 진출 및 신제품 개발에 힘쓰겠다.
3. 두산그룹을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안정적 성장과 이윤극대화를 달성하는 그룹'으로 만들겠다. 오늘날의 경영은 환경적응업이라 할 정도로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 공해문제, 수출과 해외진출 등 기업 외부에서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에 앞서 나가도록 하겠다.

   모름지기 경영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이다. 적정한 이윤을 내지 못하였다 함은 그가 관리할 수 있는 자원, 인력, 자금을 낭비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어려운 환경 하에 있지만 제한된 자원, 시간 내에 착실한 기업운영으로 적정한 이윤을 내야함이 오늘날 우리 기업가가 해야 할 일이다. 이윤을 내지 못하고서는 주주, 사원, 소비자, 거래선, 국가공공단체 등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

특히, 1980년 말부터 각 계열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TQC(Total Quality Control)운동을 1982년 1월부터는 그룹차원에서 강력히 전개하기 시작하였는데, 박용곤은 이 운동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TQC운동은 과거에 많이 있어 왔던 각종 캠페인처럼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TQC가 바로 일상업무에 흡수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각종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경영체질이 강화되어 불황에서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31]."

30) 〈斗山〉 (1981. 3), 6~7면.
31) 〈斗山〉 (1982. 1), 6면.

박용곤시대 때 생긴 사실상의 첫 계열기업은 주식회사 합동이었다. 1960년에 인수되어 20년 동안 두산그룹의 일원이었던 합동통신사는 1980년 12월 강제로 폐업되었는데, 박용곤의 회장 취임 2개월 전인 1981년 1월 주식회사합동으로 재탄생되어 있었다. 1981년 7월까지 박용곤은 이 회사에 다른 계열회사인 두산개발주식회사(1974년 설립)를 흡수시켜 회사이름을 두산개발주식회사로 바꾸었는데, 합동통신사의 경영을 한 때 책임졌던 그로서는 이 회사에 남다른 정성을 쏟았을 것이다. 이후 두산개발은 두산유업주식회사(1988년), 두산농산주식회사(1992년) 등으로 변신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32].

주식회사합동을 시작으로 설립 또는 인수된 계열회사는 1981~9년 사이에 11개, 1990~4년 사이에 8개로 박용곤회장 재임 13년 동안 19개에 달하였다. 이 중에서 두산렌탈주식회사는 1993년 3월 박용곤회장이 재취임하기 2개월 전에 설립되었다. 이는 박두병시대(1952~73)의 20년 동안 생긴 13개보다는 월등히 많은 수이며, 정수창시대(1974~80)의 7년 동안 생긴 14개에 버금가는 신설 계열회사 수이다. 그리하여, 정수창시대의 마지막 해인 1980년 19개이던 계열회사 수는 1985년까지 23개로 되었으며, 이후 줄곧 22~23개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는 다시 26개로 증가하였다〈표 1〉. 19개 회사 중 절반(9개, 47%)은 새로 설립되었고, 절반(10개, 53%)은 기존의 다른 회사를 인수한 것이었다. 이러한 설립율은 박두병시대(13개 중 6개, 46%)와 비슷한 것인 반면, 정수창시대(14개 중 4개, 29%)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이다.

박용곤시대에 생긴 19개 회사 중 두산컴퓨터, 동아출판사, 대아지기공업, 베리나인, 한국네슬레 등 5개는 3~7년의 짧은 존속 기간 후 1992년까지 없어졌다. 이 중에서 1985년에 인수된 동아출판사는 같은 해 같이 인수된 동아인쇄공업에 3년 뒤에 합병되었는데, 이 때 동아인쇄공업의 명칭이 동아출판사로 바뀌었다[33]. 나머지 15개 회사의 연륜은 1995년 현재 14년(두산농산)에서 1년(두산정보통신, 삼화왕관, 두산엔지니어링)으로 일천한 상태이다〈표 2〉.

따라서 1995년 현재 두산그룹의 26개 계열회사의 역사는 99년에서 1년까지 매우 다양하며, 99년 기업 1개, 28~43년 기업 4개, 10~19년 기업 12개, 10년 미만 기업 9개이다. 시작된 시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승직시대－①두산상사(1896년 시작, 99년 동안 존속) ; 박두병시대 ②동양맥주(1952년, 43년), ③두산건설 (1960년, 35년), ④두산음료(1966년, 29년), ⑤두산기계(1967년, 28년). 정수창시대－⑥두산유리(1976년, 19년), ⑦오리콤(1977년, 18년), ⑧두산전자(1978년, 18년), ⑨두산개발(1978년, 17년), ⑩두산제관 (1979년, 16년), ⑪두산종합식품(1979년, 16년), ⑫오비씨그램(1980년, 15년). 박용곤시대－⑬두산농산(1981년, 14년),

32) 〈두산그룹사〉, 702~5, 762~5, 852, 855, 893, 904~7면.
33) 위의 책, 1117~21, 1143, 1153, 1160, 1170~4면.

⑭OB베어스(1983년, 12년), ⑮동아출판사(1985년, 10년), ⑯백화(1985년, 10년), ⑰두산기업(1985년, 10년), ⑱덴쯔영엔드루비컴코리아(1989년, 6년), ⑲두산창업투자(1990년, 5년), ⑳경월(1993년, 2년), ㉑두산렌탈(1993년, 2년), ㉒한국쓰리엠(1993년, 2년), ㉓한국코닥(1993년, 2년), ㉔두산정보통신(1994년, 1년), ㉕ 삼화왕관(1994년, 1년), ㉖두산엔지니어링(1994년, 1년). 없어진 22개 계열회사들 중에서는, 합동통신사(1960~80, 20년), 두산농산(1975~92, 17년), 한국맥아공업(1961~72, 11년), 금강음단(1964~75, 11년) 등 4개 만이 비교적 오랜 기간 활동하였으며 나머지 18개는 10년 미만 동안 존속하였다.

박용곤시대에 생긴 19개 회사를 사업영역별로 분류해 보면 2/3 정도(12개, 63%)가 정보유통사업과 관련되어 있었고, 생활문화사업(4개, 21%)과 기술소재사업(3개, 16%)에의 진출은 저조하였다〈표 3〉. 정수창시대(1974~80) 때는 신규회사의 57%(14개 중 8개)가 기술소재 사업을 하였으며, 박두병시대(1952~73) 때는 64%(13개 중 9개)가 정보유통 영역에 속해 있었다.

기술소재 관련 회사 중, 두산컴퓨터주식회사는 1984년 설립되었으나 4년 뒤 두산산업(1993부터 두산상사)에 흡수되었으며, 오랫동안 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삼화왕관주식회사를 정식으로 그룹에 편입한 것은 1994년이었다. 두산엔지니어링주식회사가 설립된 것도 1994년이었다. 생활문화 영역에서는 1985년에 베리나인과 백화를, 그리고 1993년에 경월을 각각 인수함으로써 동양맥주(1952년), 두산음료(1966년), 오비씨그램(1980년)으로 이어져 온 양조·음료 분야를 특히 강화하였다. 또한 유일한 식품 관련 회사였던 두산종합식품(1979년)에 더하여 한국네슬레(1987년)가 추가되었다. 한편 정보유통 영역에서는 동아출판사를 인수함으로써 합동통신사의 뒤를 이어 생긴 오리콤에 의해 명맥이 유지되어 오던 정보·문화 분야가 한층 강화되었다. 1990년대 초에는 두산창업투자(1990년), 두산렌탈(1993년) 등 두산그룹으로서는 낯선 금융 분야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신규사업에의 진출 정도를 보면 정수창시대 때 본격화되었던 '소비재에서 생산재에로의 그룹의 구조적 전환' 물결이 박용곤시대에 들어와서는 퇴조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였다. 새로운 회사를 방만하게 설립 또는 인수하는 대신 기존 회사의 성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기술소재사업의 위상을 대폭 강화했던 것이다〈표 5~1〉.

먼저 매출액에 있어서는 두산기계, 두산전자, 두산유리, 두산제관 등 4개의 기존 기술·소재 회사에 두산컴퓨터와 삼화왕관이 추가되고, 두산건설과 두산개발 등 2개의 기존 건설·환경 회사에 두산엔지니어링이 보강되어, 기술소재사업군의 비중이 정수창시대의 년 평균 19%에서 1980년대의 10년 동안에는 년 평균 26%로 증가하였다. 이 비율은 1994년까지 31%로 더욱 늘어났다. 이에 반해 1980년까지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생활문화사업군은 기존의 동양맥주, 두산음료, 두산종합식품에 오비씨그램, 백화, 베리나인, 한국네슬레 등 4개

의 신규 기업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9년 50%대(59%)로 하락하기 시작한 추세가 가속화되어 1981년 이후 1994년까지 45~53% 선에 머물렀다. 한편 정보유통사업군은 다수의 신규기업으로 인하여 매출액에서의 비중이 한층 높아졌는데, 동아출판사가 속해 있는 정보·문화 영역의 역할이 특히 두드러졌다.

둘째, 기술소재사업과 정보유통사업의 약진과 생활문화사업의 퇴조 현상은 자산, 자본금, 당기순이익 규모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기술소재사업이 생활문화사업을 점차 능가하게 되었다. 정수창시대 때 년 평균 22%에 머물렀던 기술소재사업의 자산에서의 비율은 1988년까지 38%로 껑충 뛰어 생활문화사업(32%)을 처음으로 앞질렀으며, 이 역전 현상은 이후 계속되었다. 1994년 현재 양 사업의 비중은 각각 43%와 39%였다. 자본금에서도 비슷하였다. 기술소재사업의 비중은 정수창시대의 년 평균 26%에서 1984년까지 43%로 늘어나 생활문화사업(39%)을 처음으로 능가하였다. 1985~90년 사이에는 생활문화사업(39~46%)이 기술소재사업(33~39%)을 다시 앞질렀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다시 역전되어 1994년 현재 양 사업의 비중은 28%와 44%로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당기순이익에서도 1981~2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술소재사업(39~87%)이 생활문화사업(4~27%)을 월등히 앞질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1년의 그룹회장 취임식에서 박용곤은 '이윤의 극대화 목표'를 3대 경영방침에 포함시켜 그 달성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당시의 상황이 특히 어려웠던 것이다. "…지난해는 경제적 불황에다 사회적 혼란, 이상기후까지 겹쳐 우리에게는 뼈아픈 한 해였읍니다. 우리는 기업성장면에서 손실을 본 1980년을 하나의 악몽으로 돌리지 말고 이 해에 겪은 모든 일을 하나하나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34]." 1973년 10월의 제1차 석유파동을 어렵게 넘긴 한국경제는 1979년 7월에 시작된 제2차 석유파동에 좌초, 1980년 사상 처음으로 GNP성장율이 마이너스(−4.8%)를 기록하였다. 이후 한 동안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서도 물가가 상승하는(1980년 도매물가 상승율 38.9%)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되다가 1981년(6.6%)에 GNP성장율은 1979년(7.0%) 수준으로 회복되었다[35].

이 어려운 시기에 두산그룹도 최대의 난관을 맞이하고 있었다. 1970년대 전반기에 12~29억원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던 당기순이익은 1978년까지 89억원으로 급증한 후 정수창시대의 마지막 해인 1980년 20억원으로 격감하였다. 특히 정보유통사업군 중의 무역·유통 분야는 1953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6억원)를 보았고, 기술소재사업군 중의 기술·소재 분야는 1967년 이후 두번째로 적자(−2억원)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그룹의 매출액순이익율도 1978년의 3.5%에서 2년 뒤에는 1954년 이후 처음으

34) 〈斗山〉 (1981. 3), 7면.
35) 한성신 (1991) 참조.

로 1% 이하(0.4%)로 떨어졌다. 박용곤시대의 첫 2년 동안 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당기순이익과 매출액순이익율이 마이너스(1981년, −57억원, −0.8%;1982년, −56억원, −0.6%)를 보였다. 특히, 기술·소재 분야에서의 적자 폭은 1980년의 −2억원에서 1981년에는 −80억원, 그리고 1982년에는 다시 −94억원으로 커졌으며, 매출액순이익율도 1980년의 0.4%에서 1981년과 1982년에는 각각 −2.3%와 −1.5%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 2년간 생활문화사업군 중의 양조·음료 분야도 1954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당기순이익(−23억원, −27억원)과 마이너스 매출액순이익율(−0.7%, −0.7%)을 기록하였다. 한편 1980년 적자였던 무역·유통 분야의 당기순이익은 1981년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1978년 이후 한 자리 GNP성장율을 보이던 한국경제가 1983년 다시 두 자리 성장율을 회복함에 따라, 두산그룹도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 서서히 정상궤도를 되찾기 시작하였다. 이후 박용곤회장의 취임 10년이 되던 1991년 봄 두산그룹은 소위 '페놀사건'(두산전자 구미공장의 제품 원료인 페놀수지가 유출되어 대구수원지를 오염시킨 사건)으로 또 한 번의 위기를 겪었다[36]. 그룹 전체로 보나, 세 가지 사업군으로 보나 박용곤시대의 성장율은 매출액, 자산, 매출액순이익율 모두에서 정수창시대나 박두병시대 때 보다 상당히 둔화되었다. 다만 정보유통사업군 중 정보·문화 분야에서만 그 이전 시대보다 나은 성적을 기록하였다(표 4, 5-2).

1991년 4월 페놀사건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룹회장직을 정수창 전회장에게 맡겼던 박용곤은 1993년 2월 다시 회장직에 복귀하였다. 그는 취임사에서 새 경영이념의 철저한 이행과 환경문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특히 강조하였다[37]. '자아의 실현, 기업의 성장, 사회에의 봉사'의 종래 경영이념을 바꾸는 작업은 1991년 6월에 시작되어 1992년 12월 19일 공식으로 선포되었다. 그룹비전−21세기를 이끌어 나가는 초일류기업−첨단화, 일류화, 세계화;슬로건−전통 100년, 도전 100년;경영이념−고객은 우리의 스승이고, 품질은 우리의 자존심이며, 혁신은 우리의 생활이고, 인재는 우리의 보배다;사원정신−우리는 두산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모든 일에 전문가적이고 열정적이며 긍정적인 자세로 사고하며 행동한다[38]. 환경에 대해서도 이미 '깨끗한 환경, 우리가 먼저'라는 그룹 환경마크가 제정되고 5R운동이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Reformulation(제품재구성), Redesign(설비재배치), Reuse(재사용), Reduce(감량화), 그리고 Recycle(재활용). 이러한 노력의 결과 두산그룹은 1994년 국내 그룹 중에서 가장 많은 16개 사업장이 환경관리모범업체로 지정되기도 하였다[39].

1985년 박용곤은 두산의 영원함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몫이 아니라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룹의 전체 흐름에 대한 방향 만을 제시할 따름이다. 두산의 어떤 서류에도 내 도

36) '페놀백서' (1994).
37) 〈斗山〉 (1993. 3), 4~5면.
38) 〈斗山〉 (1993. 1), 6~7, 16~7면.
39) 〈斗山〉 (1993. 2), 34~5면, (1994. 1), 8면.

장을 찍지 않는다. 계열사 사장이 그 기업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기업의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느끼면서 자기 일을 한다. 따라서 두산의 영원함은 그들 한 명 한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40]." 1991년 초 그룹회장직에서 물러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러한 가치관 때문이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1985년 현재 53세인 박용곤은 후계 문제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았다. "나는 꼭 내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은 없다. 아들에게 자격이 있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아들을 총수로 키우고 있지는 않다[41]."

V. 맺음말

1996년 1월 25일 두산그룹은 한국기네스협회로부터 '국내 最古기업 공식기록 인증서'를 받았다[42]. 그 100년의 역사가 이어져 오는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박승직－박두병－박용곤으로 이어지는 3대의 가족구성원과 충실한 家臣 정수창의 기업가정신에 의해 고난은 극복되어졌다.

구한말 10여년 동안 환포상으로 자본을 축적한 박승직은 1896년 경성의 종로4가 15번지에 상점을 열었다. 1920년대 초까지 '베오개의 거상'으로 성장했던 박승직상점은, 빚 때문에 1925년 주식회사로 개편되었으며, 이후 10여년 동안 소유권은 상실되었고 경영권은 크게 침해당하였다. 1938년 소유권과 경영권을 다시 회복한 박승직상점은 경이적인 영업실적을 내면서 과거의 영화를 되찾았다. 그러나 해방이 되면서 상점은 문을 닫고 말았다.

1945년 이후 몇년 동안 운수업으로 연명하던 박두병은 1951년 법인으로만 남아 있던 박승직상점을 두산상회로 확대, 개편하여 끊어질뻔 했던 과거를 다시 되살려 놓았다. 여기에 1952년 동양맥주를 불하받음으로써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1960년까지 정상궤도에 오른 동양맥주는 계열회사를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 한국 유수의 'OB그룹'으로 발전하여 갔다.

1973년 박두병이 타계한 이후 그룹의 조타수를 잡은 정수창은 그룹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열회사 간의 관계를 체계화하였으며, 1978년 '두산그룹'을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종래의 소비재 중심의 사업구조를 생산재 중심으로 전환시켰으며 자산, 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모두에서 높은 성장율을 달성하였다.

제2차 석유파동 이후의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 1981년 그룹을 책임지게 된 박용곤은,

40) 〈직장인〉 (1985), 24면.
41) 위의 책, 25면.
42) 매일경제신문(1996. 1. 26).

1981~2년 간의 마이너스 순이익을 겪은 후 서서히 그룹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다. 특히 기술·소재 및 건설·환경 분야의 비중을 강화하여 두산그룹의 이미지를 명실공히 생산재그룹으로 탈바꿈시켰다. 1991년의 페놀사건은 박용곤에게는 또 하나의 시련이었다.

과거 100년의 두산그룹의 역정이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면 무한경쟁, 개방화, 세계화로 특징지워질 앞으로의 100년 또한 그러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앞으로의 100년에 성공적으로 도전하기 위해 많은 대비가 있어야 하겠지만, 100년의 전통 속에서 도전과 응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정확하게 밝히고 냉철하게 분석하는 작업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1925년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1981~2년 간의 마이너스 순이익, 1991년의 환경사건 등 특히 어려웠던 상황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대처하였는가에 대한 신빙성있는 자료가 있다면, 거기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귀중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룹 차원에서 문헌보관소를 설치하고 전문문헌보관인을 두어, 모든 계열회사의 내부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류, 보관, 분석, 활용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미래는 과거의 변형일 수 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의 발전적인 재등장인 경우가 많았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 있다. 그룹의 모습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남겨 10년, 50년 그리고 100년 후의 경영전략과 비전을 마련하는 토대로 삼겠다는 역사의식이 필요한 지금이다.

참 고 문 헌

1. 〈OB뉴스〉(두산그룹사보), 1969. 5, 1969. 12, 1970. 5, 1971. 5.
2. 〈사보OB〉(두산그룹 사보), 1972. 5, 1972. 7, 1972. 10, 1973. 5, 1975. 10, 1976. 5, 1976. 6.
3. 〈斗山〉 (두산그룹사보), 1978. 1, 1978. 4, 1981. 3, 1982. 1, 1993. 1, 1993. 2, 1993. 3, 1994. 1.
3. 〈직장인〉 (1985).
4. 박두병 친필 메모(1972년 경).
5. 박두병 자필 이력서(1973).
6. 박두병 장례식에서의 약력보고(1973).
7. 동아일보, 1993. 11. 22.
8. 매일경제신문, 1995. 4. 1, 1996. 1. 26.
9. 김동운, '한국재벌의 초기 형성 과정 : 두산그룹의 1대 박승직상점, 1925~1945년', 〈경제학연구〉 44-3(1996).

10. 김동운, '박승직상점, 1882~1925년', 〈경제학논집〉 6-2(1997).
11. 김용성, '두산그룹 90년통사'(1987).
12. 두산그룹, '영업보고서', 1987~94.
13. 두산그룹기획실, 〈斗山四季〉 (1995).
14. 두산그룹기획실, 〈두산그룹사〉 (1989).
15. 두산전자(주), '페놀백서', (1994. 3).
16. 동양맥주(주), '귀속재산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서' (1961. 6. 28,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 제출).
17. 매일경제신문사, 〈회사년감〉 (1979~94).
18. 연합통신사출판국, 〈연강박두병〉 (1975).
19. OB그룹기획실, 'OB그룹현황', (1976. 3. 1).
20. 한성신, '구조적 변화와 고도성장: 1970년대', 구본호편, 〈한국경제의 역사적 조명〉, 한국개발연구원(1991).

The Historical Formation of Doosan Group of Companies, 1952~1996

Kim, Dong-Woon*

Abstract

Doosan Group of Companies was the 12th largest chaebol with 26 member companies when it marked the 100th anniversary in 1996.

Back in 1986, Park Sung-Jik began to sell textiles at a small shop in Seoul. He well dealt with the era of Japanese colonization(1910~1945) and successfully made his business to grow into one of the most important mercantile houses in the city by the early 1920s. Park Doo-Byoung joined his father in the late 1930s, but it was in 1952 that he paved the way for a new start by acquiring the Oriental Brewery Co. Ltd. Either establishing new companies or taking over existing ones, Park had operated 13 businesses in all until he died 1973 ; two of them were absorbed into other member companines in 1972.

In 1973, the control of 'OB Group' was handed over to Chung Soo-Chang, who was a close friend of Park and became the chairman of the Oriental Brewery Co. Ltd, the hub of the group, in 1969. At that time, Park's eldest son Yong-Kon was 37 years old and was responsible for a main subsidiary. Chung's era lasted only for seven years, but he made an enormous contribution to the group, incressing the number of member companies from 11 in 1973 to 19 by 1980. As business interests rapidly enlarged, Chung constituted a governing committee in 1975 and, three years later, began to use the name of 'Doosan Group of Companies' with the intention of integrating a large number of member companies more tightly and efficiently.

In 1981, Park Yong-Kon eventually took overall charge of the group, while Chung was appointed president of Oriental Brewery Co. Ltd. A graduate from

* Dong-Eui University

Washington University, Park worked for the Bank of Korea for several years and joined his family business in 1963. When he became the group chairman at the age of 49, the Korean economy was in turmoil because of the second oil crisis ; his group was also facing a difficult time. However, Park successfully overcome the difficulties and had pursued aggressive diversification. By 1994, 19 enterprises in all were newly added to the group and member companies stood at 26, which increased from 19 in 1980. Park handed over the control of the group to his brother Yong-Oh in 1997, a year after the group's 100th anniversary.

Key-Words : Doosan Group Companies, Park Doo-Bayoung, OB Group

러·중·북한의 대외교역에 대한 발전과정*
-경제체제적 분석-

Processes on the International Trade of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Focussing on the Economic Systems-

조 규 진**

目 次

Ⅰ. 서론
Ⅱ. 구소련의 대외교역 발전과정
Ⅲ. 중국의 대외교역 발전과정
Ⅳ. 북한의 대외교역 발전과정
Ⅴ. 결론 및 유용성
참고문헌

Ⅰ. 서 론

과거에는 자본주의기업의 진출이 불가능했던 러시아, 중국 및 북한이 새로운 해외진출 대상지로 떠오르면서 그 국가의 대외교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인 중국과 러시아는 시장규모와 부존자원으로 인하여 남한을 비롯한 세계의 자본주의국가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의 매력적인 시장으로 등장하였다. 아직도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은 시장규모와 부존자원이 작아 세계의 자본주의기업에 대해서는 매력적인 진출대상지가 아닐지라도, 통일문제와 남북경협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남한기업의 진출대상지로는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기업이 이러한 국가에 진출을 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과거에 사회주의체제를 경험하였던 이들 국가의 대외교역에 대한 독특한 성질을 이해하지 못한 관계로, 이들 국가로의 진출을 유보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진출을 한 후에도 이해부족으로 인한 갈등으로 실익 없이 퇴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지금은 이들 국가가 자본주의기업의 진출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공통적으로 자본주의국가의 해외진출에 대해 제국주의적 착취를 세계적으로 확장한다고 비판하였던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들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기업의 진출을 비판하였던 이들 국가가 어떠한 이유와

* 이 연구는 광운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연구소 책임연구원.

과정으로 자본주의기업의 진출을 허용하는 대외교역정책을 펴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를 구분하는 근거가 경제체제인데, 경제체제란 국가 및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기업이나 토지 등에 대한 생산수단의 소유문제와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기구가 누구냐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조정문제에 대한 집단적 의사결정이 구체화된 제도를 말한다. 본문에서 자본주의국가란 기업 등의 생산수단을 민간이 소유한 상태에서 국가전체의 경제활동이 시장에 의해 사후적으로 조정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국가를 말하며, 사회주의국가란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계획에 의해 사전적으로 국가전체의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국가를 지칭한다.

이러한 경제체제의 차이로 인해 사회주의국가는 과거에 자본주의국가의 해외진출을 제국주의적 착취의 세계적 확장이라고 비판한다. 즉, 자본주의국가 내에서 자본의 노동에 대한 착취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은 성장하고 국내시장은 공급의 포화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국내 포화경쟁상태를 극복하고자 자본주의기업은 국외시장으로 눈은 돌리게 된다. 이는 기업차원에서 해외진출의 형태로 구체화되며, 이는 결국 국가차원의 정치적 식민지화와 더불어 자본의 노동에 대한 착취가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제국주의적 착취의 세계적 확장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체제의 차이로 인한 자본주의기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양체제 간 제품가격의 기준이 다른 관계로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의 교역은 방법론상으로도 상당히 힘든 문제였다. 즉, 자본주의국가의 제품가격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이 모두 고려되는 시장가격으로 정해지는 반면, 사회주의국가의 제품가격은 공급측면만이 고려되는 노동자의 제품생산에 대한 노동시간으로 정하여졌던 것이다. 그 결과 사회주의국가는 자본주의국가와의 교역을 회피한 채 자급자족을 대외교역의 원칙으로 삼았다. 단지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주의의 발전을 위해 수한 생산시설 및 첨단기술을 수입할 때에 한해 자본주의국가와의 교역을 하였다. 일방적인 필요의 수입으로 인한 외화부족을 막기 위해 무역형태는 대부분 외화의 지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구상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자본주의국가에 대한 수출품은 농산품이나 천연자원이 주종을 이루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체제를 변환하여 자본주의기업의 진출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제체제를 변환하지 아니한 북한도 자본주의기업의 진출을 약간이나마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자본주의기업의 우수한 생산시설과 첨단기술에 한해 수입하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중국, 러시아 및 북한의 대외교역에 대한 변화과정은 모두 경제체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러시아 및 북한의 대외교역과정은 크게 자급자족의 단계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기업의 생산시설 및 첨단기술의 수입단계를 거쳐 경제체제의 변

환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모두 경제체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대외교역의 기조인 자급자족원칙이 자체적으로 상당한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사회주의체제를 가지고 있던 과거에도 이들 국가는 자급자족의 원칙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 또한 사회주의국가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하여 경제체제 자체를 변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2장, 3장, 4장에서 구소련, 중국 및 북한의 대외교역에 대한 발전과정을 살펴보면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자급자족의 원칙으로 인해 각국의 대외교역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급자족의 원칙이 어떻게 변화되었나를 분석할 것이다. 즉,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서의 개혁과정과 경제체제의 변환과정을 통해 대외교역정책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할 것이며, 북한의 경우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서의 개혁과정에서 대외교역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학문적 및 실무적 유용성을 밝히고 결론을 맺을 것이다[1].

Ⅱ. 구소련의 대외교역 발전과정

레닌은 1917년 사회주의국가를 설립한 후 외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내적으로는 보수파와의 내전으로 인해 파탄에 이른 구소련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시공산주의체제(戰時共産主義體制)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기업을 국유화하고 국가계획에 의해 경제를 운영하면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틀을 잡으면서 식량도 배급하는 등의 내핍생활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자는 정책이었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을 주장하면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기업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세계적으로 자신의 영업범위를 확대하여 약소국에서 경제적 부를 착취하며, 이는 곧 국가의 팽창정책과 맞물려 정치적으로는 식민지정책을 쓰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자본주의국가 및 기업의 제국주의적 착취를 막기 위해서 자급자족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사회주의적 대외교역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그러나 전시공산체제 및 자급자족의 원칙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실패를 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장경제나 소규모의 재산취득을 허용하는 신경제정책(新經濟政策)을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시장형성으로 인한 국내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외교역을 부분적으로 시작하였다. 사회주의국가를 설립한 당시의 뒤떨어진 산업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업화를 촉진하여 국가경제를 우선 재건해야 된다고 레닌은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기계를 대량으로,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1) 조용범 1987, 17-60, 189-194 ; 김영봉 1987, 3-60, 함건식 1985, 183-229 ; Peters 1987, 13-34 ; Gutmann/Klein 1984, 93-116).

는 국내 자체의 경제발전으로는 불가능하고 대외교역을 허용하는 것 밖에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중공업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기계류 수입을 위해서는 국내의 생활수준이 낮았던 당시에도 소비재와 곡물을 대규모로 수출하였다. 정치적으로 볼 때에도 대외개방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있어 중요하며, 대외개방을 통한 중공업발전은 제국주의적 자본주의국가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1924년 레닌의 사망 후에 정권을 잡은 스탈린은 강압통치에 의한 철저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실시하였는데, 외적으로는 일국사회주의론(一國社會主義論)에 근거하여 극단적인 자급자족정책을 취했다. 그는 국내경제를 중공업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경제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구소련 나름의 개별적 경제로 성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업과 농업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국내에서 먼저 이룩하여야 한다고 주창하였다. 스탈린의 대외정책은 국가단위의 자급자족을 전제하는 가운데에서 사회주의국가 간의 협력만을 인정하는 사회주의체제만의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런 관계로 스탈린 시대의 사회주의체제는 세계시장경제체제로부터 자연히 분리되었다.

특히 스탈린은 모든 사회주의국가로 하여금 국가단위로 가장 훌륭한 전제조건을 제공하는 재화를 생산하는데 주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코메콘(COMECON :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id ; CMEA라고도 함)을 창설하였다. 진정한 사회주의국가 간의 경제연합의 건설과 자본주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가단위의 자급자족과 함께 사회주의진영에서의 거래를 통한 경제발전을 제도적으로 도모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들만으로 교역을 하여 사회주의체제에서의 국제분업을 국가단위로 하겠다는 코메콘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스탈린의 기타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위압적인 태도로 인해 코메콘국가와의 대외교역량도 작을 수 밖에 없었다.

자본주의국가와의 대외교역은 외교정치적 목적에 일치되는 경우나 자국에서 획득이 불가능한 기계 및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이외에는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즉, 자본주의국가와의 대외교역에 대해서는 구소련 경제의 확대재생산과정을 원활히 촉진할 경우에만 이용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이론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국가와의 대외교역을 본질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는 데에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권과의 대외교역을 완전히 허용하면 구소련 내의 제품유통에 있어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국가경제 전체가 자본주의권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론적 및 현실적인 위험을 극소화하는 것이 목표인데, 구소련경제에 대해 제국주의적 착취를 할 수 있는 자본주의국가와의 대외교역을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자본주의국가로부터의 공급자원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자본주의와 대외교역을 하였던 것이다.

레닌과 스탈린 시대의 이러한 국가단위의 자급자족에 기초하는 사회주의체제의 자급자족 정책은 사회주의국가 간의 대외교역활동까지도 정체시키는 결과와 함께, 국내경제발전의 필수적인 공업상품의 수입도 단절시키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세계산업발전과는 계속 단절되는 결과와 함께 국내생산성의 정체현상을 가져왔다. 또한 기계류 수입을 위해 농산물 수출을 하는 수입대체정책은 부족한 농산물을 강제적으로 수출하게 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금액의 외환을 소비하게 하여 국내에서는 농산물 부족과 함께 대외적인 국제수지적자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같이 자본주의국가와의 대외교역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은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후 정권을 잡은 후루시초프가 스탈린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국가와의 대외교역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내적으로는 지방분권을 통한 기업개혁을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그간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못하던 사회주의국가만의 코메콘을 활성화하기 시작하였다.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코메콘체제에서는 사회주의국가들끼리의 수출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외직접투자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물론 해외직접투자도 수출입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주체가 되어 투자를 하여 모회사를 만들었던 것이다. 자본주의체제의 해외직접투자는 대부분 어느 한 국가에서의 민간사기업이 성장하면서 그 하나의 단일국적기업이 모체가 되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직접투자를 하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국적관계로 다국적기업이 되는데 비해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코메콘체제에서는 여러 사회주의국가정부가 투자를 하여 어느 하나의 국가에 모회사를 설립하는 관계로 모회사자체가 여러 국적의 투자자가 결합된 다국적기업이 되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코메콘체제의 해외직접투자는 자본주의적 해외직접투자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후루시초프의 정책은 그의 정치적 실각으로 말미암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브레즈네프 시대로 이어졌다.

1964년 정권을 잡은 브레즈네프는 대내적으로는 기업개혁을,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즉, 대내적으로는 국가계획의 생산량지표에서 판매액지표로 바뀌고 국가기금으로 전환되었던 기업이윤을 기업에 유보하는 개혁을 실시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국가 간 국제분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본주의국가와의 정치적 관계에서도 평화공존정책을 실시할 뿐 아니라,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였다. 특히 자본주의국가와도 적극적으로 대외교역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철저한 사회주의 이론에 의한 국가단위의 자급자족원칙과 사회주의국가들만의 자급자족원칙으로는 사회주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여 이론적인 자급자족원칙을 포기하고, 서구자본주의국가의 기술력을 인정한 상태에서 서구자본주의를 포함한 세계경제전체의 국제분업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겠다는 현실적인 차선책을 택하였던 것이다. 기술력에 있어서는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전체국가의 기업이 서구자본주의국가의 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부존자원 및 국

내시장의 크기도 구소련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주의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세계시장전체의 국제분업으로 인한 이익을 외면한 사회주의국가만으로의 자급자족 경제정책으로는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브레즈네프의 이러한 대외개방정책은 사회주의국가에 많은 영향을 주어 이들 국가의 상당수가 자본주의를 포함한 세계경제적 분업에 광범위하게 참가하게 되었으며, 서구와의 교역비율 또한 현저히 증가되었다. 또한 코메콘의 경제적 결속은 증가되었는데, 이러한 결속을 위한 우수생산시설 및 첨단기술의 필요성은 모든 사회주의국가로 하여금 서방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 즉, 사회주의국가 각각은 국내수요의 충족과 함께 코메콘에서 할당된 제품을 모든 코메콘국가들에게 공급해야 하기에 공급규모를 확대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기업을 집단화하여 콤비나트체제를 갖추었다. 공급규모의 확대를 위한 대규모의 생산시설 및 첨단기술은 자국이나 코메콘국가 내에서는 구하기 힘들므로, 이에 필요한 생산시설과 첨단기술은 자본주의국가에서 수입하여야 했던 것이다.

특히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는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코메콘체제에 필요한 공급량을 위해 선진 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 차관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차관을 상환하기 위해 자본주의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은 국내경제 및 코메콘체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수출을 늘이는데 일조를 하였다. 그러나 교역량이 증가할수록 선진 자본주의국가로부터의 부채액수는 점차 늘어가게 되는 것은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코메콘체제를 통해 경제규모는 커짐과 동시에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의 부채가 증가하자, 똑같이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의 부채로 고심하고 있는 제3세계와의 긴밀한 교류를 주창하였다. 사회주의국가는 대규모화생산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제3세계와의 교류형태는 경제적 원조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실시한 대외정책의 특징은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모든 기업의 행위는 국가계획하에 이루어지고 그 의사결정기관은 국가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계획경제 하에서의 기업은 국가가 만든 계획을 실시하는 부속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국가에 대해서는 수출이나 수입만 허용하였을 뿐 아니라, 그 대외창구는 국가기관인 대외교역독점회사에서 전담하였으며, 코메콘 내에서는 해외직접투자도 허용하였지만 그 투자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전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브레즈네프의 사망 후 1985년부터 집권한 고르바초프는 그라스노스트를 실시하면서, 구소련의 모든 기업으로 하여금 자본주의체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기업에 대해 자율적 의사결정 하에 수출입을 할 수 있고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대외정책은 대내적으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서 대기업에 대해서 국가소유로 한 채 국가와의 계약액에 따른 그 기업종업원의 자율경영을 실시하고 소기업에 대해서 평생임대를 실시하는 페레스트로이카와 함께 이루어졌다.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국가를 포함한 세계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효율성증대 및 기술개발을 꾀하고 사회주의체제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기계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국내기업의 성장 및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본주의국가까지를 포함한 우수기술 소재국으로부터 수출입 및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생산시설 및 첨단기술도입을 강조하는 대외정책면에서의 구조적 전환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그라스노스트에 의거한 생산시설이나 첨단기술의 수입 및 외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국내기업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고르바초프의 이러한 그라스노스트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과 함께 이루어진 관계로 구소련의 소비자는 수입된 서방의 우수제품만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그렇지 않아도 기업의 자율경영정책으로 인하여 국가기금으로부터의 운영자금보조도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서방의 우수제품만의 구매로 인한 매출이 급감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국내기업은 거의 도산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기업의 도산상태와 국내유통기업 및 소비자의 사재기 현상으로 인해 국내시장은 극도로 위축되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다가 국내정치의 불안정까지 겹쳐 많은 액수를 필요로 하는 구소련에서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본주의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체하게 만들었다.

고르바초프는 국내전체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라스노스트와 함께 제한된 지역에만 해당하는 경제자유지대제도를 1988년 실시하여 일정지역에서의 수출입이나 해외직접투자의 완전개방을 통한 국내전체의 사회주의적 경제발전을 꾀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는 1979년부터 시작한 중국의 경제특구제도가 성공하자 이를 구소련에도 받아들이자는 시도였으나, 이의 준비단계인 1992년 옐친에 의해 경제체제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변환하는 관계로 시작도 못하고 곧바로 퇴색되어 버린 결과가 되었다. 또한 후루시초프 이후 결렬상태였던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 그 동안 양대국가로 분열되어 이론적으로는 주창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회주의체제의 국제분업이 실제 이루어지는 듯 하였으나, 이 또한 곧바로 구소련이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는 관계로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다.

옐친에 의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체제변환한 러시아의 국유기업은 대부분 사유화되었고, 기업은 스스로의 책임 하에 세계 모든 기업과의 수출입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는 거의 완전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가지고 있고 외국으로부터의 자금도 상당히 지원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러시아기업의 수출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러시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도 미미한 편이다. 그전까지는 대외개방에 대한 사회주의체제 및 국가제도가 기업의 대외교역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았지만, 제도적으로 가능한 지금은 러시아기업제품의 세계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부족과 러시아시장의 구매력이 부족하다는 외국기업의 판단으로 인해 러시아기업은 대외교역능력이 부족한 것이다[2].

지금까지 경제체제의 측면을 고려하여 러시아(구소련)의 대외교역정책에 대한 변환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표로 도식화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러시아(구소련)의 대외교역정책의 변환과정

대외정책 기조	년 도	지도자	대외정책의 구체적 내용
전시공산체제	1917	레닌	1.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배급제 2. 자급자족원칙, 제국주의론 3. 생산력 저하로 인해 대외교역의 필요성 인식
신경제정책	1921	레닌	1. 시장경제 및 소규모 재산취득 허용 2. 기계류 수입을 위한 소비재 및 곡물의 강제적 수출
일국사회주의론	1928	스탈린	1. 강압적 통치와 중공업 진흥정책 2. 국가단위의 철저한 자급자족 원칙 3. 코메콘 설립(실제 코메콘국가와의 교역량은 적음)
코메콘 내 국제분업	1957	후루시초프	1. 스탈린비판으로 인한 중국과의 결별 2. 코메콘체제 활성화(회원국간 수출입은 물론 해외직접투자도 허용)
자급자족원칙의 포기(세계전체의 국제분업)	1964	브레즈네프	1. 판매액지표에 의한 이윤의 기업 내 유보 2. 코메콘국가와의 적극적 경제결속과 이를 위한 대규모 생산시설(→콤비나트) 3. 사회주의발전을 위한 자본주의국가와의 경제적 국제분업 활성화 (수출입에 그침) 4. 자본주의국가에 대한 부채증가 5. 제3세계에 대한 경제적 원조
그라스노스트	1985	고르바초프	1. 페레스트로이카와 양면(시장경제, 종업원 자율경영, 소기업 임대) 2. 기업의 자율적 대외정책 결정(자본주의국가 포함, 수출입 및 해외직접투자) 3. 중국과의 관계복원 4. 소비자의 서방제품에 대한 편파적 구매로 국내기업의 도산사태발생 5. 경제자유지대 설치(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고르바초프 실각)
경제체제변환	1992	옐친	1. 전체 기업의 사유화와 완전한 시장경제 도입(법적으로는 완전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와 같은 대외개방) 2. 러시아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부족과 러시아시장의 구매력의 한계점 노출

2) 김영준 1988, 113-117 ; 베르너 · 굼 펠 1989, 119-123 ; 정용수 1995, 14-63 ; Barksdale/Kelly, 1978, 264-272 ; Heller/Nekrich 1981, 232-249 ; Nove 1977, 79-81).

Ⅲ. 중국의 대외교역 발전과정

1949년 중국의 사회주의국가를 설립한 모택동은 구소련보다 30년 늦게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관계로 스탈린식의 철저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이념적으로 신봉하고 있었다. 또한 건국초기에는 사회주의국가를 위해 국력이 소진되어 현실적으로도 스탈린이 통치하는 구소련으로부터 경제적 후원을 많이 받고 있었던 관계로, 대외정책도 그 당시 구소련을 지배하고 있던 스탈린식의 대외정책을 거의 그대로 따랐다. 형식적으로는 국가단위의 자급자족원칙을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사회주의국가 간의 국제분업체제를 따랐는데, 실제로는 사회주의국가 간 협력차원에서의 대외교역이 아니라 구소련으로부터 자금, 물자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원조를 받는 수준이었다. 이 당시 중국의 대외교역정책은 구소련의 교역정책과 같이 외국의 값비싼 기계류와 원료 그리고 중간재를 수입하기 위해 국내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형태였다. 이러한 수입대체정책으로 인해 많은 금액의 외화가 사용되어 구소련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 국내에서는 농산물 부족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국제수지적자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구소련의 후루시초프가 스탈린을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함께 개혁정책을 실시하자 모택동은 이에 대해 이념적으로 심하게 반발하였다. 또한 중국경제도 상당히 발전하여 사회주의권 내에서 실질적인 강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신한 모택동은 후루시초프의 적극적인 대외개방노선에 반대하면서 인민공사 내에서의 자급자족형태를 기본으로 하는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를 시작하였다. 1958년부터 시작한 대약진운동은 국가단위의 자급자족은 물론 인민공사 내에서 생산과 소비를 모두 해결하자는 아주 극단적인 자급자족 형태인 것이다. 중국과 구소련과의 사회주의에서의 주도권 쟁탈과 이념의 차이로 인한 분쟁이 시작되자 양국 간의 관계는 아주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주의국가체제는 중국과 구소련을 정점으로 하여 양극화되고, 사회주의 국가전체의 국제분업은 결렬되어 버렸다.

모택동은 대약진운동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비판을 받자, 1960년 유소기를 전면에 내세워 전문인의 기업경영과 약간의 자유경작지를 허용하는 자유지제도(自留地制度)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코메콘과의 관계는 거의 하지 아니한 채, 아시아 사회주의국가와의 국제분업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자금 및 기술은 구소련에서가 아니라 일본 및 서유럽에서 충당하였다. 즉, 아시아 사회주의국가의 기술수준이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아시아 사회주의국가 간의 국제분업을 통한 효용에 한계를 느낀 중국은, 이를 보충하고자 일본기업과의 대외교역계약을 적극 추진하여 이들 기업으로부터 기계류 및 기술을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대외교역량은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국민소득의 향

상으로 인한 소비의 증가도 두드러졌다. 이 시기에는 모든 산업에 대해 중요시한 결과 과거와 같은 강제적인 농산물수출을 통한 국민의 고통도 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엄격한 사회적 규율을 통해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내핍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소득의 안정을 꾀하였다.

1965년 문화혁명의 시작과 함께 대자보 및 모택동 초상화의 물결 속에서 모든 지역과 기관에서 홍위병이 주도하는 군중비판만이 계속되자 기업에서의 제품생산 및 농촌에서의 농산물재배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 및 농민들은 문화혁명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 당시의 사회주의주체는 노동자와 농민이 아니라 홍위병이었으며, 이로 인해 대내적으로는 기업생산은 물론 농작물재배도 완전히 침체되었고, 대외적으로는 대외교역이 거의 중단되었다. 중공업발전을 통한 사회주의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식량이 태부족하여 식량을 수입하기 위해 공산품을 아시아 사회주의국가에 수출하는 형편이 되었으며, 수출하는 공산품의 질 또한 좋지 아니한 관계로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다.

모택동 사후 1977년 정권을 잡은 화국봉은 양약진운동(洋躍進運動)을 전개하면서, 인민공사를 기계화함과 동시에 발전소, 철강제조시설, 항만 및 유전 등을 건설하겠다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부족한 자금과 기술은 일본과 서방에서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중공업시설자금이 너무나 방대한데다 이를 실현시킬 전문인도 부족하여 농업부문에서부터 파탄이 일기 시작하여 모든 부분의 건설계획이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화국봉의 취약한 권력기반으로 인하여 화국봉의 양약진운동은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1978년 정권을 잡은 등소평은 대내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국가기금으로 전보하지 아니하고 기업에 유보하는 이윤유보제, 기업이윤에 대해 세금을 내게 하여 기업의 독립경영을 강화하는 이개세제도, 대기업의 목표액을 국가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가와의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는 청부경영제, 소기업에 대해 영구적으로 임대하게 하는 임대경영제 등을 실시하면서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진작시켰다. 대외적으로는 기계류수입의 대외의존도를 감소시키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효율성진작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특히 고르바초프의 구소련과의 관계도 개선하여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같은 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는 구소련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워낙 경제수준이 세계수준에 비해 떨어져 있어서 수출대상국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빈민국에 국한되었다. 이들 국가의 수출과 국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생산시설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제수지 면에서는 오히려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다.

등소평은 또한 경제특구를 설립하여 해외기업으로 하여금 이 지역 내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자유로이 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통한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즉, 국가 전체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앞서 말한 여러 형태의 기업 개혁정책을 취함과 동시에 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지만, 아주 제한된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기업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기업을 경영하게 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효과를 국가전체의 기업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만 시장경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는 국가전체지역의 경제체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오히려 사회주의체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 물론 이 경제특구제도는 점→선→면→대전방위라는 정책으로 도시에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또 전국에 대해 점진적으로 확대실시되어, 1993년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변환으로 인한 전국에 대한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 무리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는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인해 매우 큰 혼란을 가져온 구소련의 경우와 아주 다른 점이다.

강택민에 의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 체제변환된 중국에서는 모든 기업이 현재 대외정책을 비롯한 기업의 모든 부문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다. 특히 체제변환 전에 이미 이윤유보제, 이개세제도, 청부경영제 및 임대경영제를 거치면서 경영 및 이윤처리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다, 체제변환으로 인해 기업의 시장환경까지도 세계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세계시장환경에 맞는 제품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아직도 공산당만이 유일한 당으로 정치적으로 존재하고, 기업의 대외정책을 비롯한 기본정책은 최종적으로 공산당원으로 구성된 당위원회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도 완전히 기업경영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대외정책을 실시한다고는 할 수 없다[3].

지금까지 경제체제의 측면을 고려하여 중국의 대외교역정책에 대한 변환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표로 도식화하면 〈표 2〉과 같다.

Ⅳ. 북한의 대외교역 발전과정

1948년 사회주의정부를 설립한 김일성은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단위의 자급자족원칙과 사회주의국가 간의 국제분업원칙을 따랐으나, 국내산업발전이 별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관계로 설립초기에는 국가단위의 자급자족을 해결하거나 국제분업의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로부터 경제원조를 받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67-96; 오용석 1991, 15-47; Klenner 1988, 639-641; Parker/Pan 1996, 110-123; White 1994, 73-91; Wei 1995, 187-199)

〈표 2〉 중국의 대외교역정책의 변환과정

대외정책 기조	년 도	지도자	대외정책의 구체적 내용
스탈린 추종	1949	모택동	1.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 2. 국가단위의 자급자족 원칙 3. 구소련으로부터의 원조 및 구소련의 기업모델 답습
대약진운동	1958	모택동	1. 후루시초프와의 결별 2. 인민공사단위에서도 자급자족원칙을 취함
자유지제도	1960	모택동 / 유소기	1. 전문인 기업경영과 자유경작지 허용 2. 자본주의국가와는 교역, 구소련과는 분리 3. 공산품 수입을 위한 식량수출 4. 자본주의국가에 대한 적자 및 국내식량부족을 국민의 내핍생활로 보전
문화혁명	1965	모택동	1. 노동자와 농민의 문화혁명에 대한 불만(생산제품 품질저하, 식량부족) 2. 대외교역의 중단을 원칙 3. 식량부족이 심해지자 저질 공산품 수출로 식량수입
양약진운동	1977	화국봉	1. 서방의 기술과 자본도입으로 대형 프로젝트 추진 2. 시설자금과 전문인 부족으로 프로젝트 계획의 중단
이윤유보제 / 이개세제도 / 청부경영제 / 임대경영제	1978	등소평	1. 경영개혁을 통한 국내기업의 활성화로 국내 공산품제품의 수입대체 및 수출경쟁력 강화 노력 2. 국내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수입된 생산시설의 과다로 국제수지의 적자 3. 외국기업의 수출입 및 직접투자가 완전 보장되는 시장경제적 경제특구의 국가전체 확대 4. 고르바초프와 관계개선
경제체제변환	1993	등소평 / 강택민	1.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법적 전환 2. 점진적인 경제특구의 확대 및 사회주의체제의 고수원칙으로 인해 혼란은 적음 3. 기업의 자율적인 수출입 및 해외직접투자 결정 4. 공산당 일당독재의 사회주의체제 및 기업기본노선에 대한 당위원회의 재가가 아직 대외정책을 제한

대전의 여파로 인해 사회주의국가로부터의 경제원조가 축소되자, 이를 극복하고 자국경제의 발전을 이루고자 원자재 및 반제품을 수출하는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실시하였다.

구소련의 후루시초프와 중국의 모택동과의 이념적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자, 1962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혼합개념인 주체사상을 발표하고, 자본주의국가로부터의 자주경제 뿐 아니라 구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주경제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이 사상은 국가단위의 자급자족이라는 원칙보다도 민족단위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라는 원칙에 더 가까운 개념으로서, 북한은 남한과의 민족적 통일을 염원하면서 남북한 모두 합하여 민족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세계시장에 대한 대외정책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사상이다. 물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북한은 민족적 통일을 사회주의체제로 하자고 주장할 뿐 아니라, 세계시장에 대한 대외정책도 사회주의국가시장에 대한 대외정책에 우위를 두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국가들만의 자급자족의 원칙과도 상이하였으며, 구소련과 중국에 대해서는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일성은 이러한 주체사상을 국내기업의 운영과 연결시키기 위해 그때까지 따랐던 구소련 모델인 한 명의 지배인이 책임을 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일인지배인체제(一人支配人體制)를 버리고, 당위원회의 감시 아래 전문경영자격인 지배인과 종업원의 사상교육을 담당하는 당책임비서가 이원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대안사업체제(大安事業體制)를 도입하였다. 여기서 당위원회는 당의 경제정책을 집단적으로 토의할 뿐 아니라 토의 후 결정된 사항이 공장에서 정확히 집행되었는가를 지도·통제하는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체가 된다.

대외적으로는 주체사상에 의한 자주적 의사결정과 대내적으로는 대안사업체제에 의한 기업경영을 기반으로 북한은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중공업과 방위산업 및 부가가치산업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국내산업수준이 미진한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중공업과 방위산업 및 부가가치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본주의국가를 포함한 세계시장으로부터 생산재를 수입하여야 하였는데, 이러한 생산재의 과도한 수입으로 인한 외채부담의 증가로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 수입한 생산재를 기반으로 하여 북한경제는 어느 정도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입생산재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여 외채를 상환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세계수준으로 볼 때 북한의 제품은 국제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제품의 종류도 제한된 관계로 대외교역적자는 계속 늘어만 가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1984년 자본주의기업도 포함한 세계 모든 선진기업의 합작투자 및 단독투자를 허용하여 국내산업을 발전시키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단일 공장에서의 생산체계를 효율화시키기 위해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제품생산에서 기술적으로 연결된 관련 공장을 계열화시키거나, 일정지역에서의 동일부분 공장을 합하여 연합기업소로 재편성하여 대형생산을 통한 생산시스템의 합리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외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함께 지금까지의 중공업 편향적 발전정책에서 한 단계 더 진전하여 지방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 진흥정책을 펴서,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투자를 하도록 적극 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자본주의 기업은 북한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지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데다, 북한의 서구자본국가에 대한 누적된 외채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구자본주의국가의 기업으로부터 직접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재일 조총련 기업만이 북한투자에 참가하였다.

1990년대 초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체제변환을 하고 중국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체제변환을 하자, 그때까지 사회주의국가들간의 국제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북한기업의 커다란 수출입시장이었던 사회주의국가들이 북한과의 사회주의적 유대관계를 끊고 세계시장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고집하는 북한은 세계시장경제체제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북한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국제경쟁력은 상대적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북한경제는 급속도로 침체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중국이나 구소련과 같은 원자재가 풍부한 사회주의국가로부터 경화의 지급없이 수월하게 이루어졌던 원자재공급이, 현재에는 세계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경화의 지급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 졌다. 이 뿐 아니라 과거에는 사회주의국가시장에 대해 수월하게 이루어졌던 수출도 현재에는 북한제품이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해진 것이다. 사회주의국가 전체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았던 과거에도 북한과의 교류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아니하였던 자본주의기업은, 현재로서는 체제변환을 한 사회주의국가만 관심을 가졌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고집하면서 생필품의 배급제도까지 고집하는 북한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거의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전체지역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제한된 지역에 한해서는 외국기업이 완전한 시장경제에서처럼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경제특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본주의기업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구사회주의국가가의 새로운 거대시장에만 관심을 가졌지, 북한의 조그마한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여 이 제도마저도 별 효과가 없게 되었다. 구사회주의국가의 새로 부상한 기업조차도 북한의 경제특구로의 진출에 대해 무관심하게 됨은 당연하다. 그만큼 북한의 경제특구를 비롯한 북한의 전지역은 세계의 모든 기업으로부터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그만큼 북한경제는 세계시장 경제체제로부터 고립되어 북한경제는 급속도로 침체하게 된 것이다.

이는 김일성 사후 1998년 공식적으로 정권을 인수한 김정일 체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김일성 시대에는 경공업 중심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던 남북경협의 형태가 김정일 시대에서는 중공업 중심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바뀌고 있는 것이 특기하다고 하겠다[4].

지금까지 경제체제의 측면을 고려하여 북한의 대외교역정책에 대한 변환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표로 도식화하면 〈표 3〉과 같다.

4) 황의각 1992, 219-246; 고승효 1993, 175-218; 안종수 1996, 315-330; 박정동 1996, 19-66;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평화문제연구소 1997, 122-148)

〈표 3〉 북한의 대외교역정책의 변환과정

대외정책 기조	년 도	지도자	대외정책의 구체적 내용
사회주의적 자급자족	1948	김일성	1.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2. 사회주의권의 자급자족 3. 사회주의국가간의 국제분업과 사회주의국가로부터의 원조 4. 일인지배인 체제의 기업경영(구소련식)
주체사상과 대안사업체제	1962	김일성	1.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혼합개념→한민족에 대한 사회주의로의 통일 주장 2. 구소련과 중국의 갈등으로 양국가에 대한 등거리외교 3. 당위원회의 감독아래 전문경영자와 당책임비서의 이원적 기업경영체제인 대안사업체제 도입(구소련식 탈피) 4. 자본주의로부터 수입한 생산재의 제품수출로 자본주의에 대한 외채를 상환시도 5. 제품의 국제경쟁력 부족으로 대외적자는 계속 누적
외국투자허용	1984	김일성	1. 자본주의기업의 합작투자 및 단독투자 허용 2. 낮은 투자매력도로 인해 조총련기업만 투자 3. 대량생산을 통한 생산합리화와 중·경공업의 균형발전시도
사회주의권의 몰락/ 경제특구건설	1991	김일성	1. 북한은 아직까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유지 2. 수출입시장의 대부분 상실 3. 경화지급 없이도 지급되던 원자재 공급처(중국 및 러시아)를 상실 4. 외국기업의 시장경제활동을 허용하는 경제특구건설 5. 자본주의기업은 거대한 신흥시장인 러시아와 중국 등에만 관심을 가져 과거 중국의 경제특구와 같은 효과는 거의 없음. 6. 소규모의 경공업 중심의 남북경협시작
남북경협	1998	김정일	1. 김일성의 마지막 단계와 같음 2. 대규모 중공업에 대한 남북경협의 시작단계

V. 결론 및 유용성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의 대외교역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경제체제적 분석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 러시아, 중국 및 북한의 대외교역정책이 어떻게 변화 및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과정을 경제체제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보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학문적 및 실용적 유용성을 가진다.

첫째, 사회주의기업으로서의 특징과 러시아, 중국 및 북한 기업의 대외교역에 대한 발전과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는 데에서 본 연구의 학문적 유용성을 찾을 수 있다. 러시아, 중국 및 북한에 대한 문헌이 대부분 현재의 경제환경에 대해 특정한 관점이 없이 나열하듯이 서술한 것이 대부분인데, 본 논문은 이들 국가의 대외교역을 경제체제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주의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급자족의 원칙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과정을 국가차원의 정책변환과정과 함께 기업차원의 경영방식의 변환과정에서 동시에 분석하였다는 점 또한 학문적 유용성으로 들 수 있다.

둘째, 본 논문이 제공하는 이들 국가에 대한 일련의 대외교역에의 변천과정정보는 이 국가의 기업이 현재 남한기업과 같은 자본주의기업과의 교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들 국가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실무적 유용성을 준다. 수출형태이든, 해외직접투자 형태이든 이들 국가에 진출할 때 이들 국가의 세부적인 법률이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이들 국가 및 기업의 현재 대외교역에 대한 기본노선에 대한 이해가 절대 필요하다. 또한 과거 몇 십 년간 존재해 온 대외교역과정에 대한 충분한 숙지는 법률이나 제도로는 알 수 없는 이들 국가의 정부 및 기업의 협상 등에 있어서의 현재 행동방식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러시아, 중국 및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체제를 경험한 국가의 대외교역에 대해 경제체제의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시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가 거의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분야에 대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고승효(1993), 『북한경제의 이해(역: 양재성)』(서울, 평민사).
2. 김영봉(1987), 경제체제론, 서울, 박영사.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4), 『중국편람』(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박정동(1996), 『북한의 경제특구－중국과의 비교』(서울, 한국개발연구원).
5. 베르너/굼펠(1989), 『동유럽경제론－사회주의 경제제도(역: 유임수/민경국)』(서울, 학문사).
6. 안종수(1996), 『북한의 경제현황과 주민생활 내: 북한사회의 이해(김면호 외), 315~339』(서울, 집문당).
7. 오용석(1991), 『중국 경제특구전략의 평가와 한국기업의 대응』(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 이상준(1988), 『공산권교역－그 본질과 전망』(서울, 매일경제신문사)
9. 정용수(1995), 『러시아 자유경제지대 추진현황』(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 조용범(1987), 『경제체제론』(서울, 한울사)
11.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평화문제연구소(1997), 『통일·북한 핸드북』(서울, 평화문제연구소).
12. 함건식(1985), 『국제가치론－불평등교환의 이론분석』(서울, 지양사).
13. 황의각(1992), 『북한경제론』(서울, 나남).
14. Barksdale, H. C./Kelly, W. J. (1978), "The Marketing Concept in the U. S. and the USSR: An Historical Analysis", Journal of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 6, No. 4, pp. 258~277.
15. Gutmann, G./Klein, W. (1984), "Wirtschaftspolitische Konzeption sozialistischer Planwirtschaften", in Cassel, D. (eds.) Wirtschaftspolitik im Systemvergleich, M nchen, pp. 93~116.
16. Heller, M./Nekrich, A. (1981), Geschichte der Sowjetunion, Athen um Verlag, K nigstein.
17. Klenner, W. (1988), "VR China", (in: Die Wirtschaft Osteuropas und der VR China 1980~1990(eds. : H hmann, H.-H./Seidenstecher, G.), Hamburg, Verlag Weltarchiv, pp. 595~643).
18. Nove, A. (1977), The Soviet Economic System, 2nd ed., Boston, Allen & Unwin.
19. Parker, D./Pan, W. (1996), "Reform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in China",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8, No. 1, pp. 109~127.
20. Peters, H.-R. (1987), Einf hrung in die Theorie der Wirtschaftssysteme, M nchen: Oldenbourg Verlag.
21. Wei, Shang-J. (1995),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China Reached its Potential?", China Economic Review, Vol. 6, No. 2, pp. 187~199.
22. White, G. (1994), "Demokratization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Austral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No. 31, Jan. pp. 73~91.

Processes on the International Trade of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Focussing on the Economic Systems-

Joe, Gyue-Jin*

Abstract

The basic line of socialistic nations, such as Soviet Union, China and North Korea, on the international trade was nation-based autarky and socialistic cooperation, in order not to be influenced by the so-called capitalistic exploitation. Furthermore their value system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capitalistic nations.

To maintain the socialistic cooperation the nations emphasized the nation-based autarky, because they believed this was the basis of developing all of the socialistic economies and of protecting themselves from the capitalistic exploitation. But this theoretical autarky system itself had realistic problems because of the limited resources in one country.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s of the nation-based autarky, therefore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realiz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socialistic countries. They believed that the cooperation could solve the insufficient resources problems of national autarky, keep their countries from the capitalistic exploitation and develop the national economies adhering the socialistic value system.

This socialistic cooperation itself required large-scale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advanced technologies that the socialistic countries were lacked. That is, for the socialistic development the socialistic countries had to import the facilities and the technologies from capitalistic countries admitting the capitalistic world-wide expansion.

* Vice-Professor, Kwang-Woon University, Ph. D.

But in order not to be exploited from the capitalistic countries, the socialistic countries imported the goods from the capitalistic countries in connection with exports of socialistic goods in the same amounts, which made the equilibrium in the trade balance.

But after the transformation of economic systems, the principles of the socialistic trade could not applied to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Nowadays Russia, transformed to capitalistic market system, is involved completely in the world-wide capitalistic market. China, transformed to socialistic market system, accepts the world-wide capitalistic market only in order to develop the socialistic economy under the communist party. North Korea, still under the socialistic planned economy, remains alone outside the world-wide capitalistic market losing his ex-socialistic cooperative countries.

Key-Words: nation-based autarky, socialistic cooperation, capitalistic exploitation, economic system

日本獨占資本形成期의 勞動運動*

A Study on the Labor Movement in the Forming Period of the Japanese Monopolistic Capital

康 季 三**

目 次

Ⅰ. 序 論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勞動爭議의 發生과 成長基盤
1. 大爭議의 頻發
2. 爭議의 發生과 成長基盤
Ⅲ. 勞動爭議以後에 있어서 資本과 政府의 對應
1. 資本側의 對應
2. 政府側의 對應
Ⅳ. 結 論

Ⅰ. 序 論

1. 연구목적

일본은 패전 후 자원의 부족 등 여러 가지 핸디캡을 극복하고 經濟大國이라는 업적을 달성하였다. 그 때문인지 일본경제의 成長原因에 관한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행하여지고 있는데, 특히 기업측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때문에 기업발전의 原動力은 어디까지나 기업가의 모범적인 體制管理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조직행동론에 의하면 조직에 있어서 노동자의 역할도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필자는 일본기업에 있어서 노동자의 역할이 어떠했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企業內에서의 노동자의 역할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史的展開過程을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노동운동은 공업화과정에서 일어나는 모순이나 企業內의 문제점에 대한 노동자의 입장을 가장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實像이기도 하며, 또한 그 해결과정은 당해기업의 존속·발전의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本 硏究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을 과제로 하고 있다.

* 本 論文은 1996년도 학술진흥재단의 대학교수 해외파견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西原大學校 貿易學科 敎授

첫째는, 日本獨占資本形成期(日·露戰爭－第1次大戰前)의 노동운동을 분석하여 그 本質을 究明하는 일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동자가 對立과 團結을 통하여 추구하려는 역사적인 基本路線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노동운동이란 노동조합의 운동이 아니라 기업수준의 노동쟁의를 의미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차원의 노동쟁의로 한정한 이유는 거시적 차원의 노동조합의 운동이 형식적·이념적으로 되든가 아니면 규범적·당위적인 수준에 멈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본질을 파악함에는 후자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러한 노동운동이 체제의 存續·發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하는 일이다. 이에 관해서는 爭議 이후에 기업차원의 자본이 취한 對應策만이 아니라 거시적 차원의 정부의 대응책도 함께 고찰함으로서 파악하게 된다. 이들 요인은 노동운동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응책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평면적인 고찰이 아니라 그 성격의 규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쟁의의 본질과 대응책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2. 연구방법

1) 個別經營史的 接近

이상의 연구과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日本獨占資本形成期(日·露戰爭－第1次大戰前)에 있어서 중공업의 노동쟁의를 기업차원에서 분석하여 과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히 附言하여 두기로 한다.

첫째, 時期의 문제이다. 노동운동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史的硏究가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서 필자는 우선 산업화의 기틀이 다져진 明治期(明治維新－第1次大戰前)를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이다. 그 이유는 산업화과정 이후의 노동운동은 물론 금일의 노동운동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선결과제라 여겨지며, 또한 이 시기에 기업의 체제가 형성·확립되었기 때문에 이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도 明治期의 노동운동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의 일환으로서 독점자본 형성기의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연구대상과 관련한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연구대상으로 쟁의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히 밝혀 두기로 한다. 일본에 있어서 쟁의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쟁의의 조건내지 배경이라 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 예컨대 기업내의 노무관리는 물론 거시적 요인으로서 노동시장의 구조나 사회사상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온 것이 특징이다. 쟁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나,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분석하여 정리하려면 최소한 한편 이상의 추가적인 논문이 필요할 정도이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필자는 기존의 연구성과들 중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간

단히 고찰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환경적 요인의 접근 방법에 의해서는 당시 노동자의 요구조건이 大爭議로 까지 발전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자는 내적인 요인 즉, 쟁의자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즉, 어떤 현상의 근본원인은 외부요인보다도 내부요인의 모순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철학적 논거를 전제로 하여 쟁의 자체의 성장과정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셋째, 자료와 관련한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연구과제를 해명함에 있어서 長崎造船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에 임하고 있다.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明治維新 이전에 이미 生成하여 현재에도 일본의 대표적인 회사로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자본주의의 형성·발전과정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며, 또한 諸制度의 실시에 있어서도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등에 기인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경영사적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료면에서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인지 당시의 長崎造船所의 쟁의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유일한 논문인 西成田豊의 『近代日本勞資關係史の硏究』마저도 운동양상의 변화와 발전양상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다만 사건의 내용을 평면적으로 요약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자료로서는 당시의 회사기록과 신문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시기의 연구가 이처럼 기초자료도 아직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추론하고 평가하기보다는 가급적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만 최소한의 추론을 가하는 방법으로 임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최소한 관련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라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서이다.

2) 組織行動論的 接近

爭議의 분석에는 어떤 기준에 입각하여 행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본고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노동자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때 노동자를 어떤 존재로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를 위한 실마리로서 조직행동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에 의하면 조직에의 참가자는 일반적인 욕구와는 다른 욕구를 조직에서 구하고 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生存欲求와 成長欲求이다. 이러한 욕구를 가진 노동자를 個人人格과 구분하여 「勞動人格」이라 부르기로 한다. 組織行動論的 接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동인격에 입각하여 분석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위한 자료는 1次資料로서 기업의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各種記錄과 新聞記事와 같은 1次史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2次資料로서 관련된 문헌을 활용하고 있다.

Ⅱ. 勞動爭議의 發生과 成長基盤

1. 大爭議의 頻發과 그 背景

日淸戰後 노동운동의 전개에 커다란 관심을 보여온 정부는 마침내 明治 33年(1900) 2月에는 治安警察法을 제정하여 노동운동에 대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여론은 「노동문제 및 사회문제의 발생을 경찰권을 갖고 미연에 타파하려고 하는 것은 …… 사회의 대세를 거역하는 것」(〈9〉, p. 361)으로서 인식하고 극력 반대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조합운동은 물론 노동쟁의도 거의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日露戰爭이 끝난 직후부터 쟁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表 1〉에 의하여 전반적인 동향을 개관하여 보기로 한다. 表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日露戰後부터 빈발하기 시작한 쟁의가 1907년에 이르러서는 동맹파업의 건수·참가인원에 있어서 제1차대전 전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 일련의 쟁의의 특징을 보면 첫째로, 日淸戰後의 그것과는 달라서 지금은 工場과 鑛山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表 2〉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官營과 民營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중공업의 大工場에서 大爭議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은 기업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당시의 「大阪朝日新聞」의 사설도 「근래의 同盟罷業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이한 느낌을 품게 되며, 또한 지대한 유감을 금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상하게도 정부사업 또는 大事業에서 同盟罷業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3〉, p. 69).

〈표 1〉 同盟罷業의 推移

年 次	件 數	參加人員
1901	18	1,948
1902	8	1,849
1903	9	1,359
1904	6	897
1905	19	5,013
1906	13	2,037
1907	60	11,483
1908	13	823
1909	11	310
1910	10	2,934
1911	22	2,100
1912	49	5,736
1913	47	5,242

資料 : 〈5〉, p. 256

〈표 2〉 日清·日露戰後의 重工業 大經營爭議 一覽

年 月	爭議主本		爭議規模 (參加人員)	爭議原因·要求內容					
	經營·工場名	職 種		賃金增額	其他賃金要求	時間短縮	待遇改善 監督者排斥	解雇	其他
1897. 7	日鐵盛岡工場	木工	150	○					
9	新橋工場	木工·塗工	210	○					
10	山陽鐵道	木工	230	○					
1898. 2	名古屋車輛會社	車輛工	200				○		
1899. 3	日鐵大宮工場		數人				○		
1900. 4	日鐵大宮工場		1,300				○		
1902. 7	吳海軍工廠		5,150	○			○		
8	東京砲兵工廠	小銃製造所·其他	880	○					
1903. 5	三菱造船所立神工場	造船工	902	○	○				
10	大阪鐵工所櫻島工場	鐵工	500		○				
1905. 2	浦賀船渠機械工場	機械工	300	○					
8	大阪鐵工所櫻島造船所	鐵工	30數人				○		
1906. 2	石川島造船所	製罐工	700	○					
3	東京砲兵工廠	小銃工	300				○		
7	大阪砲兵工廠		500					○	
8	吳海軍工廠	彈丸,水雷完成工場,其他	300	○			○		
12	大阪砲兵工廠		12,000	○	○		○	○	
1907. 2	三菱造船所立神工場	木工·其他	5,000	○		○	○		
4	橫須賀海軍工廠		十數人					○	
5	川崎造船所	木工部職工	60	○			○		
6	橫須賀海軍工廠		1,500	○					
7	九州鐵道小倉製作所		400		○				
9	浦賀船渠		144	○			○		
10	大阪汽車製造會社		670	○					
1908. 1	大阪鐵工所櫻島工場	鐵工	900	○					
3	三菱造船所飽浦工場	鍛冶工	30	○					
	東京砲兵工廠		10,000				○		
1909. 10	三菱造船所飽浦工場	木型工	80	○					
1910. 7	日本製鋼所		300						○
1911. 2	浦賀船渠會社		1,230	○					
9	橫浜船渠會社	完成工	100	○			○		
	大阪汽車會社	鍛冶工·木工	98	○					
11	大阪鐵工所櫻島工場	鐵工	數十人	○				○	
	浦賀船渠會社		2000余人						

資料 : 〈8〉, p. 32. 注 : 爭議規模, 爭議原因이 확실히 드러난 것만 추출한 것임.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이하의 고찰에서 확실한 것처럼 노동쟁의에 즈음하여 대표자에 의한 협상전개, 명확한 투쟁목표의 설정, 노동자 상호의 연대성(예를 들면 희생자에 대한 원조금) 등이 보여지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抗爭과는 확실히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면 日露戰爭後 이처럼 노동쟁의가 급증한 원인은 어디에 內在하여 있는 것일까. 〈表 2〉를 보면 쟁의의 요구사항은 임금인상과 감독자에 대한 불만이 중요한 공통점이 되고 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기술되어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분야의 대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견해를 두 가지 고찰하기로 한다.

첫째, 隅谷의 견해이다(〈2〉, pp. 55~57). 그는 우선 국민적 교육과 기능교육의 진전에 따라 노동자의 의식이 향상되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明治 40年(1907)까지는 일본은 4년의 義務敎育制였으며, 그 보급률은 明治 24年 50%, 33年(1900)에는 80%를 상회하여 40年에는 97%에 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하여 明治 41年에는 의무교육이 6年으로 연장되었다(〈2〉, p. 56). 당시의 『東洋經濟』도 「교육의 보급에 따라 노동자의 지식이 향상되어 그들 스스로가 經濟上의 地位를 자각하기」에 이른 것을 거론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表 3〉을 보자.

이것은 長崎造船所에 있어서 大爭議가 발발한 1907年 당시의 직종별 학력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人夫를 제외한 각 직종의 중심적인 학력층은 尋常小卒(4年制初等學校)인데, 機關部의 新型熟練職種(罐子職과 轆轤職)에서는 고학력층(高等小卒〈6年制初等學校〉과 三菱工業豫備學校)의 비중이 높고, 機關部·造船部의 舊型熟練職種(造鑵職, 鑄物職, 機械職, 木工職)에서는 저학력층의 비중이 높다. 長崎造船所의 1907년의 쟁의에 있어서 중심세력이 「木工職」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쟁의가 노동자의 교육수준과 비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생산수단의 근대화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이다. 특히 직접

〈표 3〉 職種別 學歷構成(1907年度)

職 種	無敎育	僅少의 敎育	尋常小卒	高等小卒	三菱工業子備學校卒	合 計
罐子職(完成工)	2.0	12.8	44.9	36.6	3.8	100.0
轆轤職(선반工)	2.0	20.5	45.0	30.2	2.3	100.0
造鑵職	6.8	24.0	56.2	12.6	0.3	100.0
鑄物職	6.8	23.7	53.1	15.1	1.3	100.0
鐵工職	4.8	16.7	60.7	17.8	0.0	100.0
機械職	7.2	23.3	50.0	19.5	0.0	100.0
木工職	6.3	19.2	61.2	12.5	0.8	100.0
人 夫	33.3	23.7	33.3	9.7	0.0	100.0

資料 : 〈8〉, p.97.

관리체제으로의 移行에 수반하는 親方制의 해체 내지 붕괴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즉, 종래 親方的 노동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던 노사간의 의사소통이 직접적인 관리체제에 의하여 단절되고, 그것이 日露戰後의 경제사정의 급변 속에서 불만을 누적시켜 폭발케 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9〉, pp. 365~6). 이 점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長崎造船所의 경우에는 親方制가 폐지되고 職長의 권한이 제한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에 의하여 노무통제가 행하여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직접적인 관리체제에 의하여 노사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극단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어떤 논자는 日露戰後 親方制가 붕괴하여, 親方노동자의 특권적 지위가 상실되어짐에 따라 그것에 대한 반항으로서 그들은 大爭議를 일으켰다고 이해하고 있는 견해도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여 두고 싶다(〈5〉, pp. 268~9 참조).

둘째는, 兵藤의 견해이다(〈5〉). 그는 우선 日露戰後의 노동시장의 축소에 주목하고 있다. 즉, 「철새직공」의 경우는 임금이나 노동조건 등에 불만이 있을 때는 이동에 의하여 그것을 해소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기회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쟁의를 통하여 요구를 관철하여 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관점이다. 이 점에 대한 한 가지 의문점은 長崎造船所의 事例를 보더라도 日露戰後 특히 1906·7年의 이동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였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동의 곤란」이라고 하는 전제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그가 지적하고 있는 점은 직접적 관리체제에 의한 지배의 강화이다. 새로운 생산수단의 도입은 親方노동자 대신에 하급기술자를 현장관리자로 등장시키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서 현장관리자에 의한 생산과정의 규제강화는 勞使間의 모순을 초래하였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즉, 현장관리자에 의한 지배는 새로운 생산수단의 도입에 따른 工事의 多忙과 노동자의 급증 등으로 오히려 노동의 統轄을 弛緩시켜, 그것이 직장내의 작업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보는 견해이다(〈8〉, p. 111).

이상에서 간단하지만 이 시기의 노동쟁의의 원인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러나 어느 견해에 의해서도 당시의 노동자의 요구조건이 그러한 大爭議로까지 진행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노동쟁의 자체의 전개과정을 분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기로 한다.

2. 爭議의 發生과 成長基盤 — 1907年의 長崎造船所의 事例 —

1) 爭議의 發端과 經過

(1) 發 端

長崎造船所는 〈그림 1〉를 보면 알 수 있듯이 長崎港을 둘러싼 丘陵地의 西海岸의 立神(造

船工場)와 飽浦(機關工場)의 斜面을 깎고, 바다를 메워서 건설되었다. 그 때문에 東海岸의 市街地로부터 통근하는 노동자는 지금도 부두에서 회사의 나룻배를 이용하고 있다. 당시 9,000余(明治 40年 6月末 現在 工員數는 9,330名)의 노동자 중에서 과반수가 회사가 내주는 「平船」을 이용하여 통근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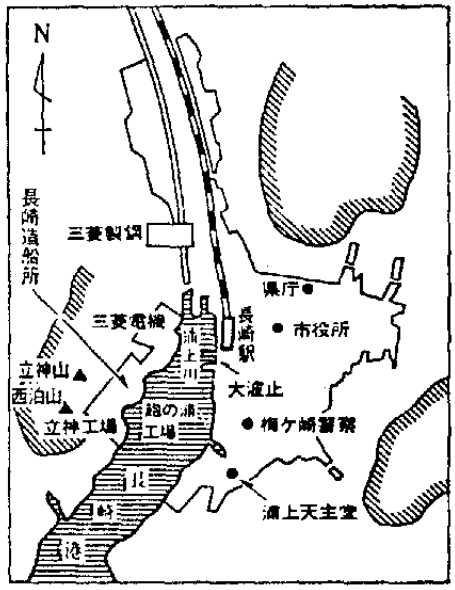

〈그림 1〉 長崎造船所 付近의 略圖

그런데 회사는 明治 40年(1907) 2月 8日,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위험성이 있었던 참에 때마침 陸路交通이 개통된 것을 이유로 하여 2月 14日 한으로 이 送迎船을 폐지한다고 告示하였다(〈6〉 第2編, pp. 312~3). 이때 회사는 노동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건을 붙였는데 그 중에서 다음의 두 가지가 주목된다. 그 하나는 조선소의 送迎船에 의하여 통근한 자로서 舊長崎市방면에 거주하였던 사실을 明治 40年 2月 7日까지 서면으로 신고한 자에 한하여 특별히 하루 한 사람에게 金5錢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또하나는 수당의 지급기간은 1年으로 하고, 明治 41년(1908) 2月 14日限으로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6〉 第2編, pp. 313~4). 어떻든 送迎船이 폐지되면 노동자는 陸地를 멀리 돌아서 다니든지 작은배를 저어서 통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2) 經 過

① 2月 12日

회사의 발표가 있자 立神조선소공장의 직공들은 불만을 품게 되었는데, 마침내 12일 오후

組長級직공 약 45명이 立神공장의 재료창고에서 만나 협의하여 다음의 4항목을 결의하였다. 이것은 15일에 회사에 제출하고, 만약 일주간 이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을 취할 것을 결정하였다(〈6〉 第2編, pp. 314~5).

ㄱ. 立神공장으로부터 5명, 飽浦공장으로부터 7명의 대표를 선발하고 다음의 請願을 할 것

ㄴ. 圓平船送迎을 종전대로 부활시킬 것

ㄷ. 이것이 불가능하면 朝夕으로 30분씩 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1割 올릴 것

ㄹ. 직공과 인부 모두 각각 1일분의 임금을 갹출하여, 투쟁에 따르는 비용과 주모자로서 처벌되는 자에게 지급할 것

② 2月 13日

한편 이 날에는 목공직과 철공직 등의 각 대표들이 「飽浦공장으로부터 立神공장까지의 통로는 비탈길로서 통행하기가 불편합니다. 따라서 아침저녁 혼잡하여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생각되므로 특별히 검토하여」, 兩工場 사이의 通用門을 이용하여 출퇴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보고 받은 長崎縣知事는 사태를 우려하여 조선소 측에 우선 送迎船 취항을 계속하도록 권고하였다.

③ 2月 14日

知事로부터 권고를 받은 회사는 2月 14日 「本月 8日付로 告示한 職工送迎船 폐지의 件은, 地方官廳의 요구에 의하여 후일 어떤 告示를 할 때까지는 일시 연기하여 종전대로 아침저녁 送迎할 것임」을 揭示하였다. 동시에 本月 8日의 告示에 공표한 區域內에 거주하는 자라든가 조선소의 근처에 이전하여 온 자, 혹은 陸路 또는 자신의 작은 배로 출퇴근하는 자는 本月 8日의 告示에 의한 수당 즉, 1年間 1日 5錢을 지급한다고 通達하였다.

④ 2月 15日

노동자는 투쟁하지 않고도 送迎船의 존속을 쟁취하였지만, 이것을 기회로 노동시간의 단축과 임금인상을 쟁취하려고 하는 기운이 다시금 가일층 강하게 타올랐다. 조선소 중에서도 가장 냉대를 받고 있다고 하는 立神工場의 木工部노동자 約 500명은 몰래 협의한 결과 15日에,

ㄱ. 종전의 9時間이었던 노동시간을 10時間으로 연장한 것은 불법인 점과,

ㄴ. 物價가 등귀한 요즘 일반의 임금은 2할 정도 인상되었는데, 오직 조선소만은 아무런 인상이 없어 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고하는 2項目의 내용을 담은 請願書를 작성하여 美濃地 29枚에 一同連判하였다. 또한 그들은 평소 온순하다고 하는 직공 4명을 위원으로 선발하고, 그 날밤 職長과 동행하여 회사에 이것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再三제출하는 請願書」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원들을 협박하여 돌려보냈다. 공장에 돌아온 위원들로부터 보고를 들은 主動的 노동자 130명 정도는 심야를 기다려 西泊山에 모였으나 경찰에 탐지되어 곧 해산을 명령받았기 때문에

재차 立神山에 집합하여 몰래 다시 협의를 했다(〈7〉 2卷, pp. 100~1).

⑤ 2月 16日

한편 市內의 각 경찰서는 이튿날 16일 아침 일찍 署員을 비상소집하여 制服巡査 130명, 私服刑事 50명 정도로 공장 내는 물론 시가지를 경계하여 오직 진압에 전념하였다. 경찰의 힘을 빌려서 경계에 임한 회사는 전날밤부터 立神山에 집합한 직공일동을 초등학교의 空地에 집합시켜서 加藤立神工場長이, 「직공의 불평이 있을 때마다 임금을 올리면 버릇이 된다. 금후 10日, 20日 업무를 중지하여도 회사는 결코 그 청원을 들어줄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였다(〈7〉 2卷, p. 101). 이어서 長崎署長도 「만일 폭동을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용서 없이 단속할 것」이라고 고자세로 외쳐댔다. 이처럼 무엄한 말이 끝나자마자 「속지않어!」라고 하는 한 마디와 함께 군중은 일제히 활기를 띠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재차 위원을 뽑고 加藤工場長과 교섭을 되풀이했지만 결말이 나지 않으므로, 마침내 5日間의 쟁의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盟約을 교환하였다(〈10〉, pp. 198~9).

ㄱ. 금번의 增給問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木工部는 모두 사표를 제출하고, 각 동맹자는 三菱에 적금한 원리금을 전부 평등하게 분배할 것.

ㄴ. 각 동맹자는 평화의 수단이 있는 한은 완력에 의지하여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ㄷ. 동맹을 배반하여 출근하거나 동맹의 내막을 회사측에 밀고한 자는 즉시 20円의 벌금을 부과하고 육체상의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

또한 이외에도 만일 희생자가 발생하면 가족의 생활을 돌본다는 서약을 하는 한편, 모두가 餓死할 때까지는 결코 요구를 번복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血判을 하였다(〈7〉 2卷, p. 101).

⑥ 2月 17日

立神工場 木工部의 노동자들이 쟁의에 돌입한 이튿날 2月 17日은 일요일로서 휴업이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加藤立神工場長은 오전 8時에 組長 14명을 소집하여, 「금번의 청원은 무리가 아닌 일이지만, 8천내지 9천여의 직공을 사용하는 三菱造船所가 직공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임금을 인상하여서는 아무리 해도 직공의 동향을 두려워하여 增給한 것처럼 되어서 위신에 관계되므로 미안하지만 이번 청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회답을 노동자들에게 전달하도록 명했다(〈7〉 2卷, p. 102). 이러한 소식을 들은 노동자들은 「이유 있는 청원을 회사의 위신에 상처를 받는다는 구실로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은 무슨 폭언인가. 우리 노동자들을 깔보는데도 정도가 있지」라고 격분하여, 지금이라도 큰일을 저지를 태세였다(〈7〉 2卷, p. 102). 일이 이렇게 되자 노동자측의 위원은 위의 14명의 組長이라든가 당일 긴급공사 때문에 출근하여 있던 8명의 組長과 함께 노동자를 위무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노동자의 분노는 끓어올랐다.

한편, 회사측은 회유책을 쓰기 시작하였다. 加藤工場長은 木工部의 職長 3명을 가까이 불

러 「회사에서도 이미 增給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이번은 일단 조용히 요구를 철회하는 편이 좋을 거야」라고 설득하였다(〈10〉, p. 196). 이런 소식을 들은 위원과 職長은 「그렇다면 이때에 일단 요구를 철회하여 회사의 행동을 감시하자」고 하는 철회의 뜻을 구두로 加藤工場長에게 회답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전해들은 노동자는 職長이나 위원들의 전횡에 분노하고, 철회는 구두로 회답한 만큼 요구서는 아직 丸田所長의 수중에 있다는 이유로 철회의 철회를 통고하였다. 이러한 형세에 同工場의 鍛冶工有志는 공동으로 투쟁에 임할 준비 때문에 뛰어 돌아다니고, 드디어 8천여명의 노동자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⑦ 2月 18日

이튿날 18日이 되자 飽浦工場 各部의 노동자 3천백여 명은 대표자를 천거하여 立神工場과 마찬가지로 임금 2할 인상의 요구서를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들은 작업에 임하면서 1주간 내에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만약 1주간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1주간의 쟁의를 단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렇게 해서도 여전히 「미쯔비시(三菱)가 반성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완강한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일치단결하여 辭職하고, 다시는 조선소의 흙을 밟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連判을 받기 시작하였다(〈10〉, p. 197). 한편 三菱 本社는 현지로부터 형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전보를 접하자 곧바로 前長崎造船所長(第2代)인 莊田平五郎를 長崎에 급파하였다. 그는 長崎에 도착하자, 「금번의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 요구자는 줄줄이 해고할 것이다. 불온한 행동을 하는 자는 해고와 함께 지금까지의 적립금을 모두 몰수할 것이다. 여전히 사직을 원하는 자는 결코 만류하지 않는다」고 本社의 방침을 공표하였다(〈7〉 2卷, p. 103). 이처럼 회사의 분명한 단언에 의하여 지금까지 참고 참아왔던 8천의 인심은 일시에 깨지고 「아차 하면 第2의 足尾騷動」이 일어날 것 같은 형세였다(〈7〉 2卷, p. 102). 이러한 형세 속에서 莊田는 위에서 보는 것처럼 한편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뒤로는 임금을 인상하여 준다는 식으로 주동적인 직공을 회유하여 세력의 분열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노동자는 「만일 여기에 응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조금의 增給으로 바꿀 수 없는 큰일이므로 一致團結의 鬪爭에 불미스러운 汚點을 남길 수 없다」고 더욱 결속을 다졌다(〈7〉 2卷, p. 103)

⑧ 2月 19日

鬪爭 第4日째에 경찰은 全署員을 동원하여 공장부근을 멀리서 에워싸고 경계를 계속하였다. 莊田는 신문기자와 회견하여 「三菱조선소는 단지 영리사업이 아니다. 三菱가 자진하여 이 박리한 조선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노동자는 辭職이든 爭議든 마음대로 하라」고 무책임하게 지껄여 댔다(〈7〉 2卷, p. 103). 그러나 투쟁은 더욱 번져 갔다. 立神工場 木工部에는 이날 아침까지 쟁의에 참가하지 않는 노동자가 8백명 중 247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수는 쟁의를 구경한다고

하여 외출하고, 정오 경에는 25명 남짓, 그것도 한 두 사람씩 사라져 오후 1시경에는 작업에 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경계하는 순경만이 남아 있었다. 노동자는 立神山에 집합하려고 했지만 한 사람도 두 사람도 경관에 쫓겨 5인내지 10인씩 조를 짜고 시내로 몰려 나갔다. 그들은 갈데가 없어 음식점에 들어가 마시고 취하여 기염을 토하므로 시내에는 살벌한 공기가 넘쳐 흘렀다. 이와 같은 살기 등등한 분위기는 마침내 헌병의 투입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마침 그때 長崎경찰서는 「직공의 一隊가 도크 내에서 目下建設中인 東洋汽船會社의 汽船을 전복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여 급히 230명의 경관을 투입하고, 공장 내에는 직공이나 막벌이꾼으로 변장시킨 경관 수십명을 풀어서 만일에 대비했다. 그러나 경관이 한풍에 시달렸을 뿐 아무 일도 없이 밤은 밝았다.

⑨ 2月 20日

이 날에는 경계를 위하여 헌병도 출동하였다. 전체적인 형세는 여전하였고, 이제 노동자측은 일보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를 보이므로 결국 회사가 노동자에게 항복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8천의 노동자가 소맷자락을 털고 조선소를 떠나느냐의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마침내 회사는 갑자기 가면을 벗고 佐伯技師로 하여금 木工部 전체의 위원과 회견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 회사는 노동자가 제출한 2個項의 요구를 실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2) 爭議의 發生과 成長基盤

(1) 爭議의 發生基盤

우선 쟁의의 발생기반부터 음미하여 보기로 한다. 쟁의의 발생이 처음에는 노사간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相異에 의하여 촉진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 자체가 곧바로 쟁의로 직결된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노동쟁의의 경과를 보면 노동자가 요구사항을 청원하고서 부터는 노사간의 태도에 의하여 차츰 쟁의가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에 있어서 각 주체의 태도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사측의 태도부터 검토하여 보자.

회사의 태도를 이해하는 방법으로서는 現象的으로 나타나 있는 제도를 고찰하므로서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방법도 있으며, 또한 경영자의 公的발언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여기에서는 양면에서 접근하기로 한다. 전자부터 보면 당시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長崎조선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低賃金과 長時間 勞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자본주의적 생산 하에서는 자본가가 노동력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윤은 기타의 조건이 같은 한 임금과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노동시간은 가급적 길수록, 임금은 가급적 적을수록 자본가에게는 그만큼 많은 이윤이 발생한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勞動力商品主義」이다. 코몬즈(j. R. Commoms)에 의하면 상인이 상품을 취급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기업가가 노동력을 취

급하는 것을 뜻한다(〈11〉, pp. 62~3). 자본가는 노동을 가능한 싸게 사려고 하기 때문에 임금이나 노동시간과 같은 노동조건은 물론 노동환경도 열악하게 되며, 또한 노동자의 건강이 나빠지면 간단히 해고하여 버린다. 이러한 현상이 이 시대에는 어느 산업부문에서도 행하여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 회사측의 발언을 보자. 木工職이나 鐵工職 등 각 대표자들의 送迎船 폐지의 중지 요구(2月 13日)에 대해서, 회사측은 2月 14日 「지방청의 요구에 의하여 후일 어떠한 告示를 할 때까지는 일시 연기」한다고 통달하였다. 이 문구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지방청의 요구」에 의한 일시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으며,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노동자에 대한 기만적인 행위는 이전부터 회사측에 불만을 품고 있던 노동자에게 새로운 행동을 유발시키는 近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2月 15日 이후 전개된 일련의 쟁의이다. 木工部의 노동자가 청원서를 제출했을 때 加藤工場長이 「직공의 불평이 있을 때마다 임금을 인상하면 버릇이 된다. 회사는 결코 그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2月 16日), 또한 「금번의 청원은 무리한 것은 아니지만, 8천내지 9천여의 직공을 사용하는 三菱조선소가 직공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임금을 인상하여서는 …… 위신에 관계되므로, 미안하지만 이번 청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月 17日)고 하는 회답을 하였다. 이와 같은 고압적인 태도는 어느 회사, 어느 경영자를 불문하고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면 1906年末 大阪砲兵工廠에 쟁의가 발생했을 때 工廠의 당국자는 「철새직공」의 교사선동을 쟁의의 큰 원인으로 규정하여 주요쟁점이 된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弛緩과 工廠側의 온정을 구실로 하여 매우 고압적이다(〈6〉, pp. 274~5). 한편 본사로부터 급파된 莊田平五郎은 현지에 도착하자, 「금번의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 요구자는 줄줄이 해고할 것이다. 불온한 행동을 하는 자는 해고와 함께 지금까지의 적립금을 모두 몰수할 것이다. 여전히 사직을 원하는 자는 결코 만류하지 않는다」고 본사의 방침을 전달했다(2月 18日). 이러한 회사임원의 발언에서 당시의 사용자의 사고방식을 단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그들은 오직 전통적인 「主從的情誼」에 구애되고 있으며, 노동력은 상품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노동자측의 태도를 보자. 노동자는 2月 15日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이후, 회사와 경찰의 회유나 진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때마다 連判내지 血判을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썼다. 특히 노동자를 무시하는 임원의 放言 후 노동자는 「이유 있는 청원을 회사의 위신에 상처를 받는다는 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무슨 폭언인가. 우리 노동자들을 깔보는 데도 정도가 있지」라고 격분하여 「三菱가 반성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거만한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일치단결 하여 辭職하고, 다시는 조선소의 흙을 밟지 않겠다」는 맹약을 하고 있다. 이 태도로부터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하나는 자본가의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또하나는 노동자의 존재 즉, 勞動人格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종의 권리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이다. 이 시기에 있어서 근대기업이 發興한 결과 종래의 노사관계와는 다른 신사태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다음에 보는 것처럼 당시의 사회는 이것을 새로운 사회경제문제의 등장으로서 받아들여 적지 않은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즉, 農商務省은 明治 16年에 이어 24年에 「職工保護團束法」의 要否를 전국상업회의소연합회에 자문했는데 사까이(堺)상업회의소 외에는 이구동성으로 「日本古來로부터 雇主被雇者間의 관계는 매우 원활하여 父子와 같이, 主從과 같이 친밀하다. 따라서 별도로 법률로서 이것을 단속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청일전쟁 후 安藤 商工局長은 明治 29年 12月 15日號의 『太陽』 誌上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雇者被雇者間에 德義的 情誼가 존재하는 것은 古來의 家內工業에 있어서는 실제로 있었다. 그 동안 師匠과 弟子와 같이 主人과 從者와 같은 관계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지금 수백내지 수천의 직공을 사용하는 공장에 있어서 이처럼 화기애애한 관계를 갖는 곳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工場主는 지방의 주선인(周旋人)에게 의뢰하여 女工을 모집하고, 주선인은 甘言으로서 이들을 유인하고 모집하여 아득히 먼 공장소재지에 보내면, 一面無識한 사람이 보증인이 되어 약간의 날인료(捺印料)를 받고 이들을 소개한다. 만약 그 감독을 소홀히 하면 사람을 보는 것이 화물처럼 되지 않는다고 보증할 수 없다.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들의 구시대의 職工間에 존재했던 情誼的 關係를 바라는 것이 애초부터 어려운 것이 아닐까」(〈1〉 2卷, p. 301).

이상의 고찰로부터 노사간에는 커다란 장벽이 놓여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자본가측의 권위주의적이고, 노동자에 대한 「勞動力商品主義」는 노동자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노사간의 쟁의를 造成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노사간의 분열은 「사용자가 일반으로 被傭者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에 의하여 조성된다」고 하는 지적은 어느 정도 일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16〉, p. 31). 따라서 이 시기의 노동쟁의는 경영의 지배과정에서 「勞動人格」의 문제가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規定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爭議의 成長基盤

쟁의가 성장하기 위하여는 단체행동을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집단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반하여 집단으로 되지 않고 쟁의가 개별적으로 뿔뿔이 되어 폭동과 같이 되는 경우를 여기에서는 자연발생적 쟁의라 부르고 집단적·조직적인 것과는 구별하기로 한다. 사례의 경우 쟁의가 매우 단결력이 있는 집단으로서 성장하였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그 실마리로서 버나드(C. I. Barnard) 이론으로부터 시사점을 얻기로 한다(〈12〉, p. 85). 그에 의하면 조직의 성립에 있어서 第1義的인 요소는 「共通目的」인데, 이 요인은 집단의 단결력에도 제1의 조건으로서 거론하고 싶다. 왜냐하면 집단 속에서 각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가는 공통의 목적에 의하여 결정되며, 또한 그것에 의하여 각 개인의 행위가 통합되기 때문이다. 각 개인의 행위가 통일될 때까지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명령적이기 때문에 단결행동을 하기 위한 능력은 아직 불충분하다.

그런데 공통의 목적을 만드는 것은 환원하면 「人格的 統一의 結束」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각 개인의 노력이 통합될 때 하나의 통계적 집합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하나의 사회단체가 되고, 그것이 단체행동을 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사례에 있어서는 노동인격의 문제가 권리투쟁으로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이 勞動人格이 어떻게 하여 강력한 공통목적이 될 수 있었던가 하는 문제이다. 마슬로(A. H. Maslow)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일수록 그것에 대한 집착은 그만큼 강하다. 또한 그것은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공통목적이 되기 쉽다. 반면 고차원의 욕구로 올라갈수록 각 개인의 욕구수준은 다르기 때문에 공통목적이 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가정이 옳다고 한다면 노동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勞動人格의 문제는 인간의 생존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통의 목적으로 되기 쉽다고 할 수 있겠다.

Ⅲ. 勞動爭議 以後에 있어서 資本과 政府의 對應

1. 資本側의 對應

1) 勞使關係의 再編

日露전쟁 후 大工場과 大鑛山에 쟁의와 폭동이 續發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앞에서 고찰한 사례에서도 분명한 것처럼 열악한 노동조건에 따른 생활의 궁핍만이 아니라, 경영의 생산과정 지배에 따른 제모순과 연루되어 있었다. 더욱이 戰後의 일련의 쟁의가 자연발생적이었다고는 하지만 大日本勞動至誠會라고 하는 갱부(坑夫) 조직이 활약한 足尾銅山과 같이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도 있어서 노사관계의 위기는 거기에서부터 조성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쟁의와 폭동은 그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겠끔 되었다. 당시의 『東洋經濟新報』는 사설에서 광산이나 조선공장의 쟁의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사관계의 위기를 강조하고 그 대응책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勞使問題는 歐洲人의 문제이며, 아직 결코 일본의 실제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 朝野識者 사이에 이루어진 여론이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유치한 견해는 이미 오늘에 通用하지 못하게 되었다. 최근 10년간 우리 공업은 현저한 진보를 하여 여기에 수반하여 사회의 配財上에도 一大變化를 예고하고 있다. 지금은 한편에서는 암흑한 공장에서 작업하는 무수의 노동자가 있고, 그들은 하루종일 힘든 노동을 하여 겨우 1日의 호구(糊口)를 지탱할 수 있는 보수를 받는데 그치고 있고, 더구나 또 한편으로는 이들 노동자의 노동의 결과를 착취하여 자신의 소득으로 하는 小數管理者가 있다. 그러한 不利益의 側에 선 계급이 利益의 側에 선 계급에 맞서서 반항의 기세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추세로, 이번의 足尾의 폭동이나 또는 三菱조선소의 분란과 같은 것은 실제로 그런 것을 실증하는 하나의 例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반항운동이 표면으로 노출되면서도 큰 것은 아직 이들 2~3의 경우로 한정할 수 있지만, 깊이 그 내부를 살펴보면 같은 추세는 요즘 이미 전국 각 공장에 만연하여 있고, 억제할 수 없는 형세를 이루고 있는 것은 징후가 역력하여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 요컨대 금일의 노동문제는 이미 일부 理想家의 꿈애기가 아니라, 목전에 다가온 해결을 서둘러야 할 實務社會의 생활문제이다」(〈2〉, pp. 57~8).

이처럼 日露전쟁 후 쟁의의 빈발에 따른 노사관계의 위기를 논하는 신문·잡지는 그 위기의 원인으로서 거론한 것은 勞使間의 「分配의 不均衡」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전후의 일련의 쟁의가 임금인상을 주요한 요구로 하고 있던 점만을 주목한 결과이며, 앞의 사례의 분석에서 본 것처럼 노사관계의 변화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다. 어떻든 이 「分配上의 缺陷」을 지적한 신문·잡지가 그 극복책으로서 제기한 것의 하나는 사회정책이었다. 『東洋經濟新報』는 「국가 및 사업가가 장래 취해야 할 方策」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7〉 2卷, p. 84).

ㄱ.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어디까지나 탄압의 수단으로 대처할 것.

ㄴ. 慈惠主義에 의하여 교묘히 노동자를 회유할 것.

ㄷ. 분배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는 각종의 입법을 제정할 것.

第1의 對策은 표면상으로는 일시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하나 공연히 계급적 원한을 재촉할 위험이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그러나 日清戰後 정부·자본이 취한 노동자 대책은 무엇보다도 이 권력에 의한 탄압이었으며, 이 방침은 日露戰 後에도 그대로 계속되었다. 예를 들면, 치안경찰법에 의한 탄압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日露戰爭 後의 쟁의는 이러한 무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당사자는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第2의 對策은 「일종의 임시방편책에 지나지 않아서, 곧 그 진상이 간파되어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노사관계관의 저류를 이루는 것으로서 노사관계나 노동조건의 개혁이 이슈로 될 때마다 그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리로 이용되었다(〈3〉, p.

78). 그러나 이러한 주종관계론도 공장제 공업의 발달에 따른 노동이동이 활발해지자 전혀 무의미한 現狀辯護論으로 되어 버렸다. 第3의 對策은 「무엇보다도 開明의 수단으로서 노동문제의 마지막 해결」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의한 사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7〉 2卷, p. 84). 그러나 분배의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축적을 급선무로 하는 大經營으로서는 허용할 수 있는 것이 못되었으며, 또한 정부가 바라는 바도 아니었다. 예를 들면, 어떤 논자는 사회정책이 「국가의 법률이 명하는 것이 되면 친절이라고 하는 편보다는 권리의무의 투쟁으로 되어 일이 死藏되어 버린다」고 하는 입장으로, 사회보험과 같은 국가적 시책보다는 기업내 복리시설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5〉. p. 292). 여기에서는 노동자의 생활부조로서 행하는 급부와 같은 것이 노동자의 권리로서가 아니라 경영의 은혜적 부조로서 행하려고 하는 취지가 잘 나타나 있다. 한편, 이들 신문·잡지가 분배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한 또 하나의 대책은 노동조합에 의한 길이었다. 예를 들면, 『每日新聞』은 1907年 5月 6日 두 번에 걸친 사설에서 「産業平和策」을 논하고, 그 속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는 이미 主從의 관계를 떠나 대등한 지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자본가의 자선보다는 당연한 이익의 분배를 위하여 맞서야 한다고 하고, 거기에 이르는 길로서 「勞動組合의 結成」을 주장하였다(〈5〉, pp. 272~3). 이 점에 대하여 경영측으로 부터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노동조건이 결정된다면 각종의 경제적 기계가 발명되어도 기계의 응용범위가 자연히 제한되어지기 때문에 생산의 발달진척은 크게 지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견해가 진술되었다(〈5〉, p. 292). 이러한 산업 계의 주장 즉, 사회정책이나 노동조합에 의한 길이 어느 것이나 산업 내부에 권리·의무를 둘러싼 투쟁을 일으켜 산업의 발달을 저해하므로, 경영에 의한 은혜적 급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그대로 수용되어 현실화되었다.

이상의 論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쪽의 대책에도 한계와 장애가 가로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동요 속에서 政府·資本家가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내세운 것은 「家族主義」였다. 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논하고 있는 자는 隅谷·兵藤의 兩人이지만 여기에서는 隅谷의 所論을 실마리로 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隅谷에 의하면 이 경우의 가족주의는 이전의 그것과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다르다(〈2〉, pp. 60~4). 첫째는 같은 가족주의라 하여도 뉴앙스가 다르며, 「親子의 情誼」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가족주의가 단순한 論理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설·제도와 연결되어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후자에 관해서는 다음의 항 즉, 共濟制度에서 기술되므로 여기에서는 전자에 한하여 검토를 행하기로 한다.

종래의 가족주의에서는 부모(親)의 권위가 지극히 강하여 가족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복종의 덕이 오직 강조되어 왔다. 한편, 日淸戰爭 後의 산업발전 속에서 근대적 시민의식과 함께 개인의 자각이 성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소득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여 짐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주의는 해체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처럼 지금까지 사회를 지탱

하여 온 「國民精神」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를 느낀 정부는 그 활로로서 日露戰 後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재편성에 의하여 그 위기에 대처하였다. 여기에서 강조된 것은 「부모(親)는 단지 권위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애정을 갖고 가족의 생활을 배려하는 존재로서 再認識」되고, 이렇게 하여 「젊은 子女의 자기주장을 다시 한번 가족주의 속에 포섭」한 점에 있었다(〈2〉, p. 61). 이러한 국민사상의 변혁은 경영에 도입되어 이 때부터 고용주의 온정이 강조되어지게 되었다.

이상이 隅谷의 所論인데, 그는 이것을 「父子的情誼」에 입각하는 가족주의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하여 兵藤은 다소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가족주의가 경영에 도입되어 원용되었다고 해도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家族的인 上下의 관계」 즉, 主從의 情誼에 입각한 가족주의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논리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三菱의 幹事였던 莊田平五郎의 言說에 근거하고 있다.

> 「우리나라(일본)에 있어서는 古來로부터 특유의 미풍이라고 해야 할 『主從關係』인 것이 존재하여…… 그리고 近年 교통기관이 진보하고, 권리사상이 발달하고, 경제시장이 확장되고 산업사회가 대규모로 되었다고 하지만, 이 主從關係인 것은 엄밀히 존재하여 일찍이 歐洲諸國에 존재하였던 것과 같이 박약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주종관계인 것은 근거가 가족제도에 있으며, 가족제도가 붕괴하지 않는 이상 소멸하지 않음과 동시에 또한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노동자를 사랑하고, 노동자는 주인을 존경하며 상부상조하여 工業上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령 법률상으로 인간에게는 上下의 差別이 없다고 하여도,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賢愚, 勤怠, 精不精의 差別이 있는 이상은 사실에 있어서 고용주와 노동자와의 관계는 소멸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主從關係는 애써 유지하고 조장하여 그렇게 하므로서 공업상의 평화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1〉 2卷, p. 316).

이 주장에는 고용주와 노동자와의 관계를 선천적 능력의 차이에 근거하여 主人과 從者의 관계로 擬制하고 있다. 거기에다 주종간의 관계는 「親(家長)이 가족에 베푸는 은혜와 그에 대한 가족의 報恩으로서의 孝의 관계로 나타나는 가족간의 倫理的 心情」이라는 전통적 가족주의의 원리를 원용하므로서, 「고용주는 노동자를 사랑하고, 노동자는 주인을 존경하여」, 그렇게 하므로서 「상부상조하여 공업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5〉, p. 294).

이상에서 兩人의 所論을 간단하나마 고찰하였는데, 그 차이점은 日露戰爭 後의 가족주의가 질적으로 이전의 그것과 다른지 어떤지가 문제로 되고 있다. 이것을 판명하기 위하여는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제반조건 예를들면, 日露戰後의 勞動條件이라든가 정부와 자본가의 노

무정책 등을 포함하여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2) 共濟制度의 活性化

이 시기에 있어서 가족주의로의 재편은 다만 가족주의의 論理와 倫理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獨占資本에 의하여 가족주의의 물질적 기반이 형성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시책은 共濟組合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經營 스스로의 힘으로 傷痍·疾病, 기타 생활상의 사고에 대한 부조가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대부분이 경영의 원조하에 상호부조주의에 입각하여 救濟한다고 하는 취지에 입각하고 있다.

〈표 4〉 共濟組合 設立 狀況

	1980~1906	1907~10	1911~14	1915~17
設立組合數	46	54	111	175
同上1年當	2.7	13.5	27.8	58.5

資料 : 〈3〉, p. 81.

上記의 〈表 4〉에서 보는 것처럼 共濟制度는 1907年 이후 중요한 노무정책으로서 기업간에 급속히 보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이 시기에 있어서 복리시설의 성격 즉, 자본이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究明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실제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를 위한 실마리로서 이 부문에 선두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長崎造船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長崎造船所에서는 明治 23年의 「工場規則」에 의하여 재해에 대한 최소한의 부조규정이 명문화되었는데, 相互扶助의 사상을 도입한 복리시설로서는 明治 30年(1897)에 제정된 「職工救護法」이다. 그 요점을 추출하여 보면 다음의 4項目을 들 수 있다(〈6〉 第1編, pp. 29~36).

(1) 업무상의 부상의 경우에 私費負擔(第1條).

(2) 업무상 및 업무 외의 부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 수당지급(第6條).

(3) 사망, 퇴직 및 해고의 경우에 수당지급(第2條).

(4) 前二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救護基金」을 설치하고, 직공과 회사 쌍방으로부터 균등부담액을 갹출한다(第2, 3, 4條).

이것은 明治 42年(1909) 1月에 개정되어 새로이 「職工救護規則」으로서 실시되어지게 되었다. 그것의 주요 개정 점을 보면, ㉠ 共濟수당의 지급범위가 직공의 결혼·출산, 가족의 질병·사망 등에 까지 확대한 점이며, ㉡ 업무상의 부상·사망·불구퇴직에 대한 수당은 전액

私費負擔으로 되어 있으며, ㉢ 모든 직공에게 등급에 따라 일정액을 「養老基金」으로 적립케 하여 규정 외의 사고로 퇴직·사망했을 때 각 개인 갹출금의 元利金과 같은 금액을 養老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며, ㉣ 퇴직수당은 만 5년 이상 근속하고, 定年·傷痍疾病이나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양노수당과 아울러 그것과 동등한 금액을 회사가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이었다(〈6〉 第2編, pp. 182~202).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당시 共濟組合의 특징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면, ㉠ 그 설립이 위(上)로부터 자본의 주도로 창설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그것이 고립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설치라든가 구매부의 설치, 저금부의 설치와 같은 자본측의 복리시설과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설이 얼마나 광범한 것이었는가는 舊芝浦製作所(現東芝)의 예를 보면 잘 나타나 있다(〈14〉, pp. 187~8). 이러한 관계는 昭和不況時부터 滿洲事變을 거쳐 점점 강화되어 戰時体制에 돌입하여서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다(〈13〉 [3], p. 47). 이러한 사정은 선진국과는 정반대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산업자본의 확립과 함께 노동계급 자신이 스스로의 自主性을 갖고 노동조합 또는 友愛組合이라는 형태로 共濟活動을 행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는 대신 자본이 손수 그 기능을 떠맡고 있다. ㉡ 職工의 구제대상이 단지 업무상의 재해만이 아니라 업무 외의 부상·질병, 혹은 사망·퇴직·해고에까지, 소위 賃勞動의 재생산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각종 사고를 그 구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이며, ㉢ 갹출금이 직공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부과되어 갹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해도, 官營民營을 불문하고 대기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5〉, pp. 276~85). 이상의 사실에만 한정하여 본다면 확실히 고용주의 가족주의라고 하는 해석이 매우 합리적인 타당성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도브(M. Dobb)의 표현을 빌리면, 「자유임금제도하에서는 사용자는 노동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것 뿐이며, 새삼 노동자의 인격을 소유하는 것도, 또한 노동에 대한 永久質權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의 一身上의 복지를 배려하는 일은 노예제도의 경우보다도 적다」고 할 수 있다(〈14〉, pp. 100~1).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임금제도 하에서 노동자의 一身上의 복지를 배려하려는 共濟制度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共濟制度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는 대체로 가족주의의 일환으로서 기업의 慈惠的 시책으로서 받아들여졌는데, 그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에서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노동자의 취업제한이라든가 안전·위생의 단속을 기본적 임무로 한 최초의 노동보호입법인 「工場法」이 明治 16年 처음 立案에 착수하여 제정된 것은 훨씬 後年인 明治 44年의 일이다. 그 법의 성립과정에서 자본은 여러 가지 구실로 그 제정을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자본가가 손수 共濟制度를 도입하는 등, 재해의 사후보상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

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가가 정말로 가족주의에 입각하여 있다면 공제제도와 같은 사후보상책보다는 工場法과 같은 사전방지책에 더욱 역점을 두는 것이 오히려 순리일 것이다. 실제로 한편으로는 후한 구제방법이 강구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過度勞動과 低賃金勞動이 지배적인 현상에서 많은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는 공제조합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노동자를 전혀 참가시키지 않던가, 참가시켜도 매우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海軍 工廠의 職工共濟會에 있어서는 조합의 관리운영에 임하는 것으로서 理事·評議員制度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工廠長이 회장에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理事·評議員도 선출할 자격을 갖고 있었다. 그 결과 海軍工廠의 職工共濟會는 陸軍工廠의 직공구제회와 함께 「兩廠의 직공구제자금은 모두 직공의 출자에 의존했으며, 工場主인 정부는 한푼도 보조를 하지 않으면서도 구제자금의 지급은 전적으로 工場主의 專決로 하여 직공에게는 아무런 참견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 상태였다(〈5〉, p. 283).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 시기의 工場法이나 福利施設 등은 가족주의라는 美名하에 主從關係의 강화에 의하여 家父長体制의 구축을 위한 기본시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2. 政府側의 對應

1) 工場法의 成立

(1) 工場法 成立의 經過

일본에 있어서의 공장법은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이 설정되어 실시하기까지는 긴 세월을 필요로 하였으며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탄생한 것이다. 그 때문에 그 성립과정은 明治期의 노동문제를 둘러싸고 각 이해관계자간에 벌어진 하나의 드라마와 같은 것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明治期에 있어서 근대경제의 발달과 노동요인과의 관계, 고용주와 노동자와의 관계, 경영자의 노동자관, 정부나 학자 등의 노동문제관 등을 가장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계로 공장법에 관한 연구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나 본란에서는 필요로 하는 부분만 즉, 당시의 정부나 경영자의 노동자관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한다.

우선 성립과정을 잠깐 보기로 한다. 공장법이 처음 제기된 것은 노동자의 투쟁이나 자본가의 利害관계에서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절대주의적 관료의 주도에 의하여 행하여 졌다. 유신 후 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자연히 徒弟制度가 분해하여 이동이 시작되자 고용주 측에서는 직공단속의 문제가 일찍이 明治 10年代에 대두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는 明治 16年에 이 관계의 法立案에 착수하여 20年에는 「職工條例 및 職工徒弟條例」를 成案, 24年에 전국상업회의소에 그 필요성 여부를 자문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자본가 보호적 성격이 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빛을 보지 못하고 流産되어 버렸다(〈1〉 2卷, p. 304). 이와 같이 초기의 공장법안은 고용주의 입장에서의 노동자 규칙이 그 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明治 31年이 되어서는 내용적으로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明治 30年에 成案하고, 여기에 수정을 가하여 이듬해 31年 農商工高等會議에 자문한 것은 「노동자보호」를 정책 목표로 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工場法의 嚆矢」로 평가되고 있다(〈4〉, p. 1).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法案의 성립과정에 대하여 다소의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明治 31年 第3回 農商工高等會議에 자문한 정부의 工場法案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었다(〈1〉 2卷, p. 329).

「第18條, 工業主는 직공의 이동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직공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第19條, 직공의 단속상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명령으로 공업 및 직공의 종류를 정하고, 그 직공에 職工証을 소지하게 할 수 있다. 前項의 직공으로서 직공증을 소지하지 않는 자는 해당공업에 있어서 工業主는 이를 고용할 수 없다. 第20條, 農商務大臣은 동업조합의 신청에 근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조합원이 使役하는 직공의 직공증을 소지하게 할 수 있다. 前項의 직공으로 직공증을 소지하지 않는 해당조합원을 고용할 수 없다. 第21條, 직공증은 원적지 또는 주소지의 市町村이 교부하여야 한다. 但, 前條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업조합이 이것을 교부하여야 한다. 第22條, 직공증은 공업주가 보관하고 해고할 때는 이것을 직공에게 還付하여야 한다.」

이상은 당시 고용주측이 안고 있던 노동문제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의 識者는 그러한 직공규정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회의도 原案의 이 조항을 삭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공장법의 대상은 오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호에 국한하여야 함을 일찍이 지향하고 있다. 그 후 마찬가지로 정부는 農工商高等會議에 자문하기도 하고, 또는 各地의 商業會議所에도 자문하면서 몇번이나 공장법의 成案을 시도하였으나, 자본가의 반대에 부딪쳐 그 성립을 보지 못하였다. 이처럼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후 정부는 明治 42年 가을 法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44年 3月 28日 공장법이 법률로서 성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히 실시된 것은 그후 다시 5年이 지난 大正 5年(1916)이었다. 그 동안 처음 成案된 明治 20年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실로 30餘年의 긴 세월을 필요로 하였다.

(2) 工場法의 基本性格

공장법의 기본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공장법을 제정하려고 한 취지 내지 정신을 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노동자 보호적 입장에서 법안이 성립된 明治 31年에 제출된 것과, 明治 43年 최후로 제출된 것을 비교하여 보는 것이 내용적으로 확실하게 된다. 그러나 31年의 그것은 상세하고, 43年의 그것은 간략하다는 정도의 차이 밖에 없다고 평가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31年의 그것에 근거하여 고찰을 진행하기로 한다. 31年의 工場法制定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1〉 2卷, pp. 310~12).

「금일 우리 공업의 勃興과 함께 공장이 각지에 생겨나 종래의 가내공업은 점차 변하여 공장공업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이들 공장공업은 그 효과가 현저함과 동시에 그 설비가 완전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자주 人命을 위태롭게 하며 이웃에도 중대한 傷害를 입히는 일이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의 감독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매우 많다. 종래 각 지방청에서 이미 이 건에 관한 단속을 적지 않게 하고 있지만, 그 方法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그 감독이 설비를 완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일은 공업자 및 일반대중에게 매우 중대한 이해관계를 초래하고, 깊숙히 그 권리에 관계하게 되므로 그 감독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방청에 일임하지 않고 사전에 법률로서 그 표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들 공장에 있어서 공업주와 직공간의 관계를 보면, 親睦協和도 마치 家族이나 師弟와 같은 情誼 점점 사라지고 계급적 차등에 의한 불화가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것은 실로 공장공업에 수반하는 바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이것을 각국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모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없다. 지금이야말로 情誼의 관계 매우 퇴보하여, 이것을 대신할 법률상의 관계를 확립하지 않으면 고용주와 노동자의 규율이 매우 문란하여 고용주는 노동자가 여기저기 이동하는 것에 고민하게 되고, 노동자는 또한 때때로 고용주의 억압에 복종하는 슬픔에 빠지는 자가 있게 된다. 유괴·쟁탈의 弊害가 이미 발생하고 敎唆·強要의 방식이 차츰 자행되려는 참이다. 이러한 때에 있어서 이것을 일반의 추세에 비추어 보고 또 本國의 실정을 감안하여 대강의 법규를 마련하고 兩者의 관계를 다루어, 一面으로는 공업자를 위하여 그 사업경영의 확실한 개혁을 도모하고, 또 一面으로는 勞力의 건전한 풍기의 보전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日本) 공업으로 하여금 건전한 발달을 이루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일이다. 이것이 本法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이 취지문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나는 노동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노동력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고용주와 직공간의 관계를 법으로 규정하여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의하여 공업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경영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후자이다. 이에 대하여 자본가측은 일본에는 노사간에 가족주의적, 주종관계적 情誼가 있으므로 歐美와 같이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 반대하였다. 그 쟁점을 직접 들어보기로 한다.

우선 공장법 반대의 이유로서는 당시 노동문제에 관한 이론가로서 정력적으로 활동했던 三菱회사의 莊田平五郎의 논리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점은 前項에서 기술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한편,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는 공장법의 열렬한 추진론자인 桑田熊藏은 貴族院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4〉, p. 27).

「主從關係의 美風, 이것을 존속시키는 것은 본인도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업진보의 大勢는 이 主從關係의 存續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主從關係는 小工場에서 행하여지기 쉬우나 大工場에서는 행하여지기 어렵습니다. 工業의 大勢를 본다면 점차 小工場에서 大工場으로 발전하고, 또 個人營業으로부터 會社營業으로 발전하는 것은 內外를 통한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 때문에 이 主從關係의 美風은 工業에 있어서는 존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第27回 帝國議會貴族院工場法案 第1讀會, 明治 44年 3月 18日).

이와 같이 明治 42年 공장법이 成案되어 大正 5年(1916) 施行되기 까지 8年間의 논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歸結點은 공장법이 大經營의 意圖대로 「主從의 情誼」와 일체가 되어 노사관계의 새로운 體制의 一環으로 자리매김 되었다는 점이다. 工場法 制定의 당사자인 岡實은 공장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主從關係를 日本의 傳統的인 美風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日本)에는 옛날부터 내려온 主人과 從者의 美風이 있습니다. 이 主從의 美風에 대해서 우리는 외국인에게 더한층 자랑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工場法은 이 日本固有의 主從의 美風을 근간으로 하여 더 한층 발전케 하여 주길 바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4〉, p. 38).

위의 고찰에서 보는 것처럼 공장법은 자본가측의 격렬한 反對論 속에서 타협하여 성립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재차 음미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大經營이 工場法의 반대이유로서 「主從의 情誼論」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앞의 勞動爭議의 對策을 둘러싸고 전개되어진 論爭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만약 勞使關係가 법에 의하여 규정되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가로놓여 있다. 그 하나는 노사관계가 權利義務의 관계로 되면 임금을 비롯하여 모든 勞動條件이 勞使間의 協議내지는 團體協約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勞動組合의 출현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둘러싼 紛爭이 일어나기 쉽다는 점이다. 이러한 狀況은 어느쪽도 아직 자본축적이 부족하고 생산이 낮은 단계에 그쳐 있는 기업에게 있어서는 허용하기 어려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는 工場法 속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예를들면, 徹夜業 금지의 규정에는 施行 후 15年間의 猶豫가 인정되고 있으며, 또 노동시간 제한·심야업의 금지·휴일 휴식시간의 강제가 15歲 未滿의 男工(女工은 연령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원적용)에 대해서는 규정되었지만, 일반의 成年男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大經營에는 거의 저촉되지 않았던 것이다(〈1〉 2卷, pp. 333~5).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大經營

의 경우는 공장법이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봉건적·노예적인 노동조건을 종전대로 확보하여 가는 것이 가능하였다.

2) 社會主義運動의 彈壓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정부·자본은 共濟制度나 工場法과 같이 溫情主義的 勞務政策에 의하여 포섭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한계를 넘어 자본에 抵抗하는 자에 대해서는 더한층 탄압을 강화하여 갔다. 예를들면, 明治 45年(1912)頃에 이르러 노동운동은 또한번 소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東京市電의 쟁의도, 吳海軍工廠의 파업도, 治安警察法에 의하여 多數의 검거자를 냈을 뿐, 탄압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 이 경우에 두 가지 점이 주목된다. 하나는 일본에 있어서 이러한 勞動階級에 대한 탄압은 치안경찰법 및 행정집행법(모두 明治 33年 公布)만이 유일한 무기로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형법상의 모든 反動的인 條項을 적용하여 일체의 노동운동을 저지하였다는 점이다. 예를들면, 明治 27년 天滿紡績의 爭議의 지도자는 공업방해죄로 처벌되었고, 33年의 足尾鑛毒事件陳情隊 지도자 및 40年의 足尾銅山爭議 지도자는 어느쪽도 兇徒召集罪로 체포되었다(〈13〉[3], p. 138). 또 하나는 大逆事件을 계기로 사회주의운동을 탄압하였는데, 그것이 노동자에 대한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하여 잠깐 보기로 한다.

日淸戰爭後 일련의 동맹파업이나 농민소요가 여기저기에서 빈번히 발생하자 사회의 불안은 그만큼 더해 갔다. 그것은 社會問題에의 關心을 불러일으켜 마침내 明治 30年(1897) 4月에는 「社會問題硏究會」가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이 연구회는 사회학이나 사회정책학, 혹은 기독교사회주의의 견지에서 노동문제, 소득세문제, 보통선거, 이민문제 등 잡다한 문제를 제기하여 논의하였는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후 明治 31年 10月 유니테리언(Unitarian)의 會員一部가 중심이 되어 「社會主義硏究會」를 조직하였으며, 硏究會는 「社會主義의 原理와 이것을 日本에 應用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考究」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明治 33年(1900) 1月에는 會名을 「社會主義協會」로 개정하고, 「社會主義의 원리를 討究하고 이것을 本國에 應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實踐團體에로 진일보하였다(〈2〉, p. 29).

이들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 운동의 기반으로서 노동운동에 착목하고 여기에 동정과 원조를 보냈다. 실제로 노동운동이 정부와 자본의 탄압 속에서 자주적 운동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서 社會主義와 연결된 것은 足尾銅山의 勞動運動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3〉, p. 89). 그런데 日露戰爭後 이 사회주의운동의 조류에 一大變化가 생겼다. 즉, 운동방향을 둘러싸고 議會政策을 주장하는 片山潛派와 직접행동론, 바꾸어 말하면 無政府共産主義를 주장하는 幸德秋水派로 분열하여 내부항쟁이 격화하였다. 그것은 다름아닌 溫和派와 急進派의 對立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항쟁 속에서 前者가 노동조합의 조직에 의한 지위의 改善을 호소하였

고, 반면 後者는 직접행동의 준비로서 노동자의 단체적 행동을 선동하는 등, 各各의 입장에서 勞動者階級과의 結合을 도모하려고 하였는데, 大勢는 후자에 기울었다. 그렇게 된 사정에는 무엇보다도 의회정책과 같은 온화한 운동조차 용서없이 탄압하여 버리는 權力에 대한 반발과, 또한 때마침 鑛山暴動을 비롯하여 노동자·농민운동의 活發化로, 「革命의 氣運은 마침내 조성되었다」고 하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3〉, p. 89).

그런데 사회주의 특히 급진적 사회주의 사상은 정부로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위험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明治 41年(1908) 以後 억압정책을 한층더 강화하고, 이 苛烈한 탄압에 따른 반발적 행동을 이용하여 마침내 明治 43年(1910)에는 幸德秋水 以下 사회주의자를 포함한 노동자 수백명을 검거하였다. 그 중에서 幸德 以下 12명을 「大逆罪」 즉, 天皇暗殺陰謀라고 하는 죄로 死刑에 처하였다(〈2〉, p. 46). 이후 第1次大戰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인 노동운동은 물론 사회운동도 존립의 여지가 없는 「암흑의 時代」를 맞게 되었다.

Ⅳ. 結 論

이상의 분석은 단적으로 말하면 노동쟁의의 본질을 구하고, 또 그것이 정부와 자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하는데 있었다. 첫째부터 정리하여 보자. 노동쟁의는 勞使間의 利害關係의 차이에 의하여 촉진되고 있으나 그 자체가 직접 쟁의로 진전하고는 있지 않다. 앞의 분석에서 노동쟁의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히려 「勞使間의 態度」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본측의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主從의 情誼에 입각하고 있다. 그것은 쟁의의 진행과정에서의 발언과 공장법의 성립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對勞動者觀은 勞動力商品主義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가의 인식은 궁극적으로 권위주의적 태도를 초래하였고, 그것이 勞使間에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본측은 請願書를 접수해서도 노동자와의 타협은 커녕 해고의 위협과 경찰의 힘에 의하여 진압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통적 권위주의에 입각하여 體制를 유지하려는 자세이다.

반면 노동자측은 이러한 자본의 모순에 대하여 主體的으로 대처하여 갔다. 勞使間의 교섭중에 資本家가 취한 권위주의적이고 오만한 자세는 노동자로 하여금 「勞動人格」의 문제를 각성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이 마침내 生存權鬪爭으로까지 발전하게 함과 동시에 勞動者의 團結을 촉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勞動人格이라고 하는 意識이 어떤 계기에 의하여 생성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노동자의 敎育水準의 向上 등도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鬪爭過程에 있어서 노사간의 태도, 예를 들면 노동자에 대한 기만적이면서도 勞動力商品主義와 같은 태도는 노동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존재 즉, 노동인격을 깨닫게 하였으며 그것이 노동쟁의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쟁과정을 보면 노동인격의 문제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잠재할 수도 있고, 또한 폭발할 수도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쟁의의 문제는 자본가가 노동인격의 문제를 어떻게 수용하여 대응하느냐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쟁의가 미친 영향을 보자. 이 점에 관해서는 쟁의 후 정부나 자본가가 취한 대응책을 推移하여 봄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대응책을 분석함에는 먼저 쟁의 이후의 사회적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계의 논쟁점을 고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사회정책이나 노동조합에 의한 대책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산업계에서는 산업내부의 권리의무를 둘러싼 투쟁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며, 대신에 경영에 의한 은혜적 급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산업계의 주장이 그대로 자본과 정부에 수용되었는데, 이것이 이후 가족주의라는 명분하에 도입하게 된 온정적 노무정책이다. 결국 투쟁과정에서 표출된 노동인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 바꾸어 말하면 「노동쟁의의 대책」으로서 도입된 것이 바로 가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共濟制度나 工場法과 같은 온정주의적 노무정책에 의하여 포섭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한계를 벗어나 자본에 저항하는 자에 대하여는 탄압으로 대처하는 兩面戰術로 표출되었다. 이와같이 이 시기의 일련의 노무정책은 家族主義라는 論理하에 전개되었는데, 그 본질은 가족주의라는 美名下에 主從의 강화를 위한 基本施策이었다는 것이 사례분석에서 입증되었다. 어떻든 형식적으로는 전통적인 主從의 노사관계가 家族主義로 재편되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이해한다면 이 시기의 勞動運動은 고용주의 일방적 支配에 도전하여 團體交涉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 결과는 정부·자본에게 노동인격의 문제를 각성시키지는 못하였지만, 그 영향이 권위주의적 지배체제에 온정적인 요소를 도입하게 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는 産業民主主義로의 一步를 내딛는 契機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爭議의 本質에 입각하여 문제해결이 시도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언제든지 재차 紛爭이 일어날 소지를 잉태하고 있었다. 勞動人格의 問題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第1次大戰 以後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는 노동운동의 본질이 이념적이기 보다는 인간의 기본권인 「勞動人格」의 문제라는 점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방향을 설정할 때 이러한 본질을 고려하지 않고 자칫 이념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이념적, 특히 칼막스적인 노동운동이 오늘날 퇴조하여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노동운동의 본질을 외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일본의 거대한 노동조직이었던 「總評」이 1990년대 초에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

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는 경영에 있어서 관리의 성패는 이러한 노동인격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점은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협동의욕」을 확보하는 문제로서 금일 관리론의 중심 과제가 되고 있다.

參考文獻

1. 高橋龜吉, 『日本近代經濟發達史』(1, 2, 3), 東洋經濟新報社, 昭和 56年.
2. 隅谷三喜男, 『日本賃勞動の 史的研究』, 御茶の水書房, 1978.
3. _____, 『日本勞動運動史』, 有信堂, 1974.
4. _____, 編 『日本勞使關係史論』, 東京大學出版會, 1971.
5. 兵藤, 『日本における 勞資關係の 展開』, 東京大學出版會, 1971.
6. 三菱長崎造船所職工課, 『長崎造船所勞務史』(序編, 第1·2·3編), 1928.
7. 勞動運動史料刊行委員會編, 『日本勞動運動史料』(第1·2·3·10卷), 1959.
8. 西成田豊, 『近代日本勞使關係史の 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89.
9. 楫西光速編, 『日本經濟史大系』(6), 東京大學出版會, 1965.
10. 岸本英太郎編·解說, 『明治勞動問題論集』(第4卷), 青木書店, 1968.
11. 山田保, 『日本的 經營と 歐美的 經營』, 中央經濟史, 昭和 58年.
12. 山本安次郎外譯, 『新譯·經營者の 役割』, 昭和 53年.
13. 內山尙三, "家父長制勞動關係の 法社會學的 考察"(2·3), 〈『法學志林』第56卷 第2, 第57卷 第1, 法政大學〉.
14. 木村安一編, 『芝浦製作所六十五年史』, 東京芝浦電氣株式會社, 昭和 15年.
15. 內藤則邦, "鐵工業における 勞務管理の 形成" 〈『立敎經濟學研究』(第17卷 第3), 立敎大學, 昭和 38年〉.
16. 山根常男譯, 『ストライキ』, 創元社, 昭和 25年.
17. 大河內一男, 『勞使關係論の 史的發展』, 有斐閣, 1972.
18. 木元進一郎編, 『勞使關係論』, 日本評論社, 1976
19. 小林謙一外, 『日本資本主義と 勞動問題』, 東京大學出版會, 1977.
20. 間宏, 『日本の 勞務管理史研究』, ダイヤモンド社, 1964.

A Study on the Labor Movement in the Forming Period of the Japanese Monopolistic Capital

Kang, Kae-Sa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labor dispute in the forming period of the Japanese monopolistic capital and to examine how its nature make an influence on the continuation and development of firms. The three suggestions which are obtained from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The first, the nature of Japanese labor movement is related to the problem of labor personality to be the fundamental human right rather than one of ideology. The ideological labor movement in Japan continue to reduce because such nature is disregarded. In fact, 'Sohyo' which is a large labor union is disappeared in 1990s because it does not consider the labor personality.

The second, The success and failure of management in firms depend on how they recognize the labor personality and accept the problem which occurs to the ignorance of its personality. This helps to raise the individual need of cooperation and is thought to be an important subject in the managment theory afterwards.

The third, the labor movement for the period of monopolistic capital formation utilizes the method of collective bargaining against the owner's strong control for the firms. The result for this is that the loose control for them is introduced into the authoritative control system. In this respect, it is not overestimated that this situation should make an motivation to create the industrial democracy in Japan.

Key-Words : monopolistic capital, labor personality, industrial democracy

* Proffessor of International Business of Seo-won University.

戰後 日本의 經濟外交史*

A History of Economic Diplomacy in the Postwar Japan

姜 太 勳**

目 次

Ⅰ. 序 論
Ⅱ. 國際政治經濟社會로의 復歸
1. 國際經濟秩序로의 復歸 : IMF와 GATT 加入
2. 先進國으로의 進入 ; OECD 加入
Ⅲ. 先進國間 經濟摩擦하에서의 經濟外交
1. 日本 產業 政策과 1970年代의 經濟 外交
2. 1980年代의 經濟 外交
Ⅳ. 結 論

Ⅰ. 序 論

일본은 인구 과밀과 자원 결핍으로 인하여 무역 입국이 메이지(明治)시대 부터 일본의 주요 국시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전후 미국의 주도로 수립된 자유무역 질서 즉, 브레튼 우즈체제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 協定)는 일본에게 있어서는 경제 발전을 위한 최적의 국제 경제 환경이었다. 일본은 이러한 자유무역 질서를 이용하여 서구 선진국가를 따라 잡기 위한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戰後 日本 通產省이 주도한 산업정책은 전략적 산업무문에서 의도적으로 수입의 자유화를 늦추면서 자국 산업을 육성하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산업정책의 성공으로 섬유 제품을 시발로 전자, 기계, 철강, 자동차, 반도체를 포함한 하이테크 상품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에 이르렀으며, 미국을 비롯한 여타 선진국과의 사이에 무역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었다.

1950~60년대의 일본 경제 외교는 패전국 일본의 국제 경제 질서로의 복귀가 최대의 목표였으며 1970년대 이후는 주로 선진국 간의 경제 마찰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외교의 중점이 옮겨졌다. 本稿에서는 전후 일본 경제 외교[1]의 궤적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외교는 국제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2]. 그렇다면

* 본 연구는 1998년도 단국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된 것임.
** 檀國大 政治外交學科 敎授

일본의 경제 외교도 이러한 일본의 전체적인 외교적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Ⅱ. 國際政治經濟社會로의 復歸

1. 國際經濟 秩序로의 復歸 : IMF와 GATT加入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은 미국이 형성한 국제경제질서에 편입되는 것을 경제 외교의 목표로 하였다. 미국은 1930년대의 경험을 교훈삼아 多者的 國際經濟 秩序의 樹立만이 양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3]. 미국의 이와 같은 의도가 구체화 된 것이 IMF(國際通貨基金 : 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브레튼 우즈체제와 GATT의 설립이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미국 달러의 가치를 금 1온스당 35달러에 고정시키고 달러의 金 태환을 보장함과 동시에 다른 주요 통화국들의 자유로운 환전을 허용함으로써, 다자적인 국제통화 질서의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미국의 달러 가치가 고정되어 있고, 금 태환이 허용되는 한 다른 나라들은 달러에 신뢰를 가질 수 있었고 국제 통화 체제는 안정될 수 있었다. 국제 무역은 GATT-IMF체제에서 서서히 자유화의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특히 60년대에는 케네디 라운드 교섭에 의하여, GATT 가맹국가에 대해 대폭적인 관세 인하가 이뤄졌다[4].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인해 식민지 경제권을 잃어버린 일본으로서는 무차별적이며

---

1) 여기서 경제 외교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적 조건을 만드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자국의 수출품에 대한 해외 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필요한 자원에 대한 안정적 접근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통화 금융 해외직접투자 등과 관련해서도 자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려는 것이 경제 외교의 기본적 목표이다.

2)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인 인물로 Donald Hellman, "Japanese Security and Postwar Japanese Foreign Policy", Robert A. Scalapino(ed.), *The Foreign Policy of Modern Japan,*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7). ; Yamamoto Mitsuru, "Review of F. C. Langdon's Japan's Foreign Policy", *Japan Quarterly,* (January-March, 1975).

3) R. Gardner, *Sterling-Dollar Diplomacy in Current Perspective: The Origins and the Prospects of Our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pp. 8~9.

4) GATT하에서 1964년부터 1967년 사이에 행해졌던 관세 교섭을 위한 케네디 라운드는 전후 世界 貿易史에서 괄목할만한 사건이었다. 주요 산업국가의 관세가 대폭적으로 인하되어 세계는 전례없는 저관세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Ryurato Komiya and Motoshige Itoh, "Japan's International Trade and Trade Policy, 1955~1984", *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 The Changing International Context,* Vol. 2, (Stanford : Stanford Univ. Press), p. 180.

개방된 국제경제 질서를 추구하는 브레튼 우즈 구상은 무엇보다도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는 쉽게 가입할 수 있었으나, GATT 가입에는 영국 등의 반대로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직후, 일본은 서독과 더불어 IMF 가맹국이 되었다. IMF에 대한 출자 할당액이 서독보다도 낮은 2억 5천만 달러로 책정되었다[5]. 이것은 일본의 경제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일본이 국제수지상의 이유에서 외환 규제가 허용되는 IMF 14조국의 지위는 부여받았지만, 국제무역에서 최혜국 대우를 공여받는 데는 실패하였다[6].

미국은 GATT나 국제무역기구 헌장의 기초회의에서 자신이 점령 통치하는 일본에게 最惠國 待遇를 확보시켜려 하였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 백인계 영연방 제국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후에는 일본 자신이 최혜국 대우 획득을 위해 외교적 인니셔티브를 취하게 되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일본의 GATT 가입도 戰前에 행해졌던 일본의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영국을 선두로 英 연방제국이 반대하였다. 일본이 1952년 GATT에 가입을 신청하였지만,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은 1955년이었다. 그것도 가입과 동시에 영국, 프랑스, 그리고 오스트리아등 일본 무역의 약 3할을 점하는 14개국이 GATT 제35조를 원용하여, 일본에게 최혜국 대우의 공여를 거부하였다. 제35조는 신규가입국가에 대하여 GATT 규정의 적용을 유보할 수 있는 免責 條項이었다[7].

당시 영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이 문제시하였던 것은 일본 경제의 「異質性」이었다. 일본은 서양의 진보된 기술과 아시아적 저임금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섬유[8]와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분야에서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GATT의 무차별 원칙 아래에서는 일본과 경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구 국가들은 일본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 부여를 거부하였다. 말하자면 일본에 대한 최혜국 대우 부여가 거부된 이면에는 세계 섬유

5) 山本 武彦, "經濟 外交", 有賀貞 外 編, 『講座國際政治 4: 日本の外交』(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89), p. 160.

6) 赤根谷 達雄, "占領下日獨への最惠國待遇供與問題", 『國際政治』, 第106號, 1994年 5月, pp. 162~179.

7) 일본의 GATT 가입에 대한 논의는 赤根谷 達雄, 『日本のガット加入問題』, (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93). 참조.

8)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은 연합국의 군사 점령하에 놓이게 되어 산업이나 무역도 점령군의 지휘를 받게 되었으나, 군사 산업인 중화학 공업과 비교하여 섬유는 「평화적 산업」이라는 이유로 생산 재개가 조속히 허락되었다. 그러나 섬유는 구미, 특히 영국과의 무역 마찰의 원인이 되었으며, 또한 수출 상품으로서의 장래성이라는 점에서도 별로 매력이 없는 상품이었다. 赤根谷 達雄, "日本の産業 貿易政策と戰爭國際貿易體制の變容", 草野 厚 外, 『現代日本外交の分析』, (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95), pp. 194~195.

수요의 침체와 일본의 '과잉경쟁력'을 두려워 하는 歐美 섬유산업의 강력한 保護主義 運動이 있었다[9].

일본 정부는 제35조 원용의 철회를 GATT 가맹 후 일본 외교의 最重點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10]. 이께다(池田勇人) 수상의 외교적 노력으로 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1962년 11월 유럽을 방문한 이께다 수상은 강경파인 영국을 설득하여 35조의 대일 원용 철회를 관철시켰다. 이리하여 일본은 전후 경제 외교의 최대 목표였던 국제 경제 사회로의 복귀를 달성하였다. 국제경제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2. 先進國으로의 進入 : OECD 加入

국제경제 질서로의 복귀가 일본경제 외교의 첫번째 목표였다면, 제2의 목표는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1960년대의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팽창기간을 이용하여 선진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소위 '황금의 60년대'라 불리우는 1960년대는 국제무역이 세계 전체의 생산고의 증가 이상 신장하였다.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도 이 기간 동안 달성되었으며, 일본은 GATT-IMF 체제의 최대의 수익자가 되었다. 일본은 1964년 4월, IMF 8조국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IMF 8조국이라는 것은 국제 수지상의 이유로 인해 외환 규제 거래가 금지된 나라를 말한다. 또한 같은 해 일본은 선진공업국가들의 집합체인 경제협력개발구기구(OECD)에 가입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일원이 되었다. OECD에 가입함으로써 일본은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인되었다. 우선 일본은 국내시장을 개방해야 했으나 일본 정부는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가졌다. 특히 1961년부터 1964년까지 경상 수지가 대폭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시장 개방에 대해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시장 개방에 앞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OECD가맹시 의무화된 資本 自由化를 일본 정부는 의도적으로 연기시켰다. OECD측은 일본의 이러한 태도를 '違約'이라며 엄격하게 비판하였다.

일본이 第1次 資本 自由化를 시작한 것은 1967년 7월이었다. 자본 자유화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금융 및 세제 지원으로 섬유, 철강, 자동차 등의 산업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이 육성되었기 때문이었다. 무역자유화도 1960년대 초반부터 완만하나마 이루어졌다. 1963년 말 155개 품목이었던 잔존 수입 제한 품목은 6년 후인 1969년 말에는 118개 품목으로 감

9) 일본의 수출확대에 관심을 갖었던 美 집령당국 및 일본 정부는 세계의 섬유 제품 시장은 한정되어 있으며, 일본의 수출증대가 구미 여러 나라와의 마찰을 불러 일으키게 되므로 섬유 이외의 분야의 수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위의 글, p. 196.

10) 山本, p. 178.

소하여 프랑스의 74개 품목에 접근할 정도의 수준이었다[11]. 그러나 같은 회원국이었던 서독의 39품목, 이탈리아의 20개 품목, 미국의 5개 품목과 비교한다면, 아직도 일본의 산업은 과보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표 1 참조〉.

〈표 1〉 주요 국가 잔존 수입 규제 품목 변화

( ) : 농산물

구 분	미 국	일 본	영 국	프랑스	서 독	이태리
1961	·	492	17	·	·	69
1962	·	224	15	127	·	74
1963	·	155	30	118	62	64
1964	·	123	·	·	·	·
1965	·	122	16	102	·	30
1966	·	124	16	·	44	·
1967	·	124	19	96	43	29
1968	·	121	22	70	43	26
1969	5	118	25	74	39	20
1970	5	90	·	74	39	20
1971	5(1)	33(24)	25(19)	70(38)	38(18)	18(10)
1975	7(1)	27(5)	19(5)	39(35)	20(19)	12(8)
1979	7(1)	27(5)	3(1)	46(27)	14(3)	8(3)
1981	7(1)	27(5)	3(1)	46(27)	4(3)	8(3)

196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한 대일무역 수지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미국의 불만을 샀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미국은 케네디 정부 이래 '美·日 무역경제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일본측에게 무역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美 日 경제관계는 '밀월로부터 마찰'으로의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으며, 美 日 밀월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대표적인 무역 마찰이 1970년대 초의 섬유 분쟁이었다. 섬유 분쟁을 시발로 다차원의 산업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일 무역 분쟁의 전개과정을 검토하기 전에 우선, 미·일 무역 마찰을 초래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일본의 산업정책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11) 渡邊 昭夫 編, 『戰後日本の對外政策』, (東京 : 有斐閣, 1989), p. 258.

Ⅲ. 先進國間 經濟 摩擦하에서의 經濟 外交

1. 日本 産業 政策과 1970年代의 經濟 外交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은 미국의 후원이 없었다면 달성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전후 미국이 서방 동맹의 리더로서 자유무역정책을 채용하여 자신의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타국의 유아 산업의 보호·육성에는 비교적 관용적이었으며 기술 이전에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관대함의 배경에는 냉전이라는 국제 환경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관용적인 정책을 이용하여 중화학, 기계, 전자와 같은 산업의 보호 육성에 성공하여 이들을 수출 산업으로까지 성장시킬 수 있었다[12].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개발된 극소전자혁명(micro electronics)에 의하여 다수의 신상품이 개발됨으로써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어 갔다. 일본은 이러한 기술 혁신의 시류에도 노련하게 편승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통산성의 정책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치경제 환경이 일본의 산업 발전에 적합하였기 때문에 고도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후발국은 일본이 발전했을 때와 같은 유리한 환경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시장의 포화 상태는 구미의 보호주의와 관리 무역화, 그리고 지역주의와 같은 사태를 초래시켰다[13].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 도상국의 유아 산업 육성책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의 관용적인 태도는 사라지게 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관용적인 태도와 산업정책의 성공으로 섬유에서부터 하이테크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최대의 국제 경쟁력을 지니게 된 반면, 비관세 장벽과 같은 일본의 무역 장벽들은 여전히 높다고 인식되어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과의 무역 마찰을 필연적으로 만들었다.

닉슨 정부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본격적인 美·日 섬유교섭은 일본의 섬유제품이 집중적으로 미국시장에 수출된 결과, 기술혁신을 하지 못한 美 섬유산업의 경영악화가 정치문제화 되어 수입규제를 요구하는 미국측의 요청으로 개시되었다. 난항을 거듭한 수차례의 교섭에서 닉슨 정부의 일관된 고자세에 대하여 사또(佐藤榮作) 정부는 1970년 1월 일본섬유산업연맹

12) Charmers 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icracle,*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82) 참조.

13) 커밍스는 美 국무성 관료의 "한국의 도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제2의 일본이 출현하지 않도록 세계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자신의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다. Bruce Cummings,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 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s, and Political Consequen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8, No. 1, Winter, 1984, p. 39.

의 압력으로 양보할 수 없었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수입 규제 요구는 미국이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를 이념으로 채용하였던 GATT체제의 가치 규범과 게임의 법칙에 중대한 수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일본 정부는 대미 교섭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자유무역주의 원칙 위배를 주장하였다. 이 때부터 미국의 교섭 자세는 다자주의를 기조로 하면서도 상호 균형 원칙을 적용하여 개별 교섭 상대에게 양보를 얻어내는 이중성을 지니게 되었다.

결국 이 교섭은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달러 방어정책을 발표함으로써 해결의 방향으로 돌아섰다. 닉슨 대통령은 금과 달러의 교환 정지, 일률적으로 10%의 수입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GATT, IMF 규정에 저촉하는 일방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소위 「닉슨 쇼크」라 불리우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달러와 중요 통화 사이의 고정환율제는 붕괴하였으며, 1973년 이후부터는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섬유분쟁은 미국의 일관된 강력한 요구를 일본측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섬유제품의 대미 수출규제를 이행한다는 각서에 일본이 조인함으로써 최종 타결 되었다[14].

美·日 섬유문제를 계기로 일본의 경제외교는 구미제국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 마찰의 처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닉슨의 달러 방어정책은 브레튼 우즈 체제가 구축된 지 28년여 만에 발생하였다. 이는 미국 경제의 상대적 쇠퇴와 일본 및 유럽 경제의 부흥으로 특징되는 국제 체제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달러 부족 시대에 설정된 주요 통화간의 고정환율제는 이미 각국 경제력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닉슨 쇼크로 불리는 달러의 금 태환 금지와 변동 환율제로의 이행은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주도적 위치가 후퇴한 반면 일본과 유럽의 경제력이 강화된 다원적인 국제 경제 질서가 점차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다원화된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일본은 세계 경제 질서의 유지 재편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요구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무역이나 통화면에서 다른 선진국들과의 협조에 임했다기 보다는 자신의 국제적 책임을 개발 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통하여 수행하려 하였다.

1971년 8월의 닉슨 쇼크를 계기로 다국간 통화조정에 의해서 일본의 엔화는 1달러에 308엔까지 평가 절상됐으나, 주요 국가의 對日 貿易 收支는 여전히 불균형이 계속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엔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이 재차 강화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엔화의 평가절상을 피하기 위하여 시장 자유화와 관세 인하에 의하여 수입 촉진과 수출 억제를 시도하였다. 일본은 국제 통화면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14) 섬유분쟁의 타결은 통산성, 섬유업계, 여당의 섬유 의원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여 사또 수상 이하의 정부 수뇌의 수출 규제 방침이 최종적으로 관철되었다. 이리하여 통산성의 섬유업계 육성 보호책도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穴見 明, "五五年體制の崩壞と執政機能の強化", 日本政治學會 編, 『55年體制の崩壞』, (東京: 岩波書店, 1996), p. 97.

면하고, 지원 외교를 위해 개발 도상국들에 대한 원조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다나까(田中角榮) 정권은 개발 도상국에 대한 경제원조에 열성을 보였다. 1970년대 초반 美·中 화해, 베트남 전쟁의 종료라는 국제 구조의 변화로 다나까 내각은 동·서 문제의 뒤를 이어 남·북 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역대 수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정부 개발 원조의 확대, 차관 조건의 완화와 같은 경제원조의 질적 개선을 약속하였다.

제1차 석유 위기를 계기로 대 아랍제국에 대한 원조 증대는 일본의 에너지 확보차원에서 이뤄졌으나 개발 도상국에 대한 원조라는 일본의 국제적 책임 수행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2중적 효과를 가져왔다.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에서 아랍제국은 이스라엘의 철군과 팔레스타인 난민의 권리 회복을 주장하면서 이를 지지하지 않는 석유 소비국에 대하여 석유수출의 대폭 삭감 및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을 선언하였다. 일본은 미국과 같이 전면 금수의 대상은 되지 않았지만, 당초 비우호국으로 취급되어 석유공급이 대대적으로 削減되었다. 에너지의 90%를 아랍 국가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전후 처음으로 아랍 제국을 지지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자주 노선을 취하게 되었다. 다나까 내각하에서 정부 개발 원조가 73년부터 75년 사이에 전체 2.6% 밖에 증가하지 않은데 반해 중동에 대한 증가율은 13%에 달하였다는 데서 일본의 정책적 전환을 읽을 수 있다[15]. 미끼(三木武夫) 수상도 다나까 내각에 이어 대중동 경제원조에 전력한 것은 사실이나, 석유 위기로 인해 일본 경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어 정부 개발원조는 미끼가 생각한 만큼 증대되지 않았다.

일본의 경제외교는 1970년대 초반까지는 케네디 라운드를 제외하고는 양자관계의 틀 속에서 처리되어 왔다. 그러나 제1차 석유위기 이후 일본은 선진국 다자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경제 대국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1975년에 개최된 제1회 선진국 수뇌 회의에 일본은 프랑스의 반대는 있었지만, 미국의 지원에 의하여 참가하게 되었다. 제1회 선진국 수뇌 회의는 석유 위기에 의하여 동요된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선진 각국이 어떠한 방법으로 수호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말하자면 수뇌 회의의 목적은 선진국 상호간의 무역, 통화면에서의 협력 촉진 및 對 開發 途上國, 소위 남측과의 교섭에서 선진국의 결속을 다지는데 있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미끼 수상은 기조 연설에서 선진국 간의 불균형적인 무역수지의 개선과 같은 구미 선진국이 중요시 여기는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개발 도상국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협력만 강조하였다. 일본의 개발 도상국 重視 發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소, 미·중간의 긴장완화, 개발 도상국가의 공세라는 새로운 국제정세에 직면하여 석유를 포함한 자원 외교라는 측면에서 일본에게는 지극히 중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제적 역할 결여에 대한 구미 선진국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

15) 渡邊, pp. 265~266.

석유위기에 의한 전 세계적인 무역의 정체로 1970년대 후반까지 미·일 간의 무역마찰은 소강상태였다. 그러나 다른 선진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앞서 일본과 서독이 석유 위기로부터 경제를 회복함에 따라 미·일 무역 마찰은 재개되었다. 1976년 일본의 대미 흑자 폭은 38.8억 달러였던 것이 '78년에는 101.2억 달러까지 상승했다[16]〈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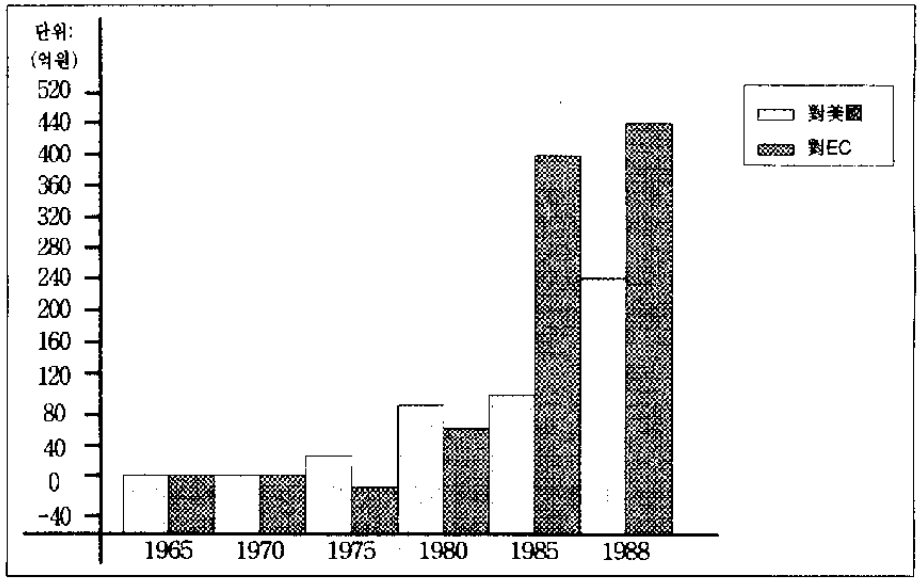

〈그림 1〉 日本의 對美 EC 貿易收支 推移(1960~1988)

미·일 무역 불균형은 미국제품의 해외시장에서의 판매부진, 외국 제품의 미국시장에서의 범람, 미국 산업의 쇠퇴와 실업의 증가를 가져왔다. 경제면에서 미국은 일본에게 보다 커다란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도 서방 동맹의 리더인 미국을 돕기 위하여 대미 자주 수출 규제를 행하였으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내시장의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일본 정부가 택한 철강, 컬러 TV, 자동차에 대한 일련의 수출 규제 조치 및 '77~'78년에 걸쳐, 오렌지[17], 소고기 등의 수입확대책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미끼 내각을 이어받은 후쿠다(福田 赳夫)는 선진 공업국가 간의 협조를 우선시 하여 1977년 6월 런던 선진국 정상회담에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으로부터 일본의 과잉 무역 흑자

16) 위의 책, p. 270.

17) 1978년부터 본격화된 동경 라운드의 과정에서 미국은 컴퓨터, 칼라 필름 등 공업 제품의 관세 인하, 농산물의 수입확대를 일본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최대의 관심을 가졌던 품목이 오렌지였다. 일본도 오렌지의 수입 확대에는 특히 신중하였다. 草野 厚, 『日米オレンジ交渉』,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89), p. 16.

가 비판을 받자 특정 상품을 특정 국가에 대해 집중호우적 수출을 하지 않을 것과 6.7%의 실질 경제성장달성(1976년도)을 약속하여 미국, 서독 등과 더불어 일본이 세계 경기 회복을 위한 기관차의 역할을 할 것을 약속했다[18]. 후쿠다는 또한 동경 라운드에서[19]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철폐, 농산물 개방 문제 등에서 실질적 진전을 볼 수 있도록 각국 수뇌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잡았다. 동경라운드의 교섭에서 일본은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단행하였다. 관세 인하와 더불어 동경라운드의 또하나의 쟁점이었던 잔존 수입 제품의 철폐 요구에 대하여는 수입할당량의 대폭적인 확대로 응했다. 또한 후쿠다 수상은 일본의 ODA를 향후 3년간 배증할 것을 확약하였다. 서방측과의 경제면에서의 협조와 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한 후쿠다 내각도 對先進國 貿易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대폭적인 무역수지의 흑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던 1978년의 본 정상 회담에서 일본은 내수 확대를 위하여 경제성장률을 전년도 대비 7.5% 상승시키는 노력을 할 것과 수출을 자제하는 것 등을 각국 수뇌에게 약속할 수 밖에 없었다[20].

2. 1980年代의 經濟 外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미·일 경제 마찰은 더욱 심화되었다. 1980년대의 미·일 마찰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21]. 첫째, 1980년대의 무역 분쟁은 종래의 마찰과는 다른 차원의 하이테크 마찰이었다. 일본의 하이테크 산업의 경쟁력이 증대됨에 따라 이 문제가 미국에서 특히 중시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이테크 산업이 미국의 국방력이나 경제적 장래를 좌우될 것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이었다. 둘째, 과거의 미·일 교섭과는 달리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1996년 이후부터 미·일 경제 마찰은 무역 영역만이 아니라 양국 간의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정부정책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미국은 円과 달러의 환율 문제, 거시경제정책, 금융규제완화, 엔의 국제화 등의 안건을 미·일 교섭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이 교섭 대상에 포함시키기를 원하는 위와 같은 안건은 일본 국내정치의 영역이므로 일본 국민에게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부정적인 對美 認識을 가지게 하였다.

---

18) 渡邊, p. 272.

19) 1979년에 성공적인 합의를 이룬 동경라운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에 의해 부과된 공산품의 관세율을 평균 39%로 조정. 둘째, 농산물에 대한 관세의 대폭 완화. 셋째, 동경 라운드에서는 반덤핑 규제, 정부 보조금과 같은 비관세 장병에도 합의를 도출하였다. Komiya and Itoh, pp. 180~181.

20) 渡邊, p. 294.

21) Komiya and Itoh, pp. 216~217.

이 시기 일본의 무역 흑자는 더욱 두드러진다. 1985년 일본의 대미 흑자는 386억 달러를 기록하여, 미국에게는 하루에 1억달러의 적자가 일본으로부터 발생하는 극단적인 불균형을 보여주었다〈그림 1 참조〉. 미국은 이러한 무역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보복조치를 통하여 해소시키려 하였다. 1985년 3월 댄 폴스(John C. Danforth) 의원이 제출한 '대일 보복 결의안'이 美 상원에서 가결된 것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미국의 대일 불신감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에도 미국은 1987년 3월 「1974년 통상법」 제301조에 기초하여 美·日 반도체 협정[22] 위반을 구실로 컴퓨터, 전동공구 등의 대미 수출에 대하여 1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일본 때리기'를 감행하였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미국에 대하여 본래 일본이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없었던 고도 기술 산업을 선택적으로 보호하여 육성한다는 일본의 소위 타게팅정책이 자유무역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또한 미국의 산업 기반을 위협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국제 분업구조를 동요시키는 일본의 산업 무역구조의 고도화정책은 그러한 파문을 선진국에 던졌던 것이다. 클린턴 정부의 자문위원장 로라 타이슨(Lora Tyson)도 그의 저서 『누가 누구를 때리는가』에 있어서 전후 일본은 전략적인 산업 부문에서 의도적으로 수입의 자유화를 늦추고 그 사이에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국제 경쟁력이 충분하게 높아진 후에 자유화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만일 일본이 이러한 「불공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일본에는 독자적인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23].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닉슨 쇼크의 전후부터 미·일 무역 마찰은 다양한 상품에서 빈발하게 되었으며, 1970년대 초반까지는 섬유 문제에 제한되어 있었으나, 70년대 이후는 철강이나 공작기계, 승용차의 마찰로까지 발전하여 특히 80년대 후반 이후는 하이테크 상품의 무역 불균형을 배경으로 미 일 마찰은 반도체 인공위성 컴퓨터, 지적 소유권 등 보다 첨단적인 분야로 넓혀졌다. 미·일 무역 마찰의 심화는 브레튼 우즈 체제하에서 세계시장을 지배해 왔던 미

22) 미·일 반도체 협정은 일종의 국제 카르텔이다. 미·일은 세계 반도체의 양대 공급국이지만, 이 협정의 주된 목적은 세계시장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범용 메모리 분야의 경쟁에서 열세인 미국 기업의 로비로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반도체의 수출 가격을 「공정 가격」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정 가격」이라는 것은 미국 중소 반도체 제조 업체가 採算性을 갖을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이 협정은 일본 정부에 의해 아시아의 제3국에 있는 日系 계열사의 판매 가격의 감시를 요구하였다. 더욱이 미국측의 주장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이 협정에서 일본 반도체 시장의 2할 이상이 미국 제품으로 점유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三又裕生, "日米半導體協定", 行天豊雄 黒田眞 編, 『日米經濟問題 100のキーウード』, (東京: 有斐閣, 1991), pp. 111~116; 森田俊輔, "日米半導體取り決ゆの問題点", 『經濟と外交』, 第773號, 1986年 10月, pp. 19~27; 같은 책, 第774號, 1986年 11月, pp. 36~43; 같은 책, 第775號, 1986年 12月 pp. 26~33; 같은 책, 第776號 1987年 1월, pp. 47~55.

23) ローラ タイソン(竹中平藏監譯 阿部司譯), 『誰が誰を叩いているのか』, (ダイヤモソド社, 1993年)을 참조.

국제품의 국제 경쟁력의 저하에서 기인한 바 크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제품의 일본 제품에 대한 경쟁력의 저하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일본의 독특한 상거래 관행이나 유통 제도를 포함한 일본 시장의 폐쇄성 및 비관세 장벽이 미국 제품의 일본 시장 유입을 가로막는 최대의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24].

일본이 자국의 '특수 사정'을 내세워 미국의 압력을 회피해 왔던 과거의 수법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미국은 80년대 들어와 일본에 대하여 일방적인 보복과 제재조치를 취해왔다. 「1974년 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86년 3월 피혁 제품에 대한 인상의 보복조치가 결정된 것을 선두로 87년 4월 반도체 제재조치의 발동 및 「1988년 포괄 무역 경쟁력 강화법」, 소위 슈퍼 301조에 근거한 컴퓨터, 통신위성, 목재제품의 불공정 무역 품목 결정 등 대표적 사례를 꼽을 수 있다. 물론, 이 기간에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락한 것은 아니나 대체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를 들면 첫째, 일본이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수출의 약 30%를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한 미국의 대일 압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너무 커서 일본의 관료들이 아마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하는 점이다[25]. 셋째, 일본 관료들이 미국의 보복 조치에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경제적 양보는 미국의 보호주의 감정의 고조를 완화시킬 것으로 일본의 관료들은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이르러 양자간 균형주의에 중점을 두는 미국을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와 OECD의 다자간 교섭의 장으로 끌어내어 대일 보복 발동을 봉쇄하려는 전술을 구사하려는 일본 외교의 움직임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농산물 무역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EC 각국과 연합하여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항하려고 시도해 왔다. 1989년 6월에 개최된 OECD 각료회의에서도 일본은 EC와 연합하여 미국의 양자 균형주의에 입각한 제재 조치는 GATT의 다자간 무역 체제에 위협을 준다며 이를 거부한다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EC는 일본의 시장 개방 지연과 덤핑 수출에 대해 비난함으로써 오히려 미국과 이해를 같이 하는 면이 많았다.

Ⅳ. 結 論

일본은 제2차 대전 패전 직후 IMF와 GATT로 특징되는, 미국이 주도한 세계경제질서로

24) 山本, p. 168.
25) Steven Marris, Dollars and the Deficits, (Washngton D. C.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1987).

의 복귀를 경제 외교의 최대 목표로 삼았다. 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1955년에 GATT에 정식 가입함으로서 국제경제 질서로의 복귀를 실현하였다. GATT의 무차별적인 자유무역질서는 자원이 부족한 일본에게는 경제 발전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었다. 이러한 환경을 이용하여 경제 성장을 추진한 결과 일본은 1964년 OECD에 가입함으로서 선진국의 일원이 되었다. 일본은 통산성이 주도한 산업정책에 의하여 섬유에서 철강, 자동차, 가전제품, 공작기계, 반도체 등의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국제 경쟁력을 키워 나갔다. 그 결과 1970년대 초의 미·일 섬유 분쟁을 시발로 1980년대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의 하이테크 분야에서 미·일 무역 분쟁을 초래시켰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 외교는 미·일 무역 마찰의 해소에 집중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통산성의 산업정책이 자유무역과는 역행하는 것이므로 이의 수정과 일본 시장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미국은 양자주의에 입각하여 일본에게 무역 보복과 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해 왔다. 일본은 미국의 양자주의가 GATT 다자주의에 위반된다며 미국의 보복 조치에 대응하고 있으나 수출의 상당부분을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요구에 양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上記한 전후 일본의 경제외교의 전개과정을 볼 때, 일본은 자신이 처한 국제적 환경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경제 대국의 목표를 추구했던 것이다. 일본의 경제 대국화는 미국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냉전 체제하에서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반공의 보류인 일본을 경제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이다. 패전 이후에 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무차별적인 국제무역 질서에 편입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아산업의 육성을 허용한 미국의 관대한 정책으로 섬유에서부터 철강, 자동차, 전자, 공작 기계, 반도체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 최대의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국제 통화정책이나 시장 개방면에서 경제 대국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일본은 개발 도상국의 원조를 통해 이에 대응하는 주도 면밀함을 보여 주었다. 일본은 자국의 상품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때 비로서 시장을 개방하였으며, 제1차 석유 위기 때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 받기 위하여 미국을 추종하여 대중동정책을 수정함으로써 아랍 諸國의 노선을 지지하는 대담한 자주적 노선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의 외교가 수동적이고 국제 환경에 반응적이라고 하는 주장은 일본의 경제 외교를 설명하는데는 적절하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시장 장벽이나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일본이 국내 정치적 이유로[26]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면 미·일 무역 분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일본의 경제외교도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

26) 政·官·財의 유착 구조로 인하여 일본의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의 철폐가 상당히 힘들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現代經濟研究グループ編, 『日本の政治經濟システム』, (東京 : 日本經濟新聞社, 1990). 참조.

참고문헌

1. 赤根谷 達雄, "日本の產業 貿易政策と戰爭國際貿易體制の變容", 草野 厚 外, 『現代日本外交の分析』, (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95)
2. ————, "占領下日獨への最惠國待遇供與問題", 『國際政治』, 第106號, 1994年 5月.
3. ————, 『日本のガット加入問題』, (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93).
4. 穴見 明, "五五年體制の崩壞と執政機能の強化", 日本政治學會 編, 『55年體制の崩壞』, (東京: 岩波書店, 1996).
5. 草野 厚, 『日米オレンジ交涉』,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89).
6. 現代經濟研究グループ編, 『日本の政治經濟システム』,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90).
7. 三又裕生, "日米半導體協定", 行天豊雄 黑田眞 編, 『日米經濟問題 100のキーウード』, (東京: 有斐閣, 1991).
8. 森田俊輔, "日米半導體取り決ゆの問題点", 『經濟と外交』, 第773號, 1986年 10月.
9. ———, 第774號, 1986年 11月.
10. ———, 第775號, 1986年 12月.
11. ———, 第776號, 1987年 1月.
12. 山本 武彦, "經濟 外交", 有賀貞 外 編, 『講座國際政治 4: 日本の外交』, (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89), p. 160.
13. 渡邊 昭夫 編, 『戰後日本の對外政策』, (東京: 有斐閣, 1989), p. 258.
14. ローラ タイソン(竹中平藏監譯 阿部司譯), 『誰が誰を叩いているのか』, (ダイヤモンド社, 1993年).
15. Cummings, Bruce.,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 *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s, and Political Consequen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8, No. 1, Winter, 1984.
16. Gardner, R., *Sterling-Dollar Diplomacy in Current Perspective: The Origins and the Prospects of Our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17. Hellman, Donald, "Japanese Security and Postwar Japanese Foreign Policy", Robert A. Scalapino (ed.), *The Foreign Policy of Modern Japan,*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7).

18. Johnson, Charmers, *MITI and the Japanese Micracle,*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82).
19. Komiya, Ryurato and Motoshige Itoh, "Japan's International Trade and Trade Policy, 1955~1984", *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 : The Changing International Context,* Vol. 2, (Stanford : Stanford Univ. Press), p. 180.
20. Marris, Steven, *Dollars and the Deficits,* (Washngton D. C.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1987).
21. Mitsuru, Yamamoto, "Review of F. C. Langdon's Japan's Foreign Policy", *Japan Quarterly,* (January-March, 1975).

A History of Economic Diplomacy in the Postwar Japan

Kang, Tae H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e the Japan's economic diplomacy in the postwar era. It has been Japan's national policy to place emphasis on trade due to the lack of natural resources since the Meiji era. The Bretton-woods system and the GATT, which had been estabilished by the initiatives of the US, has been an optional international ecomic environments for Japan to pursue economic development.

Japan, utilizing this free trade environment, activity purpsued industrial policy to catch up with the West. The postwar Japan's industrial policy was to improve her industrial competitiveness, while slowing down the pace of import liberalization. Due to the success of industrial policy, Janpan's market share has been continually rising in the areas of various industrial products such as electronics, machine, steel, automobile, and computer chips, and accordingly trade conflicts between Japan and other major industrial countries have been continually occurring. The Japan's economic diplomacy in the 1950s and 1960s was to aim at returning to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in the 1970s and after, was to place emphasis on resolving economic conflicts among advanced industrial nations.

Key-Words : post war economic diplomacy, industrial policy, trade conflicts

* Professor of Dankook University.

日本의 近代化 初期에 있어서 財務諸表制度의 展開*

An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Statement System in Early Years of Japanese Modernization

高 承 禧**

目 次

Ⅰ. 序 說
Ⅱ. 日本 近代會計의 嚆矢
1. 福澤諭吉의 「帳合之法」
2. 알란 · 샨드의 「銀行簿記精法」
Ⅲ. 揺籃期에 있어서 國立銀行財務諸表의 行態
1. 日本國立銀行의 設立과 財務諸表의 創製
2. 財務諸表의 先驅行態
3. 「銀行簿記精法」이 財務諸表形成에 끼친 影響
Ⅳ. 日本最初의 銀行財務諸表 制度
1. 日本國立銀行의 財務諸表 形態
2. 日本最初의 法定 銀行財務諸表 形態
3. 國立銀行 財務諸表制度가 一般企業에 미친 영향
Ⅴ. 日本商法의 制定과 財務諸表制度의 展開
1. 日本의 近代立法運動과 商法初案
2. 商法制定時의 財務諸表制度
3. 商法制定으로 인한 英美系 會計思想과 大陸系 會計思想의 調整
Ⅵ. 맺는 말

Ⅰ. 序 說

日本의 經濟近代化는 1868年 明治時代가 개막되면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의 日本은 改革을 통하여 과거의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중앙집권적인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형의 富國強兵政策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日本은 明治維新이라는 정치혁명을 수행함으로써 近代的 資本主義 國家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日本의 經濟近代化를 구축하는 礎石이 된 것 중의 하나는 당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 아래 강력히 추진된 近代的 銀行의 創設이었다. 1873年에 設立된 第一國立銀行이 그 始發点이다. 第一國立銀行이 日本最初의 株式會社企業으로서 설립되어 운영되어짐에 따라 西歐의 여러 가지 經濟制度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운영을 위한 簿記制度도 西歐의 銀行會計시스템을 範例로 하여 도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1873年 第一國立銀行의 설립과 더불어 도입된 簿記會計制度는 당시의 美國의 國立銀行條例와 英國의 銀行會計實務가 기초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그

* 이 논문은 1998년도 단국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檀國大學校 經營會計學部 敎授.

래서 日本近代會計의 黎明은 明治維新時代의 經濟近代化를 위한 추진기의 역할을 담당했던 銀行會計制度의 創設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本 硏究는 이상과 같은 日本의 近代化 初期에 있어서 西歐式 會計制度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도입되고, 日本近代會計制度의 기초를 형성하였는가에 대하여 時代史的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려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특히, 1973年부터 도입된 英美式 會計技法과 1890年의 日本商法이 創製됨으로써 도입된 大陸式 會計方式을 통하여 형성된 草創期의 日本財務諸表制度에 대한 檢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日本 近代化 初期에 있어서 財務諸表制度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의 침체된 會計史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깊은 意義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Ⅱ. 日本 近代會計의 嚆矢

日本에 西洋式 簿記書를 전한 것은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美·英·獨·佛 등 西歐諸國이었고, 簿記敎育을 담당했던 敎師도 이들 나라의 簿記專門家들이었다고 한다[1]. 특히 그 중에는 영국인 알란·샨드(Alan Shand)와 같이 日本에서 簿記書를 저술한 사람도 있고, 美國人 윌리암·휘트니(William Whitney)와 같이 일본에서 저서를 번역한 사람도 있어서 日本의 洋式簿記 導入初期에 활약한 西洋人은 다채롭다고 할 수 있다[2].

이렇게 하여 日本에서 近代會計의 新紀元을 이루었던 것은 1873(明治 6년)이었다. 어쩌면 1873年은 日本의 기업회계제도에 대하여 근대화를 가져오게 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1873년 6월에 일본 최초의 서양식 簿記書로 대표되는 후꾸사와(福澤諭吉)의 「帳合之法」이 출판되었고, 둘째로 同年 12월에 英國人 알란·샨드(Allan Shand)의 「銀行簿記精法」이 大藏省(우리나라의 財政經濟部)에 의하여 출판되었기 때문이다[3]. 그 이전시대에 있어서는 德川幕府 이래의 전통적인 日本固有의 記帳法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그것은 西洋簿記에서 볼 수 있는 복식부기의 원리가 缺如된 것이었고 체계적인 장부조직을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西洋簿記가 전해져서 전연 異質的인 토양에 뿌리를 내리기에는 상당한 기간과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日本에는 고유의 記帳法이 있어서 독특한 文字나 數字가 西洋과는 계통이 다르고 帳簿나 筆墨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달랐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록·계산이 체계화되어 있는 서양

1) 西川孝治郎, 『日本簿記史談』(東京, 同文一v, 1974), p. 72.
2) 黑澤淸 總編集, 『體系 近代會計學Ⅵ－會計史 および會計學史』(東京, 中央經濟社, 1979), pp. 284~309.
3) 日本·神戶大學 會計學硏究室 編, 『會計學辭典』(東京, 同文一v, 1976), p. 932.

식 부기제도가 도입되는 단계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밖에 없었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893년에 上記의 洋式簿記書가 日本語版으로 일반에게 보급되면서부터 서양식 簿記法은 日本人 특유의 풍토 속에 침투하여 독특한 日本式 會計制度로서 정착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日本의 複式簿記 發達史는 日本 經濟의 近代化를 다지는 정책적 지도 아래 착실히 형성되어 갔으며, 드디어 은행회계제도의 정착과 株式會社會計의 發展에까지 확대되었던 것이다. 결국 1873年은 日本에 있어서 企業會計制度 近代化의 시발점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다.

1. 福澤諭吉의 「帳合之法」

日本의 경제적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明治文化의 위대한 선구자였던 福澤諭吉(후꾸자와·유기치)는 「學問의 권장」, 「西洋事情」, 「文明論의 概要」 등의 저서를 내어 국민의식을 계몽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帳合之法」이라는 洋式簿記書를 번역·출판하여 日本의 근대화 초기에 있어서 複式簿記制度의 도입에 새로운 里程標를 마련해 준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의 「帳合之法」은 원래 Brayant and Stratton 共著의 Common School Bookeeping (1871)을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갖는 실질적인 意義는 번역서의 형태를 빌려서 그의 實學思想을 나타내려고 한 作品이라는 점이다[4].

「후꾸자와·유기치」가 「帳合之法」의 序文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랜 옛날부터 사회의 下層에서 억압받고 있던 農工商의 三界에 속하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곧 學問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敎示하려고 했음을 찾아볼 수 있다. 中國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漢字를 추종하던 공리공론가들에게 農工商의 생활 속에 學問이 존재한다는 神秘를 깨우쳐 주려는 의도에서 「帳合之法」이 번역된 것이라 하겠다. 이 책의 내용은 현재의 위치에서 보면, 평범한 簿記的 技法을 해설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당시 미국의 상업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던 簿記方法을 누구라도 알기 쉽게 소개한 최초의 日本語版 西洋式 簿記書라는 데서 그 意義를 제시하고 있다. 「구로시와」(黑澤淸) 교수는 이 번역서를 평하여 『마치 이태리의 「르네상스」時代에 「루카·파치오리」에 의한 세계 최초의 簿記書가 세상에 나타난 것과 거의 비슷한 意義를, 明治時代의 초기에 후꾸가와(福澤諭吉)의 帳合之法이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5]라고 극찬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책이 日本의 近代會計制度史에서 갖는 의미가 얼

4) 上揭書, p. 932.
5) 西川孝治郎, 前揭書, p. 214.

마나 큰 것인가를 인식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2. 알란·샨드의 「銀行簿記精法」

상술한 후꾸사와(福澤諭吉)의 「帳合之法」이 출판된 1873년에 역시 日本 大藏省에 의하여 「알란·샨드」(Allan Shand)의 「銀行簿記精法」이 刊行되었는 바, 이것은 日本 最初의 日本語版으로 출판된 銀行簿記書이다.

이 책에서 해설된 會計方法은 1872년에 공표된 국립은행조례에 의하여 1873년에 創設된 第一國立銀行(현재의 第一勤業銀行) 등의 회계실무에 채용되었고, 샨드시스템(Shand System)[6]이라 하여 그후 銀行 뿐만 아니라, 보험업·신탁업 그리고 일반 상공업 분야에도 보급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日本의 會計制度史上 후꾸자와의 張合之法과는 다른 차원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日本에서 최초의 株式會社形態로서 설립된 銀行은 第一國立銀行인 바, Shand 시스템은 여기서 비로소 실제에 적용되었다. 따라서 第一國立銀行의 창립과정과 「샨드」의 「銀行簿記精法」은 역시 처음부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國立銀行條例에 의하여 제시된 日本의 國立銀行 會計制度에 관한 기본규정은, ① 주식회사에 의한 은행업무의 합리적 운영, ② 株主 및 예금자의 이익보호, ③ 그에 대한 大藏省의 적극적인 보호 및 감독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되는 수단으로서 첫째 簿記, 둘째에 財務諸表, 셋째로 監査를 제도적으로 설정하여 이것을 有機的으로 활용하려고 하였던 데서 비롯된다[7]. 그 구체적인 시책으로서 당시의 日本政府는 「알란·샨드」를 초빙하여 국립은행의 경영에 필요한 業務講習을 행함과 동시에 銀行簿記의 技法을 저술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와 때를 같이 하여 大藏省은 국립은행이 정기적으로 紙幣頭(後의 銀行局長을 일컬음)에게 제출해야 할 보고서의 제출규칙을 정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4년이 경과한 1877년에 이르러 大藏省은 「銀行簿記精法」의 보완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國立銀行 事務取扱法」을 발표하고 또한 「國立銀行報告書規則」을 개선함과 동시에 「考課狀 樣式」(財務諸表樣式)을 마련하였던 것이다[8].

6) 「銀行簿記精法」은 日本의 大藏省에 의하여 刊行된 것이지만, 原著者는 Alexander Allan Shand(1844~1930)이다. 그는 1864년에 日本 橫濱에 진출한 Charterd Mercantile Bank of India and China의 行員으로 1866년에 日本 橫濱에 왔고, 1869년에는 acting manager가 되었다. 1872년에 日本政府는 銀行制度의 창건을 위하여 그를 초빙하였다. 그는 紙幣寮에 근무하면서 은행부기제도의 은행부기제도의 立案에 착수하였고, 1873년에 드디어 원고가 완성되어 同年 12월에 刊行된 것이 上記의 册이다. 이것에 의하여 大藏省에 官史와 第一國立銀行의 行員에게 西洋式 銀行簿記의 技法을 講習하였다. 따라서 그의 著書에 의하여 日本에 보급된 銀行簿記制度를 일컬어 Shand System이라고 하는 것이다.

7) 片野一郎, 『日本財務諸表制度의 展開』(東京, 同文－v, 1968), p. 7.

8) 上揭書, p. 8.

日本에서 國立銀行의 會計制度는 창설당시부터 이러한 施策下에 운영되었기 때문에 서서히 그 기반을 굳혔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日本 國立銀行의 會計制度가 확립됨으로써, 오늘날 日本의 株式會社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회계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알란·샨드」의 「銀行簿記精法」이 최초로 第一國立銀行에서 실시·적용되었다. 그것은 銀行의 업무와 그 적용을 위하여 會計方法 및 傳票와 帳簿組織을 상세하게 해설한 것이다. 그리고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해야 할 決算書의 樣式을 다음과 같이 例示하고 있다[9].

第一類 理事 및 株主處分 書類의 帳簿.

第二類 株式規則 決定에 이용하는 帳簿.

第三類 銀行의 업무활동을 게제하는 諸帳簿.

위의 第一類의 帳簿는 會議要件錄, 定期總會議事錄 및 當業報告書이다. 第二類의 帳簿는 미국의 국립은행조례를 참조하여 설정한 것으로서 株主名簿, 주식재고장, 주식계정원장,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第三類의 帳簿는 은행의 업무활동에서 비롯되는 諸帳簿이므로, 본래 銀行簿記에 있어서의 帳簿를 일컫는다. 「銀行簿記精法」의 대부분이 이 第三類의 帳簿에 대한 記帳法을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에 英美式 簿記會計의 기술적인 수준을 충실히 日本人에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明治時代에 있어서 日本의 理想實現에 기여한 하나의 원동력으로서 銘記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銀行會計制度에 컴퓨터 시스템이 도입되어 舊來의 샨드시스템은 그 모습을 감추게 되어 버렸지만, 二十數年 前까지만 해도 日本의 거이 모든 銀行의 회계제도 속에는 샨드시스템의 原型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그것이 日本 會計制度의 近代化에 기여한 공헌은 매우 큰 것이었다고 한다[10].

Ⅲ. 搖籃期에 있어서 國立銀行 財務諸表의 行態

1. 日本國立銀行의 設立과 財務諸表의 創制

日本에서 최초의 株式會社形態로 설립된 銀行은 第一國立銀行이었다. 銀行制度의 창설을 위한 법적근거로 제시된 것이 國立銀行條例인 바, 이것은 大藏大臣던 井上薰, 紙幣寮員였던 芳川顯正, 그리고 大藏權大丞이었던 시부자와(澁澤榮一) 등의 협력으로 1872년(明治 5년)에 公布된 法令을 의미한다. 이 國立銀行條例가 공포된 직후 銀行設立을 위한 절차가 개시되었고, 1872년 11월 22일자로 東京日日新聞에 株式公募를 게제하였다. 그 결과 資本金 244만

9) 日本會計硏究學會, 「近代會計百年」 (1978), p. 15.

10) 日本會計硏究學會, 前揭書, p. 17.

800원으로 第一國立銀行이 創設되었던 것이다[11].

이와 같이 日本의 國立銀行은 1872년 11월에 公布된 國立銀行條例에 근거를 두고 第一國立銀行(지금의 第一勤業銀行의 前身)이 設立되었으며, 이윽고 全國各地에 支店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國立銀行條例」 및 그 조례의 부속인 「國立銀行成規」를 통하여 주식회사인 第一國立銀行의 會計制度에 관한 規定이 설정되었다. 그것에 의하면 결산결과를 보고함에 있어서 銀行은 첫째로 株主에게 통지하고, 둘째로 新聞에 공고하며, 셋째로는 公告後 10일 이내에 決算書類를 大藏省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다[12].

이 규정에 따라 第一國立銀行이 大藏省에 제출하는 財務諸表는 1873년 6월에 편제된 「국립은행보고서제출규칙」에 따라 計定形式의 「半期利益報告書」(손익 및 이익처분 혼합계산서)와 「半期實際報告書」(이익처분대차대조표)가 작성되었다. 이것은 당시 영국의 회계관행이었던 「배당선언회계보고서」의 체계 그대로의 樣式이었다고 한다[13].

따라서 第一國立銀行이 大藏省 紙幣寮(財務部 銀行局)에 每半期마다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양식은 1877년 12월에 大藏省이 제정한 「국립은행보고서제출규칙부록」인 「考課狀書式」에서 비로소 法制化되기에 이르렀다. 이 書式에서 제시된 이익금보고서는 손익계산과 이익처분계산과의 불완전한 결합계산서였지만, 實際報告書는 이익처분 후의 대차대조표의 樣式을 취하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1877年의 決算報告書의 樣式이 「아라비아」 數字를 사용하여 금액표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日本에서 1870年代에 「아라비아」 數字에 의한 記帳處理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日本의 經濟近代化를 향한 의지가 얼마나 강했던가를 찾아볼 수 있게 하며, 이것은 日本의 近代會計制度를 확립하는데 한층 박차를 가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에 벌써 減價償却 槪念이 日本의 회계실무에 制度로서 도입되었고, 第一國立銀行의 「利益金報告書」에도 具現되어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14].

2. 財務諸表의 先驅形態

1870年代에 있어서 日本의 회계제도는 그 도입기에 속하는 때였으므로, 극히 원시형태의 구조를 면치 못하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전된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초기의 第一國立銀行이 공표하는 財務諸表 중에는 오늘날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선구적인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

11) 青木茂男, 『日本會計發達史』(東京, 同文-v, 1977), pp. 12~13.
12) 日本 「國立銀行條例」 第13條 第2節 및 第3節(1972年 11月 附 公布).
13) 青木茂男, 前揭書, p. 31.
14) 上揭書, p. 46.

문이다. 당시의 第一國立銀行의 공표재무제표에서는 「半期實際報告書」와 「半期利益金報告書」라고 하는 用語가 오늘날의 재무제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用語는 同銀行이 1874년 상반기의 공표재무제표에서 이용된 이래, 당시의 여러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5].

第一國立銀行의 제1기 결산은 1873년 12월 31일부로 이루어졌다. 「샨드시스템」에 따라 기록된 회계장부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貸借對照表(半期實際報告)는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銀行簿記精法」의 全五卷 中 제1권 및 제5권에 제시되어 있는 帳簿類에는 第一國立銀行의 이름으로 書式이 例示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銀行簿記精法」에서의 「資産 및 負債抄錄」이 공표재무제표상의 「利益金報告書」가 「利益計定表」(손익계산서)이었음은 물론, 「貯蓄金」[16] (이익잉여금계산서)을 합하여 三本化된 재무제표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중에서 「利益計定表」는 오늘날의 손익계산서와 이익처분계산서가 아직 분리되어 있지 않은 混性形態의 성격을 가진 계산서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國立銀行의 공표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것은 「處分前 貸借對照表」(半期實際報告書), 손익 및 이익처분계산서(半期損益金報告書) 및 「잉여금계산서」(貯蓄金)이라고 하는 체계에 의하여 정밀성있는 통일재무제표가 수립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재무제표 구조의 三本化는 1873년의 「銀行簿記精法」에 소개된 「資産 및 負債抄錄」, 「利益計定書」, 및 「貯蓄金」과 그 내용이 같은 것이다. 이 三本化된 것 중에서 「貯蓄金」의 구분이야말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증권거래위원회 규칙의 재무제표 체계에 나타난 「잉여금계산서」의 先驅形態라 할 수 있다.

당시 大藏省의 銀行經理指導의 최고방책이었던 利益蓄積에 의한 자기자본충실의 원칙은 이 공표재무제표의 표시양식 속에 유감없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잉여금계산서로서의 「貯蓄金」의 구분은 사실상 사회의 현실적인 요청에 따라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이에 대하여 「가다노」(片野一郎) 교수는 『簿記에 관하여 전혀 東과 西를 몰랐던 1873年 12月에 「銀行簿記精法」을 통하여 「資産 및 負債抄錄」, 「損益計定表」, 「貯蓄金」이라고 하는 三部構造의 재무제표체계가 도입되어서 불과 2年半이 경과했을 뿐이다. 질서가 서 있지 않았던 당시에 한

15) 片野一郎, 『日本銀行會計制度史』 (東京, 同文－v, 1877), pp. 151～152.

16) 「貯蓄金」이라고 하는 用語가 日本의 회계제도상 재무제표로서 이용된 것은 第一國立銀行이 第1期 決算에서 1873年 12月 31日字로 작성한 紙幣寮(銀行局) 제출용의 半期實際報告書에서 순이익의 처분항목으로 처리하여 「別段積立金」이라고 표시된 것이 최초의 일이다. 1870年代의 日本에서는 「積立金」과 「貯蓄金」이 併用되어 재무제표상에서 이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第一國立銀行의 공표재무제표상에서 積立金이 貯蓄金 대신에 사용하게 된 것은 1881년 上半期부터이고, 그 후에는 「貯蓄金」이라고 하는 用語가 公表財務諸表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片野一郎, 『日本銀行會計制度史』 (1977), pp. 146～150).

〈표 1〉 「산드시스템」에 의한 日本最初의 貸借對照表

第一國立銀行 半季實際報告

第二書式

明治六年十二月三十一日

第一國立銀行 同

頭取 小齊 ㊞ 取締 野藤 善純 助造 ㊞

借方

摘要	金額 千	百	十	万	千	百	十	円		總計 千	百	十	万	千	百	十	円	
諸抵當公債證書																		
紙幣抵當公債證書 預金抵當公債證書 別段積立金抵當公債證書		一	一 一	八 〇	二 〇	二 〇	〇 〇	〇 〇			一	二	八	二	二	〇	〇	
創業入費																		
金額有高																		
紙幣準備本位貨幣 雜貨幣		六	五 五	一 五	〇 九	〇 五	〇 〇	〇 一	二七									
他店切手 他店紙幣 商業元			五	五	七	〇	五	〇			七	六	二	六	五	五	一	二七
貸付金																		
並貸 爲換貸 割引貸 當座預ケ先貸越											三	二	五	〇	〇	六	八	三二
公債證書																		
新公債證書百円ニ付五拾六円六拾錢ノ割合ニテ				四	五	一	一	〇	九七									
舊公債證書百円ニ付拾九円三拾錢ノ割合ニテ				七	三	〇	〇	九	八一			一	一	八	一	二	〇	七八
地金銀														二	一	二	六	九五
質物流込																		
家作 地所																		
營業用																		
家作 地所												一	四	一	五	〇	〇	
總計										一	二	四	二	〇	五	六	七	三二

貸方

摘要	金額 千	百	十	万	千	百	十	円		總計 千	百	十	万	千	百	十	円	
株金											二	四	四	〇	八	〇	〇	
本社紙幣流通高												七	五	三	一	九	五	
預金																		
定期預金 當座預金 手形預金 御用準備預金 御用手形預金 別段預金		五 一 二	三 二 一 〇 一	八 六 三 七 九 七	〇 二 六 二 二 〇	六 一 〇 二 二 五	三 七 四 二 六 〇	七 七 九 七 七 〇	五〇 七六 八六 三三 四九		九	一	一	三	八	五	九	九四
借金																		
爲換借 並借 仕拂手形																		
抵當金																		
滞貸抵當 利戻抵當 仕拂未濟割賦金 抵當 仕拂未濟賞金													一	九	一	六	一	一〇
積立金																		
別段積立金 割賦金 後半季繰込				一 五 一	一 四 七	二 九 三	七 一 六	一 八 二	二四 〇四				九	三	五	五	一	二八
總計										一	二	四	二	〇	五	六	七	三二

(第一勸業銀行 所藏原本에 의한 자료임)

<자료 : 靑木茂男 編, 「日本會計發達史」(1977), p. 14>.

권의 簿記書를 여기까지 活用한 無名의 先輩에 의한 불굴의 노력과 知能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하고 싶다』[17]고 재무제표의 三本化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다.

3. 「銀行簿記精法」이 財務諸表의 形成에 미친 影響

(1) 아라비아數字의 導入

日本의 은행회계실무에서 記帳할 때 日本數字 대신에 아라비아數字를 사용하게 된 것은 日本의 기업회계제도에 대한 발전사적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제이다. 1873년 12월의 「銀行簿記精法」은 全 5册을 통하여 記帳하는 경우에 數字가 모두 日本數字를 사용하고 있다. 당시는 아직 아라비아數字가 실용화되지 못했던 때문이다. 「銀行簿記精法」보다 半年이나 빠른 1873年 6月에 출판된 후꾸자와의 「帳合之法」에서는 第1册 表紙 뒤쪽에 출판년호를 日本歷으로 2533年과 西洋歷으로 1873年이라고 記하고 있는 것 外에는 全 4册을 통하여 모두 日本數字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同年 8月에 간행된 同書下卷의 최후 부분에서 이익계산의 방법을 아라비아數字로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79年 4月에 출판된 야마다(山田十畝)의 「銀行簿記用法」 3册에서는 帳簿記入 및 財務報告書의 작성에 대하여 모두 아라비아數字를 이용하고 있다[18].

은행업의 회계실무에서 아라비아數字가 통일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은 1877年 12月 大藏省이 제정한 「國立銀行報告規則 附錄」 중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서 기재 숫자는 아라비아數字로서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데서 비롯되었다.

『報告書에 기재하는 數字는 모두 洋數字로 하고 천단위와 백단위의 사이에, 그리고 백만단위와 십만단위의 사이에 「콤마」(즉, 符號)를 찍어야 한다. 또한 摘要에 금액을 적을 때에는 「콤마」 외에 원단위와 10전 단위의 사이에 「피리어드」(즉, 符號)를 찍어야 한다. 例 : 5,678, 903. 25 卽, 5백6십7만 8천9백3원 2십5전』 (明治財政史 第13卷, 1906, p. 661).

그런데 실무상 은행장부를 아라비아數字로 기입하게 된 것은 그 보다는 빨리 第一國立銀行의 帳簿에서 1874年 9月부터라고 한다. 第一國立銀行은 1873年 6月에 개업하였지만, 草創期에는 日本數字로 사용하다가 아라비아數字로 전환했다고 한다. 현재 第一勤業銀行에 소장되어 있는 同銀行 大阪支店의 1874年 5月 2日字 「환어음 記入帳」은 아라비아數字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19]. 이와같이 日本에는 第一國立銀行이 설립·운영되면서, 西洋式 銀行簿記制度의 보급과 더불어 아라비아數字에 의한 記帳處理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

17) 片野一郎, 前揭書, p. 151.
18) 上揭書, pp. 31~32.
19) 上揭書, p. 32.

(2) 「銀行簿記精法」의 役割

1870年代의 日本經濟社會에 所有와 經營이 분리되고 회사법과 독립전문감사인에 의하여 출자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근대주식회사의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明治政府의 殖産興業政策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샨드의 「銀行簿記精法」이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첫째, 이미 발족한 國立銀行의 일상업무를 관리운영하는 수단으로서 복식부기의 記帳技術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 둘째로 은행의 결산에 대해서는 샨드시스템이 주축이 되고, 그에 따라 記帳과 決算報告書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로는 大藏省이 행하는 「銀行檢査」의 體驗을 併用하여 有效한 統一經理方法을 수립함과 동시에 신진의 회계담당자를 양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銀行簿記精法」이 갖는 役割이었다.

이러한 役割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銀行簿記精法」은 第一國立銀行의 公表用 財務諸表를 체계화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1876年 上半期에 있어서 第一國立銀行의 공표재무제표는 「貸借計定表」(처분전 대차대조표), 「損益計定表」(이익처분계산서), 및 「貯蓄金」(당기이익산입 후의 잉여금계산서)의 三區分計算書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銀行簿記精法」이 제창한 재무제표 三本化의 원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日本의 근대화 초기에 있어서 샨드시스템이 財務諸表의 形成에 끼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Ⅲ. 日本最初의 銀行財務諸表制度

1. 日本國立銀行의 財務諸表 形態

日本의 銀行業은 1873年 國立銀行의 創設 당시부터 法規로 大藏省과 株主에게 財務諸表를 제출함과 동시에 新聞紙上에 公告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원래 財務諸表라 함은 회계기록에 따라 작성된 企業의 決算報告에 관한 서류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財務諸表의 작성보고는 그 기업의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1872년 8월의 國立銀行條例는 제13조의 「銀行利益金 分割節次」를 밝히는 규정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첫째 國立銀行의 대표이사는 매년 총계정을 이루는 순이익을 정산하여 株價에 따라 공평하게 分割해야 하며, 둘째 이를 분할하기 전에 이익의 정산을 株主들에게 통지하고 新聞紙上에 이를 공고한다. 셋째로는 그것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계산을 명료하게 하여 銀行局(紙幣寮)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條例의 규정에 따라 國立銀行은 半期決算時마다 財務諸表를 ① 株主에게 통지하고, ② 新聞紙上에 公告함과 동시에, ③ 紙幣頭(銀行局長)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細則이 1972년 8월에 「國立銀行成規」라는 이름으로 公布되었는 바, 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財務諸表가 제시되어 있다. 즉, ① 銀行利益金報告와 ② 銀行實際報告가 그것이다[20].

이러한 상황하에서 1873年 6月에 第一國立銀行이 開業하였고, 同年 12月에 「銀行簿記精法」이 刊行되었던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1873年 日本 大藏省은 「國立銀行報告書提出規則」을 제정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第一國立銀行의 決算結果를 정리한 財務諸表, 즉 「半期實際報告」(대차대조표)와 「半期利益金報告」(손익계산서)가 提出 또는 公告되었던 것이다.

1872年의 「國立銀行成規」에는 「國立銀行報告事項」에 따라 國立銀行이 大藏省 銀行局長(紙幣頭)에게 제출하는 실제보고에 관하여 「이 보고양식의 文例는 銀行局長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873年 12月의 「國立銀行報告書提出規則」에서 財務諸表의 樣式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지금 그 樣式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1973년 12월 31일자로 작성된 「半期實際報告」(대차대조표)와 「半期利益金報告」(손익계산서)의 樣式을 소개하면, 〈표 1〉 및 〈표 2〉와 같다. 이것이 은행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어진 日本 최초의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의 財務諸表는 日本數字에 의하여 작성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第一國立銀行은 「국립은행조례」 및 「國立銀行成規」의 규정에 따라 半期實務報告와 半期利益金報告의 규정에 따라 半期實際報告書와 半期利益金報告書를 新聞紙上에 공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공표용 재무제표는 大藏省銀行局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와는 달리 그 樣式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 공표용 재무제표의 양식은 예금자와 일반투자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를 취하였고, 예외없이 縱書로 작성되고 日本數字가 사용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의 실정을 가장 잘 반영했다고 할 수 있는 전형적인 공표용 재무제표의 實例를 들면 〈표 3〉과 같다.

원래 제일국립은행의 공표용 손익계산서는 당기손익계산 겸 처분가능이익계산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나, 1876년에 이르러 당기손익계산을 완전히 불식하고 손익계산의 결과인 당기순이익을 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로 변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國立銀行의 공표용 재무제표에 나타난 구조상의 변화는 그후 日本 國立銀行의 재무제표에 체계화가 형성되는 과정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1877년(明治 10年) 大藏省에 提出하는 財務諸表의 體系에서 「처분전 대차대조표」(半期實際報告), 「손익계산 겸 처분가능이익계산 겸 이익처분계산표」(半期利益金報告)라는 통일적인 報告書樣式이 확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20) 上揭書, pp. 127~128.

〈표 2〉

日本 最初의 損益計算書 樣式

第一國立銀行半季利益金割合報告

借方

摘要	金額 千	百	十	万	千	百	十	円		總計 千	百	十	万	千	百	十	円	
諸入費																		
創業入費					六	○	九	六	三五									
營繕																		
什器					三	二	○	○										
給料旅費				一	二	四	三	四	八九									
稅金						五	五	○										
雜費					七	○	七	一	九二									
賞金				一	九	一	六	一	一○				四	八	五	一	四	二六
損失																	七	二○
利息拂														一	六	八	七	二七
諸抵當金																		
利戾抵當																		
滯貸抵當																		
純益金																		
一株二付三円八三錢ノ割合ニテ																		
別段積立金													一	一	二	七	一	二四
割賦金一株二付二円二五錢ノ割合													五	四	九	一	八	
後半期繰込													二	七	三	六	二	○四
總計												一	四	三	七	六	○	○一

貸方

摘要	金額 千	百	十	万	千	百	十	円		總計 千	百	十	万	千	百	十	万	
前半期繰越高																		
利益																		
割引入																		
利足入				八	六	五	五	六	六四									
手數料				二	○	四	五	四	三七									
公債證書利息				三	六	七	四	九				一	四	三	七	六	○	○一
公債證書增步																		
庫鋪																		
總計												一	四	三	七	六	○	○一

第五 舊式乙

明治六年十二月三十一日

第一國立銀行

頭取 取締

小齊

野藤

善純

助造

<자료 : 片野一郎, 『日本・銀行會計制度史』(1977), pp. 132 - 133>

〈표 3〉 1876年의 新聞에 公告된 第五國立銀行의 損益計算書

損益勘定 利益之部	
貸付金利足	二八、六三五 六九二
諸公債證書利足	一三、八一九 〇〇〇
公債證書賣買益	一二六 〇〇〇
交換打步	六一 五〇〇
庫鋪	一、二二六 六一一
請合料	三六八 五〇〇
手數料	八三二 三二二
利益	一四、五〇〇 〇〇〇
前半季繰越	一、六四一 三八二
總計	六一、二一〇 〇〇七
損益勘定 損失之部	
利足拂	一二、八六八 〇〇九
手數料	一六 〇〇〇
交換打步	一二一 七三〇
月給旅費	七、一六〇 九一三
營繕	一五、一五三 二六九
小費	二、九〇五 〇八五
諸役員賞與	一、七六〇 〇〇〇
通計	三九、九八五 〇〇三
右差引	
純益金	二一、二二五 〇〇四
內譯	
別段積立金	二、一二二 〇〇〇
當半季割賦金	一七、五〇〇 〇〇〇
但一株二付三圓五十錢	
後半季繰●	一、六〇三 〇〇四
總計	六一、二一〇 〇〇七

(東京日日新聞, 1876년 2월 7일자에 게제된 것임).
〈자료 : 片野一郎, 『日本・銀行會計制度史』(1977), pp. 154~155〉.

2. 日本最初의 法定銀行財務諸表 形態

(1) 「國立銀行報告書規則」의 別册樣式 制定

「국립은행조례」 및 「同成規」가 정하는 바에 따라 國立銀行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大藏省銀行局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대해서는 1873年 12月에 그 規則이 편제되어 있었으나, 1876年 8月 1日字로 改正되었다. 改正된 「國立銀行條例」 第77條 및 「同成規」 제 66조에 따라 日本 大藏省은 「국립은행보고서규칙」을 1877년 6월 修正하고 別册 考課狀樣式을 公示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日本에 있어서 국립은행의 통일화된 財務諸表樣式을 法規로 정해 놓은 최초의 것이다.

1877年의 「國立銀行報告書規則」에 따라 국립은행이 大藏省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는 ① 每月實際報告, ② 半期實際報告, ③ 半期平均額報告, ④ 年中平均額報告, ⑤ 半期利益金報告 및 ⑥ 株主姓名表의 여섯 가지이다. 이 중에서 株主姓名表는 12월말 현재의 株主와 持株內容을 표시한 것이며, 半期平均額報告와 年中平均額報告는 예금・대여금・화폐유통에 대하여 일년에 두 번 보고하는 것이다. 每月實際報告는 총계정원장의 월차잔액시산표이며 본점분과 지점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半期實際報告는 반년 분의 이익처분전 대차대조표이며 본・지점의 것을 모두 합한 것이다. 또한 半期利益金報告는 반년분의 손익계산 겸 이익처분계산서를 의미한다.

(2)「半期實際報告書」및「半期利益金報告書」

이상에서 살펴 본「국립은행보고서규칙」의 부록에는 국립은행이 大藏省銀行局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중 주목할만한 것은 數字를 아라비아數字로 기록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 때부터 작성된 모든 보고서의 양식에는 아라비아數字가 사용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표 4〉 修正된 規則에 의한 損益計算書의 實例

橫濱正金銀行 明治十四年上半季利益金割合報告表								
損金之方				勘定科目	益金之方			
總計		金額			金額		總計	
				總損益金				
				受取利息	123,639	887		
				金札引替公債證書利息	30,922	000		
				割引	4,848	367		
				受取手數料	4,985	508		
				受取交換打步	2,969	392		
				受取庫敷料	149	717		
				雜益	8,254	429		
				海外荷爲換打步	19,007	995	194,777	295
		19,893	000	仕拂利息				
		636	064	仕拂手數料				
		2,872	268	仕拂交換打步				
		6,840	913	給料				
		859	836	旅費				
		452	235	雜稅				
		359	519	營繕				
		273	869	諸損				
		4,354	168	雜費				
		6,720	905	割戾海外荷爲替打步				
43,512	420	249	643	仕拂庫敷料				
				前半季 繰越高				
					15,491	265	15,491	265
				所有物消却				
2,500	000	2,500	000					
				役員賞與金				
10,000	000	10,000	000					
				創業入費消却				
		1,000	000					
				純益金				
		15,400	000	積立金				
		10,000	000	別段積立金				
		110,000	000	割賦金百圓二付四圓ノ割但シ政府年六分				
153,256	140	17,856	140	後半季繰翻高				
210,268	560	210,268	560		210,268	560	210,268	560

〈자료 : 片野一郎, 前揭書, p. 172 : 橫浜正金銀行의 上半期 株主考課狀에서 轉載한 것임〉

〈표 5〉 **修正規則에 의해 작성된 貸借對照表의 實例**

横濱正金銀行 明治十四年上半季利益金割合報告表									
損金之方				勘定科目	益金之方				
總計		金額			金額		總計		
				政府勘定					
				御用預金 內紙幣 433,563.358	818,128	236			
				御用振出手形	75,400	000			
				御用別段預金 紙幣 1,959,651.472分	1,211,906	671			
		400,000	000	預ケ合借入金 紙幣 705,400.000分	436,239	951	2,541,673	858
1,430,650	000	1,030,650	000	金札引換公債證書					
				人民勘定					
				定期預金	32,062	590			
				當座預金 內紙幣 118,227.794	287,145	400			
				振出手形	438,600	000			
				仕拂銀行手形	547	000			
				別口預金 內紙幣 275,455.916	323,804	459	1,082,159	449
		1,187,247	785	貸附金 內紙幣 548,352.779					
		339,767	792	當座預金貸越					
		87,910	019	當所割引手形 內紙幣 99,300.000					
		4,119	876	當所代金取立手形 內紙幣 200.000					
		569,350	000	金札引換公債證書買入元					
		109,822	177	一時預ケ金 內紙幣 112,902.460					
		804,432	923	海外直輸荷爲換貸 紙幣 1,300,768.037分					
3,510,203	320	407,472	748	海外荷爲換資金貸 紙幣 658,883.435分					
				米國紐育出張員					
58,305	519	58,305	519	內紙幣 15,074.452					
				株主勘定					
				株金	3,000,000	000			
				積立金	16,800	000			
				別段積立金	7,100	000	3,023,900	000
				損益勘定					
				當半季利益金	151,264	875			
				前半季繰越高	15,491	265	166.756	140
				所有物勘定					
		5,868	776	地所					
		23,986	793	家作土藏					
30,674	135	1,818	566	什器					
				雜勘定					
19,993	701	19,993	701	內紙幣 2,380.176					
				創業入費					
16,264	037	16,264	037						
				地金勘定					
		4,305	203	地金銀					
4,367	893	62	690	外國貨幣					
				金銀勘定					
				金貨 500,000.000					
				銀貨 435,655.810					
				銅貨 3.329					
				紙幣(但シ正銀貨圓位) 450,325.694					
				他店紙幣 21,537.106					
1,743,030	842	1,743,030	482	他店$手形 335,508.903					
6,814,489	447	6,814,489	447		6,814,489	447	6,814,489	447

〈자료 : 片野一郎, 前揭書, pp. 170~171 : 横浜正金銀行의 上半期 株主考課狀에서 轉載한 것임〉

그리고 1880년에 이르러 日本大藏省은 종래의 국립은행보고서 제출규칙과 그 부록을 통합하여 새로운 규칙으로 수정하였다. 이 규칙은 1899년 국립은행의 존립이 終了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였다[21].

이 규칙에 따라 국립은행이 大藏省銀行局에 제출한 보고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半期實際報告書」와 「半期利益金報告書」이다. 1881년 상반기 결산에 따라 작성된 橫浜(요꼬하마) 正金銀行의 半期實際報告書(대차대조표)와 半期利益金報告書(손익계산서)를 인용·소개하면 〈표 4〉 및 〈표 5〉와 같다.

이 재무제표에 있어서 과목의 분류 및 배열은 1877년 大藏省의 樣式과 똑같다. 다만 형식상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 다를 뿐이다. 첫째, 계정과목란과 금액란이 大藏省의 樣式에서는 借邊側과 貸邊側에 각각 설정되어 있는데 대하여, 正金銀行의 경우는 紙面의 중앙에 계정과목란을 세우고 左右兩側에 차변금액란과 대변금액란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借邊側과 貸邊側의 계정과목 배치에 있어서 大藏省의 樣式에서는 차변은 負債와 收益이, 대변은 資産과 費用이 기재되어 있음에 비하여 正金銀行의 경우에는 이것과는 정반대로 차변에 資産과 費用이, 대변에 負債와 收益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1881년 상반기 요꼬하마正金銀行의 재무제표는 1877년의 국립은행 법정재무제표의 양식과 1890년의 보통은행 법정재무제표의 양식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일본 재무제표의 근대화 과정에서 징검다리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日本의 근대화 초기에 은행업을 창설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財務諸表의 차변과 대변에 항목배열이 변천된 것을 살펴보면 〈表 6〉과 같다.

〈표 6〉 日本의 銀行業草創期에 있어서 貸借項目配列의 變遷

보고서 구분 / 발전단계	貸借勘定表 또는 半期實際報告 (貸借對照表)		損益勘定表 또는 半期利益金割合報告 (損益 및 利益處分計算書)	
	借 邊	貸 邊	借 邊	貸 邊
1873年 (銀行簿記精法)	資 産	負債·資本	費 用	收 益
1877年 (大藏省樣式)	負債·資本	資 産	收 益	費 用
1881年 (橫浜正金考課狀)	資 産	負債·資本	費 用	收 益

3. 國立銀行 財務諸表制度가 一般企業에 미친 影響

21) 上揭書, p. 99. (『明治財政史』 第13卷, 1905, pp. 666~670)

日本의 근대화 초기에 있어서 財務諸表制度를 밝히기 위해서는 國立銀行 이외에 一般企業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時代에 설립·운영되었던 대표적인 一般企業으로서는「內國通運會社」,「시멘트製造會社」및「日本郵船會社」가 있었다. 이 중에서 內國通運會社의 財務報告書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內國通運會社는 1972년 5월 전국적인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東京에서 창립된 회사로서 1973년 7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1874년부터 1888년까지 이 회사의 財務報告書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선 1874년도의 결산보고로서「實際年報表」를 보면 〈표 7〉과 같다.

〈표 7〉 內國通運會社의 實際年報表(1874)

摘要	借方		貸方	
資本	七九四〇〇	〇〇〇		
準備	九四〇	〇〇〇		
貸附			一二三八三	六九一
懸向拂			一七〇〇	〇〇〇
出店元金			九五七八	三六四
創業費			一〇一〇一	二〇一
家屋			二八四五一	四五五
什器			七二六〇	九〇三
荷作品			三一五〇	〇〇〇
益金	一二八一六	九一五		
割賦金			一二八一六	九一五
金銀			七七一四	三八六
總計	九三一五六	九一五	九三一五六	九一五

〈자료 : 片野一郎,『日本財務諸表制度の 展開』(1968), p. 68〉.

이 보고서는 순전히 英國式으로 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 차변의「益金」이 당기순이익을 나타내고 대변의「割賦金」이 配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대차대조표와 이익금처분계산서의 합성표임을 의미한다. 이 회사의 결산보고는 1874년도의 제1회 결산부터 1877년도의 제5회에 이르기까지는 〈표 7〉과 같은 구조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혼성표와 기재된 항목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을 뿐으로 손익계산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1878년 이후의 결산보고서에는「實際年度表」이외에「損益 겸 割賦計定表」가 등장하였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을 소개하면 〈표 8〉 및 〈표 9〉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전자는 이익처분전 대차대조표이며, 후자는 손익 및 이익처분결합계산서를 의미한다. 1877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內國通運會社의 재무제표 체계상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日本의 근대화 초기에 企業經理上 독특한 意味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당시 企業의 會計組織은 그 때까지의 記帳法으로

서는 單式簿記가 일반적이었고 기간손익 방법으로서는 財産法이고 현금주의 방식이었던 것이이 時期에 複式簿記法으로 전환하여 손익법과 발생주의 방식으로 탈바꿈했음을 感知할 수 있다.

內國通運會社의 재무제표체계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변화는 1877년에 日本 大藏省이 제정한 「國立銀行報告書規則附錄」의 「半期實際報告樣式」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大藏省의 樣式과 內國通運會社의 그것의 경우는 대차대조표(實際報告 및 實際年報表)도 손익 및 이익처분결합계산서(利益金報告 및 損益 겸 割賦計定表)도 모두 차변·대변의 기재내용이 오늘날과는 정반대로 배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간에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즉, 損益計算의 區分에는 당기손익 외에 전기이월이익을 포함하여 순이익을 산출하게 되며, 순이익을 「配當計定區分」에서 처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손익계산구분은 기간손익계산상의 「當期

〈표 8〉 日本의 近代化 初期 企業의 貸借對照表

摘要	借方		貸方	
資本	二〇〇〇〇〇	〇〇〇		
手形	六〇〇	〇〇〇		
準備	四二六九	八〇七		
身元金	一一七五五	〇〇〇		
貸附			五九四九九	六三八
出店元金			二六五八三	六三七
創業費			一五九八四	四二二
家屋			四八八〇四	五三四
什器			一一七六五	五八七
荷造品			二一五二	八一四
補助	一七一三	一一四		
驛遞局	九〇〇〇	〇〇〇		
公債書			二六八二八	六六〇
割賦預	四〇五二	六二七		
馬車賃			四六	九〇〇
汽船			六五九九七	二一六
弁償	二五九九	三九〇		
割賦金	七九二	〇〇〇		
非常積立	二六四二	八六五		
補正			一一一七二	七六〇
客車			一〇〇〇	〇〇〇
益金	三三八五二	八三二		
金銀			一五二一	四六七
合計	二七一二七七	六三五	二七一二七七	六三五

〈자료 : 片野一郎, 「日本財務諸表制度の 展開」(1968), p. 70〉.

〈표 9〉 日本 近代化 初期의 企業損益計算書

借方		摘要	貸方	
		運賃	八三四三八	四二五
		危難諸負料	六九〇六	五四三
		利息	三五二四	〇九九
		株數手數料	三〇	〇〇〇
		汽船	一二三六七	一八七
		補助	三〇〇〇	〇〇〇
		前回ヨリ送翻	八三三	六〇四
一二八八七	九六八	旅費		
三二五八九	四八七	給料		
三八九七五	四六一	雜費		
一七九四	一一〇	損金		
三〇〇〇	〇〇〇	諸費消却		
三〇八五二	八三二	益金		
一一〇〇九九	八五八	合計	一一〇〇九九	八五八
		割賦勘定		
		益金	三〇八五二	八三二
六一七〇	五六六	弁償手當		
三〇八五	二八三	非常積立		
二〇〇〇〇	〇〇〇	割賦金		
一五四二	六四二	役員褒賞		
五四	三四一	次回ヘ送翻		
三〇八五二	八三二	合計	三〇八五二	八三二

〈자료 : 片野一郎, 『日本財務諸表制度の 展開』(1968), p. 71〉.

發生의 分配可能利益」에 전기이월이익을 가산한 「當期에 配分해야 할 利益」을 산출하고 있는 것이다. 1877년 大藏省의 樣式에 의한 利益金報告書와 內國通運會社의 「손익 및 配當計定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서 손익계산구분에 전기이월이익을 포함시키는 방법은 日本企業에 있어서 재무제표체계의 전개과정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日本商法의 制定과 財務諸表제도의 展開

1. 日本의 近代立法運動과 商法初案

日本의 近代化 初期에 있어서 企業會計의 특질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1877년(明治 10년)부터 시작되는 近代法律의 制定運動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日本政府는 경제적 근대화를 위한 法的인 기초작업을 서두르고 있었는 바, 그 중의 하나가 「뢰슬러」(Hermann Roesler」에게 위촉하여 商法草案을 起草하게 하였던 것이다.

日本政府는 德川幕府의 말기부터 1880年代까지의 商慣習 및 商業帳簿의 제도에 대한 실상을 취재한 商事關係의 조사자료를 「日本商事關係類集」이라는 제목으로 간행하였고, 이것을 「뢰슬러」 교수에게 제공하였다. 「뢰슬러」는 이러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1881년부터 시작하여 1883년에는 商法草案을 완성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뢰슬러起草의 商法草案」인 上下의 2권이다[22].

1884년(明治 17年)에 日本政府는 이것을 인쇄하여 非賣品으로 司法省에서 관계자에게 배포하였다. 이것은 1861년에 제정된 獨逸의 商法典을 모체로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日本商事類例集」이라는 日本 고유의 法規範에 대해서는 法律 속에 규정하는 대신에, 草案의 규칙 제1조에 「이 商法 중에 규정되지 않은 商事에 대해서는 商業의 관습 및 일반민법의 條例를 적용」하도록 하는 慣習法 優先의 원칙을 취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용인하는 여유를 보여주었다. 경제적 근대화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법적기초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帳合之法」의 번역자인 후꾸자와(福澤諭吉)가 강력히 강조하였던 바이지만, 그것이 성사된 것은 「帳合之法」이 출판된 1873년에서부터 「뢰슬러」의 商法草案이 성립되기까지의 10년의 세월이 흘러서였다. 그래서 1884년(明治 17年)에 이르러 「뢰슬러」의 상법초안을 기초로 하여 日本 司法성의 商法編纂委員會가 상법규정을 위한 法律案을 작성하고 이것을 1890년(明治 23年)에 개회된 日本帝國議會에 제출하기까지는 다시 6年의 세월이 필요했다. 이 기간에 「뢰슬러」의 商法草案에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고 議會는 그 法律案을 의결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때부터 그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어나 法律의 시행을 부득이 연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商法에 대한 찬반양론은 英美法學派와 大陸法學派와의 사이에 나타난 論爭이어서, 후세에 이르러 이것을 商法典論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23].

결국 상법전에 대한 논쟁은 시행을 연기하자는 쪽의 승리로 끝났고, 그래서 商法은 民法과

22) 日本會計硏究學會, 『近代會計百年』 (1978), pp. 20~21.
23) 上揭書, p. 23

더불어 1893년 1월 1일까지 그 실시가 연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에 대한 論爭은 치열하여 日本帝國議會에서도 다시 연기하자는 쪽이 승리하여 1896년까지 시행이 재연기되었다. 다만 「뢰슬러」의 商法草案에 의거한 법률안 중 會社法만이 1893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을 뿐이었다. 日本商法이 現行되는 商法과 동일한 관계를 갖추고 완전히 시행된 것은 1899년(明治 32年)의 일이다. 이렇게 難産을 거듭한 끝에 햇빛을 보게 된 日本商法에 있어서의 會計에 관한 규정은 상업장부로부터 시작하여 會社의 會計制度에 이르기까지 現行 日本商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갖추게 된 것이다.

2. 商法制定時의 財務諸表制度

(1) 商法規定과 銀行條例

日本에 있어서의 私立銀行은 1876년에 미쓰이(三井)銀行의 創設을 시발점으로 하여 상당한 수의 은행이 개설되었으며, 商法이 제정되기 1년 전인 1889년 12월 31일 現在로 그 수가 950개에 이르렀고 134개의 국립은행에 비하여 무려 7배 이상이었다. 이들 私立銀行이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그 업무를 감독할 法規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1890년 3월에 商法이 제정 공포되고 企業에 관한 일반제도가 정비되었으므로 同年 8月에 오랜 懸案이었던 私立銀行의 감독법규로서 銀行條例가 공표되었던 것이다[24].

大藏省에 의하여 마련된 「銀行條例」는 종래의 국립은행조례와는 달리 私立銀行의 經理制度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商法의 商業帳簿에 관한 規定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첫째는 제3조의 규정으로서 銀行은 半年營業報告書를 작성하고 地方長官을 거쳐 大藏省大臣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둘째는 제 4조의 규정으로서 銀行은 半年分의 재산목록·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新聞紙上에 公告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銀行條例에 규정된 것 중에서 제4조에 해당하는 銀行이 公告해야 할 재산목록·대차대조표에 관한 규정은 보통은행의 經理制度에 관하여 銀行條例와 商法이 接合한 것이었다. 日本 大藏省은 은행조례 第3條에 의하여 銀行이 제출해야 할 決算報告書의 樣式을 만들어 1890년 11월 4일자로 私立銀行에 令達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1893년 5월에 銀行條例施行細則과 附屬樣式이 제정되어 同年 7月 1日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자연 소멸되었던 것이다. 그래도 여기에 제시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樣式은 모두가 당초 은행조례의 것을 母體로 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2) 銀行條例施行細則에 의한 財務諸表

24) 片野一郎, 『日本·銀行會計制度史』 (1968), pp. 181~182.

上述한 銀行條例는 상법시행이 연기됨에 따라 그 실시를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1893년 7월 1일부터 商法의 일부인 會社法이 시행되면서 銀行條例의 실시도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893년 5월에는 「銀行條例施行細則」이 公表되었고, 銀行이 大藏省大臣에게 제출하는 營業報告書 및 貸借對照表·損益表·財産目錄의 양식이 마련되었다. 그후 1899년 6월 8일 大藏省令 제23호 및 1900년 3월 12일 大藏省令 제3호로 각각 「은행조례시행세칙」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나, 1915년에는 「은행조례」의 전면적인 改正으로 그 樣式에 있어서도 그 面目을 일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日本의 근대화 초기에 있어서 財務諸表의 발전을 검토할 경우에는 1915년(大正 5年)이전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銀行條例」 제3조에 따라 銀行이 大藏省에 제출하는 財務諸表는 1890년의 大藏省令達에서는 1873년(明治 6年) 이후의 英美系 財務諸表體系를 계승하여 「資産負債表」·「損益表」라는 체계를 취하고 있었으나, 1893年(明治 26年)에 제정된 「은행조례시행세칙」과 1899년의 樣式에서는 이것을 개정하여 資産負債表라는 명칭을 「貸借對照表」로 변경함과 동시에 새로이 資産目錄을 도입하였다[25]. 이리하여 대차대조표·손익표(손익계산서)·재산목록으로 이루어진 商法上의 企業財務諸表의 체계와 일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며 英美系統의 재무제표체계와 大陸系統의 재무제표체계가 조화를 이루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1893년의 附屬樣式과 1899년의 附屬樣式에서는 영업보고서의 내용이 약간 다를 뿐 재무제표의 양식은 동일한 것이다. 다만 1893년의 樣式에서 「損益表」라고 되어 있던 것이 1899년의 樣式에서는 「損益計算書」라고 명칭을 변경하였을 뿐이다[26].

1899년의 樣式에 따라 財務諸表를 소개하면 〈表 10, 11, 12〉와 같다.

3. 商法制定으로 인한 英國系 會計思想과 大陸系 會計思想의 調整

1873년에 국립은행제도의 창설과 더불어 발적한 기업회계제도의 구조적 특징은 英國系의 配當宣言會計였다. 그것은 1890년에 日本商法이 제정되기까지 日本의 경제사회 속에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되었고, 英國系統의 기업회계제도를 範例로 하여 성장한 것이었다. 그런데 商法이 제정됨으로써 大陸系統의 商業帳簿規定 및 會社計算規定이 도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알란·샨드」의 英國系 會計思想과 「뢰슬러」의 大陸系 會計思想과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1877년의 「國立銀行報告書規則」에 의하여 확립된 당시 은행의 會計實務로서는 결산에 즈음하여 「半期實際報告書」를 작성하고 있었는 바, 이것은 결산

25) 片野一郎, 前揭書, p. 194.
26) 上揭書, p. 195.

〈표 10〉 1899年의 樣式에 의한 貸借對照表의 實例

第何期貸借對照表(第四號)

明治何年 六 十二 月 三十 三十 日

	借方		摘要	貸方	
			定期預金	21,500	000
			當座預金	62,165	500
			支拂送金爲替手形	4,400	000
			他店ヨリ借(幾箇所)	14,708	500
			……		
			……		
			……		
何	29,900	000	貸付金		
縣府	1,300	000	當座預金貸越		
何	51,471	000	割引手形		
都市	4,300	000	荷爲替手形		
何	7,506	000	公債證書		
村町	29,524	000	他店へ貸(幾箇所)		
			……		
			……		
			……		
			資本金	100,000	000
	50,000	000	拂込未濟資本金		
			積立金	7,000	000
何			當期純益金	2,464	000
			……		
			……		
銀	2,000	000	營業用地所建物		
	250	000	營業用什器		
行	35,987	000	金銀有高 { 正貨 9,866.660 / 紙幣並兌換券 23,624.000 / 切手手形 2,496.340 }		
㊞					
	212,238	000	合計	212,238	000

〈자료 : 片野一郎, 『日本・銀行會計制度史』(1977), p. 198〉

〈표 11〉 1899年의 樣式에 의한 損益計算書의 實例

損益計算書(第四號)

明治何年 六/十二 月 三十/三十 日

	借方		摘要	貸方	
			當期利益		
			利息	952	000
			手數料	854	000
			割引料	1,516	500
			公債利息	185	000
何			公債賣買益	595	000
縣府			前期繰越	65	000
何			……		
都市			……		
何			……		
村町			當期損失		
	565	000	給料		
	358	500	雜費		
	780	000	損失		
			……		
			……		
			……		
何			純益金		
	450	000	積立金		
	2,000	000	配當金(私翔資本高百円		
銀	14	000	二付四円ノ割)		
			後期繰越		
			……		
行			……		
㊞	4,167	500	合計	4,167	500

〈자료 : 片野一郎, 『日本・銀行會計制度史』(1977), p. 199〉

〈표 12〉 1899年의 樣式에 의한 財産目錄의 實例

財 産 目 錄 (第四號)

明治何年 六十二月 三十三十日

	種 類	摘 要	金 額	
何縣府	貸付金證書	三十通	29,900	000
何	當座預金貸越	三十口	1,300	000
都市	割引手形	三十枚	51,471	000
何	荷爲替手形	十五枚	4,300	000
村町	國債證券	券面七千圓	5,506	000
	地方債證券	券面貳千圓	2,000	000
	他店へ貸	何箇所	29,524	000
	營業用地所	三百坪	800	000
何	營業用家作土藏	三棟 建坪 七十坪	1,200	000
	營業用什器	金匣外何點	250	000
銀	拂翻未濟資本金	現株主二十名柱式二千株又ハ社員幾名	50,000	000
行	金銀有高		35,987	000
㊞	합계		212,238	000

〈자료 : 片野一郎, 『日本・銀行會計制度史』(1977), p. 199〉.

에 의하여 半期利益이 확정된 시점, 즉 이익처분 전의 각 계정잔액으로서의 대차대조표이다. 그런데 새로이 제정된 商法規定(제32조)에 의하여 銀行은 決算時 모든 財産을 그 때의 時價에 따라 財産目錄과 貸借對照表에 반영해야 하도록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당시의 은행회계관습상 「半期實際報告書」는 誘導法에 의하여 작성되는 貸借對照表였고 거기에 기재되는 금액은 결산시의 시장가격과는 관계가 없는 帳簿上의 原價였다. 따라서 商法規定의 등장으로 인하여 나타난 時價에 의한 貸借對照表의 작성이라고 하는 문제와 당시까지 銀行의 회계관습이었던 原價에 의한 貸借對照表의 作成이라고 하는 問題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과제가 회계실무상에 새로이 등장한 것이다[27].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식회사로서의 國立銀行의 會計上 발생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國立銀行報告書規則」에 따라 작성되어 오던 「利益金報告書」에 기재된 사항 中, 「이익처분계산에 관한 부분」과 당시의 商法規定에 의하여 작성되는 「利子 또는 配當金의 分配案」과의 競合關係이다[28]. 다시 말하면 日本 大藏省의 「국립은행보고서규칙」에 의한 「利益金報告書」는

27) 片野一郎, 『日本財務諸表制度の 展開』(東京, 同文-v, 1968), p. 98.
28) 上揭書, p. 99.

손익 및 이익처분결합계산서로서 표시되는 것임에 비하여, 商法規定에 의한 株主總會 提出報告書에는 손익계산이 損益計算書에 속하는 書類에서 이루어지고, 利益處分案은 「이자 또는 배당금의 처분안」에서 각각 분리기재하도록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商法의 제정으로 인하여 상술한 두 가지 문제점은 비단 은행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식회사 기업에 대해서도 발생한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고 한다.

상술한 첫째 課題에 대하여 당시의 日本 大藏省이 英國系 會計思想과 大陸系의 會計思想을 조정하려고 했던 努力의 一面을 다음에 살펴보기로 한다. 1890년의 商法規定을 계기로 하여 日本 大藏省이 마련한 「銀行條例」가 공포되었다. 이 「銀行條例」는 私設銀行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商法의 計算規定을 전제로 하여 會計에 관한 規定을 해놓은 것이다. 그 중에서 은행이 공시해야 할 財産目錄과 貸借對照表의 규정이야말로 私設銀行의 會計制度에 관하여 商法과 銀行條例가 接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890년 11월에는 日本 大藏省이 「資産負債表」와 「損益表」의 樣式을 마련하였는 바, 「자산부채표」는 이익처분전 대차대조표이고, 「손익표」는 손익 및 이익처분결합계산서이다[29]. 이것은 日本의 會計制度史上 획기적인 意義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日本銀行業의 회계제도가 1872년의 「國立銀行條例」를 통하여 도입한 美國의 국립은행조례에 의한 銀行會計의 통제방식과 1873년의 「銀行簿記精法」을 통하여 도입한 英國型 銀行會計方式이 조화를 이루어 制度的인 成長을 하였지만, 새롭게 제정된 商法을 통하여 大陸系統의 商業帳簿規定을 흡수하게 함으로써 銀行財務諸表의 형식과 내용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기 때문이다.

1893년 7월에 商法 중 會社法이 시행됨에 따라 日本 大藏省은 「會計條例施行規則」을 공포하여 은행이 大藏省大臣에게 제출하는 「損益表」, 「貸借對照表」 및 「財産目錄」의 각 양식을 마련하였다[30]. 이렇게 하여 私設銀行의 재무제표체계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으로 이루어지는 商法上 株式會社의 재무제표체계와 일치하게 되었다. 환언하면 英國型 財務諸表와 大陸型 財務諸表의 체계적 조정이 사실상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Ⅵ. 맺는 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近代的 會計制度가 日本에 최초로 도입된 것은 明治時代의 초기, 즉 1873년(明治 6年)의 일이다. 그래서 1873년은 日本 企業會計制度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意義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日本의 선각자 「후꾸자와」(福澤諭吉)에

29) 片野一郎, 『日本·銀行會計制度史』(東京, 同文-v, 1977), pp. 181~184.
30) 片野一郎, 『日本財務諸表制度の 展開』(東京, 同文-v, 1968), pp. 102~104.

의하여 1873년 6월에 「帳合之法」이라는 日本 최초의 西洋式 簿記에 관한 서적이 출판된 것을 비롯하여 同年 12월에는 英國人 「알란 · 샨드」(Allan, Shand)에 의한 「銀行簿記精法」이 刊行되어 日本의 銀行會計制度를 수립하는데 크게 공헌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1873년부터 비롯되어진 日本의 近代會計制度는 국립은행이 창설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1890년의 商法制定을 거쳐 완전시행이 이루어진 1899년에는 제도적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샨드시스템이 확립되어 은행재무제표의 보급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일반기업의 회계제도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1877년에는 大藏省에 의한 財務諸表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의 작성에 아라비아數字를 정식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日本의 근대화 초기에 기업회계제도를 발전시키는데 촉진제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무렵의 財務諸表는 결산보고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었으며 半年을 회계기간으로 하는 「半期實際報告書」·「半期利益金報告書」·「貯蓄金」의 三本化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日本政府는 「뢰슬러」(Roesler)의 商法草案을 기초로 하여 1890년에 商法을 제정 · 공포함으로써 財務諸表制度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따라서 「銀行條例」가 大藏省에 의하여 공표되었고 재무제표의 작성 · 보고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商法의 제정으로 인하여 大陸系統의 會計思想을 도입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종래의 英美系統의 會計思想과 交錯되어 결국 商法施行이 연기되었다. 1893년에 비로소 會社法의 부분적인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은행조례시행세칙」과 그 附屬樣式이 제정되었고 財務諸表制度를 정비하게 되었다. 「은행조례」에서 「資產負債表」로 되어 있던 것을 「貸借對照表」로 명칭변경을 하였던 것이다. 1899년의 附屬樣式을 통하여 1893년까지 「損益表」로 되어 있던 것을 「損益計算書」로 명칭변경하였다. 그리하여 1899년부터는 大陸系와 英美系의 會計思想이 調整되어 재무제표의 체계적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貸借對照表 · 損益計算書 · 財產目錄으로 구성된 재무제표의 체계화는 日本 商法의 제정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日本의 企業會計制度史上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1. 李鍾燻, 『日本經濟論』, 法文社, 1993.
2. 日本會計硏究學會, 『近代會計百年』, 1978.
3. 高橋辛八郎 外, 『日本近代史論』, 1994.
4. 西川孝治郎, 『日本簿記史談』, 同文-v, 1974.

5. 青木茂男, 『日本會計發達史』, 同文-v, 1977.
6. 濱田弘作, 『會計史研究學說』, 多賀出版, 1986.
7. 片野一郎, 『日本・銀行會計制度史』, 同文-v, 1977.
8. ———, 『日本財務諸表の 展開』, 同文-v, 1968.
9. 黑澤淸, 『體系 近代會計學』, 中央經濟社, 1979.
10. ———, 『近代會計學』, 春秋社, 1966.
11. ———, 『日本會計學發達史 序說』, 雄松堂書店, 1982.
12. 日本會計研究學會, 『日本會計學會 50年史』, 1987.
13. 中川敬一郎 外, 『近代日本經營史の 基礎知識』, 1994.
14. 中野常男, 『會計理論生成史』, 中央經濟史, 1992.
15. 稻垣富士男, 『損益計算書論』, 同文-v, 1977.
16. 染谷恭次郎, 『我國會計學の 潮流』, 第一卷, 第二卷, 第三卷, 雄松堂出版, 1984.
17. 山下勝治, 『貸借對照表論』.
18. Y. Fujita, An Analysis of The Development and Nature of Accounting Principles in Japan, 1968.
19. A. C. Littleton, Accounting Evolution to 1900, Russell & Russell, 1966.
20. Richard Brown, A History of Accounting and Accountants, Frank Cass & Co. LTD, 1968.

An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Statement System in Early Years of Japanese Modernization

Koh, Seung-Hee*

Abstract

This Study is an exploration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financial statement in early years(1873~1899) of Japanese Modernization. In relation to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financial statements system from 1873 to 1899, two different types of financial statement may be distinguished : (1) Anglo-American type, and (2) Franco-German type.

National Bank Act in 1872 and its related regulation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reporting system in Japan. The national banks of Japan were established in 1873 and were developed by using the national banking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s model. However, the accounting system in the national banks was designed by Alexander Allan Shand from England and was based on his book, Method of Bank Bookkeeping, which was published in 1873.

Until the partial enforcement of the Commercial law in 1893, the financial reporting system of the national bank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financial reporting practices of commercial and industrial corporation in Japan. That is, most corporations usually prepared two financial statement, (1) a combined statement of income and profit appropriation and (2) a balance sheet before profit appropriation.

After enforcement of the commercial law in 1893 and 1899 was the change in the financial statement. First, the balance sheet had long been based upon the systematically recorded data, but the inclusion by the commercial law of the inventory in financial documents made the balance sheet independent of the systematically

* Professor of Dankook University, Ph.D.

recorded data. Second, another change was the separation of a combined statement of income and profit appropriation into an income statement and a statement of proposals pertaining to the disposal of profits.

Key-Words : financial statement, balance sheet, commercial law.

日本의 近代化 初期에 있어서 財務諸表制度의 展開*

An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Statement System in Early Years of Japanese Modernization

高 承 禧**

目 次

Ⅰ. 序 說
Ⅱ. 日本 近代會計의 嚆矢
1. 福澤諭吉의 「帳合之法」
2. 알란 · 샨드의 「銀行簿記精法」
Ⅲ. 揺籃期에 있어서 國立銀行財務諸表의 行態
1. 日本國立銀行의 設立과 財務諸表의 創製
2. 財務諸表의 先驅行態
3. 「銀行簿記精法」이 財務諸表形成에 끼친 影響
Ⅳ. 日本最初의 銀行財務諸表 制度
1. 日本國立銀行의 財務諸表 形態
2. 日本最初의 法定 銀行財務諸表 形態
3. 國立銀行 財務諸表制度가 一般企業에 미친 영향
Ⅴ. 日本商法의 制定과 財務諸表制度의 展開
1. 日本의 近代立法運動과 商法初案
2. 商法制定時의 財務諸表制度
3. 商法制定으로 인한 英美系 會計思想과 大陸系 會計思想의 調整
Ⅵ. 맺는 말

Ⅰ. 序 說

日本의 經濟近代化는 1868年 明治時代가 개막되면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의 日本은 改革을 통하여 과거의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중앙집권적인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형의 富國強兵政策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日本은 明治維新이라는 정치혁명을 수행함으로써 近代的 資本主義 國家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日本의 經濟近代化를 구축하는 礎石이 된 것 중의 하나는 당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 아래 강력히 추진된 近代的 銀行의 創設이었다. 1873年에 設立된 第一國立銀行이 그 始發点이다. 第一國立銀行이 日本最初의 株式會社企業으로서 설립되어 운영되어짐에 따라 西歐의 여러 가지 經濟制度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운영을 위한 簿記制度도 西歐의 銀行會計시스템을 範例로 하여 도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1873年 第一國立銀行의 설립과 더불어 도입된 簿記會計制度는 당시의 美國의 國立銀行條例와 英國의 銀行會計實務가 기초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그

* 이 논문은 1998년도 단국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檀國大學校 經營會計學部 敎授.

래서 日本近代會計의 黎明은 明治維新時代의 經濟近代化를 위한 추진기의 역할을 담당했던 銀行會計制度의 創設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本 硏究는 이상과 같은 日本의 近代化 初期에 있어서 西歐式 會計制度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도입되고, 日本近代會計制度의 기초를 형성하였는가에 대하여 時代史的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려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특히, 1973年부터 도입된 英美式 會計技法과 1890年의 日本商法이 創製됨으로써 도입된 大陸式 會計方式을 통하여 형성된 草創期의 日本財務諸表制度에 대한 檢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日本 近代化 初期에 있어서 財務諸表制度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의 침체된 會計史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깊은 意義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Ⅱ. 日本 近代會計의 嚆矢

日本에 西洋式 簿記書를 전한 것은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美·英·獨·佛 등 西歐諸國이었고, 簿記敎育을 담당했던 敎師도 이들 나라의 簿記專門家들이었다고 한다[1]. 특히 그 중에는 영국인 알란·샨드(Alan Shand)와 같이 日本에서 簿記書를 저술한 사람도 있고, 美國人 윌리암·휘트니(William Whitney)와 같이 일본에서 저서를 번역한 사람도 있어서 日本의 洋式簿記 導入初期에 활약한 西洋人은 다채롭다고 할 수 있다[2].

이렇게 하여 日本에서 近代會計의 新紀元을 이루었던 것은 1873(明治 6년)이었다. 어쩌면 1873年은 日本의 기업회계제도에 대하여 근대화를 가져오게 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1873년 6월에 일본 최초의 서양식 簿記書로 대표되는 후꾸사와(福澤諭吉)의 「帳合之法」이 출판되었고, 둘째로 同年 12월에 英國人 알란·샨드(Allan Shand)의 「銀行簿記精法」이 大藏省(우리나라의 財政經濟部)에 의하여 출판되었기 때문이다[3]. 그 이전시대에 있어서는 德川幕府 이래의 전통적인 日本固有의 記帳法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그것은 西洋簿記에서 볼 수 있는 복식부기의 원리가 缺如된 것이었고 체계적인 장부조직을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西洋簿記가 전해져서 전연 異質的인 토양에 뿌리를 내리기에는 상당한 기간과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日本에는 고유의 記帳法이 있어서 독특한 文字나 數字가 西洋과는 계통이 다르고 帳簿나 筆墨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달랐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록·계산이 체계화되어 있는 서양

1) 西川孝治郎, 『日本簿記史談』(東京, 同文一v, 1974), p. 72.
2) 黑澤淸 總編集, 『體系 近代會計學Ⅵ－會計史 および會計學史』(東京, 中央經濟社, 1979), pp. 284~309.
3) 日本·神戶大學 會計學硏究室 編, 『會計學辭典』(東京, 同文一v, 1976), p. 932.

식 부기제도가 도입되는 단계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밖에 없었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893년에 上記의 洋式簿記書가 日本語版으로 일반에게 보급되면서부터 서양식 簿記法은 日本人 특유의 풍토 속에 침투하여 독특한 日本式 會計制度로서 정착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日本의 複式簿記 發達史는 日本 經濟의 近代化를 다지는 정책적 지도 아래 착실히 형성되어 갔으며, 드디어 은행회계제도의 정착과 株式會社會計의 發展에까지 확대되었던 것이다. 결국 1873年은 日本에 있어서 企業會計制度 近代化의 시발점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다.

1. 福澤諭吉의 「帳合之法」

日本의 경제적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明治文化의 위대한 선구자였던 福澤諭吉(후꾸자와·유기치)는 「學問의 권장」, 「西洋事情」, 「文明論의 概要」 등의 저서를 내어 국민의식을 계몽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帳合之法」이라는 洋式簿記書를 번역·출판하여 日本의 근대화 초기에 있어서 複式簿記制度의 도입에 새로운 里程標를 마련해 준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의 「帳合之法」은 원래 Brayant and Stratton 共著의 Common School Bookeeping (1871)을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갖는 실질적인 意義는 번역서의 형태를 빌려서 그의 實學思想을 나타내려고 한 作品이라는 점이다[4].

「후꾸자와·유기치」가 「帳合之法」의 序文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랜 옛날부터 사회의 下層에서 억압받고 있던 農工商의 三界에 속하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곧 學問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敎示하려고 했음을 찾아볼 수 있다. 中國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漢字를 추종하던 공리공론가들에게 農工商의 생활 속에 學問이 존재한다는 神秘를 깨우쳐 주려는 의도에서 「帳合之法」이 번역된 것이라 하겠다. 이 책의 내용은 현재의 위치에서 보면, 평범한 簿記的 技法을 해설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당시 미국의 상업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던 簿記方法을 누구라도 알기 쉽게 소개한 최초의 日本語版 西洋式 簿記書라는 데서 그 意義를 제시하고 있다. 「구로시와」(黑澤淸) 교수는 이 번역서를 평하여 『마치 이태리의 「르네상스」時代에 「루카·파치오리」에 의한 세계 최초의 簿記書가 세상에 나타난 것과 거의 비슷한 意義를, 明治時代의 초기에 후꾸가와(福澤諭吉)의 帳合之法이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5]라고 극찬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책이 日本의 近代會計制度史에서 갖는 의미가 얼

4) 上揭書, p. 932.
5) 西川孝治郎, 前揭書, p. 214.

마나 큰 것인가를 인식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2. 알란·샨드의 「銀行簿記精法」

상술한 후꾸사와(福澤諭吉)의 「帳合之法」이 출판된 1873년에 역시 日本 大藏省에 의하여 「알란·샨드」(Allan Shand)의 「銀行簿記精法」이 刊行되었는 바, 이것은 日本 最初의 日本語版으로 출판된 銀行簿記書이다.

이 책에서 해설된 會計方法은 1872년에 공표된 국립은행조례에 의하여 1873년에 創設된 第一國立銀行(현재의 第一勤業銀行) 등의 회계실무에 채용되었고, 샨드시스템(Shand System)[6]이라 하여 그후 銀行 뿐만 아니라, 보험업·신탁업 그리고 일반 상공업 분야에도 보급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日本의 會計制度史上 후꾸자와의 張合之法과는 다른 차원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日本에서 최초의 株式會社形態로서 설립된 銀行은 第一國立銀行인 바, Shand 시스템은 여기서 비로소 실제에 적용되었다. 따라서 第一國立銀行의 창립과정과 「샨드」의 「銀行簿記精法」은 역시 처음부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國立銀行條例에 의하여 제시된 日本의 國立銀行 會計制度에 관한 기본규정은, ① 주식회사에 의한 은행업무의 합리적 운영, ② 株主 및 예금자의 이익보호, ③ 그에 대한 大藏省의 적극적인 보호 및 감독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되는 수단으로서 첫째 簿記, 둘째에 財務諸表, 셋째로 監査를 제도적으로 설정하여 이것을 有機的으로 활용하려고 하였던 데서 비롯된다[7]. 그 구체적인 시책으로서 당시의 日本政府는 「알란·샨드」를 초빙하여 국립은행의 경영에 필요한 業務講習을 행함과 동시에 銀行簿記의 技法을 저술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와 때를 같이 하여 大藏省은 국립은행이 정기적으로 紙幣頭(後의 銀行局長을 일컬음)에게 제출해야 할 보고서의 제출규칙을 정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4년이 경과한 1877년에 이르러 大藏省은 「銀行簿記精法」의 보완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國立銀行 事務取扱法」을 발표하고 또한 「國立銀行報告書規則」을 개선함과 동시에 「考課狀 樣式」(財務諸表樣式)을 마련하였던 것이다[8].

6) 「銀行簿記精法」은 日本의 大藏省에 의하여 刊行된 것이지만, 原著者는 Alexander Allan Shand(1844~1930)이다. 그는 1864년에 日本 橫濱에 진출한 Charterd Mercantile Bank of India and China의 行員으로 1866년에 日本 橫濱에 왔고, 1869년에는 acting manager가 되었다. 1872년에 日本政府는 銀行制度의 창건을 위하여 그를 초빙하였다. 그는 紙幣寮에 근무하면서 은행부기제도의 은행부기제도의 立案에 착수하였고, 1873년에 드디어 원고가 완성되어 同年 12월에 刊行된 것이 上記의 册이다. 이것에 의하여 大藏省에 官史와 第一國立銀行의 行員에게 西洋式 銀行簿記의 技法을 講習하였다. 따라서 그의 著書에 의하여 日本에 보급된 銀行簿記制度를 일컬어 Shand System이라고 하는 것이다.

7) 片野一郎, 『日本財務諸表制度의 展開』(東京, 同文－v, 1968), p. 7.

8) 上揭書, p. 8.

日本에서 國立銀行의 會計制度는 창설당시부터 이러한 施策下에 운영되었기 때문에 서서히 그 기반을 굳혔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日本 國立銀行의 會計制度가 확립됨으로써, 오늘날 日本의 株式會社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회계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알란·샨드」의 「銀行簿記精法」이 최초로 第一國立銀行에서 실시·적용되었다. 그것은 銀行의 업무와 그 적용을 위하여 會計方法 및 傳票와 帳簿組織을 상세하게 해설한 것이다. 그리고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해야 할 決算書의 樣式을 다음과 같이 例示하고 있다[9].

第一類 理事 및 株主處分 書類의 帳簿.

第二類 株式規則 決定에 이용하는 帳簿.

第三類 銀行의 업무활동을 게제하는 諸帳簿.

위의 第一類의 帳簿는 會議要件錄, 定期總會議事錄 및 當業報告書이다. 第二類의 帳簿는 미국의 국립은행조례를 참조하여 설정한 것으로서 株主名簿, 주식재고장, 주식계정원장,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第三類의 帳簿는 은행의 업무활동에서 비롯되는 諸帳簿이므로, 본래 銀行簿記에 있어서의 帳簿를 일컫는다. 「銀行簿記精法」의 대부분이 이 第三類의 帳簿에 대한 記帳法을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에 英美式 簿記會計의 기술적인 수준을 충실히 日本人에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明治時代에 있어서 日本의 理想實現에 기여한 하나의 원동력으로서 銘記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銀行會計制度에 컴퓨터 시스템이 도입되어 舊來의 샨드시스템은 그 모습을 감추게 되어 버렸지만, 二十數年 前까지만 해도 日本의 거이 모든 銀行의 회계제도 속에는 샨드시스템의 原型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그것이 日本 會計制度의 近代化에 기여한 공헌은 매우 큰 것이었다고 한다[10].

Ⅲ. 搖籃期에 있어서 國立銀行 財務諸表의 行態

1. 日本國立銀行의 設立과 財務諸表의 創制

日本에서 최초의 株式會社形態로 설립된 銀行은 第一國立銀行이었다. 銀行制度의 창설을 위한 법적근거로 제시된 것이 國立銀行條例인 바, 이것은 大藏大臣던 井上薰, 紙幣寮員였던 芳川顯正, 그리고 大藏權大丞이었던 시부자와(澁澤榮一) 등의 협력으로 1872년(明治 5년)에 公布된 法令을 의미한다. 이 國立銀行條例가 공포된 직후 銀行設立을 위한 절차가 개시되었고, 1872년 11월 22일자로 東京日日新聞에 株式公募를 게제하였다. 그 결과 資本金 244만

9) 日本會計硏究學會, 「近代會計百年」 (1978), p. 15.

10) 日本會計硏究學會, 前揭書, p. 17.

800원으로 第一國立銀行이 創設되었던 것이다[11].

이와 같이 日本의 國立銀行은 1872년 11월에 公布된 國立銀行條例에 근거를 두고 第一國立銀行(지금의 第一勤業銀行의 前身)이 設立되었으며, 이윽고 全國各地에 支店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國立銀行條例」 및 그 조례의 부속인 「國立銀行成規」를 통하여 주식회사인 第一國立銀行의 會計制度에 관한 規定이 설정되었다. 그것에 의하면 결산결과를 보고함에 있어서 銀行은 첫째로 株主에게 통지하고, 둘째로 新聞에 공고하며, 셋째로는 公告後 10일 이내에 決算書類를 大藏省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다[12].

이 규정에 따라 第一國立銀行이 大藏省에 제출하는 財務諸表는 1873년 6월에 편제된 「국립은행보고서제출규칙」에 따라 計定形式의 「半期利益報告書」(손익 및 이익처분 혼합계산서)와 「半期實際報告書」(이익처분대차대조표)가 작성되었다. 이것은 당시 영국의 회계관행이었던 「배당선언회계보고서」의 체계 그대로의 樣式이었다고 한다[13].

따라서 第一國立銀行이 大藏省 紙幣寮(財務部 銀行局)에 每半期마다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양식은 1877년 12월에 大藏省이 제정한 「국립은행보고서제출규칙부록」인 「考課狀書式」에서 비로소 法制化되기에 이르렀다. 이 書式에서 제시된 이익금보고서는 손익계산과 이익처분계산과의 불완전한 결합계산서였지만, 實際報告書는 이익처분 후의 대차대조표의 樣式을 취하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1877年의 決算報告書의 樣式이 「아라비아」 數字를 사용하여 금액표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日本에서 1870年代에 「아라비아」 數字에 의한 記帳處理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日本의 經濟近代化를 향한 의지가 얼마나 강했던가를 찾아볼 수 있게 하며, 이것은 日本의 近代會計制度를 확립하는데 한층 박차를 가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에 벌써 減價償却 槪念이 日本의 회계실무에 制度로서 도입되었고, 第一國立銀行의 「利益金報告書」에도 具現되어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14].

2. 財務諸表의 先驅形態

1870年代에 있어서 日本의 회계제도는 그 도입기에 속하는 때였으므로, 극히 원시형태의 구조를 면치 못하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전된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초기의 第一國立銀行이 공표하는 財務諸表 중에는 오늘날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선구적인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

11) 青木茂男, 『日本會計發達史』(東京, 同文-v, 1977), pp. 12~13.
12) 日本 「國立銀行條例」 第13條 第2節 및 第3節(1972年 11月 附 公布).
13) 青木茂男, 前揭書, p. 31.
14) 上揭書, p. 46.

문이다. 당시의 第一國立銀行의 공표재무제표에서는 「半期實際報告書」와 「半期利益金報告書」라고 하는 用語가 오늘날의 재무제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用語는 同銀行이 1874년 상반기의 공표재무제표에서 이용된 이래, 당시의 여러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5].

第一國立銀行의 제1기 결산은 1873년 12월 31일부로 이루어졌다. 「샨드시스템」에 따라 기록된 회계장부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貸借對照表(半期實際報告)는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銀行簿記精法」의 全五卷 中 제1권 및 제5권에 제시되어 있는 帳簿類에는 第一國立銀行의 이름으로 書式이 例示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銀行簿記精法」에서의 「資産 및 負債抄錄」이 공표재무제표상의 「利益金報告書」가 「利益計定表」(손익계산서)이었음은 물론, 「貯蓄金」[16] (이익잉여금계산서)을 합하여 三本化된 재무제표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중에서 「利益計定表」는 오늘날의 손익계산서와 이익처분계산서가 아직 분리되어 있지 않은 混性形態의 성격을 가진 계산서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國立銀行의 공표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것은 「處分前 貸借對照表」(半期實際報告書), 손익 및 이익처분계산서(半期損益金報告書) 및 「잉여금계산서」(貯蓄金)이라고 하는 체계에 의하여 정밀성있는 통일재무제표가 수립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재무제표 구조의 三本化는 1873년의 「銀行簿記精法」에 소개된 「資産 및 負債抄錄」, 「利益計定書」, 및 「貯蓄金」과 그 내용이 같은 것이다. 이 三本化된 것 중에서 「貯蓄金」의 구분이야말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증권거래위원회 규칙의 재무제표 체계에 나타난 「잉여금계산서」의 先驅形態라 할 수 있다.

당시 大藏省의 銀行經理指導의 최고방책이었던 利益蓄積에 의한 자기자본충실의 원칙은 이 공표재무제표의 표시양식 속에 유감없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잉여금계산서로서의 「貯蓄金」의 구분은 사실상 사회의 현실적인 요청에 따라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이에 대하여 「가다노」(片野一郎) 교수는 『簿記에 관하여 전혀 東과 西를 몰랐던 1873年 12月에 「銀行簿記精法」을 통하여 「資産 및 負債抄錄」, 「損益計定表」, 「貯蓄金」이라고 하는 三部構造의 재무제표체계가 도입되어서 불과 2年半이 경과했을 뿐이다. 질서가 서 있지 않았던 당시에 한

15) 片野一郎, 『日本銀行會計制度史』 (東京, 同文－v, 1877), pp. 151～152.

16) 「貯蓄金」이라고 하는 用語가 日本의 회계제도상 재무제표로서 이용된 것은 第一國立銀行이 第1期 決算에서 1873年 12月 31日字로 작성한 紙幣寮(銀行局) 제출용의 半期實際報告書에서 순이익의 처분항목으로 처리하여 「別段積立金」이라고 표시된 것이 최초의 일이다. 1870年代의 日本에서는 「積立金」과 「貯蓄金」이 併用되어 재무제표상에서 이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第一國立銀行의 공표재무제표상에서 積立金이 貯蓄金 대신에 사용하게 된 것은 1881년 上半期부터이고, 그 후에는 「貯蓄金」이라고 하는 用語가 公表財務諸表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片野一郎, 『日本銀行會計制度史』 (1977), pp. 146～150).

〈표 1〉 「산드시스템」에 의한 日本最初의 貸借對照表

第一國立銀行 半季實際報告

第二書式

明治六年十二月三十一日

借方

摘要	金額 千	百	十	万	千	百	十	円		總計 千	百	十	万	千	百	十	円	
諸抵當公債證書																		
紙幣抵當公債證書 預金抵當公債證書 別段積立金抵當公債證書		一	一 一	八 〇	二 〇	二 〇	〇 〇	〇 〇			一	二	八	二	二	〇	〇	
創業入費																		
金額有高																		
紙幣準備本位貨幣 雜貨幣 他店切手 他店紙幣		六	五 五	一 五	〇 九	〇 五	〇 〇	〇 一	二七									
商業元			五	五	七	〇	五	〇			七	六	二	六	五	五	一	二七
貸付金																		
並貸 爲換貸 割引貸 當座預ケ先貸越											三	二	五	〇	〇	六	八	三二
公債證書																		
新公債證書百円ニ付五拾六円六拾錢ノ割合ニテ				四	五	一	一	〇	九七									
舊公債證書百円ニ付拾九円三拾錢ノ割合ニテ				七	三	〇	〇	九	八一			一	一	八	一	二	〇	七八
地金銀														二	一	二	六	九五
置物流込																		
家作 地所																		
營業用																		
家作 地所												一	四	一	五	〇	〇	
總計										一	二	四	二	〇	五	六	七	三二

貸方

摘要	金額 千	百	十	万	千	百	十	円		總計 千	百	十	万	千	百	十	円	
株金											二	四	四	〇	八	〇	〇	
本社紙幣流通高												七	五	三	一	九	五	
預金																		
定期預金 當座預金 手形預金 御用準備預金 御用手形預金 別段預金		五 一 二	三 二 一 〇 一	八 六 三 七 九 七	〇 二 六 二 三 〇	六 一 〇 二 二 五	三 七 四 二 六 〇	七 七 九 七 七 〇	五〇 七六 八六 三三 四九		九	一	一	三	八	五	九	九四
借金																		
爲換借 並借 仕拂手形																		
抵當金																		
滞貸抵當 利戾抵當 仕拂未濟割賦金抵當 仕拂未濟貸金													一	九	一	六	一	一〇
積金																		
別段積立金 割賦金 後半季繰込				一 五 一	一 四 七	二 九 三	七 一 六	一 八 二	二四 〇四				九	三	五	五	一	二八
總計										一	二	四	二	〇	五	六	七	三二

第一國立銀行 同

頭取 小野善助 ㊞

取締 齊藤純造 ㊞

(第一勸業銀行 所藏原本에 의한 자료임)

<자료 : 靑木茂男 編, 「日本會計發達史」(1977), p. 14>.

권의 簿記書를 여기까지 活用한 無名의 先輩에 의한 불굴의 노력과 知能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하고 싶다』[17]고 재무제표의 三本化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다.

3. 「銀行簿記精法」이 財務諸表의 形成에 미친 影響

(1) 아라비아數字의 導入

日本의 은행회계실무에서 記帳할 때 日本數字 대신에 아라비아數字를 사용하게 된 것은 日本의 기업회계제도에 대한 발전사적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제이다. 1873년 12월의 「銀行簿記精法」은 全 5册을 통하여 記帳하는 경우에 數字가 모두 日本數字를 사용하고 있다. 당시는 아직 아라비아數字가 실용화되지 못했던 때문이다. 「銀行簿記精法」보다 半年이나 빠른 1873年 6月에 출판된 후꾸자와의 「帳合之法」에서는 第1册 表紙 뒤쪽에 출판년호를 日本歷으로 2533年과 西洋歷으로 1873年이라고 記하고 있는 것 外에는 全 4册을 통하여 모두 日本數字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同年 8月에 간행된 同書下卷의 최후 부분에서 이익계산의 방법을 아라비아數字로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79年 4月에 출판된 야마다(山田十畝)의 「銀行簿記用法」 3册에서는 帳簿記入 및 財務報告書의 작성에 대하여 모두 아라비아數字를 이용하고 있다[18].

은행업의 회계실무에서 아라비아數字가 통일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은 1877年 12月 大藏省이 제정한 「國立銀行報告規則 附錄」 중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서 기재 숫자는 아라비아數字로서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데서 비롯되었다.

『報告書에 기재하는 數字는 모두 洋數字로 하고 천단위와 백단위의 사이에, 그리고 백만단위와 십만단위의 사이에 「콤마」(즉, 符號)를 찍어야 한다. 또한 摘要에 금액을 적을 때에는 「콤마」 외에 원단위와 10전 단위의 사이에 「피리어드」(즉, 符號)를 찍어야 한다. 例 : 5,678, 903. 25 卽, 5백6십7만 8천9백3원 2십5전』 (明治財政史 第13卷, 1906, p. 661).

그런데 실무상 은행장부를 아라비아數字로 기입하게 된 것은 그 보다는 빨리 第一國立銀行의 帳簿에서 1874年 9月부터라고 한다. 第一國立銀行은 1873年 6月에 개업하였지만, 草創期에는 日本數字로 사용하다가 아라비아數字로 전환했다고 한다. 현재 第一勤業銀行에 소장되어 있는 同銀行 大阪支店의 1874年 5月 2日字 「환어음 記入帳」은 아라비아數字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19]. 이와같이 日本에는 第一國立銀行이 설립·운영되면서, 西洋式 銀行簿記制度의 보급과 더불어 아라비아數字에 의한 記帳處理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

17) 片野一郎, 前揭書, p. 151.
18) 上揭書, pp. 31~32.
19) 上揭書, p. 32.

(2) 「銀行簿記精法」의 役割

1870年代의 日本經濟社會에 所有와 經營이 분리되고 회사법과 독립전문감사인에 의하여 출자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근대주식회사의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明治政府의 殖産興業政策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샨드의 「銀行簿記精法」이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첫째, 이미 발족한 國立銀行의 일상업무를 관리운영하는 수단으로서 복식부기의 記帳技術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 둘째로 은행의 결산에 대해서는 샨드시스템이 주축이 되고, 그에 따라 記帳과 決算報告書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로는 大藏省이 행하는 「銀行檢査」의 體驗을 併用하여 有效한 統一經理方法을 수립함과 동시에 신진의 회계담당자를 양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銀行簿記精法」이 갖는 役割이었다.

이러한 役割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銀行簿記精法」은 第一國立銀行의 公表用 財務諸表를 체계화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1876年 上半期에 있어서 第一國立銀行의 공표재무제표는 「貸借計定表」(처분전 대차대조표), 「損益計定表」(이익처분계산서), 및 「貯蓄金」(당기이익산입 후의 잉여금계산서)의 三區分計算書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銀行簿記精法」이 제창한 재무제표 三本化의 원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日本의 근대화 초기에 있어서 샨드시스템이 財務諸表의 形成에 끼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Ⅲ. 日本最初의 銀行財務諸表制度

1. 日本國立銀行의 財務諸表 形態

日本의 銀行業은 1873年 國立銀行의 創設 당시부터 法規로 大藏省과 株主에게 財務諸表를 제출함과 동시에 新聞紙上에 公告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원래 財務諸表라 함은 회계기록에 따라 작성된 企業의 決算報告에 관한 서류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財務諸表의 작성보고는 그 기업의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1872년 8월의 國立銀行條例는 제13조의 「銀行利益金 分割節次」를 밝히는 규정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첫째 國立銀行의 대표이사는 매년 총계정을 이루는 순이익을 정산하여 株價에 따라 공평하게 分割해야 하며, 둘째 이를 분할하기 전에 이익의 정산을 株主들에게 통지하고 新聞紙上에 이를 공고한다. 셋째로는 그것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계산을 명료하게 하여 銀行局(紙幣寮)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條例의 규정에 따라 國立銀行은 半期決算時마다 財務諸表를 ① 株主에게 통지하고, ② 新聞紙上에 公告함과 동시에, ③ 紙幣頭(銀行局長)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細則이 1972년 8월에 「國立銀行成規」라는 이름으로 公布되었는 바, 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財務諸表가 제시되어 있다. 즉, ① 銀行利益金報告와 ② 銀行實際報告가 그것이다[20].

이러한 상황하에서 1873年 6月에 第一國立銀行이 開業하였고, 同年 12月에 「銀行簿記精法」이 刊行되었던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1873年 日本 大藏省은 「國立銀行報告書提出規則」을 제정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第一國立銀行의 決算結果를 정리한 財務諸表, 즉 「半期實際報告」(대차대조표)와 「半期利益金報告」(손익계산서)가 提出 또는 公告되었던 것이다.

1872年의 「國立銀行成規」에는 「國立銀行報告事項」에 따라 國立銀行이 大藏省 銀行局長(紙幣頭)에게 제출하는 실제보고에 관하여 「이 보고양식의 文例는 銀行局長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873年 12月의 「國立銀行報告書提出規則」에서 財務諸表의 樣式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지금 그 樣式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1973년 12월 31일자로 작성된 「半期實際報告」(대차대조표)와 「半期利益金報告」(손익계산서)의 樣式을 소개하면, 〈표 1〉 및 〈표 2〉와 같다. 이것이 은행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어진 日本 최초의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의 財務諸表는 日本數字에 의하여 작성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第一國立銀行은 「국립은행조례」 및 「國立銀行成規」의 규정에 따라 半期實務報告와 半期利益金報告의 규정에 따라 半期實際報告書와 半期利益金報告書를 新聞紙上에 공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공표용 재무제표는 大藏省銀行局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와는 달리 그 樣式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 공표용 재무제표의 양식은 예금자와 일반투자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를 취하였고, 예외없이 縱書로 작성되고 日本數字가 사용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의 실정을 가장 잘 반영했다고 할 수 있는 전형적인 공표용 재무제표의 實例를 들면 〈표 3〉과 같다.

원래 제일국립은행의 공표용 손익계산서는 당기손익계산 겸 처분가능이익계산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나, 1876년에 이르러 당기손익계산을 완전히 불식하고 손익계산의 결과인 당기순이익을 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로 변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國立銀行의 공표용 재무제표에 나타난 구조상의 변화는 그후 日本 國立銀行의 재무제표에 체계화가 형성되는 과정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1877년(明治 10年) 大藏省에 提出하는 財務諸表의 體系에서 「처분전 대차대조표」(半期實際報告), 「손익계산 겸 처분가능이익계산 겸 이익처분계산표」(半期利益金報告)라는 통일적인 報告書樣式이 확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20) 上揭書, pp. 127~128.

〈표 2〉

日本 最初의 損益計算書 樣式

第一國立銀行半季利益金割合報告

借方

摘要	金額 千	百	十	万	千	百	十	円		總計 千	百	十	万	千	百	十	円	
諸入費																		
創業入費					六	○	九	六	三五									
營繕																		
什器					三	二	○	○										
給料旅費				一	二	四	三	四	八九									
稅金						五	五	○										
雜費					七	○	七	一	九二									
賞金				一	九	一	六	一	一○				四	八	五	一	四	二六
損失																	七	二○
利息拂														一	六	八	七	二七
諸抵當金																		
利戾抵當																		
滯貸抵當																		
純益金																		
一株二付三円八三錢ノ割合ニテ																		
別段積立金													一	一	二	七	一	二四
割賦金一株二付二円二五錢ノ割合													五	四	九	一	八	
後半期繰込													二	七	三	六	二	○四
總計												一	四	三	七	六	○	○一

貸方

摘要	金額 千	百	十	万	千	百	十	円		總計 千	百	十	万	千	百	十	万	
前半期繰越高																		
利益																		
割引入																		
利足入				八	六	五	五	六	六四									
手數料				二	○	四	五	四	三七									
公債證書利息				三	六	七	四	九				一	四	三	七	六	○	○一
公債證書增步																		
庫鋪																		
總計												一	四	三	七	六	○	○一

第五 舊式乙

明治六年十二月三十一日

第一國立銀行

頭取 取締

小齊

野藤

善純

助造

<자료 : 片野一郎, 『日本・銀行會計制度史』(1977), pp. 132 - 133>

〈표 3〉 1876年의 新聞에 公告된 第五國立銀行의 損益計算書

損益勘定 利益之部	
貸付金利足	二八、六三五 六九二
諸公債證書利足	一三、八一九 〇〇〇
公債證書賣買益	一二六 〇〇〇
交換打步	六一 五〇〇
庫鋪	一、二二六 六一一
請合料	三六八 五〇〇
手數料	八三二 三二二
利益	一四、五〇〇 〇〇〇
前半季繰越	一、六四一 三八二
總計	六一、二一〇 〇〇七
損益勘定 損失之部	
利足拂	一二、八六八 〇〇九
手數料	一六 〇〇〇
交換打步	一二一 七三〇
月給旅費	七、一六〇 九一三
營繕	一五、一五三 二六九
小費	二、九〇五 〇八五
諸役員賞與	一、七六〇 〇〇〇
通計	三九、九八五 〇〇三
右差引	
純益金	二一、二二五 〇〇四
內譯	
別段積立金	二、一二二 〇〇〇
當半季割賦金	一七、五〇〇 〇〇〇
但一株二付三圓五十錢	
後半季繰●	一、六〇三 〇〇四
總計	六一、二一〇 〇〇七

(東京日日新聞, 1876년 2월 7일자에 게제된 것임).
〈자료 : 片野一郎, 『日本・銀行會計制度史』(1977), pp. 154~155〉.

2. 日本最初의 法定銀行財務諸表 形態

(1) 「國立銀行報告書規則」의 別册樣式 制定

「국립은행조례」 및 「同成規」가 정하는 바에 따라 國立銀行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大藏省銀行局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대해서는 1873年 12月에 그 規則이 편제되어 있었으나, 1876年 8月 1日字로 改正되었다. 改正된 「國立銀行條例」 第77條 및 「同成規」 제 66조에 따라 日本 大藏省은 「국립은행보고서규칙」을 1877년 6월 修正하고 別册 考課狀樣式을 公示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日本에 있어서 국립은행의 통일화된 財務諸表樣式을 法規로 정해 놓은 최초의 것이다.

1877年의 「國立銀行報告書規則」에 따라 국립은행이 大藏省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는 ① 每月實際報告, ② 半期實際報告, ③ 半期平均額報告, ④ 年中平均額報告, ⑤ 半期利益金報告 및 ⑥ 株主姓名表의 여섯 가지이다. 이 중에서 株主姓名表는 12월말 현재의 株主와 持株內容을 표시한 것이며, 半期平均額報告와 年中平均額報告는 예금・대여금・화폐유통에 대하여 일년에 두 번 보고하는 것이다. 每月實際報告는 총계정원장의 월차잔액시산표이며 본점분과 지점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半期實際報告는 반년 분의 이익처분전 대차대조표이며 본・지점의 것을 모두 합한 것이다. 또한 半期利益金報告는 반년분의 손익계산 겸 이익처분계산서를 의미한다.

(2)「半期實際報告書」및「半期利益金報告書」

이상에서 살펴 본「국립은행보고서규칙」의 부록에는 국립은행이 大藏省銀行局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중 주목할만한 것은 數字를 아라비아數字로 기록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 때부터 작성된 모든 보고서의 양식에는 아라비아數字가 사용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표 4〉 修正된 規則에 의한 損益計算書의 實例

橫濱正金銀行 明治十四年上半季利益金割合報告表								
損金之方				勘定科目	益金之方			
總計		金額			金額		總計	
				總損益金				
				受取利息	123,639	887		
				金札引替公債證書利息	30,922	000		
				割引	4,848	367		
				受取手數料	4,985	508		
				受取交換打步	2,969	392		
				受取庫敷料	149	717		
				雜益	8,254	429		
				海外荷爲換打步	19,007	995	194,777	295
		19,893	000	仕拂利息				
		636	064	仕拂手數料				
		2,872	268	仕拂交換打步				
		6,840	913	給料				
		859	836	旅費				
		452	235	雜稅				
		359	519	營繕				
		273	869	諸損				
		4,354	168	雜費				
		6,720	905	割戾海外荷爲替打步				
43,512	420	249	643	仕拂庫敷料				
				前半季 繰越高				
					15,491	265	15,491	265
				所有物消却				
2,500	000	2,500	000					
				役員賞與金				
10,000	000	10,000	000					
				創業入費消却				
		1,000	000					
				純益金				
		15,400	000	積立金				
		10,000	000	別段積立金				
		110,000	000	割賦金百圓二付四圓ノ割但シ政府年六分				
153,256	140	17,856	140	後半季繰翻高				
210,268	560	210,268	560		210,268	560	210,268	560

〈자료 : 片野一郎, 前揭書, p. 172 : 橫浜正金銀行의 上半期 株主考課狀에서 轉載한 것임〉

〈표 5〉 **修正規則에 의해 작성된 貸借對照表의 實例**

横濱正金銀行 明治十四年上半季利益金割合報告表									
損金之方				勘定科目	益金之方				
總計		金額			金額		總計		
				政府勘定					
				御用預金 內紙幣 433,563.358	818,128	236			
				御用振出手形	75,400	000			
				御用別段預金 紙幣 1,959,651.472分	1,211,906	671			
		400,000	000	預ケ合借入金 紙幣 705,400.000分	436,239	951	2,541,673	858
1,430,650	000	1,030,650	000	金札引換公債證書					
				人民勘定					
				定期預金	32,062	590			
				當座預金 內紙幣 118,227.794	287,145	400			
				振出手形	438,600	000			
				仕拂銀行手形	547	000			
				別口預金 內紙幣 275,455.916	323,804	459	1,082,159	449
		1,187,247	785	貸附金 內紙幣 548,352.779					
		339,767	792	當座預金貸越					
		87,910	019	當所割引手形 內紙幣 99,300.000					
		4,119	876	當所代金取立手形 內紙幣 200.000					
		569,350	000	金札引換公債證書買入元					
		109,822	177	一時預ケ金 內紙幣 112,902.460					
		804,432	923	海外直輸荷爲換貸 紙幣 1,300,768.037分					
3,510,203	320	407,472	748	海外荷爲換資金貸 紙幣 658,883.435分					
				米國紐育出張員					
58,305	519	58,305	519	內紙幣 15,074.452					
				株主勘定					
				株金	3,000,000	000			
				積立金	16,800	000			
				別段積立金	7,100	000	3,023,900	000
				損益勘定					
				當半季利益金	151,264	875			
				前半季繰越高	15,491	265	166.756	140
				所有物勘定					
		5,868	776	地所					
		23,986	793	家作土藏					
30,674	135	1,818	566	什器					
				雜勘定					
19,993	701	19,993	701	內紙幣 2,380.176					
				創業入費					
16,264	037	16,264	037						
				地金勘定					
		4,305	203	地金銀					
4,367	893	62	690	外國貨幣					
				金銀勘定					
				金貨 500,000.000					
				銀貨 435,655.810					
				銅貨 3.329					
				紙幣(但シ正銀貨圓位) 450,325.694					
				他店紙幣 21,537.106					
1,743,030	842	1,743,030	482	他店$手形 335,508.903					
6,814,489	447	6,814,489	447		6,814,489	447	6,814,489	447

〈자료 : 片野一郎, 前揭書, pp. 170~171 : 横浜正金銀行의 上半期 株主考課狀에서 轉載한 것임〉

그리고 1880년에 이르러 日本大藏省은 종래의 국립은행보고서 제출규칙과 그 부록을 통합하여 새로운 규칙으로 수정하였다. 이 규칙은 1899년 국립은행의 존립이 終了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였다[21].

이 규칙에 따라 국립은행이 大藏省銀行局에 제출한 보고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半期實際報告書」와 「半期利益金報告書」이다. 1881년 상반기 결산에 따라 작성된 橫浜(요꼬하마) 正金銀行의 半期實際報告書(대차대조표)와 半期利益金報告書(손익계산서)를 인용·소개하면 〈표 4〉 및 〈표 5〉와 같다.

이 재무제표에 있어서 과목의 분류 및 배열은 1877년 大藏省의 樣式과 똑같다. 다만 형식상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 다를 뿐이다. 첫째, 계정과목란과 금액란이 大藏省의 樣式에서는 借邊側과 貸邊側에 각각 설정되어 있는데 대하여, 正金銀行의 경우는 紙面의 중앙에 계정과목란을 세우고 左右兩側에 차변금액란과 대변금액란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借邊側과 貸邊側의 계정과목 배치에 있어서 大藏省의 樣式에서는 차변은 負債와 收益이, 대변은 資産과 費用이 기재되어 있음에 비하여 正金銀行의 경우에는 이것과는 정반대로 차변에 資産과 費用이, 대변에 負債와 收益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1881년 상반기 요꼬하마正金銀行의 재무제표는 1877년의 국립은행 법정재무제표의 양식과 1890년의 보통은행 법정재무제표의 양식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일본 재무제표의 근대화 과정에서 징검다리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日本의 근대화 초기에 은행업을 창설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財務諸表의 차변과 대변에 항목배열이 변천된 것을 살펴보면 〈表 6〉과 같다.

〈표 6〉 日本의 銀行業草創期에 있어서 貸借項目配列의 變遷

보고서 구분 / 발전단계	貸借勘定表 또는 半期實際報告 (貸借對照表)		損益勘定表 또는 半期利益金割合報告 (損益 및 利益處分計算書)	
	借 邊	貸 邊	借 邊	貸 邊
1873年 (銀行簿記精法)	資 産	負債·資本	費 用	收 益
1877年 (大藏省樣式)	負債·資本	資 産	收 益	費 用
1881年 (橫浜正金考課狀)	資 産	負債·資本	費 用	收 益

3. 國立銀行 財務諸表制度가 一般企業에 미친 影響

21) 上揭書, p. 99. (『明治財政史』 第13卷, 1905, pp. 666~670)

日本의 근대화 초기에 있어서 財務諸表制度를 밝히기 위해서는 國立銀行 이외에 一般企業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時代에 설립·운영되었던 대표적인 一般企業으로서는「內國通運會社」,「시멘트製造會社」및「日本郵船會社」가 있었다. 이 중에서 內國通運會社의 財務報告書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內國通運會社는 1972년 5월 전국적인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東京에서 창립된 회사로서 1973년 7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1874년부터 1888년까지 이 회사의 財務報告書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선 1874년도의 결산보고로서「實際年報表」를 보면 〈표 7〉과 같다.

〈표 7〉 內國通運會社의 實際年報表(1874)

摘要	借方		貸方	
資本	七九四〇〇	〇〇〇		
準備	九四〇	〇〇〇		
貸附			一二三八三	六九一
懸向拂			一七〇〇	〇〇〇
出店元金			九五七八	三六四
創業費			一〇一〇一	二〇一
家屋			二八四五一	四五五
什器			七二六〇	九〇三
荷作品			三一五〇	〇〇〇
益金	一二八一六	九一五		
割賦金			一二八一六	九一五
金銀			七七一四	三八六
總計	九三一五六	九一五	九三一五六	九一五

〈자료 : 片野一郎,『日本財務諸表制度の 展開』(1968), p. 68〉.

이 보고서는 순전히 英國式으로 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 차변의「益金」이 당기순이익을 나타내고 대변의「割賦金」이 配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대차대조표와 이익금처분계산서의 합성표임을 의미한다. 이 회사의 결산보고는 1874년도의 제1회 결산부터 1877년도의 제5회에 이르기까지는 〈표 7〉과 같은 구조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혼성표와 기재된 항목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을 뿐으로 손익계산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1878년 이후의 결산보고서에는「實際年度表」이외에「損益 겸 割賦計定表」가 등장하였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을 소개하면 〈표 8〉 및 〈표 9〉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전자는 이익처분전 대차대조표이며, 후자는 손익 및 이익처분결합계산서를 의미한다. 1877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內國通運會社의 재무제표 체계상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日本의 근대화 초기에 企業經理上 독특한 意味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당시 企業의 會計組織은 그 때까지의 記帳法으로

서는 單式簿記가 일반적이었고 기간손익 방법으로서는 財産法이고 현금주의 방식이었던 것이이 時期에 複式簿記法으로 전환하여 손익법과 발생주의 방식으로 탈바꿈했음을 感知할 수 있다.

內國通運會社의 재무제표체계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변화는 1877년에 日本 大藏省이 제정한 「國立銀行報告書規則附錄」의 「半期實際報告樣式」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大藏省의 樣式과 內國通運會社의 그것의 경우는 대차대조표(實際報告 및 實際年報表)도 손익 및 이익처분결합계산서(利益金報告 및 損益 겸 割賦計定表)도 모두 차변·대변의 기재내용이 오늘날과는 정반대로 배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간에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즉, 損益計算의 區分에는 당기손익 외에 전기이월이익을 포함하여 순이익을 산출하게 되며, 순이익을 「配當計定區分」에서 처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손익계산구분은 기간손익계산상의 「當期

〈표 8〉 日本의 近代化 初期 企業의 貸借對照表

摘要	借方		貸方	
資本	二〇〇〇〇〇	〇〇〇		
手形	六〇〇	〇〇〇		
準備	四二六九	八〇七		
身元金	一一七五五	〇〇〇		
貸附			五九四九九	六三八
出店元金			二六五八三	六三七
創業費			一五九八四	四二二
家屋			四八八〇四	五三四
什器			一一七六五	五八七
荷造品			二一五二	八一四
補助	一七一三	一一四		
驛遞局	九〇〇〇	〇〇〇		
公債書			二六八二八	六六〇
割賦預	四〇五二	六二七		
馬車賃			四六	九〇〇
汽船			六五九九七	二一六
弁償	二五九九	三九〇		
割賦金	七九二	〇〇〇		
非常積立	二六四二	八六五		
補正			一一一七二	七六〇
客車			一〇〇〇	〇〇〇
益金	三三八五二	八三二		
金銀			一五二一	四六七
合計	二七一二七七	六三五	二七一二七七	六三五

〈자료 : 片野一郎, 「日本財務諸表制度の 展開」(1968), p. 70〉.

〈표 9〉 日本 近代化 初期의 企業損益計算書

借方		摘要	貸方	
		運賃	八三四三八	四二五
		危難諸負料	六九〇六	五四三
		利息	三五二四	〇九九
		株數手數料	三〇	〇〇〇
		汽船	一二三六七	一八七
		補助	三〇〇〇	〇〇〇
		前回ヨリ送翻	八三三	六〇四
一二八八七	九六八	旅費		
三二五八九	四八七	給料		
三八九七五	四六一	雜費		
一七九四	一一〇	損金		
三〇〇〇	〇〇〇	諸費消却		
三〇八五二	八三二	益金		
一一〇〇九九	八五八	合計	一一〇〇九九	八五八
		割賦勘定		
		益金	三〇八五二	八三二
六一七〇	五六六	弁償手當		
三〇八五	二八三	非常積立		
二〇〇〇〇	〇〇〇	割賦金		
一五四二	六四二	役員褒賞		
五四	三四一	次回ヘ送翻		
三〇八五二	八三二	合計	三〇八五二	八三二

〈자료 : 片野一郎, 『日本財務諸表制度の 展開』(1968), p. 71〉.

發生의 分配可能利益」에 전기이월이익을 가산한 「當期에 配分해야 할 利益」을 산출하고 있는 것이다. 1877년 大藏省의 樣式에 의한 利益金報告書와 內國通運會社의 「손익 및 配當計定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서 손익계산구분에 전기이월이익을 포함시키는 방법은 日本企業에 있어서 재무제표체계의 전개과정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日本商法의 制定과 財務諸表제도의 展開

1. 日本의 近代立法運動과 商法初案

日本의 近代化 初期에 있어서 企業會計의 특질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1877년(明治 10년)부터 시작되는 近代法律의 制定運動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日本政府는 경제적 근대화를 위한 法的인 기초작업을 서두르고 있었는 바, 그 중의 하나가 「뢰슬러」(Hermann Roesler」에게 위촉하여 商法草案을 起草하게 하였던 것이다.

日本政府는 德川幕府의 말기부터 1880年代까지의 商慣習 및 商業帳簿의 제도에 대한 실상을 취재한 商事關係의 조사자료를 「日本商事關係類集」이라는 제목으로 간행하였고, 이것을 「뢰슬러」 교수에게 제공하였다. 「뢰슬러」는 이러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1881년부터 시작하여 1883년에는 商法草案을 완성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뢰슬러起草의 商法草案」인 上下의 2권이다[22].

1884년(明治 17年)에 日本政府는 이것을 인쇄하여 非賣品으로 司法省에서 관계자에게 배포하였다. 이것은 1861년에 제정된 獨逸의 商法典을 모체로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日本商事類例集」이라는 日本 고유의 法規範에 대해서는 法律 속에 규정하는 대신에, 草案의 규칙 제1조에 「이 商法 중에 규정되지 않은 商事에 대해서는 商業의 관습 및 일반민법의 條例를 적용」하도록 하는 慣習法 優先의 원칙을 취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용인하는 여유를 보여주었다. 경제적 근대화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법적기초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帳合之法」의 번역자인 후꾸자와(福澤諭吉)가 강력히 강조하였던 바이지만, 그것이 성사된 것은 「帳合之法」이 출판된 1873년에서부터 「뢰슬러」의 商法草案이 성립되기까지의 10년의 세월이 흘러서였다. 그래서 1884년(明治 17年)에 이르러 「뢰슬러」의 상법초안을 기초로 하여 日本 司法성의 商法編纂委員會가 상법규정을 위한 法律案을 작성하고 이것을 1890년(明治 23年)에 개회된 日本帝國議會에 제출하기까지는 다시 6年의 세월이 필요했다. 이 기간에 「뢰슬러」의 商法草案에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고 議會는 그 法律案을 의결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때부터 그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어나 法律의 시행을 부득이 연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商法에 대한 찬반양론은 英美法學派와 大陸法學派와의 사이에 나타난 論爭이어서, 후세에 이르러 이것을 商法典論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23].

결국 상법전에 대한 논쟁은 시행을 연기하자는 쪽의 승리로 끝났고, 그래서 商法은 民法과

22) 日本會計硏究學會, 『近代會計百年』 (1978), pp. 20~21.
23) 上揭書, p. 23

더불어 1893년 1월 1일까지 그 실시가 연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에 대한 論爭은 치열하여 日本帝國議會에서도 다시 연기하자는 쪽이 승리하여 1896년까지 시행이 재연기되었다. 다만 「뢰슬러」의 商法草案에 의거한 법률안 중 會社法만이 1893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을 뿐이었다. 日本商法이 現行되는 商法과 동일한 관계를 갖추고 완전히 시행된 것은 1899년(明治 32年)의 일이다. 이렇게 難産을 거듭한 끝에 햇빛을 보게 된 日本商法에 있어서의 會計에 관한 규정은 상업장부로부터 시작하여 會社의 會計制度에 이르기까지 現行 日本商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갖추게 된 것이다.

2. 商法制定時의 財務諸表制度

(1) 商法規定과 銀行條例

日本에 있어서의 私立銀行은 1876년에 미쓰이(三井)銀行의 創設을 시발점으로 하여 상당한 수의 은행이 개설되었으며, 商法이 제정되기 1년 전인 1889년 12월 31일 現在로 그 수가 950개에 이르렀고 134개의 국립은행에 비하여 무려 7배 이상이었다. 이들 私立銀行이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그 업무를 감독할 法規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1890년 3월에 商法이 제정 공포되고 企業에 관한 일반제도가 정비되었으므로 同年 8月에 오랜 懸案이었던 私立銀行의 감독법규로서 銀行條例가 공표되었던 것이다[24].

大藏省에 의하여 마련된 「銀行條例」는 종래의 국립은행조례와는 달리 私立銀行의 經理制度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商法의 商業帳簿에 관한 規定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첫째는 제3조의 규정으로서 銀行은 半年營業報告書를 작성하고 地方長官을 거쳐 大藏省大臣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둘째는 제 4조의 규정으로서 銀行은 半年分의 재산목록·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新聞紙上에 公告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銀行條例에 규정된 것 중에서 제4조에 해당하는 銀行이 公告해야 할 재산목록·대차대조표에 관한 규정은 보통은행의 經理制度에 관하여 銀行條例와 商法이 接合한 것이었다. 日本 大藏省은 은행조례 第3條에 의하여 銀行이 제출해야 할 決算報告書의 樣式을 만들어 1890년 11월 4일자로 私立銀行에 令達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1893년 5월에 銀行條例施行細則과 附屬樣式이 제정되어 同年 7月 1日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자연 소멸되었던 것이다. 그래도 여기에 제시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樣式은 모두가 당초 은행조례의 것을 母體로 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2) 銀行條例施行細則에 의한 財務諸表

24) 片野一郎, 『日本·銀行會計制度史』 (1968), pp. 181~182.

上述한 銀行條例는 상법시행이 연기됨에 따라 그 실시를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1893년 7월 1일부터 商法의 일부인 會社法이 시행되면서 銀行條例의 실시도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893년 5월에는 「銀行條例施行細則」이 公表되었고, 銀行이 大藏省大臣에게 제출하는 營業報告書 및 貸借對照表·損益表·財産目錄의 양식이 마련되었다. 그후 1899년 6월 8일 大藏省令 제23호 및 1900년 3월 12일 大藏省令 제3호로 각각 「은행조례시행세칙」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나, 1915년에는 「은행조례」의 전면적인 改正으로 그 樣式에 있어서도 그 面目을 일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日本의 근대화 초기에 있어서 財務諸表의 발전을 검토할 경우에는 1915년(大正 5年)이전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銀行條例」 제3조에 따라 銀行이 大藏省에 제출하는 財務諸表는 1890년의 大藏省令達에서는 1873년(明治 6年) 이후의 英美系 財務諸表體系를 계승하여 「資産負債表」·「損益表」라는 체계를 취하고 있었으나, 1893年(明治 26年)에 제정된 「은행조례시행세칙」과 1899년의 樣式에서는 이것을 개정하여 資産負債表라는 명칭을 「貸借對照表」로 변경함과 동시에 새로이 資産目錄을 도입하였다[25]. 이리하여 대차대조표·손익표(손익계산서)·재산목록으로 이루어진 商法上의 企業財務諸表의 체계와 일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며 英美系統의 재무제표체계와 大陸系統의 재무제표체계가 조화를 이루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1893년의 附屬樣式과 1899년의 附屬樣式에서는 영업보고서의 내용이 약간 다를 뿐 재무제표의 양식은 동일한 것이다. 다만 1893년의 樣式에서 「損益表」라고 되어 있던 것이 1899년의 樣式에서는 「損益計算書」라고 명칭을 변경하였을 뿐이다[26].

1899년의 樣式에 따라 財務諸表를 소개하면 〈表 10, 11, 12〉와 같다.

3. 商法制定으로 인한 英國系 會計思想과 大陸系 會計思想의 調整

1873년에 국립은행제도의 창설과 더불어 발적한 기업회계제도의 구조적 특징은 英國系의 配當宣言會計였다. 그것은 1890년에 日本商法이 제정되기까지 日本의 경제사회 속에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되었고, 英國系統의 기업회계제도를 範例로 하여 성장한 것이었다. 그런데 商法이 제정됨으로써 大陸系統의 商業帳簿規定 및 會社計算規定이 도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알란·샨드」의 英國系 會計思想과 「뢰슬러」의 大陸系 會計思想과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1877년의 「國立銀行報告書規則」에 의하여 확립된 당시 은행의 會計實務로서는 결산에 즈음하여 「半期實際報告書」를 작성하고 있었는 바, 이것은 결산

25) 片野一郎, 前揭書, p. 194.
26) 上揭書, p. 195.

〈표 10〉 1899年의 樣式에 의한 貸借對照表의 實例

第何期貸借對照表(第四號)

明治何年 六 十二 月 三十 三十 日

	借方		摘要	貸方	
			定期預金	21,500	000
			當座預金	62,165	500
			支拂送金爲替手形	4,400	000
			他店ヨリ借(幾箇所)	14,708	500
			……		
			……		
			……		
何	29,900	000	貸付金		
縣府	1,300	000	當座預金貸越		
何	51,471	000	割引手形		
都市	4,300	000	荷爲替手形		
何	7,506	000	公債證書		
村町	29,524	000	他店へ貸(幾箇所)		
			……		
			……		
			……		
			資本金	100,000	000
	50,000	000	拂込未濟資本金		
			積立金	7,000	000
何			當期純益金	2,464	000
			……		
			……		
銀	2,000	000	營業用地所建物		
	250	000	營業用什器		
行	35,987	000	金銀有高 { 正貨 9,866.660 / 紙幣並兌換券 23,624.000 / 切手手形 2,496.340 }		
㊞					
	212,238	000	合計	212,238	000

〈자료 : 片野一郎, 『日本・銀行會計制度史』(1977), p. 198〉

〈표 11〉 1899年의 樣式에 의한 損益計算書의 實例

損益計算書(第四號)

明治何年 六/十二 月 三十/三十 日

	借方		摘要	貸方	
			當期利益		
			利息	952	000
			手數料	854	000
			割引料	1,516	500
			公債利息	185	000
何			公債賣買益	595	000
縣府			前期繰越	65	000
何			……		
都市			……		
何			……		
村町			當期損失		
	565	000	給料		
	358	500	雜費		
	780	000	損失		
			……		
			……		
			……		
何			純益金		
	450	000	積立金		
	2,000	000	配當金(私翔資本高百円		
銀	14	000	二付四円ノ割)		
			後期繰越		
			……		
行			……		
㊞	4,167	500	合計	4,167	500

〈자료 : 片野一郎, 『日本・銀行會計制度史』(1977), p. 199〉

〈표 12〉 1899年의 樣式에 의한 財産目錄의 實例

財 産 目 錄 (第四號)

明治何年 六十二月 三十三十日

	種 類	摘 要	金 額	
何縣府	貸付金證書	三十通	29,900	000
何	當座預金貸越	三十口	1,300	000
都市	割引手形	三十枚	51,471	000
何	荷爲替手形	十五枚	4,300	000
村町	國債證券	券面七千圓	5,506	000
	地方債證券	券面貳千圓	2,000	000
	他店へ貸	何箇所	29,524	000
	營業用地所	三百坪	800	000
何	營業用家作土藏	三棟 建坪 七十坪	1,200	000
	營業用什器	金匣外何點	250	000
銀	拂翻未濟資本金	現株主二十名柱式二千株又ハ社員幾名	50,000	000
行	金銀有高		35,987	000
㊞	합계		212,238	000

〈자료 : 片野一郎, 『日本・銀行會計制度史』(1977), p. 199〉.

에 의하여 半期利益이 확정된 시점, 즉 이익처분 전의 각 계정잔액으로서의 대차대조표이다. 그런데 새로이 제정된 商法規定(제32조)에 의하여 銀行은 決算時 모든 財産을 그 때의 時價에 따라 財産目錄과 貸借對照表에 반영해야 하도록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당시의 은행회계관습상 「半期實際報告書」는 誘導法에 의하여 작성되는 貸借對照表였고 거기에 기재되는 금액은 결산시의 시장가격과는 관계가 없는 帳簿上의 原價였다. 따라서 商法規定의 등장으로 인하여 나타난 時價에 의한 貸借對照表의 작성이라고 하는 문제와 당시까지 銀行의 회계관습이었던 原價에 의한 貸借對照表의 作成이라고 하는 問題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과제가 회계실무상에 새로이 등장한 것이다[27].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식회사로서의 國立銀行의 會計上 발생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國立銀行報告書規則」에 따라 작성되어 오던 「利益金報告書」에 기재된 사항 中, 「이익처분계산에 관한 부분」과 당시의 商法規定에 의하여 작성되는 「利子 또는 配當金의 分配案」과의 競合關係이다[28]. 다시 말하면 日本 大藏省의 「국립은행보고서규칙」에 의한 「利益金報告書」는

27) 片野一郎, 『日本財務諸表制度の 展開』(東京, 同文-v, 1968), p. 98.
28) 上揭書, p. 99.

손익 및 이익처분결합계산서로서 표시되는 것임에 비하여, 商法規定에 의한 株主總會 提出報告書에는 손익계산이 損益計算書에 속하는 書類에서 이루어지고, 利益處分案은 「이자 또는 배당금의 처분안」에서 각각 분리기재하도록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商法의 제정으로 인하여 상술한 두 가지 문제점은 비단 은행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식회사 기업에 대해서도 발생한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고 한다.

상술한 첫째 課題에 대하여 당시의 日本 大藏省이 英國系 會計思想과 大陸系의 會計思想을 조정하려고 했던 努力의 一面을 다음에 살펴보기로 한다. 1890년의 商法規定을 계기로 하여 日本 大藏省이 마련한 「銀行條例」가 공포되었다. 이 「銀行條例」는 私設銀行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商法의 計算規定을 전제로 하여 會計에 관한 規定을 해놓은 것이다. 그 중에서 은행이 공시해야 할 財産目錄과 貸借對照表의 규정이야말로 私設銀行의 會計制度에 관하여 商法과 銀行條例가 接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890년 11월에는 日本 大藏省이 「資産負債表」와 「損益表」의 樣式을 마련하였는 바, 「자산부채표」는 이익처분전 대차대조표이고, 「손익표」는 손익 및 이익처분결합계산서이다[29]. 이것은 日本의 會計制度史上 획기적인 意義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日本銀行業의 회계제도가 1872년의 「國立銀行條例」를 통하여 도입한 美國의 국립은행조례에 의한 銀行會計의 통제방식과 1873년의 「銀行簿記精法」을 통하여 도입한 英國型 銀行會計方式이 조화를 이루어 制度的인 成長을 하였지만, 새롭게 제정된 商法을 통하여 大陸系統의 商業帳簿規定을 흡수하게 함으로써 銀行財務諸表의 형식과 내용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기 때문이다.

1893년 7월에 商法 중 會社法이 시행됨에 따라 日本 大藏省은 「會計條例施行規則」을 공포하여 은행이 大藏省大臣에게 제출하는 「損益表」, 「貸借對照表」 및 「財産目錄」의 각 양식을 마련하였다[30]. 이렇게 하여 私設銀行의 재무제표체계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으로 이루어지는 商法上 株式會社의 재무제표체계와 일치하게 되었다. 환언하면 英國型 財務諸表와 大陸型 財務諸表의 체계적 조정이 사실상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Ⅵ. 맺는 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近代的 會計制度가 日本에 최초로 도입된 것은 明治時代의 초기, 즉 1873년(明治 6年)의 일이다. 그래서 1873년은 日本 企業會計制度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意義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日本의 선각자 「후꾸자와」(福澤諭吉)에

29) 片野一郎, 『日本·銀行會計制度史』(東京, 同文-v, 1977), pp. 181~184.
30) 片野一郎, 『日本財務諸表制度の 展開』(東京, 同文-v, 1968), pp. 102~104.

의하여 1873년 6월에 「帳合之法」이라는 日本 최초의 西洋式 簿記에 관한 서적이 출판된 것을 비롯하여 同年 12월에는 英國人 「알란 · 샨드」(Allan, Shand)에 의한 「銀行簿記精法」이 刊行되어 日本의 銀行會計制度를 수립하는데 크게 공헌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1873년부터 비롯되어진 日本의 近代會計制度는 국립은행이 창설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1890년의 商法制定을 거쳐 완전시행이 이루어진 1899년에는 제도적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샨드시스템이 확립되어 은행재무제표의 보급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일반기업의 회계제도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1877년에는 大藏省에 의한 財務諸表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의 작성에 아라비아數字를 정식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日本의 근대화 초기에 기업회계제도를 발전시키는데 촉진제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무렵의 財務諸表는 결산보고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었으며 半年을 회계기간으로 하는 「半期實際報告書」·「半期利益金報告書」·「貯蓄金」의 三本化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日本政府는 「뢰슬러」(Roesler)의 商法草案을 기초로 하여 1890년에 商法을 제정 · 공포함으로써 財務諸表制度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따라서 「銀行條例」가 大藏省에 의하여 공표되었고 재무제표의 작성 · 보고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商法의 제정으로 인하여 大陸系統의 會計思想을 도입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종래의 英美系統의 會計思想과 交錯되어 결국 商法施行이 연기되었다. 1893년에 비로소 會社法의 부분적인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은행조례시행세칙」과 그 附屬樣式이 제정되었고 財務諸表制度를 정비하게 되었다. 「은행조례」에서 「資產負債表」로 되어 있던 것을 「貸借對照表」로 명칭변경을 하였던 것이다. 1899년의 附屬樣式을 통하여 1893년까지 「損益表」로 되어 있던 것을 「損益計算書」로 명칭변경하였다. 그리하여 1899년부터는 大陸系와 英美系의 會計思想이 調整되어 재무제표의 체계적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貸借對照表 · 損益計算書 · 財產目錄으로 구성된 재무제표의 체계화는 日本 商法의 제정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日本의 企業會計制度史上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1. 李鍾燻, 『日本經濟論』, 法文社, 1993.
2. 日本會計硏究學會, 『近代會計百年』, 1978.
3. 高橋辛八郎 外, 『日本近代史論』, 1994.
4. 西川孝治郎, 『日本簿記史談』, 同文-v, 1974.

5. 青木茂男, 『日本會計發達史』, 同文-v, 1977.
6. 濱田弘作, 『會計史研究學說』, 多賀出版, 1986.
7. 片野一郎, 『日本・銀行會計制度史』, 同文-v, 1977.
8. ———, 『日本財務諸表の 展開』, 同文-v, 1968.
9. 黑澤淸, 『體系 近代會計學』, 中央經濟社, 1979.
10. ———, 『近代會計學』, 春秋社, 1966.
11. ———, 『日本會計學發達史 序說』, 雄松堂書店, 1982.
12. 日本會計研究學會, 『日本會計學會 50年史』, 1987.
13. 中川敬一郎 外, 『近代日本經營史の 基礎知識』, 1994.
14. 中野常男, 『會計理論生成史』, 中央經濟史, 1992.
15. 稻垣富士男, 『損益計算書論』, 同文-v, 1977.
16. 染谷恭次郎, 『我國會計學の 潮流』, 第一卷, 第二卷, 第三卷, 雄松堂出版, 1984.
17. 山下勝治, 『貸借對照表論』.
18. Y. Fujita, An Analysis of The Development and Nature of Accounting Principles in Japan, 1968.
19. A. C. Littleton, Accounting Evolution to 1900, Russell & Russell, 1966.
20. Richard Brown, A History of Accounting and Accountants, Frank Cass & Co. LTD, 1968.

An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Statement System in Early Years of Japanese Modernization

Koh, Seung-Hee*

Abstract

This Study is an exploration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financial statement in early years(1873~1899) of Japanese Modernization. In relation to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financial statements system from 1873 to 1899, two different types of financial statement may be distinguished : (1) Anglo-American type, and (2) Franco-German type.

National Bank Act in 1872 and its related regulation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reporting system in Japan. The national banks of Japan were established in 1873 and were developed by using the national banking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s model. However, the accounting system in the national banks was designed by Alexander Allan Shand from England and was based on his book, Method of Bank Bookkeeping, which was published in 1873.

Until the partial enforcement of the Commercial law in 1893, the financial reporting system of the national bank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financial reporting practices of commercial and industrial corporation in Japan. That is, most corporations usually prepared two financial statement, (1) a combined statement of income and profit appropriation and (2) a balance sheet before profit appropriation.

After enforcement of the commercial law in 1893 and 1899 was the change in the financial statement. First, the balance sheet had long been based upon the systematically recorded data, but the inclusion by the commercial law of the inventory in financial documents made the balance sheet independent of the systematically

* Professor of Dankook University, Ph.D.

recorded data. Second, another change was the separation of a combined statement of income and profit appropriation into an income statement and a statement of proposals pertaining to the disposal of profits.

Key-Words : financial statement, balance sheet, commercial law.

東海 表記의 歷史的 小考

A Study on the Historial Geography of East Sea

金　　新*

目　次

Ⅰ. 序　論
Ⅱ. 유럽인의 東方見聞記와 東海
1. 유럽인의 對元 見聞記
2. 유럽인의 對明 見聞記
Ⅲ. 世界地圖上의 5가지 표기모델
1. 北海(방위표기)모델 표기
2. 노르웨이－그린란드(국가표기)모델
3. 대륙표기(서쪽국가지명)모델
4. 發見者 표기모델
5. 특성표기 모델
Ⅳ. 世界地圖에 표기된 동해
1. 13世紀－15世紀
2. 16世紀
3. 17世紀
4. 18世紀
5. 19世紀
6. 20世紀
7. 동해표기 世界地圖
Ⅴ. 結　論

Ⅰ. 序　論

동해표기문제는 세계각 국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꾸준하고도 정력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동해연구에 있어서 취급하여야 할 대상범위는 실로 광범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역사지리학적 시야[1)]와 안목으로 조감하고 종합해야 할 일과 세계적 관점에서 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기술상의 제분야[2)]를 망라해서 지도사 연구와 관련시켜 연구, 고찰의 대상범위로 삼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해 표기연구에 있어서 역사지리학적인 변화[3)]가 갖는 뜻을 해명하고,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우선 규명하려는 것이다.

---

* 경희대 교수, Skim@nms.kyunghee.ac.kr

1) Cameron, I., *To the Farthest Ends of the Earth: the history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London, 1970), pp. 61～93.

2) Daniel j. Boorstin, The Discovers(Random House, 1983), pp. 134～156.
Day, A. E., *Discovery and Exploration: A Reference Handbook. The Old World*(London, 1980), pp. 116～132.3) Gavet-Imbert, M. (ed.), The Guiness Book of Explorers and Exploration(Enfield, 1991), pp. 216～246.

본 연구의 목적은 동해표기를 둘러싼 여러 문제의 명확한 분석을 통해 동해표기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역사지리학적인 동해표기를 구명하기 위한 조사분석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본 연구의 방법론적 입장과 시각은 다음과 같이 의도하고 집약하였다. 역사지리학적 연구는 제도사적, 유형적, 이론적 및 실제적인 차원에서 거시적 연구고찰이 가능한 분야이며, 또한 지도제작, 국제적관계 등의 제측면의 연구를 가능케 하는 다원론적인 방법론적 시각을 갖게하는 성질의 학문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도사적인 측면고찰에 중점을 두면서 세계지도상에 나타난 동해표기의 유형적, 시대적 특성을 분석해 보는 방법을 취했다. 여기서 동해표기의 변천을 구획하는 시대구분은 편의상 세계지도상에 동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13세기부터 100년 단위로 분류하여 이들 각 시대의 동해표기의 변모과정을 검토, 분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동해표기의 역사적 실태를 구명하고, 새로운 표기모델을 제시하므로서 동해표기의 역사지리학적 연구분석 능력을 발전시켜 동분야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유럽인의 東方見聞記와 東海

1. 유럽인의 對元 見聞記

1) 프란체스코 修道士의 東洋探査

중국의 여러 도시에 있는 유럽인 사회에 대하여 항상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생생하게 보고한 기록은 대담한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의 현지탐사에 의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다[4].

중세의 후반기부터 동방과의 교통이 열리게 되자 아시아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유럽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슬람세계 뿐만 아니라 몽골에서부터 중국에 이르기까지 차차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카르피니, 마르코폴로를 위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잇달아 동양을 찾아가게 되었고, 또 북방의 한자동맹의 여러 도시 등 상업도시의 번창에 의한 활발한 무역활동은 유럽인의 지리적 지식을 동과 북으로 확대하였다[5].

프란체스코교단의 수도사들은 지리학의 개척자가 되었다. "신께서 이 세상의 동방지역에

4) Biggar, H. P., The Precursors of Jacques Cartier, 1494~1534(Ottawa, 1991), pp. 96~167.
Bonington, C., Quest for Adventure(London, 1981), pp. 136~192.

5) Badger, G., The Explorers of the Pacific(Kenthurst, 1988), pp. 121~139.
Beaglehole, J. C., The Exploration of the Pacific(London, 1966), pp. 86~124.

달단인들을 보내어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게 한 바로 그 무렵에, 신께서는 서양에 그의 충실하고 축복 받은 종 도미니크와 프란체스코를 보내어 믿음을 밝히고, 가르치고, 보급하도록 하셨다"고 한 독실한 연대기 편자는 기록하였다.

2) 중국으로 간 수도사－지오반니 카르피니

교황 이노켄티우스 4세는 1243년 교황으로 선출되자 즉시, 달단족의 새로운 침략에 대비하여 기독교 국가들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교황은 몽골족의 유럽침입을 저지하고 당시의 몽골의 황제 쿠육 칸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자 북몽고에 있는 그의 수도로 교황의 사절을 보내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교황은 유럽인으로서 아무도 몽골의 수도에 간 사람도 없고, 또 무사히 돌아온 사람도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1245년 4월 16일 그의 사절을 몽골로 파견하였다[6].

수도사 카르피니는 사절로서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2년에 걸친 그의 여행에 관한 30페이지 짜리 견문기는 짧은 것이기는 하지만 중세의 몽골족의 습관에 대해서는 가장 잘 씌어진 것으로서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다. 수도사 카르피니의 몽골방문에 동행했다가 함께 돌아온 또 다른 용감한 사람은 프란체스코파의 폴란드인 수도사 베네딕트였다.

이 두 개척자인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여행을 했는데 휘몰아치는 바람과 고산지대의 추위, 알타이 산길의 깊은 눈, 그리고 고비사막의 뜨거운 햇빛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였다[7].

1245년 리용을 출발, 폴란드로부터 키에프, 카스피해, 아랄해 북쪽해안, 텐산산맥 북쪽기슭을 거쳐 몽골제국의 수도 카라코룸에 도착하여 4개월을 체재하였다. 마침 구육 칸의 즉위식이 있어 거기 참석하고 그의 회신을 받아 1247년 11월 귀국하였다.

전도사명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가 교황에게 제출한 복명서는 몽골에서 실지로 견문한 일들을 유럽인에게 최초로 전한 문서로 중요한 기록이다. 이견문기에 삽입된 세계지도는 일명 빈랜드지도라고 불리는 유명한 세계지도로 여기에 동해표기가 처음 등장한다.

3) 프랑스 수도사－빌렘 루브리퀴스

프랑스의 프란체스코회 수도사이며 여행가이다. 교황 이노켄티우스 4세와 프랑스 왕 루이 9세의 친서를 몽골의 대칸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기독교를 포교하기 위하여 몽골에 파견되었

6) Goodman, E., The Explorers of South America(New York, 1972), pp. 192~214.
Hemming, J. M., The ConQuest of the Incas(London, 1970), pp. 342~356.
Herbert, W., The Noose of Laurels: The Discovery of the North Pole(London, 1987), pp. 84~131.

7) Kirwan, A. L. P., The White Road : A Survey of Polar Exploration(London, 1959), pp. 181~193.

다(1253년). 1255년 8월 트리폴리로 귀환하여 뒤에 동양 각지의 지리, 풍습, 종교, 언어 등을 기술한 여행기 『Itinerarium fratris William de Rubruquis de ordine fratrum Minorum』을 저술하였다. 이는 베이컨의 『대저작』에 인용되어 유명하게 되었고 그후에도 영국, 프랑스에서 간행되었다[8].

빌렘(1215~1295)은 프랑스의 프란체스코 수도회 탁발수사로, 그가 쓴 몽골방문기는 일반적으로 중세 크리스트교 여행자가 쓴 방문기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 생오메르 근처 루브루크마을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빌렘은 1253년 팔레스타인 아크레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 왕 루이 9세로부터 비공식적인 사명을 받고 몽골제국에 파견되었다.

그의 일행은 1253년 5월 7일 콘스탄티노플을 떠나 크림반도의 수다크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소와 수레를 구해 볼가강지역의 몽골군주 바투 칸의 진영을 향해 초원지대를 통과하는 긴 여행길에 올랐다. 5주 뒤 바투 칸의 진영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에서 8,000km를 더 여행하여 몽골 중앙의 카라코룸에 있는 대칸의 궁정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9].

1253년 9월 16일 길을 떠난 그들은 말을 타고 카스피해와 아랄해 북부를 돌아서 탈라스강과 카일락계곡, 몽골대평원을 지나 대칸의 진영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카라코룸에서 남쪽으로 10일 정도 걸리는 길이었다.

빌렘과 동료들은 정중한 대접을 받으면서 1254년 9월 10일까지 칸과 함께 지낸 뒤, 처음 올 때 택했던 길보다는 좀더 북쪽으로 나 있는 길을 통해서 1255년 8월 15일 트리폴리에 도착했다[10].

빌렘은 프랑스 왕을 위해 몽골인들 사이에서 겪은 일들을 글로 썼다. 그가 전한 이야기는 전설과는 무관한 것이며, 그가 지식과 정직성을 갖춘 관찰자였음을 보여준다. 말년의 생애에 대해서는 1295년 마르코 폴로가 동방에서 돌아왔을 때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빼고는 알려진 것이 없다[11].

빌렘이 전한 이야기는 5권의 사본으로 남아 있지만 베이컨이 많이 사용한 뒤에는 방치되었다. 1권의 사본은 1598, 1599년에 리처드 해클루트에 의해 불완전하게나마 재생되었다.

4) 동방견문록-마르코 폴로

마르코 폴로(Marco Polo, 1254?~1324)는 이탈리아인으로 쿠빌라이(세조)의 궁정까지 육로로 여행하였다. 또한 통산 24년간 아시아를 여행했다[12]. 그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상인

8) Hopkirk, P., Trespassers on the roof of the World(London, 1982), pp. 134~156.
9) Newby, E., The World Atlas of Exploration(London, 1975), pp. 126~138.
10) Noyce, W. Springs of Adventure(London, 1958), pp. 231~247.
11) Pennington, P., The Great Explorers(London, 1979), pp. 252~283.

· 여행가로 보석상인 아버지와 숙부를 따라 1271년 동방여행을 떠났다. 1274년 쿠빌라이에게 알현하고 그대로 원나라에 머물며 우대를 받아 관직에 올랐다. 17년간 원나라에 살면서 중국 각지를 여행하였으며 이란의 봉고 왕조인 일한국의 아르군 칸에게 시집가는 공주 코카친의 여행 안내자로 선발되어 원나라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13].

마르코 폴로는 경험, 업적, 영향력에 있어서 다른 모든 기독교 여행자들보다 뛰어났다.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은 몽골에 갔지만 모두 3년 내로 돌아왔고, 또 그들은 전도외교가라는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 마르코 폴로의 여행은 24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는 그의 선임자들보다 훨씬 멀리 몽골을 지나 중국의 중앙에까지 진출하였다. 그는 대양에 이르기까지 중국전역을 횡단하였고, 쿠빌라이 칸의 친구가 되고, 중국 대도시의 총독이 되는 등 다양한 역할도 하였다. 그는 중국어에 능통하였고 스스로 중국의 일상생활과 문화에 젖어 있었다. 유럽인들에게 있어서는 동양에 대한 그의 풍부하고, 생동력 있고, 사실적인 소개가 곧 아시아의 발견이 되었다.

이 모든 일은 인쇄술이 발명되기 오래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본필경사나 아마추어들이 수십 부씩 책을 베꼈고, 그 과정에서 의역을 하거나 각색하기도 했다. 또한 이 책에 나오는 많은 낯선 이름들은 사본을 달리할 때마다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오늘날의 해설자들은 원본재구성이라는 과업에 직면하여 포기하고 만다. 사실 『밀리오네』의 믿을만한 원본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늘날에는 수많은 언어와 방언으로 씌어진 갖가지 형태의 필사본이 약 140 종류나 남아 있다. 이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자료들은 중세부터 내려온 가장 끈질긴 문헌학적 문제를 대표한다[14].

이런 논쟁이 거의 7세기 동안 계속된 결과 마르코의 평판은 극적인 부침을 겪었다.

어쨌든 마르코의 설명은 중세인들의 마음에 새로운 전망을 열어 주었다. 서양의 지평선이 넓어짐에 따라 마르코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졌다. 일본에 대한 묘사는 1492년에 저물어 가는 해를 향하여 여행을 떠난 콜럼버스에게 뚜렷한 도표를 설정해 주었고, 향신료 생산지점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서양사람들에게 그 지역을 찾아나서 향신료무역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아랍상인들의 독점상태를 깨뜨리도록 고무했다. 마르코 폴로가 기록한 풍성한 새로운 지리적

12) Severin, T., The African Adventure(London, 1973), pp. 53~78.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95).
Tourtellot, J. B. (ed.), Into The Unknown(Washington DC, 1987), pp. 121~136.
Ure, J., Trespassers on the Amazon(Lodon, 1986), pp. 172~206.
Waldman, C., and Wexler, A., Who Was Who in World Exploration(New York, 1992), pp. 122~137.

13) Reid, A., Discovery and Exploration: A Concise History(London, 1980), pp. 216~233.

14) Waller, D., The Pundits(Lexington, 1990), pp. 226~243.
Yapp, P., The Travellers' Discovery of Quotations(London, 1983), pp. 206~242

정보는 유럽인들이 대규모로 대양을 항해한 15세기말과 16세기에 널리 이용되었다.

5) 이탈리아의 수도사－조반니 코르비노

조반니 코르비노(Jovanni de Monte Corvino, 1247?～1328)는 프란시스코파의 수도사이다. 선교사로 북경의 궁정에 수년간 체재했다[15].

그는 이탈리아의 수도사이며 여행가였다. 1272년 프란체스코회의 수도사가 되어 그리스교회와 로마교회의 결합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1280년경 포교를 위해 페르시아로 건너갔고 1291년 다시 동양을 여행하여, 1294년 원나라 수도에 도착하였다. 그후 30년간 중국에 체재하면서 포교에 종사하여, 교회를 세웠으며 교황은 그를 주교로 임명하였다. 그는 교황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동양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16].

1289년에 교황 니콜라우스 4세에 의하여 중국에 파견된 그는 1295년에 베이징(북경)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그는 "우리들의 영도자인 교황의 서신을 전달하고, 우리의 주 예수 크리스트의 믿음을 따르도록 황제를 초청하였다. 그는 우상숭배에 빠진 채 너무 늙어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기독교도들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었고 2년 동안 나는 황제와 함께 살았다"고 전한다.

수도사 조반니는 황제의 궁전이 있는 도로 맞은편에 세 개의 종이 달린 교회를 건립하였고 그는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가 헤아린 바에 의하면 그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약 6천명이나 되었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보았고, 수도사 조반니는 악보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악보없이 찬송가를 불렀다. 수도사 조반니는 1307년에 간파리크(북경)의 대주교로 임명되었고, 몇년 후에는 3명의 보조주교가 와서 그를 보좌하였다[17].

6) 오도릭

프란체스코 수도사 포르데노네 오도릭(Odoric of Pordenone, 1286～1331)은 1330년 중앙아시아를 거쳐 파도바를 돌아가기 전 3년간 중국에서 살면서 보고 느낀 생생한 많은 기록들을 그의 동료수도사에게 구술하였다. 그는 마르코 폴로가 전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가마우지 새를 시켜서 물고기를 잡는 법, 손톱을 길게 하는 습성, 여자의 발을 자라지

14) Waller, D., The Pundits(Lexington, 1990), pp. 226～243.
Yapp, P., The Travellers' Discovery of Quotations(London, 1983), pp. 206～242

15) Cranfield, L., The Challengers : British and Commonwealth Adventure since 1945(London, 1976), pp. 216～233.

16) Anderson, J. R. L., The Ulysses Factor : the Exploring Instinct in Man(London, 1970), pp. 37～42.

17) Fernandez～Armesto, F., The Times Atlas of World Exploration(London, 1991), pp. 98～103.

못하게 동여매는 전족의 풍습 등ㅡ을 소개하였다[18].

오도릭은 우디네에서 수도생활에 들어간 후, 1316경~1318년에 아시아로 파견되어 1329년까지 머물렀다. 그는 호르무즈까지 간 뒤 인도로 출항했다. 그는 수마트라섬의 북쪽해안까지 범선으로 항해했다[19]. 그는 중국을 광범하게 여행했고 티베트를 거쳐 이탈리아에 도착할 때까지 2만명 이상에게 세례를 했다. 파도바에서는 다른 수사가 그의 여행 이야기를 간단한 라틴어로 적었다. 그의 여행이야기는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형제들보다 우디네의 평신도들에게 더 큰 감명을 준 것 같다.

7) 지오반니 마리놀리

귀족적인 피렌체 출신 수도사 지오반니 마리놀리(Giovanni de Marignolli, 1290~?)는 1342년에 베이징에 도착했다[20]. 마리놀리는 여기에서 3, 4년을 보낸 후 중국동부를 여행하고 1347년에 중국을 떠났다. 그는 스리랑카에서 감금되어 고향으로 가지고 오던 동방의 진귀한 물건들과 선물을 빼앗겼지만 그 나라와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는 오늘날 이란에 있는 호르무즈와 시리아, 예루살렘을 거쳐 1353년 아비뇽으로 돌아왔다. 1354년~1355년 황제 카를 4세의 궁정사제로 일하면서 보헤미아 연대기 수정작업에 몰두했는데 여기에 아시아 여행기를 삽입했다[21]. 그의 여행기는 헨리 율 경이 영문판으로 번역해 『중국과 그곳으로 가는 길』(1866)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있다.

8) 남부아시아 탐험ㅡ콘티

콘티(1395~1469)는 베네치아 상인으로 25년 간에 걸친 남부아시아 지역의 여행담을 유럽에 전했다. 어린시절 다마스쿠스에 살면서 아랍어를 배운 콘티는 1414년 바그다드를 향해 떠난 뒤 남쪽으로 내려가 티그리스강 주변을 여행했으며, 현재 이란의 영토인 페르시아만의 남쪽 끝 지점에 있는 호르무즈까지 갔다.

그는 페르시아만의 무역중심지였던 칼라카티아로 가서 언어를 배웠으며, 그의 여행에 동행했던 몇명의 페르시아 상인들과 사귀었다. 그는 인도에서 인도여인과 결혼했으며 인도 북서부의 캄베이주, 고아의 동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비자야나가르(지금의 카르나타카주 함피), 마드라스의 교외지역인 말리아푸르(지금의 밀라포르) 등을 여행했다. 말리아푸르는 사도 토마가 안식한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도 크리스트교도에게는 신성한 성지로 간주되고 있다[22].

18) Delpar, H.(ed.), The Discovers : An Encyclopedia of Explorers and Exploration(New York, 1972), pp. 176~186.
19) Middleton, D., Victorian Lady Travellers(London, 1962), pp. 56~73.
20) Moorhead, A., The White Nile(London, 1962), pp. 116~133.
21) Parry, J. H., The Discovery of the Sea(London, 1964), pp. 116~133.

그후 수마트라로 간 그는 식인풍습을 목격했으며 후추와 금을 발견했다. 또 지금의 미얀마에 있는 테나세림과 갠지스강의 삼각주지역도 여행했다. 미얀마에서는 이라와디강을 따라 항해했으며 당시 번창했던 페구의 도시에도 갔다.

콘티가 여행한 가장 먼 곳은 자바였다. 지금의 타이로 보이는 시암파의 스리랑카로 추정되는 지역을 경유한 그는 인도의 서남에 위치한 퀼론으로 갔다. 인도의 말라바르해안을 따라 여행한 콘티는 코친과 현재의 코지코드인 캘리컷에 들르기도 했다. 아라비아반도의 남부해안지역과 아덴시로 행하는 길에 다시 캄베이를 찾았다. 또 메카의 항구로 이용되고 있던 지다를 여행했으며, 1444년 베네치아로 돌아오기 전 카이로와 시나이산을 향해 육상여행을 했다.

여행도 중에 크리스트교신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속죄행위로 교황 에우제니우스 4세의 보좌관이며 학자, 인문주의자인 포조에게 그의 탐험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라틴어로 기록된 그의 여행기는 15세기 남부아시아에 대한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2. 유럽인의 對明 見聞記

마테오리치(Matteo Ricci, 1552~1610)는 이탈리아의 예수회 선교사이다. 그는 중국에 있어서의 카톨릭 포교의 시조이다. 인도를 경유하여 1582년 마카오에 도착, 중국내지로의 입국을 결심하고 중국어를 공부하였으며, 1583년 조경부에서 정주하도록 허락을 받고 포교를 개시하였고 1601년 북경으로 진출하였다[23]. 그는 중국에서 포교를 하기위 해서는 독서인층의 신임을 얻어야 하겠다고 믿고, 서양의 학술을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그가 중국에서 제작한 것 중의 하나는 세계지도 위에 각종의 천문학적 설명을 덧붙인 「坤輿萬國全圖」이다. 이 지도에 일본해란 표기가 처음 등장한다.

Ⅲ. 世界地圖上의 5가지 表記모델

4. 北海(方位表記)모델

현재 세계지도상에 표기되는 바다의 명칭은 일정한 원칙이 있다. 그중 첫째가 동서남북의 방위표시가 바다의 이름으로 기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양고지도에 동해, 서해, 북

22) Penrose, B., Travel and Discovery in the Renaissnce(Harvard, 1952), pp. 138~156. Peter Moter, Neil Grant, The Great Atlas of Discovery(London, 1992), pp. 39~57. Quinn, D. B., New American World : A Documentary History of North America to 1612(New York, 1979), pp. 187~202.

23) Robinson, J., Wayward Women : A Guide to Women Travellers(Oxford, 1990), pp. 78~106.

해 등의 바다이름이 표기되고 있고 전술한 카르피니의 빈랜드지도(1245~1247)에서 동해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또한 독일과 영국사이의 바다가 북해로 불리는 것이 현존하고 있는 방위표기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마틴 왈드시뮐러의 세계지도(1507)에 Ocean Orientalis로, 보돈의 세계지도(1528)에는 MARE ORIENTALE로, 세바스챤 뮌스트의 세계지도(1540)에는 OCEANVS Orientalis로 표기하고 있다.

한편 창황의 四海華夷總圖(1613) 등 중국에서 제작된 지도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한자로 東海로 표기하고 있는 등 방위표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2. 노르웨이－그린란드(國家表記)모델

2개 이상 국가 사이에 위치한 국가의 명칭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사례로는 노르웨이와 그린란드 사이의 바다이름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바다는 그린란드쪽에는 그린란드해로 노르웨이쪽의 바다는 노르웨이해로 각각 표기하고 있다.

3. 大陸表記(서쪽國家地名)모델

서쪽에 있는 지역의 지명을 바다이름으로 표기하는 경우이다. 러시아의 오호츠크의 동쪽에 있는 바다의 이름은 오호츠크해이며, 오키나와 서쪽에 있는 중국의 동쪽바다는 동중국해, 필리핀 서쪽에 있는 중국 남쪽바다는 남중국해, 티모르섬의 동쪽바다는 티모르해, 아라비아 반도의 동쪽바다는 아라비아해, 캐나다 래브라도 반도의 동쪽바다는 래브라도해, 아프리카 모잠비크 동쪽바다는 모잠비크해, 벵골만의 안다만 동쪽바다는 안다만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發見者 表記모델

바다의 명칭에 첫 발견자의 이름을 부여하는 경우이다. 그 사례로는 베링해, 로스해, 바렌츠해, 아문센해 등이 있다.

5. 特性表記모델

바다의 색깔 등 바다의 특성을 그 바다의 명칭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이다. 흑해, 황해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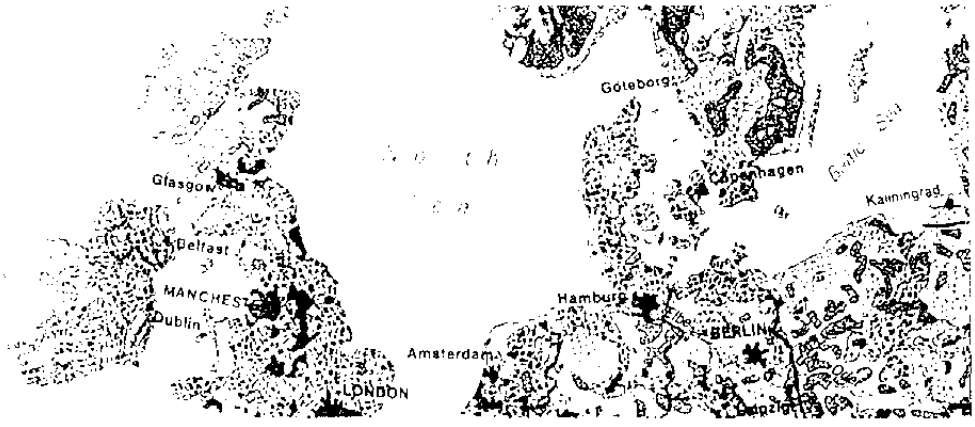

〈지도 1〉 북해(방위표기)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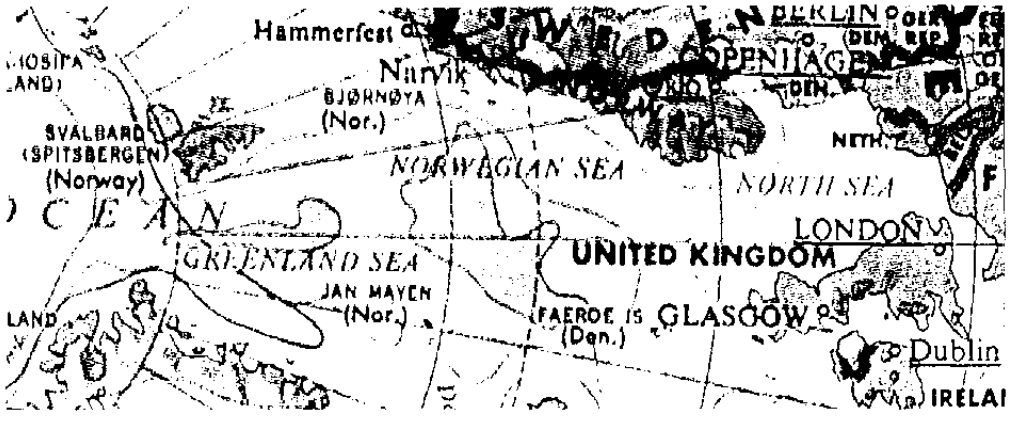

〈지도 2〉 노르웨이-그린란드(국가표기)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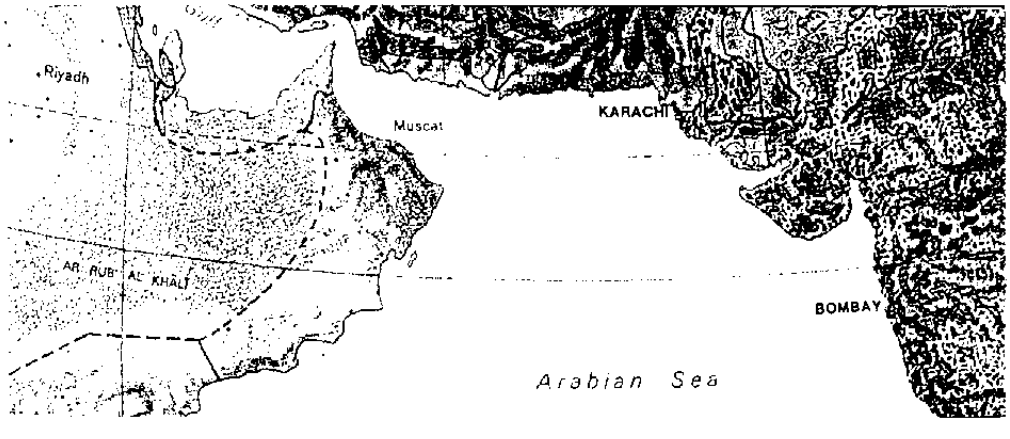

〈지도 3〉 대륙표기(서쪽국가 지명)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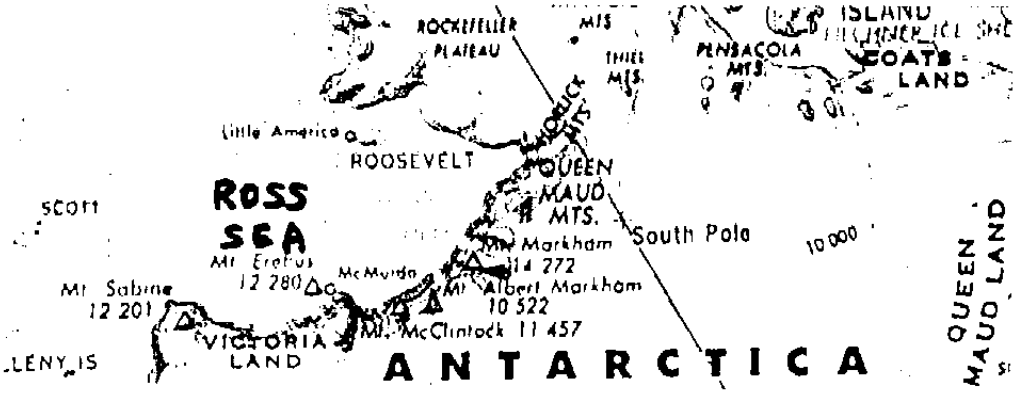

〈지도 4〉 발견자 표기모델

〈지도 5〉 특성표기 모델

Ⅳ. 世界地圖에 表記된 東海

1. 13世紀～15世紀

지금으로부터 750년 전에 몽골을 여행한 카르피니의 견문기(1245～1247)에 삽입된 일명 빈랜드지도에 동해란 표기가 처음 등장한다.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필사본(1440년)이 남아 있는 이 빈랜드 지도는 1957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발견되어 현재 예일대학이 소장하고 있다. 이 지도는 지질과 잉크 등 역사적 고증을 거친 중세풍의 유일한 지도로 13세기의 세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희귀한 지도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지도에 동해가 처음으로 명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지도에는 「타타르인들은 새로운 땅(한국, 일본)이 세계의 맨바깥쪽에 위치해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외곽에는 대양만이 있다고 했는데 그 바다를 「mare Occeanum Orientale」(동해)로 적시하고 있다. 이는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1602)의 일본해 표기의 등장보다 350년 앞서는 것이다.

이 책에 삽입된 빈랜드지도가 유명해진 것은 지도상에 빈랜드(북미대륙)가 그려져 있다는 점 때문이다. 양피지에 잉크로 그려진 11인치×6인치 크기의 이 지도는 빈랜드지도라고 불려지는데, 이 지도에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5백년 전에 북미대륙을 노르웨이의 라이프 에릭슨이 발견했다는 빈랜드로 표기하고 있다. 1960년대에 노르웨이 고고학자 헬게 잉스타가 빈랜드의 전설을 확인해 주는 한 노르웨이인 정착지와 유물들을 발견했는데, 스칸디나비아 고문자 전문가인 에이나르 하우겐은 라이프 에릭슨이 도착한 곳이 지금의 보스턴이라고 믿고 있다.

2. 16世紀

동해표기는 16세기와 17세기에도 계속된다. 우선 대표적인 예를 들면 1507년에 마틴 왈드시뮐러가 제작한 세계지도에는 「Ocean Orientalis」로, 1528년 보돈이 베니스에서 제작한 세계지도에는 「MARE ORIENTALE」로, 또한 1540년에 세바스찬 뮌스터가 제작한 세계지도에도 「OCEANVS Orientalis」로 표기하고 있다.

3. 17世紀

세계지도상에 한문으로 「동해」란 표기가 최초로 적시된 지도가 있는데, 하버드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四海華夷總圖」(1613년, 22.5cm×14.5cm)이다. 이 지도에는 한국과 일본 사

이의 바다를 한자로 東海로 표기하고 있다.

서양에서 제작된 세계지도로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세계지도로 1619년에 제작된 세계지도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정확하게 Mer Orientale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1640년의 필립 브리에트의 세계지도에는 한국과 일본사이의 바다가 정확하게 「Ocean Oriental」로 표기되어 있다. 1658년 로시의 세계지도에는 OCEANO ORIENTALE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1685년의 세계지도에는 Mer Orientale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빅켈(Bickell)과 글루어(J. Gluer)의 세계지도(1694)에는 「Oriental sea」로 표기하고 있다.

4. 18世紀

1700년에 제작된 기욤 드릴의 세계지도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정확하게 MER ORIENTALE로 표기하고 있고, 1700년의 아농의 세계지도에도 MER ORIENTALE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N. de Fer의 동양지도(1705)에 「Mer Orientale」로, 1705년 프랑스 지리학자 기욤 드릴의 '인도-중국지도'에는 동해 또는 한국해(MER ORIENTALE OU MER DE CORĚE)로 표기하고 있다.

5. 19世紀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세계지도 보다는 국지적인 지도가 많이 제작되고, 따라서 동해표기와 함께 한국해나 한국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지도가 산견된다.

6. 20世紀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는 해방 후 동해(east sea)가 세계 지도상에 다시 등장하게 된다.

V. 結 論

영토문제에서 지도보다 더 국가적 상징이며 지적인 무기가 된 것은 없다. A국가와 B국가가 영토 C에 대한 주권을 각기 주장할 때면 그들은 항상 지도학적으로 논쟁을 벌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표기의 역사지리학적 분석에 초점을 두고 세계고지도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현재 세계지도상에 표기되는 바다의 명칭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다.

東海表記世界地圖		
1200	카르피니－Mare Occeanum Orientale (1245)	1300
1300		1300
1400	빈란드 지도 필사본 (1440)	1400
1500	왈드시뮐러－Ocean Orientalis (1507) 보돈－MARE ORIENTALE (1527) 세바스찬 뮌스터)－Oceans Orientalis (1540)	
1550		1550
1600	창황－東海(四海華夷總圖) (1602)　마테오리치－日本海(坤輿萬國全圖) (1602)	1600
1650	필립 브리에트－Ocean Oriental (1650) 로　시－OCEANO ORIENTALE (1658) 빅켈과 글루어－Oriental Sea (1694)	1650
1700	기욤드릴－MER ORIENTALE (1700)　아농－MER ORIENTALE (1700) 페르－Mer Orientale (1705)　기욤드릴－MER ORIENTALE OU MER COREE (1705) 로위츠－Mare Orientale (1746)	1700

그 중 첫째가 북해(방위표기)모델이다. 동서남북의 방위표시가 바다의 이름으로 기재되는 경우이다. 특히 서양고지도에 동해, 서해, 북해 등의 바다이름이 표기되고 있고 전술한 카르피니의 빈랜드지도(1245~1247)에서 동해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한편 독일과 영국 사이의 바다가 북해로 표기되고 있는 것이 현존하고 있는 방위표기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마틴 왈드시뮐러의 세계지도(1507) 등에 Ocean Orientalis로 표기하는 등이 그 사례이다.

둘째, 노르웨이-그린란드(국가표기)모델이다.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위치한 국가의 명칭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사례로는 노르웨이와 그린란드 사이의 바다이름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바다는 그린란드쪽에는 그린란드해로 노르웨이쪽의 바다는 노르웨이 해로 각각 표기하고 있다.

셋째, 大陸表記(서쪽國家地名)모델이다. 서쪽에 있는 지역의 지명을 바다이름으로 표기하는 경우이다. 러시아의 오호츠크의 동쪽에 있는 바다의 이름은 오호츠크해이며, 오키나와 서쪽에 있는 중국의 동쪽바다는 동중국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발견자 모델이다. 발견자의 이름을 바다의 명칭으로 명명하는 것으로 로스해, 베링해, 바렌츠해, 아문센해 등이 그 사례이다.

다섯째, 바다의 특성표기 모델이다. 흑해, 황해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의 5가지 모델 중 동해는 어떤 모델인지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세계고지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지금으로부터 750년 전에 몽골을 여행한 카르피니의 견문기(1245~1247)에 삽입된 일명 빈랜드지도에 동해란 표기가 처음 등장한다. 이는 중국에서 제작된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1602)의 일본해 표기나 세계지도상에 한문으로 창황의 사해화이총도(1613)의 동해표기의 등장보다 350년 앞서는 것이다.

동해표기는 16세기와 17세기에도 계속된다. 우선 대표적인 예를 들면 1507년에 마틴 왈드시뮐러가 제작한 세계지도에는 「Ocean Orientalis」로, 1528년 보돈의 세계지도에는 「MARE ORIENTALE」로, 또한 1540년에 세바스찬 뮌스터의 세계지도에도 「OCEANVS Orientalis」로 표기하고 있다.

1600년대에 들어서면 세계지도상에 한자로 '東海'로 최초로 표기한 지도가 제작되는데 창황의 四海華夷總圖(1613)가 그것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東海로 표기하고 있다. 1619년에 가면 세계지도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정확하게 Mer Orientale로 표기하고 있다.

1640년의 필립 브리에트의 세계지도에는 「Ocean Oriental」으로 1658년 로시의 세계지도에는 OCEANO ORIENTALE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빅켈(Bickell)과 글루어(J.

Gluer)의 세계지도(1694)에는 「Oriental sea」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같이 동해란 명칭은 13세기에서 대륙의 동쪽바다를 표기하다가 15, 16세기에 와서는 차츰 한국과 일본 근해를 표기하고 17세기에는 한국과 일본사이의 바다를 정확하게 동해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18, 19, 20세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인 유럽수도사의 동양견문기에 삽입된 세계지도에 동해란 명칭이 120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

둘째, 카르피니의 빈랜드 지도(1245)를 위시한 15, 16세기 유럽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에는 동해란 명칭이 동양에서 제작된 곤여만국전도(1602, 일본해)와 사해화이총도(1613, 동해)보다 일찍 사용되어 왔으며, 17세기부터도 광범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해의 지리적인 위치(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북해의 지리적 위치(독일, 영국, 프랑스, 덴마크)가 비슷하다.

따라서 독일, 영국 등 여러 국가 사이의 바다를 1개 국가 명칭으로 표기하지 않고 북해로 표기하는 것과 같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전술한 5개 모델 중 방위표기 모델로 동해로 표기하는 것이 역사 지리학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고찰된 여러 논점들은 동해표기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동해표기의 새로운 이론모형과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역사지리학적으로 동해표기현상을 탐구하여 보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이 방면의 연구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1. ANDERSON, J. R. L., *The Ulysses Factor: the Exploring Instinct in Man*(London, 1970).
2. BADGER, G., *The Explorers of the Pacific* (Kenthurst, 1988).
3. BEAGLEHOLE, J. C., *The Exploration of the Pacific*(london, 1966).
4. BIGGAR, H. P., *The Precursors of Jacques Cartier, 1494-1534*(Ottawa, 1911).
5. BONINGTON, C., *Quest for Adventure*(London, 1981).
6. CAMERON, I., *To the Farthest Ends of the Earth: the history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London, 1970)
7. _____, *Explorers and Exploration*(London, 1991).
8. CRANFIELD, L., *The Challengers: British and Commonwealth Adventure since 1945* (London, 1976).
9. Daniel J. Boorstin, *The Discoverers*(Random House, 1983).

10. DAY, A. E., *Discovery and Exploration: A Reference Handbook. The Old World* (London, 1980).
11. DELPAR, H.(ed.), *The Discoverers:An Encyclopedia of Explorers and Exploration*(New York, 1972).
12. FERN NDEZ-ARMESTO, *F., The Times Atlas of World Exploration*(London, 1991).
13. GAVET-IMBERT, M. (ed.), *The Guinness Book of Explorers and Exploration*(Enfield, 1991).
14. GOODMAN, E., *The Explorers of South America*(New York, 1972).
15. HEMMING, *J. M., The ConQuest of the Incas*(London, 1970).
16. _____., *Red Gold*(London, 1981).
17. _____., *Amazon Frontier*(London, 1987).
18. HERBERT, W., *The Noose of Laurels: The Discovery of the North Pole*(London, 1987).
19. HOPKIRK, P., *Trespassers on the Roof of the World*(London, 1982).
20. _____., *The Great Game*(London, 1990).
21. KEAY, J., *When Men and Mountains Meet*(London, 1975).
22. KIRWAN, A. L. P., *The White Road:A Survey of Polar Exploration*(London, 1959).
23. MIDDLETON, D., *Victorian Lady Travellers*(London, 1962).
24. MOORHEAD, A., *The While Nile*(London, 1962).
25. _____., *The Blue Nile*(London, 1962).
26. NEWBY, E., *The World Atlas of Exploration*(London, 1975).
27. _____., *TA Book of Travellers' Tales*(London, 1985)
28. NOYCE, W. *Springs of Adventure*(London, 1958).
29. PARRY, J. H., *The Discovery of the Sea*(London, 1964).
30. _____., *The Discovery of South America*(London, 1979).
31. PENNINGTON, P., *The Great Explorers*(London, 1979).
32. PENROSE, B., *Travel and Discovery in the Renaissance*(Harvard, 1952).
33. Peter Morter, Neil Grant, *The Great Atlas of Discovery*(London, 1992).
34. QUINN, D. B., *New American World: A Documentary History of North America to 1612*(New York, 1979).
35. REID, A., *Discovery and Exploration: A Concise History*(London, 1980).
36. RIVERAIN, J., *Concise Encyclopedia of Explorations*(Glasgow and Chicago, 1996).
38. ROBINSON, J., *Wayward Women: A Guide to Women Travellers*(Oxford, 1990).

39. SEVERIN, T., *The Oriental Adventure: Explorers of the East*(New York and Boston, 1976).
40.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95)
41. TOURTELLOT, J. B. (ed.), *Into The Unknown*(Washington DC, 1987).
42. URE, J., *Trespassers on the Amazon*(London, 1986).
43. WALDMAN, C., and WEXLER, A., *Who Was Who in World Exploration*(New York, 1992).
44. WALLER, D., *The Pundits*(Lexington, 1990).
45. YAPP, P. (ed.), *The Travellers' Discovery of Quotations*(London, 1983).

A Stduy on the Historical Geography of East Sea

Kim, Shin*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how, by historical geography study, how the printed world map developed from the earliest years of printing in 13century up to the turn of the 19century.

There is nothing which has been so symbolic of a nation and intellectual weapon as a map in the disputes over a territory which A nation and B nation assert their sovereign right over C territory.

Focussing on the historical and geographical analysis of the marking of the East Sea, this research has analyzed by evidences and made use of the ancient world maps to reach the following conclusion. The sea names marked on the current world maps have some fixed principle as belows.

The first principle is "the North Sea(direction marking) model", in which the directions of north, east, south and west are recorded in the sea names. In particular, the typical examples are the indication of the sea names such as the East Sea, the West Sea and the North Sea on the ancient western maps and the marking of the East Sea on Vinland map by Carpini(1245-1247) above stated. Meanwhile, recording the sea between France and England as the North Sea can be the representative case among the extant direction markings. "Ocean Orientalis" recorded on the world maps including the one by Martin Waldseem ller(1507) is also the case.

The second one is "Norway-Greenland(nation marking) model." The sea name between Greenland and Norway represents the case in which the sea names are recorded by using all the names of nations located between two countries at least. In the direction of Greenland, the sea is marked as Greenland Sea, and in the direc-

* Profess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of KyungHee University, Ph. D.

tion of Norway, it is marked as Norway sea respectively on the map. The third one is "Continent marking(Western countries geographical designation) model." In this model, the geographical designation are used as the sea names. for instances, the sea in the east of Okhotsk in Russia is named as the Okhotsk sea and the eastern sea of China in the west of Okinawa is named as the East China Sea. The fourth one is discoverers name model (Bering sea) The fifth one is characteristics of sea model(black sea)

As above, the name of the East Sea indicated the sea east of the continent in the 13th century, and the sea neighbouring Korea and Japan in the 15th and the 16th centuries. In the 17the century, the sea between Korea and Japan was exactly recorded as the East Sea, and this lasted in the 18th and the 19th centuries.

Consequently,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North Sea(direction marking)model is most reasonable among the fivee model above.

Key－Words : historical geography study, world map, East Sea.

마케팅조사의 윤리문제 연구*

A Study on the Ethical Issues in Marketing Research

李 光 周**

目 次

Ⅰ. 序 論
Ⅱ. 마케팅윤리의 성격
1. 과학과 윤리
2. 마케팅윤리의 내용 모르고 참여하는 문제
Ⅲ. 마케팅조사에서 제기되는 윤리문제
1. 익명성 보장 문제
2.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
3. 조사대상자의 이해에 반하는 질문
4. 특후한 장비나 기법 사용
5. 조사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참여하는 문제
6. 속임수(deception)의 사용
7. 강제력의 사용
8. 조사자의 무례한 행위
Ⅳ. 맺는 말
참고문헌

Ⅰ. 머 리 말

한국기업에 대한 기업윤리 측면에서의 비난은 80년대 후반 이후 90년대로 넘어 오면서 더욱 빈번해졌다. 특히 IMF 상황을 맞아 일부기업의 무분별한 차입경영, 수익성을 무시한 무리한 투자, 기업주의 전단과 전횡, 정경유착 등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고, 기업경영 방법에서도 생산, 인사, 노무, 재무, 회계, 마케팅 등 각 부문에서의 관행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60년대를 거쳐 '70년대로 이어지는 개발기에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직·간접의 보호를 받던 기업이 여론으로부터 따가운 비판에 노출된 것은 6공화국의 출범과 거의 시기를 같이 한다. 사회 각 부문에서의 민주화 욕구의 분출과 함께 기업에 대해서도 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재검토와 분배요구가 강해지기 시작했다. 한국기업에 대한 비난의 초점은 부의 축적과정에서 선진국의 예와는 달리 지나치게 상향유착적 대 정부관계에 의존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관료적 자본주의'의 길을 택했다는 것과 구성원들에게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유교적 자본주의'라는 것이다[1].

* 본 연구는 1998년도 단국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 졌음.
**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joolee@dankook.ac.kr
1) 신유근(1994), 「한국 기업윤리 교육의 과제와 방향」, (한국경영학회 간, 『한국의 기업윤리』, p. 22~23).

한국 경영학계에서 기업윤리에 대한 관심은 소수의 학자들 간에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1994년에 한국경영학회가 '한국의 기업윤리'를 편찬함으로써 더욱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한국기업윤리학회가 창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계나 여타 부문에서의 논의는 주로 총론적인데 그치고 있고, 기업활동의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행동규범을 도출하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이제 윤리적 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의미를 찾기 힘들며,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마케팅조사에서 발생하는 윤리문제에 대하여 문헌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분야와 그 해소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마케팅조사에는 주로 학문적인 이론 발전을 위하여 학계에서 수행되어 학술지를 통하여 발표되는 학술적 조사와 기업의 마케팅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실용적 조사가 있는 바 본 연구는 후자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Ⅱ. 마케팅윤리의 성격

1. 과학과 윤리

과학자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지녔던 이미지는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헌신적인 인간상이었다. 가치중립(value free)이란 개념이 사회과학에 적용되었을 때 이는 과학자의 가치관과 개인적 의견이 그들의 과학적 학문탐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상아탑속의 과학자는 속세에서 격리되어 냉철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현상을 연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은 진리, 객관적인 방법론, 지식의 공개적인 배포 외에는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근래에 과학의 가치중립적인 태도가 강력한 도전을 받았고 과학적 행위, 객관성, 과학의 사회적 역할, 과학자의 가치관 등의 적절한 관계에 관한 중요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2], 과학자들의 관심대상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의 복잡한 복합체가 되고 있다[3]. 가치중립적인 과학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나 철학원리의 발전과정을 고려하면 완전하게 가치중립적인 과학은 성립되기 힘들며, 과

2) Edward Diener and Rick Crandall(1978), *Ethics in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82.

3) C. G. Hempel(1965),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and Other Essay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New York: The Free Press, p. 82.

학의 본질을 실질세계(real world)에 대한 원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본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전통적 견해는 오늘에 와서는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4]. 사회과학의 가치중립적 입장을 보다 혹독하게 비판하는 학자들은 가치중립적 사회과학은 현상유지를 위한 것, 또는 위장된 것으로 비판하고 과학자들은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과학의 가치관 변화는 사회과학의 연구범위가 확장되고 그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사회과학적 지식과 사회과학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사회과학자는 단순히 지식을 탐구하는 기술자가 아니고 인간(humanity)문제에도 관심을 지녀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발전을 위한 조사에 있어서 윤리문제에 대한 논의는 세계 제2차대전이 종전된 후 나치가 실시한 각종 비인도적 실험과 원자탄 투하에 대한 논란으로 활성화되었다. 그 때까지 과학은 가치 중립적(value free)인 것으로 여겨져서 자동적으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과학자는 항상 윤리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2차 대전 중 나치독일은 각종 반인류적 실험을 과학의 이름 하에 자행했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탄은 많은 민간인을 살상함으로써 과학의 산물도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다. 또한 지혜와 타인에 대한 관심이 과학적 조사와 결합되지 않으면 과학이 항상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5].

Julius Seeman[6]은 "인류 역사상 히로시마의 존재는 지식 그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무엇을 위한 지식인가?'하는 것을 반드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만일 지식이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인간성을 회생시키고 얻은 것이면 그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모든 행동과학에서 윤리는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적 노력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목표 및 가치관(인류의 복지 증진)이 조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7].

자연과학의 윤리문제가 주로 과학적 지식의 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사용에도 관심을 두지만 관심의 초점은 지식의 획득과정인 것이다[8] 즉, 연구주제, 연구상황(setting),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절차, 자료수집방법, 자료형태 등에 큰 관심을 둔다. 그 중에서도 초점은 조사대상자[9] 보호에 모아진다. Sawyer는 연구, 조사에 있어서

4) H. C. Kelman(1968), *A Time to Speak: On Human Values and Social Research*, San Francisco : Jossey Bass.
5) Edward Diener and Rick Crandall, op. cit., pp. 1~2.
6) Julius Seeman(1969), "Deception in Psychological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Vol. 24, p. 1,028.
7) Edward Diener and Rick Crandall, op. cit., p. 14.
8) J. A. Barnes(1979), "*Who Should Know What?*", Baltimore; Penguin, p. 17.

윤리문제의 발생근원을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와의 세력균형에서 찾고 있다[10]. 세력균형이 내면적으로는 항상 조사를 결정하고 조사방법을 설계하며 대상자의 참여를 요구하는 조사자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또한 Barnes는 조사자(연구자), 시민(citizens)[11], 스폰서, 그리고 자료에 대한 조사자의 접근이나 공표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12] 간의 세력균형에서 근원을 찾고, 이들의 관계와 균형이 변화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윤리문제도 달라진다고 하였다.

윤리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이 연구의 기술적인 방법론에만 치중하면 과학의 가치의식과 윤리의식에 둔한하기 쉽고, 이것은 과학의 남용 및 오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자는 지식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문적인 전문성과 윤리의식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학자의 진리탐구라는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여도 이를 위하여 사용된 수단의 역기능이 크다면 그러한 수단을 통한 연구, 조사의 수행을 마땅히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연구·조사방법을 설계할 때에는 방법론의 타당성, 신뢰성과 함께 윤리성의 검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 마케팅 윤리의 내용

도덕성(morality)이 도덕적인 판단, 표준 및 행동규범을 의미하는데 대하여 윤리(ethics)는 도덕성의 성격과 기초에 대한 탐구를 의미한다[13]. 기업윤리는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적·일반적 윤리라기 보다는 기업경영이라는 특수 상황에 적용되는 응용적 윤리(applied ethics)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실용적 접근을 택한다[14]. 영리를 목적으로 영위되는 기업에게도 윤리의식이 요구되는가 하는 문제는 기업경영의 본질 및 목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기업윤리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논란은 아직도 계속 중인

9) 본고에서 조사대상자는 정보의 원천으로서 記述調査에서 흔히 사용되는 서베이에서는 표본응답자를 의미하며, 因果調査를 위한 실험에서는 被驗者(subjects), 探索調査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관찰조사에서는 피관찰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함.

10) S. Cook, "Ethical Implications(1981)", in Louise H. Kidder ed., *Research Methods in Social Relations*, New York: Holt, Reinhardt and Winston, p. 368.

11) Barnes는 subjects라는 용어를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로 그들도 조사자와 같은 사회의 일원이고 같은 권리,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2) Barnes는 이를 gatekeepers라 불렀다. 이는 예를 들어 공장 종업원을 조사대상으로 할 때 그 공장의 경영자나 노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이들이 gatekeepers가 되는 것이다.

13) Paul W. Taylor(1975), *Principles of Ethics: An Introduction*, Encino, Calif. : Dickinson Publishing, p. 1.

14) J. Gands and N. Hayes(1988), "Teaching Business Eth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17, pp. 657~658.

데[15], 일부 타당성이 인정되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이후의 추세는 기업의 사회참여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이유로 기업이 비윤리적으로 운영되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언론과 사회운동 기구들의 공격 목표가 되어 기업이미지의 실추로 매출, 인재 채용, 주주 모집 등 모든 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기업은 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부터도 영향을 받으므로 양자에 대해 모두 반응하도록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16].

실제로 미국 1,000개 대기업의 45%가 구체적인 기업윤리 개선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이것은 5년 전의 35%에 비하여 많이 증가한 것이다[17]. 그리고 미국대학에서 기업윤리 관련 강좌의 개설 현황을 1982년과 1991년 조사에서 비교해 보면 1982년에 54.8%에서 1991년에는 73%로 개설 학교가 증가하였으며, 점차 필수과목화하는 추세(필수과목으로 지정한 학교가 29.7%에서 42%로 증가함)이다[18]. 우리 나라의 경우 1991년에는 22.5%의 대학에서 학부과정에 기업윤리를 설강했는데 1994년에 와서는 63.3%로 증가하였다[19].

마케팅관리자의 기능은 조직(기업)과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의 각 기능분야 중에서 기업윤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분야는 한국[20]과 미국[21]

---

15) 기업경영에 윤리개념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찬반 논쟁은 다음을 참조할 것.
신유근(1997), 「한국 기업윤리 교육의 과제와 방향」, (연세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제1회 기업윤리 심포지움』, pp. 15~38).

16) Murray L. Weidenbaum(1981), "The True Obligation of the Business Firm to Society", Management Review, (September), pp. 21~22.

17) "What's Behind Business' Sudden Fever for Ethics?" Business Week, September 23, 1991, p. 65.

18) ①W. Hoffman and J. Moore(1982), "Results of a Business Ethics Curriculum Survey Conducted by the Centre for Business Eth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1, pp. 81~83.
②L. F. Schoenfeldt, D. M. McDonald and S. A. Youngblood(1991), "The Teaching of Business Eth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10, pp. 237~241.

19) ①한기수(1992), 「기업윤리 교육에 관한 연구(I)」, (『매지논총』 제9집, pp. 379~399).
②한기수(1994), 「기업윤리 교육에 관한 연구(II)」, (『매지논총』 제11집, pp. 333~357).

20) 황일청(1994), 「마케팅분야에 있어서의 기업윤리문제」, (한국경영학회간 『한국의 기업윤리』, p. 146).

21) ①N. Craig Smith and John A. Quelch(1993), *Ethics in Marketing*, Homewood, IL : Richard D. Irwin, p. 4.
②Patrick E. Murphy and Gene R. Laczniak(1981), "Marketing Ethics: A Review with Implications for Managers, Educators, and Researchers", in Ben M. Enis and Kenneth J. Roering(eds.), *Review of Marketing*, Chicago: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pp. 251~266.

에서 모두 마케팅분야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마케팅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공개적인 고객만족을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대중들의 시선과 가장 근접해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관점에서 항상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22]. 기업윤리분야에서 고전적인 연구라 할 수 있는 Baumhart의 연구[23]에서도 기업가들이 중요시하는 윤리문제인 (1)선물, 뇌물, (2)가격차별, 불공정 가격, (3)부정직한 광고, (4)기타 불공평한 경쟁행위, (5)고객기만, 불공정한 신용정책, (6)경쟁자간의 가격담합, (7)부정직한 계약 체결, 또는 유지, (8)불공평한 종업원 처우, 편견에 의한 고용행동 중에서 5가지가 마케팅에 관련된 것이다. Murphy와 Laczniak의 연구[24]에서도 기업에서 가장 빈번히 윤리문제로 거론되는 기능분야는 마케팅분야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윤리문제는 행위의 합법성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모든 비윤리적인 마케팅 행위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합법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모두 윤리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률이 미치지 않는 구석도 있고, 정당한 행위의 정의 자체가 불확실하거나 너무 복잡하여 법률이 이를 일일이 규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마케팅 윤리에 관한 논의는 주로 합법성은 있으나 윤리에는 저촉되는 문제, 그리고 합법성과 윤리성 양면에서 불확실한 문제에 집중된다.

과거 기업윤리를 거론할 때 마케팅분야에서의 윤리문제는 주로 제품의 안전성문제, 가격담합, 뇌물, 광고의 기만이나 반사회성 문제, 비윤리적 정보수집 활동에 한정되었었다. 그러나 마케팅윤리의 원칙은 변함이 없으나 그 내용은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므로 마케팅관리자는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기법의 발달은 새로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시켰다. Chonko와 Hunt는 미국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윤리문제를 지적하도록 요구하는 서베이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25]〈표 1〉.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가장 빈번한 마케팅 윤리문제분야는 고객이익에 대비하여 기업이익의 균형을 찾는 일(28%)이며, 그 다음으로는 기업이익과 자신의 이익(16%), 기업이익과 사회의 이익(14%), 기업이익과 부하의 이익(10%) 사이의 균형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한다[26].

---

22) John Tsalikis and David J. Fritzche(1989), "Business Ethics: A Literature Review with a Focus on Marketing Eth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8, pp. 695~743.

23) Raymond C. Baumhart(1961), "How Ethical Are Businessmen?" *Harvard Business Review*, Vol. 39, (July-August), pp. 156~176.

24) Patrick E. Murphy and Gene R. Laczniak(1981), *op. cit.*

25) Lawrence B. Chonko and Shelby D. Hunt(1985), "Ethics and Marketing Manage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13, pp. 339~359.

26) N. Craig Smith and John A. Quelch, *op. cit.*, p. 11.

마케팅의 윤리문제를 4P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표 2〉와 같다.

〈표 1〉 마케팅의 윤리문제

순 위	윤 리 문 제	빈도(%)
1	증회(외부 납품업자로부터의 선물, 뇌물, 부당한 커미션의 수수)	(15)
2	공정성(타인에 대한 속임수, 이용, 가족에 대한 의무보다 회사이익을 우선하는 문제, 고객에게 불필요한 것을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문제)	(14)
3	정직성(고객 기만, 서비스나 성능에 대한 과장)	(12)
4	가격(차별가격, 경쟁가격에 대한 대응, 타사와 유사한 제품에 대해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높은 가격 책정)	(12)
5	제품(고객에게 무익한 제품, 제품이나 상표 침해, 제품 안전성, 성능과장)	(11)
6	인사관리(고용, 해고 평가)	(10)
7	기밀성(경쟁자의 비밀정보 획득에 대한 유혹)	(5)
8	광고(광고에 의한 소비자 오도, 과장)	(4)
9	자료조작(내외적으로 통계수자나 정보를 위조, 왜곡, 오용)	(4)
10	구매(공급자에게 자사 상품을 구매하도록 요구)	(3)

자료 : Lawrence B. Chonko and Shelby D. Hunt(1985), "Ethics and Marketing Manage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13, pp. 339~359.

〈표 2〉 4P모델에 의한 마케팅 윤리 문제

제 품	촉 진
· 제품안전성 · 모방제품 · 제품포지셔닝과 세분화 · 서비스제품 공급상의 윤리 문제 · 제품과 포장의 환경오염	· 기만광고 · 사회적으로 유해한 광고(성, 폭력, 인종차별) · 부당한 판매방법, 판매에 있어서 이해상충 · 증회 · 직접마케팅과 프라이버스 문제
가 격	**유 통 경 로**
· 수평적, 수직적 가격 담합 · 가격차별 · 약탈가격 책정 · 가격사기 · 부당가격(미끼가격, 묶음가격, 중간상 마진을 위해 부풀린 가격)	· 배타적 유통경로 및 기타 차별적 유통 · 경로통제(프랜차이징 관계 등) · 그레이 마케팅 · 반경쟁적 중간상 촉진 · 수출에 대하여 낮은 표준 적용

이 밖에도 4p에 속하지 않는 문제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마케팅조사 문제 : 위장구매, 조사를 빙자한 판매 등 조사방법, 기밀누설 등 자료의 분석

과 이용.

· 시장선정 문제 : 판단력이 낮은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하거나 유해한 제품을 가지고 목표시장으로 정하는 것, 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일부소비자를 마케팅 노력에서 제외하는 것.

· 공급자, 경쟁자 등 이해관계자에 관련된 공평성 문제.

Ⅲ. 마케팅조사에서 제기되는 윤리문제

사회과학 조사에 속하는 마케팅조사는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마케팅 이론 발전을 위해서 학자나 연구기관 등에 의해서 수행되는 학문적인 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마케팅 의사결정을 위한 실용적인 조사이다. 마케팅 조사에 있어서 윤리문제는 이들 두 부문에서 모두 대두된다. 특히 실용부문은 과학적 마케팅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필요성 증대로 그 실시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여기에 수반되는 윤리문제도 그 복잡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마케팅 조사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호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마케팅 조사에 관한 윤리강령이 여러 단체에서 제정되었다. 미국 마케팅학회(AMA)는 이를 1962년에 제정하였고 캐나다 전문마케팅조사협회(PMRS: Professional Marketing Research Society of Canada)는 보다 포괄적이고 상세한 강령을 만들었다[27]. 그 밖에도 국제상공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28], 유럽 여론 및 마케팅조사협회(ESOMAR: European Society for Opinion and Marketing Research)[29], 미국조사기관협의회(CARSO: Council of American Survey Research Organizations)[30] 등도 상세한 강령을 만들었다. 반면에 미국마케팅학회, 마케팅조사학회(MRA: Marketing Research Association), 미국여론조사협회(AAPOR: American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에서 제정한 강령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마케팅 의사결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윤리적인

27) "Rules of Conduct and Good Practice(1984)", Toronto: Professional Marketing Research Society.

28) Consumer Market Research Handbook, Robert M. Worcestor and John Dowham, eds., Amsterdam: North-Holand, 1986, pp. 813~826.

29) Ibid.

30) 1981년에 제정된 "서베이 조사의 표준규범"은 모든 CARSO 회원의 준수가 의무화되었다. H. Robert Dodge, Sam Fullerton, and David Rink(1982), Marketing Research, Columbus: Charles E. Merril, pp. 375~378에서 볼 수 있음.

행동인가 아닌가 하는 것의 판단 기준에 대한 합의는 그것이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내려 갈수록 더욱 어렵다[31].

윤리를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윤리성을 판단하는 결과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사 대상자는 조사결과 기대되는 제품 및 서비스 개선으로 궁극적인 이득을 본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조사에 응한 댓가로 금전적 보상을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연구에 동참한다는 심리적 보상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는 윤리의 의무론(deontology)적 입장에서 보면 마케팅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는 많이 있다.

Tybout와 Zaltman은 조사대상자는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에 미 의회에 보낸 교서에서 제창한 소비자의 4대 권리 중 선택의 권리, 안전의 권리,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32]. 한편 Churchill은 여기에 보상을 받을 권리와 청원을 할 권리를 추가하였다[33]. 〈표 3〉은 조사자와 조사대상자 사이에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윤리문제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주요 윤리문제

윤리문제	침해하는 권리	보상하는 권리
대상자의 익명성 보장	안전의 권리	
정신적 스트레스	안전의 권리	청원의 권리
응답자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질문	안전의 권리	
특수한 장비나 기법의 사용	안전의 권리	보상받을 권리
조사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	내용을 알 권리	보상받을 권리
속임수의 사용	내용을 알 권리	보상받을 권리, 청원의 권리
강제력의 사용	선택의 권리	
스스로 결정할 권리의 박탈	선택의 권리	

자료 : Gilbert A. Churchill(1995), Marketing Research: *Methodological Foundations*, Hinsdale, Ⅲ: Dryden Press, pp. 66.

31) 1Gene R. Laczniak(1983), "Business Ethics: A Manager's Primer", *Business*, Vol. 33, (Jan.-Mar), pp. 23~29.

32) Alice M. Tybout and Gerald Zaltman(1974), "Ethics in Marketing Research: Their Practical Relevanc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1, (November), pp. 357~368.

33) Gilbert A. Churchill(1975), *Marketing Research*: Methodological Foundation, Hinsdale, Ill: Dryden Press, pp. 55~78.

1. 익명성 보장 문제

익명성 보장은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자아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마케팅조사 자료는 특히 판매에 유용할 수가 있으므로 익명성의 중요성이 크다. 마케팅조사 자료는 대상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당초 조사목적 외에 2차적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건강·교육·후생성은 1973년에 제정한 공정정보 실천강령에서 "개인은 자신에 관하여 수집된 정보가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34].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도 신용카드 회사의 회원 신상정보와 거래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어 사회문제화한 예가 있다.

익명성의 침해는 결국 조사대상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쳐 조사 결과를 왜곡시키고, 미래의 조사에 대한 협조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확인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파괴시키는 방법 등이 권장된다.

또한 전화조사의 경우 조사를 가장한 판매 등 자료의 오용 사례가 많아 전화조사나 텔레마케팅을 어렵게 하고 있다.

2.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

조사는 단순히 대상자의 어떤 분야에 관한 지식을 묻거나 눈을 가리고 하는 입맛테스트 같이 특정 능력을 묻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다. CARSO의 강령은 "조사자는 미묘한 주제를 다룰 때 대상자의 불안, 염려를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Tybout와 Zaltman은 조사내용이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이라면 대상자가 참여를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또한 표본의 편기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억지로 응답한 대상자는 응답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 위장된 반응을 보이므로 조사결과를 오염시킬 것이다. Tybout와 Zaltman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스트레스의 정도를 평가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35].

조사가 스트레스를 느낄 우려가 있거나 속임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귀하의 의견이 필요할 뿐입니다"와 같은 고지가 도움이 된다고 하

34) James A. Senn(1990), *Information Systems in Management*, Belmont, Calif. : Wordsworth, p. 724.

35) Tybout, Alice M. and Gerald Zaltman, op. cit.

며, 사후의 디브리핑(debriefing)[36]이 권장된다. 조사에 속임수가 있었으면 여기서 그 내용과 불가피성 등을 이야기하고 조사대상자가 느낀 의문점, 감정 등을 토의한다. 디브리핑은 조사자가 대상자로부터 혜택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보답으로 대상자의 자아손상, 근심을 해소시켜 주고 자기성찰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가능하면 실시하는 것이 좋다. 디브리핑은 대상자의 견해를 밝힐 기회와 근심을 해소할 통로를 제공하므로 청원의 권리(right to be heard)와 관련이 있다. 디브리핑의 또 다른 목적은 조사자가 조사절차상에 존재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디브리핑은 대상자가 보기에 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사가 실시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대상자는 보다 솔직하게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다. 디브리핑 결과 모든 문제를 바로 잡을 수는 없지만 이는 결과의 해석과 미래의 조사에서 대상자 모집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한다[37].

그 밖에 인터뷰 시간엄수,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 인터뷰 대가지불 등 약속의 신속한 이행 등으로 스트레스를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Churchill이나 Tybout, Zaltman의 이러한 의견에 이들이 주장하는 스트레스는 너무 과장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38].

3. 조사대상자의 이해에 반하는 질문

기업이 가격을 최대한도로 인상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가 수용할 의사가 있는 가격을 질문할 경우, 조사대상자가 조사의 의도를 미리 알면 정직하게 응답하지 않아 응답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고, 모르고 응답하면 조사대상자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이용되어 대상자의 안전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조사의 윤리에 어긋나게 된다.

---

37) Gilbert A. Churchill, *op. cit.*, p. 67.

38) Robert L. Day(1975), "A Comment on Ethics in Marketing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2, (May), pp. 232~233.
그러나 R. L. Day의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Tybout와 Zaltman은 다른 연구(Milton J. Rosenberg, "The Conditions and Consequences of Evaluation Apprehension", in Robert Rosenthal and Ralph Rosnow, eds., *Artifact in Behavioral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pp. 280~348)의 결과를 실례로 들면서 인간은 그 자신, 선호, 행위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그가 조사자에 의해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며 "평가불안" 현상을 겪는다고 반박한다. 그 결과 개인은 보다 호의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거짓 반응을 보인다. 자동차 등 일부 상품은 사용하는 상표가 지위상징 역할을 하므로 인간은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를 위해서 반응을 변화시킨다. 인상관리는 인간의 보편적 현상이다. Alice M. Tybout and Gerald Zaltman(1975), "A Reply to Comments on 'Ethics in Marketing Research: Their Practical Relevanc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2, (May), p. 235.

4. 특수한 장비나 기법 사용

대상자가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화, 녹음된 기록이나 한 쪽에서만 관찰이 가능한 일면거울은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익명성을 저해하므로 안전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러한 녹화 기록은 심지어 사후에 공갈, 협박의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 또 판매원의 행동을 녹화한 것을 본 상사가 그 대상자를 감봉, 견책, 해고할 수도 있으므로 녹음, 녹화된 자료의 올바른 사용과 보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장비를 사용할 때는 익명성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며, 사후에 대상자에게 자신의 언행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원하면 보여주어야 하며, 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삭제도 해야 한다.

PMRS, ICC/ESOMAR, CASRO의 윤리강령은 대상자가 사전에 일면거울이나 기타 기록장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ICC/ESOMAR는 대상자 스스로 타인에 의해서 자신이 관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고 인정되는 공공장소(거리나, 상가)에서 기록이 이루어질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첫째는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타당한 주의 조치가 있어야 하며, 둘째로 그의 행동이나 말이 기록(녹음, 녹화)되었다는 사실을 즉시 알려 주고,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본인이 원하면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39]. 이 조항은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와 보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간의 생리반응(예를 들어 광고물에 대한 느낌)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장치(동공의 크기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한 특수 촬영기, 발한량을 측정하기 위한 전기 저항 측정기, 뇌파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 등)를 사용할 때는 대상자의 신체적 안전과 심리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

투영기법(projective technique)도 조사대상자가 조사 의도를 모르는 가운데 행해지므로 신중한 사용이 필요한 부문이다.

5. 조사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참여하는 문제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에 "사실을 알려주고 명백한 동의를 구하는 일(informed, expressed consent)"의 중요성은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반인류적 실험에 대한 전후의 전범재판에서 극명하게 부각되었다. 그후 이같은 내용이 여러 조사윤리 규정에 삽입되었고, 이를 불충분하게 충족시키는 조사는 대상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다른 조사방법이

39) N. Craig Smith and John A. Quelch, *op. cit.*, p. 172.

불가능할 때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40]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조사 상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41].

첫째로, 참여자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로, 이는 자연상황에서의 관찰을 위하여 조사대상자 사이에 직접 뛰어 들어 신분을 위장하고 사람들의 행위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때 신분이 밝혀지면 대상자들의 행위가 변화되어 조사의 타당성이 저하되고, 계속 위장하면 윤리문제가 대두된다. 해결방안으로는 조사 후에 사실을 밝히고 그들이 조사보고서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대상자들이 조사에 사후 동의를 하고 보고서를 추인하면 다행이지만 반대하는 경우 조사자는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를 선택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즉, 조사자료의 이용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대상자의 보상의 권리를 존중하여 중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로, 참여자 관찰보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낮고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관찰을 들 수 있다. 이는 예를 들어 새로운 진열방법에 대한 구매자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 등인데, 윤리문제의 심각성은 낮다고 하나 엄밀히 보면 참여자의 동의 없이 조사하는 것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결방안으로 상점 등 관찰장소에 관찰사실을 고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또는 자료 수집 후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정보이용의 허락을 구하는 방법이 권장된다. 그러나 첫번째 방법은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로, 통제집단에게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치료 의약품 연구에서 통제집단에게는 치료의약품 투여를 배제함으로써 질병치료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악화시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수가 있다. 마케팅에서도 인센티브에 의한 판매원들의 성과 변화 연구의 예에서 보면 실험집단과는 달리 통제집단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므로 차별대우를 받는 결과가 된다.

6. 속임수(deception)의 사용

조사에 있어서 속임수의 사용은 윤리 측면에서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부문이다. 속임수는 참여자가 사전에 조사내용을 알고 참여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고, 조사자와 대상자 간의 신뢰관계를 해칠 우려와 대상자에게 심리적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일부를 숨기는 경우와는 달리 적극적인 의미에서 대상자를 기만하는 것은 윤리적 의미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실험방법을 사용한 어떤 조사에서는 공모피험자[42]를 투입하고 그가 정해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만하기도

40) Gilbert A. Churchill, *op. cit.*, p. 68.
41) *Ibid.*, p. 69.

하고 조사의 목적 또는 조사 중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속임수를 쓰기도 한다. 예를 들어 Schachter와 Singer의 감정연구에서 실험자는 대상자에게 일조의 흥분제인 아드레나린(Adrenaline)을 주사하고 시력연구를 위한 시력 증진제라고 속였다. 주사를 맞은 대상자가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그 속에 공모피험자가 섞여서 화난 척, 즐거운 척 한다. 모르는 사이에 흥분된 대상자들은 그들의 기분이 그 공모피험자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때 조사자는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실험조사였다[43]. 이 실험에는 세 가지의 속임수가 사용되었는데, 우선 실험목적을 숨겼고, 주사약을 허위로 말했으며 공모피험자를 투입하였다.

실험실 밖에서 실시된 현장실험에서도 속임수가 자주 사용되는데 통행인의 개입을 얻기 위한 응급상황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급환자 발생, 콘텍즈렌즈 분실, 절도사건 등을 공모피험자를 통해 위장하기도 한다.

속임수는 흔히 대상자가 조사자의 의도를 유추해서 조사자가 바라는 방향으로 행동을 바꾸는 경우에 사용된다[44]. 예를 들어 회상테스트는 평소 피험자의 회상률을 조사하는 것인데, 회상테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 대상자는 자극을 기억하려고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자는 조사사실을 은폐하거나 다른 조사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조사의 타당성 제고에는 도움이 되나 대상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속임수는 불가피한 경우 최소로 사용해야 하며, 조사 후에 반드시 디브리핑을 통하여 속임수가 있었다는 사실과 속은 대상자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

7. 강제력의 사용

조사 대상자로서 참여 여부는 자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강제성을 띤 참여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언급한 세력균형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조사자와 대상자의 세력불균형(예를 들어 교수와 학생, 사업주와 종업원), Barnes가 말한 게이트키퍼와 대상자간의 세력불균형(예를 들어 군인, 수인, 종업원 등)에서 발생하는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절하기 힘든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강제적 참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45]. 조사자는 자신의 지위, 게이트키퍼

42) 공모피험자란 연구보조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피험자 속에 섞여 조사자가 부여한 역할을 함으로서 조사를 돕는 자를 말한다.

43) S. Schachter, and L. Singer(1962), "Cognitive, Social and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Emotional State," *Psychological Review*, Vol. 69, pp. 379~399.

44) Alan G. Sawyer(1975), "Demand Artifacts in Laboratory Experimen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 (March), pp. 20~30.

45) S. Cook, *op. cit.*, p. 377.

의 권한이 조사 대상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들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PMRS는 조사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리와 제품시험 압력, 어린이와의 인터뷰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ICC/ESOMAR 강령 7조에는 "정보제공자가 협조를 거부하거나 어떤 단계에서든지 참가를 철회할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인터뷰의 형태에 관계없이 제공된 어떤 정보이든 제공자가 요구하면 모두 지체없이 파괴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절차나 기법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 중간에 참여를 철회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최초에 참여 허락을 받을 때 조사의 내용에 관한 불충분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8. 조사자의 무례한 행위

조사대상자는 소비자와 같이 교환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일방적인 협조자이므로 적절히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자발적인 협조의 대가로 아무 것도 받지 않으므로 조사자는 대상자의 시간, 감정, 권위, 자결권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46].

PMRS강령은 "너무 긴 시간의 인터뷰"를 금하고 있으며, 문장이나 내용이 대상자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대상자를 무례하게 대하여 당황하게 하거나 심리적 고통이나 불안감을 안겨주는 일을 못하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 밖에 CARSO, ICC/ESOMAR 강령 등도 당황스런 행위, 사생활 침해, 장시간 인터뷰, 인터뷰 시기, 미묘한 주제에 관한 인터뷰시 불쾌감 조성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조사를 가장한 판매행위, 경쟁자 정보 수집시 불법, 비윤리적 방법의 사용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Ⅳ. 맺는 말

과학의 가치중립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과학은 다만 묘사(describe)하는 것이지 처방(prescribe)하는 것은 아니라며 그들의 판단에 옳고 그름의 요소가 개입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는 묘사에 지나지 않는 것도 윤리적인 측면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른 바 "객관적"인 사회과학자들의 태도는 때로는 그른 것은 채택하고 옳은 것은 거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47].

46) N. Craig Smith and John A. Quelch, *op. cit.*, p. 172.

47) 拙稿(1983),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실험방법의 문제점」, (단국대학교 산업연구소, 『산업연구』, 제5집, pp. 91~110).

윤리관은 그 시대, 사회와 관련지어 생각해야 하며 사람들의 다른 측면의 신조, 행동과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또 영향을 받는다[48]. 그러므로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 꼭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윤리강령을 만드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조로 보아 적어도 인간이 지녀야 할 공동의 기본적 윤리의 틀은 구성할 수 있다. 그것은 문화와 사회의 다원주의(pluralism), 즉 다양성(diversity)을 인정하고 각 이해집단의 권리를 존중하는데 있다. 우리는 곤충사회는 개별화(individualization)의 희생을 토대로 성립되지만 인간사회는 개별화의 존중을 통하여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어느 한 쪽의 희생을 대가로 다른 한 쪽에서 이득을 본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윤리적인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마케팅 윤리는 응용윤리적 성격을 지니므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상대의 희생을 토대로 목적을 달성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마케팅 조사에 있어서 조사자와 조사대상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윤리문제만을 다루었다. 그러나 사실은 조사자와 조사의뢰자 간에도 중요한 윤리문제가 존재하며 경쟁자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도 산업스파이, 상대직원 매수, 이중고용 등의 문제가 간혹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학회나 조사기관 단체에서 조사윤리 강령을 공식적으로 제정할 단계에 있다고 본다. 또한 조사행위에 있어서 반드시 윤리적 고려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윤리문제의 궁극적인 귀착점은 조사를 계획하고 주관하며 이를 발표하고 이용할 조사자에게로 돌아간다. 조사자가 과학자로서의 진지한 태도와 건전한 상식인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윤리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이해관계자의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김영봉(1989),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과 성과」, (세경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2. 신유근(1997), 「한국 기업윤리 교육의 과제와 방향」, (연세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제1회기 업윤리 심포지움』, pp. 15~38).
3. ——(1994), 「한국 기업윤리 교육의 과제와 방향」, (한국경영학회 간 『한국의 기업윤리』)
4. 이광주(1983),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실험방법의 문제점」, (단국대학교 산업연구소, 『산업 연구』, 제5집, pp. 91~110.)

48) D. Emmet, "Ethical System and Social Structure(1968)",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Vol. 5, New York: Macmillan CO. & The Free Press, pp. 157~160.

5. 한기수(1992), 「기업윤리 교육에 관한 연구(I)」, (연세대학교, 『매지논총』 제9집, pp. 379~399).

6. ———(1994), 「기업윤리 교육에 관한 연구(II)」, (연세대학교, 『매지논총』 제11집, pp. 333~357).

7. 황일청(1994), 「마케팅분야에 있어서의 기업윤리문제」, (한국경영학회 간 『한국의 기업윤리』, p. 146).

8. Anthony(1960), R. N., "The Trouble with Profit Maximization", *Harvard Business Review*(Nov.-Dec.), pp. 126~134.

9. Barnes, J. A.(1979), "*Who Should Know What?*", Baltimore; Penguin, p. 17.

10. Baumhart, Raymond C.(1961), "How Ethical Are Businessmen?" *Harvard Business Review,* Vol. 39, (July-August), pp. 156~176.

11. Chonko, Lawrence B. and Shelby D. Hunt(1985), "Ethics and Marketing Manage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13, pp. 339~359.

12. Churchill, Gilbert A.(1995), *Marketing Research*: Methodological Foundations, Hinsdale, Ill: Dryden Press, pp. 55~78.

13. Cook, S(1981). "Ethical Implications", in Louise H. Kidder ed., *Research Methods in Social Relation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p. 368.

14. Davis, Keith(1973), "The Case for and against Business Assump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16, No. 2, pp. 312~322.

15. ——— and W. C. Frederick(1984), *Business and Society : Management, Public Policy, Ethics, 5th ed.,* McGraw-Hill, p. 38.

16. Day, Robert L. (1975), "A Comment on Ethics in Marketing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2, (May), pp. 232~233.

17. Diener, Edward and Rick Crandall(1978), *Ethics in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2.

18. Dodge, H. Robert, Sam Fullerton, and David Rink(1982), *Marketing Research,* Columbus: Charles E. Merril, pp. 375~378.

19. Emmet, D(1968), "Ethical System and Social Structur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Vol. 5, New York: Macmillan CO. & The Free Press, pp. 157~160.

20. Friedman, M(1971), "Does Business Have a Social Responsibility?", *Bank Administration,* (April), pp. 13~14.

21. Gands, J. and N. Hayes(1988), "Teaching Business Eth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17, pp. 657~658.

22. Hempel, C. G(1965),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and Other Essay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New York: The Free Press, p. 82.

23. Hoffman, W. and J. Moore(1982), "Results of a Business Ethics Curriculum Survey Conducted by the Centre for Business Eth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1, pp. 81~83.

24. Keim, Gerald D(1977), "Managerial Behavior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Debate: Goals versus Constraint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March), pp. 57~68.

25. Kelman, H. C(1968), *A Time to Speak: On Human Values and Social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 Bass.

26. Laczniak, Gene R(1983), "Business Ethics: A Manager's Primer", *Business,* Vol. 33, (Jan.-Mar.), pp. 23~29.

27. Luthans, Fred, R. M. Hodgetts and K. R. Tompson(1984), *Social Issues in Business, : Strategic and Public Policy Perspectives, 4th ed.,*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pp. 59~62.

28. Murphy, Patrick E. and Gene R. Laczniak(1981), "Marketing Ethics: A Review with Implications for Managers, Educators, and Researchers, " in Ben M. Enis and Kenneth J. Roering(eds.), *Review of Marketing, Chicago*: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pp. 251~266.

29. Robert M. Worcestor and John Dowham, eds. (1986), *Consumer Market Research Handbook,* Amsterdam: North-Holland, pp. 813~826.

30. "Rules of Conduct and Good Practice", Toronto: Professional Marketing Research Society, 1984.

31. Sawyer, Alan G(1975), "Demand Artifacts in Laboratory Experimen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 (March), pp. 20~30.

32. Schachter, S. and L. Singer(1962), "Cognitive, Social and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Emotional State", *Psychological Review,* Vol. 69, pp. 379~399.

33. Schoenfeldt, L. F., D. M. McDonald and S. A. Youngblood(1991), "The Teaching of Business Eth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10, pp. 237~241.

34. Seeman, Julius(1969), "Deception in Psychological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Vol. 24, p. 1028.

35. Senn, James A.(1990), *Information Systems in Management, Belmont*, Calif. : Wordsworth, p. 724.

36. Simon, H. A. (1976), *Administrative Behavior, 3rd ed.*, New York : The Free Press.

37. Smith, N. Craig, and John A. Quelch(1993), *Ethics in Marketing*, Homewood, IL : Richard D. Irwin.

38. Taylor., Paul W.(1975), *Principles of Ethics: An Introduction*, Encino, Calif. : Dickinson Publishing.

39. Tsalikis, John and David J. Fritzche(1983), "Business Ethics: A Literature Review with a Focus on Marketing Eth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8, pp. 695~743.

40. Tybout, Alice M. and Gerald Zaltman(1974), "Ethics in Marketing Research: Their Practical Relevanc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1, (Nov.) pp. 357~368.

41._____ and _____ (1975), "A Reply to Comments on 'Ethics in Marketing Research: Their Practical Relevanc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2, (May), p. 235.

42. Weidenbaum, Murray L.(1981), "The True Obligation of the Business Firm to Society", *Management Review*, (September), pp. 21~22.

43. "What's Behind Business' Sudden Fever for Ethics?" *Business Week*, (September 23, 1991), p. 65.

44. Wood., D. J.(1990), *Business and Society*,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pp. 124~127.

A Study on the Ethical Issues in Marketing Research

Lee, Kwang Joo*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ethical issues in marketing is fostered by several emerging trends. However, few ethical guidelines are currently available to the marketing researchers.

Major ethical issues involving consumer respondents are as follows;

1)preserving participants' anonymity.

2)exposing participants to mental stress.

3)use of special equipment and techniques.

4)involving participants in research without their knowledge.

5)use of deception.

6)use of coercion.

7)selling under the guise of research("sugging").

8)causing embarrassment, hindrance, or offenc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ntention that an understanding of ethical issues involving in marketing research is essential for producing quality research. Also discussed basis subjects' rights, which may be conceived as being analogous to the rights specified for consumers: the rights to choose, the rights to safety, the rights to be informed, and the rights to be heard. The quality of data, whether survey or experimental, in the traditional or broad domain, may be affected unless ethical considerations are recognized and contended with.

Key-words : ethical issues, marketing research

* Professor of Dankook University, Ph. D.

수출보험의 정책대응에 관한 역사적 전개*

Historical Perspective of the Export Insurance in Korea

黃 南 逸**

目 次

Ⅰ. 연구의 목적
Ⅱ. 한국의 수출보험제도
1. 수출보험법의 전개
2. 운영기관의 변천
3. 수출보험의 종목
Ⅲ. 수출보험의 시대별 정책대응
1. 대한재보험공사 담당기간
2. 한국수출입은행 담당기간
3. 한국수출보험공사 담당기간
Ⅳ. 수출보험 정책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수출신용보증의 활성화
2. 활용율 제고
3. 손해율 평준화
4. 수출보험기금 확충
Ⅴ. 결 론
참고문헌

Ⅰ.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IMF(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제를 맞이하여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수출촉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1월에 출범한 WTO(세계무역기구)의 자유무역체제 하에서는 수출에 대한 직접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1996년 10월에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회원국이 됨으로서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에게 인정되어 오던 유치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마저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에 대한 간접지원제도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수출의 간접지원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수출보험은 수출성과와 연계하여 「장기적 운영비용과 손실(long term operating costs and losses)」을 보상하는데 부적합한 보험요율로서 정부, 또는 정부가 통제하는 특별기관이 보증이나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고 있다[1]. 주요국의 수출보험제도의 수입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지급액의 백분율인 손해율을 보면, 수출보험의 손해율은 일본이 422%, 프랑스가 592%로 한국은

*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상경대학교 교수(경제학박사)
1) U.R.의 보조금 · 상계관세협정

140%[2]는 일본의 일본의 3분의 1, 프랑스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한국은 총수출액에 대한 수출보험 가입비율인 활용율도 일본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 따라서 수출보험의 적자부분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선진국이 한국에 대해서 제기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 더욱이 1980년대 중반 이후 대외경제협력수단으로서 수출보험이 크게 활용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경제지원에 의한 자국의 경제개발 필요성에 의하여 수출보험적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보험이 실질적인 보조금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보험에 대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중요성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3].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보험 활용율과 지원실적(손해율) 모두가 선진국에 크게 뒤지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자의 필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수출촉진에 충분한 기여도 하지 못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수출보험이 수출촉진수단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촉진정책의 중요한 결함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수출보험은 수출촉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무역정책에 제도의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연구는 무역정책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무역정책의 측면에서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보험수요자의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적하보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무역위험을 해결해서 민영보험을 보완하는 수출보험제도로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방법은 무역업자가 무역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무역정책을 도외시한 연구는 결과적으로 수출보험의 활용률을 낮게 했거나 활성화의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국가 전체적인 수출촉진 효과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관점을 달리해서 무역정책 측면에서 수출보험제도를 살펴보고, 수출보험이 수출촉진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손해율과 활용율은 1996년 실적, 인수실적은 1995년 실적임(수출보험공사).

3) 1997년 11월에 개정된 OECD의 공적수출신용협약(Arrangement on Guidelines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에서는 수출보험을 포함하는 2년 이상의 수출공여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다(동협약 제1장 2조 참조).

Ⅱ. 한국의 수출보험제도

현재의 수출보험은 세계각국이 정부가 관장하고 재정지원을 하면서 수출촉진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4]. 이러한 수출보험은 이론상으로는 수출어음의 부도처리되는 위험을 보험제도화한 것이며, 무역정책적인 견지에서는 수출진흥을 위한 국가보상제도이다[5]. 이를 역사적으로 살펴 보자.

1. 수출보험법의 전개

1959년 미국의 대한(對韓)원조정책이 무상원조에서 차관형태로 바뀜에 따라 자립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최대의 과제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1962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 수출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경제정책을 외화획득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는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출신장율은 연평균 42.9%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러한 높은 수출신장을 위하여 수출지원금융제도를 강화하면서, 수출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게 된다. 수출보험제도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2차년도인 1968년초에 수출주무부처인 상공부 상역국이 수출보험제도에 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구체화 되었다. 그 결과 1968년 12월 31일 수출보험법(법률 제2063호)을 제정, 공포하여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6]. 이러한 수출보험법은 제정 이후 8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1994년 8월 3일에는 수출보험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출보험법을 대폭적으로 개정(제8차 개정)하였다. 이 8차 개정시의 가장 큰 특징은 종래 수출보험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수출보험의 종류별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삭제하고 수출보험의 종류와 그 업무처리방법을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정하도록

4) 한국수출입은행이 발간한 『세계 공적수출신용기관』(1994년)에 세계 각국의 수출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소개되고 있다. 미국은 수출입은행(Export 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 U. S. EXIM)과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 OPIC)가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은 수출신용보증국(Export Credits Gurantee Depatment : ECGD)이 담당하고 있다.

5) 수출대금 회수위험을 담보하는 수출신용보험(Export Credit Insurance)이나 수출신용보증(Export Credit Guarantee)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黃南逸·李洪茂(1997), 『貿易保險의 理論과 實際』, 貿易經營社, p. 408).

6) 우리나라의 수출보험법은 제2차대전 후 경제재건을 위하여 수출촉진정책을 추진해 오던 일본의 「輸出信用保險法」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출보험법의 변천과정을 간추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수출보험법의 변천

개정횟차	개정일자	주 요 개 정 내 용
제1차	1970. 1. 1	일반수출보험의 담보범위 확대
제2차	1972. 12. 30	해외투자보험제도의 신설
제3차	1976. 12. 31	해외건설공사보험제도의 신설 정부대행기관을 대한재보험공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으로 변경
제4차	1978. 12. 5	관장기관을 재무부에서 상공부로 변경 수출보증보험제도의 신설
제5차	1981. 3. 27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설립근거 마련 수출대금금융제도의 신설 수출신용보증제도의 도입
제6차	1993. 3. 6	정부조직법 반영
제7차	1993. 8. 5	해외건설촉진법 반영
제8차	1994. 8. 3	수출보험 종류별 계약에 관한 조항 삭제

자료 : 필자가 작성

2. 운영기관의 변천

1)대한재보험공사(1968. 6~1976. 12)

1968년 6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재무부가 수출보험제도의 운영주체가 되고 실제 업무처리와 기금관리는 당시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유일한 정부투자기관인 재보험공사가 정부를 대행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대한재보험공사가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요사항은 공사의 이사회와는 별도로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보험심의회에서 처리되었다. 수출보험심의회는 수출보험법상 수출보험업무를 대한재보험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했으며, 재무부장관 또는 공사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였다.

수출보험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대한재보험공사가 수출보험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은 수출보험법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요율, 보험약관, 보험관계 성립의 제한, 부보기간의 제한, 보험책임시기의 제한, 포괄보험의 실시, 보험종목별 계약체결한도, 수출보험기금의 운용지침, 수출보험기금의 예산 및 결산,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었다.

2) 한국수출입은행(1977. 1~1992. 6)

1970년대에는 수출상품 구조면에서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1970년대 중반부터 중화학공업 수출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선박·플랜트 수출은 물론 해외투자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1976년 7월 1일자로 당시 한국외환은행이 대행하여 오던 중장기 신용업무를 독립시켜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서 1976년 12월 31일자로 수출보험법을 개정하여 수출입은행이 중장기금융 및 해외투자금융지원과 연계하여 금융의 담보역할을 하는 수출보험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1977년 1월 1일자로 수출보험업무 대행기관을 1969년 업무개시 이후 8년만에 대한재보험공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으로 변경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대한재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험업무를 승계한 이후에도 수출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은 은행 이사회보다는 수출보험심의회에서 결정되었다.

수출보험제도는 근본적으로 무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기능면에서도 수출상의 불안제거기능, 금융보완기능, 무역관리제도로서의 기능 및 수출진흥정책의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상공부가 수출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1978년 12월 수출보험법 제4차 개정을 통하여 수출보험 관장부처를 재무부에서 상공부로 변경하였으며, 상공부 내에서는 수출보험과가 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후 중화학제품의 중장기연불수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수출보험과의 연계를 통한 수출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1981년 11월 중장기연불수출, 해외투자, 국제입찰 등을 담당하던 수출2과를 수출보험의 주무부서로 함으로써 1970년대 중반이후 정부의 중화학제품 수출시책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던 플랜트 등 중화학제품의 중장기연불수출에 대한 수출보험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등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U.R협상의 본격적인 논의로 수출보조금 등 정부의 직접적인 수출지원정책의 한계가 노정되어 간접수출지원정책인 수출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상공부는 1991년 11월 수출보험의 주무부서인 수출2과의 명칭을 무역보험과로 변경하였다. 특히 최초에 수출보험과로 개칭하려던 방침을 바꾸어 향후 수출은 물론 수입과 관련된 위험까지 담보하는 방향으로 수출보험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무역보험과로 변경하였다[7].

3) 한국수출보험공사(1992. 7~현재)

1990년의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시행으로 인해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고[8], 국제무역환경변

7) 일본은 1987년에 수출보험에 선불수입 등에 대한 담보를 추가하면서 무역보험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이홍무, 「수출보험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韓日經商論集』, 제13집).

8) 보험인수 건수가 연간 2,000건 미만에서 20,0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25년사』, p. 64).

화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개발로 업무량의 지속적 증대가 예상되어 조직의 시급한 보강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계속 대행체제로 수출보험을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상공부는 국제신용투자보험자기구(Berne Union)[9]의 당시 가입국 33개국 중 27개국이 독립전담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1981년 수출보험법 개정으로 이미 법적근거를 마련한 독립전담체제인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후 1992년 6월 19일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동년 7월 7일에는 수출보험 업무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한국수출보험공사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수출보험 업무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전담하고 수출보험공사의 감독기관은 통상산업부가 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예산 뿐만이 아니라 업무전반에 걸쳐 감독권을 행사한다. 수출보험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정부에서 이를 보전하고 매년의 계약체결한도도 국회의 승인을 거친다.

3. 수출보험의 종목

1968년 제정된 수출보험법은 수출지원 경험이 풍부하고 경제관행이 유사한 일본의 수출보험법을 참고하고 있다. 따라서 최초의 수출보험종목은 일반수출보험, 수출금융보험, 수출어음보험, 중장기연불수출보험, 위탁판매수출보험 등 5개 종목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수출보험제도에는 8종의 보험과 1개의 보증이 있다. 8종류의 수출보험은 상품수출, 해외공사,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보험 외에도 수출보험공사가 수출자의 대출보증인이 되어주는 수출신용보증이 있다. 이와 같은 수출보험제도를 표로 작성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수출보험제도 운영종목 일람

대상거래		종 목	피보험자	계약방법	담 보 내 용	인수개시 년도
상품	단기 (결제기간 2년 이내)	단기수출보험	수출자	개별, 포괄	수출불능, 대금회수불능	1994
		농수산물 수출보험[10]	수출자	개별	수출불능, 대금회수불능 가격상승위험	1995
		수출어음보험[11]	외국환은행	개별, 포괄	매입한 화한어음대금의 미회수위험	1969

9) 국제신용투자보험자기구(Berne Union)는 1934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의 수출보험자가 스위스 베를린에 설립한 기구이며, 현재 가맹기관은 34개국 41기관으로 사무국은 영국에 있다. 활동내용은 상담중의 조건에 관한 수출신용조건의 조정, 특정화물에 대한 신용조건의 조정, 특정국에 대한 보험인수 방침에 대한 의견교환 등이다.

대상거래		종 목	피보험자	계약방법	담 보 내 용	인수개시 년도
상품	중장기	중장기수출보험 (공급자신용)[12] (구매자신용)[13]	수출자 외국환은행	개별, 포괄	수출불능, 대금회수불능 차관, 대출금 회수불능	1972 1998
	시장개척	시장개척보험[14]	수출자	개별	전시회참가비용회수불능(수출부진)	1995
해외공사		해외공사보험[15] (건설·엔지니어링) (장비)	건설업자 건설업자	개별	수출불능, 대가회수불능 건설장비수용위험 등	1977
		수출보증보험[16]	외국환은행	개별, 포괄	보증서의 보증채무이행	1978
해외투자		해외투자보험	해외투자자	개별	투자원금 및 배당금의 회수불능	1976
보 증		수출신용보증	외국환은행	개별, 회전	보증채무이행	1992

자료 : 황남일·이홍무, 『무역보험의 이론과 실제』, 무역경영사, 1997, p. 426에 가필.

10) 농수산물수출보험은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이후에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된 종목으로, 수출농어가의 육성과 농수산물의 해외수출기반 확보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11) 1997년도 수출어음보험의 인수실적은 신용장방식이 567,120백만원, 무신용장방식이 499,017백만원으로 신용장방식 수출에 대한 인수액이 많다(수출보험공사 자료).

12) 공급자신용(supplier's credit)이란 수출자가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여 수출물품을 제작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수출계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회수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수출자가 자기자금으로 수출물품을 제작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하면 결과적으로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된다.

13) 구매자신용(buyer's credit)이란 수입자가 수출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수입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이다. 수입자는 이 차입자금으로 수입대금을 수출자에게 선적시 일시불로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수출국의 은행이 수입국금융기관에 전대해서 수입대금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전대차관(bank loan)이라고 하고, 수출국금융기관이 수입자에게 직접 대출해 주는 금융방식을 직접대출(direct loan)이라고 한다.

14) 시장개척보험은 무역전시회참가 이후 보험계약자의 실제수출금액이 예상수출액에 미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무역전시회 참가비용 회수불능위험을 담보하며, 수출대금 회수불능위험은 담보하지 않는다.

15) 해외공사보험은 해외공사 계약체결 후 당해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해외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해외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현지에 반입된 장비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16) 플랜트수출이나 해외건설공사에 필요로 하는 보증서(bond)를 발행한 외국환은행이 해외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플랜트수출이나 해외공사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이 수출보증보험이다.

Ⅲ. 수출보험의 정책대응

이 장에서는 수출보험의 실적을 시대별로 고찰함으로서 수출보험의 시대별 정책대응을 규명한다.

1. 대한재보험공사 담당기간(1969~1976)

대한재보험공사가 우리나라 수출보험을 담당한 1969년 2월부터 시행된 일반수출보험, 수출금융보험, 수출어음보험, 중장기연불수출보험 및 위탁판매수출보험 등 상품수출관련 5개 종목 가운데 1969년과 1970년에는 일반수출보험, 수출금융보험, 수출어음보험 등 3개 종목의 인수가 이루어 졌다. 1969년에는 일반수출보험[17]과 수출금융보험[18]의 인수실적이 금액기준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였다.

1971년에는 우리나라의 상품 및 건설수출총액이 11억8천만달러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어 섰다. 그 해의 수출보험실적은 부보건수 547건, 보험금액 44억원이었으며, 이 중 수출어음보험의 인수실적이 43억원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하였다. 일반수출보험 및 수출금융보험은 실적이 미비하였으며, 위탁판매수출보험이 처음으로 이용되었다. 1972년의 연간 수입보험료가 처음으로 1억원을 넘었고, 인수실적은 676건에 119억원에 달했다.

1976년에는 해외투자보험의 인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고[19], 해외투자보험은 1980년대 중반까지 주로 석탄, 철광석, 삼림 등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에 대한 보험인수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수출어음보험의 인수실적은 금액기준으로 408억원으로 전체 인수액의 86.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969년부터 1977년까지의 수출보험의 이용율은 0.85%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었다.

대한재보험공사가 수출보험을 담당한 시기는 수출보험의 제도도입기이며, 인수실적 중에서 수출어음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수출어음보험을 통하여 외국환은행의 화환어음매입을 촉진함으로서 수출을 지원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17) 일반수출보험은 수출계약의 성립 후 대금결제 완료시까지의 수출불능이나 대금회수불능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18) 수출금융보험은 금융기관이 수출업자 등에게 수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한 후 대출만기일까지 회수되지 않을 경우의 해당 금융기관의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19) 최초의 인수는 (주)쌍용의 가봉백호점 건립을 위한 해외투자 거래였다(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 25년사』, p. 94).

2. 한국수출입은행 담당기간(1977년 1월~1992년 6월)

197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산업정책을 중화학공업육성에 역점을 두고 1977년부터는 제도적으로도 한국수출입은행에 수출보험을 대행시킴으로써 금융과 보험지원기관을 단일화 시켰다. 이는 수출정책을 촉진시킬 목적을 가지고 담당기관이 바뀌었던 것이다.

1) 중동건설 활황기(1977년~1982년)

1970년대에는 수출주도형 및 해외자원의존형의 경제개발의 추진으로 수출입이 크게 증가하여 무역의존도가 심화하였고, 1973년 10월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적 불황으로 국제수지 적자폭이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출진흥과 함께 중동지역에 대한 해외건설공사에 진력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1977년도에 해외건설공사보험을 신설하여 수출보험의 이용실적도 급증하였다.

이러한 건설경기를 반영하여 1978년에는 수출보증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플랜트를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해외수입자 또는 발주자에게 은행의 지급보증서(bond)를 제출하는 것이 통례가 되고 있었고, 플랜트수출의 규모가 대형화 됨에 따라 보증금액이 대형화하였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자기자본의 15배 이내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은행들의 한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증서의 발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은행의 지급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하고 중자를 통해서 지급보증한도 여력의 확대를 도모했다. 그러나 지급보증서의 발행을 기피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급보증금액이 거액화함에 따라 은행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부담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의 지급보증위험을 담보하는 수출보증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1977년부터 1982년까지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중동지역에 대한 해외건설 진출붐으로 공사수주가 활발히 전개되고, 건설관련 종목인 해외건설공사보험 및 수출보증보험의 인수실적이 큰폭으로 증가하여 수출보험 인수실적 자체가 큰 성장을 이룩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주로 수출보증보험과 해외건설공사보험을 통하여 은행의 지급보증을 촉진하여 수출상품 뿐만이 아니라 건설관련 수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 시기였다.

2) 중화학공업 진흥기(1983년~1985년)

1983년에 들어와서는 중동해외건설붐의 퇴조에 따른 해외건설공사보험 및 수출보증보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인수실적도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1984년~1985년 중에는 주로 선박, 철도차량 등 중화학제품의 수출활성화로 중장기연불수출보험[20]의 인수실적이 증가함으로써 인수실적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 1983년도의 보험종목별 인수실적은 중장기연불수

출보험이 보험금액기준 5,792억원으로 전체의 59.1%를 차지해서 전년대비 293.8%나 증가했으며, 해외투자보험은 1,618억원으로 전년대비 165% 증가하였다. 그러나 해외건설공사 수주격감으로 인해 수출보증보험 및 해외건설공사보험 인수실적은 각각 1,881억원, 281억원으로서 전년도의 30%, 4.9%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이 밖에 수출어음보험 인수실적도 224억원으로 전년보다 약간 감소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수출보험 종목별 인수액

(단위 : 백만원)

품목 / 연도	전종목 총계	수출어음보험	중장기수출보험 (공급자신용)	해외투자보험	수출보증보험
1977	50,184	28,440	3,037	1,173	–
1978	66,037	19,546	31,796	2,434	–
1979	259,140	16,546	29,270	6,381	–
1980	491,382	17,090	50,794	7,615	333,549
1981	1,512,440	22,202	71,989	21,561	951,524
1982	1,437,758	24,896	147,105	61,042	627,826
1983	979,810	22,478	579,288	161,812	188,128
1984	1,252,794	60,756	714,742	148,762	328,534
1985	1,337,649	73,579	1,126,281	79,428	58,361
1986	1,052,846	71,637	824,657	105,500	51,051
1987	431,057	44,658	236,136	117,692	32,571
1988	201,879	43,194	116,139	22,375	19,147
1989	371,010	303,970	7,703	31,819	27,518
1990	1,688,799	1,450,000	81,743	42,093	113,728
1991	1,507,678	1,174,145	194,765	62,138	30,927
1992	1,803,558	1,489,863	40,908	71,974	86,543
1993	3,032,699	2,286,609	286,797	70,970	35,142
1994	4,580,614	3,320,331	660.894	85,670	80,659
1995	10,048,805	2,537,069	649,588	117,253	149,166
1996	12,408,910	2,086,250	616,883	117,048	122,877
1997	15,306,410	1,066,136	1,298,011	125,129	232,191

20)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은 처음에는 6개월 이상 8년 이내(현재는 6개월 이상 10년 이내,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20년 이내)의 연불조건으로 자본재를 수출하였을 경우, 대금회수불능 또는 채무의 6개월 이상 지체에 의하여 수출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1984년도와 1985년도 인수실적은 〈표 3〉과 같으나, 해외건설공사보험은 1984년부터 중동지역에서의 건설공사대금 미수령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인수가 전면 중지되었기 때문에 인수실적이 없었다.

1985년에도 전년도에 이어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의 호조에 힘입어 총인수 실적은 1조3,378억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하였다.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은 73건에 1조1,262억원을 인수하여 각각 전년대비 55.3%, 57.6%의 증가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수출보증보험, 해외투자보험의 인수실적은 전년대비 각각 18%, 53%로 감소된 583억원, 794억원에 불과하였으며 수출어음보험은 전년수준을 유지하였다.

1983년부터 1985년까지는 주로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을 통하여 선박, 철도차량 등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 정책이 시행된 시기였다.

3) 국제수지 흑자 실현기(1986년~1989년)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우리 경제는 3년 연속 고도성장을 하였고 1989년까지는 계속 국제수지흑자를 실현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수출거래의 결제조건도 좋아져서 D/A, D/P 등 무신용장조건이 감소한 반면, 신용장조건의 거래가 증가하였으며[21], 선박에 대한 중장기연불수출보험 포괄보험의 유예조치(1986. 1. 1~1988. 12. 31 E/L발급분)로 동 보험의 인수실적이 크게 감소하였다〈표 3 참조〉.

1989년도의 수출보험 인수실적은 4,003건에 3,710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나 금액면에서 각각 106%, 83.8%의 증가를 시현하였다. 이처럼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1989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의 적극 활용에 힘입은 것으로 1989년도 수출어음보험 인수실적은 3,961건에 3,039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110.6%, 603.7%나 급증한 실적이다. 그러나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은 3건, 보험금액 77억원으로 전년대비 금액면에서 10% 수준으로 격감했다. 그 원인은 선박의 수출거래가 거의 일람불신용장방식으로 이루어진데 기인한다. 특히 1989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급격히 둔화되어 저성장추세를 나타내었다[22].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란·이라크 등 전후시장 확보를 위해 위험지역 인수를 전제로 한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이 시행되었다.

4) 국제수지 적자 전환기(1990년~1992년)

1989년 45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무역수지가 1990년에는 20억달러 적자로 반전되고 1991년에는 적자폭이 69억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1) 신용장방식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9년의 72.0%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관세청, 『통계연보』).

22) 1989년~1993년의 성장율은 각각 6.8%, 9.3%, 9.1%, 5.0%, 5.6%이다.

수출보험정책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990년도의 수출보험 인수실적은 16,249건에 1조6,887억원으로 1989년도 대비 건수는 4배, 금액은 4.5배나 대폭 신장하였다〈표 3 참조〉.

1991년도의 수출보험 인수실적은 21,203건에 보험금액 1조5,076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30.5% 증가했으나 금액은 7.2% 감소하였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수출어음보험이 건수 21,076건, 보험금액 1조1,741억원으로 각각 그해 총인수실적의 99.4% 및 78%를 차지하였고 이중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 인수실적이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여 수출어음보험 총인수건수의 96%, 보험금액의 98%를 차지하였다. 중장기연불수출보험도 전년대비 보험금액은 138% 증가한 1,947억원으로 1989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그 이유는 선박에 대한 포괄보험 유예조치가 1988년말로 종료되었고, 조선경기회복으로 조선수주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었다. 일반수출보험은 전년대비 94건이나 증가하였고, 보험금액은 457억원으로서 36배나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이란에 대한 무화한어음 수출거래의 인수에 힘입은 바 컸는데 이는 수출어음보험의 포괄보험 시행한 정책의 결과였다.

3. 수출보험공사 담당기간(1992년 7월~1997년 12월)

1993년도의 수출보험 인수실적은 35,007건에 3조326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금액으로 각각 56.3%, 68.2%의 신장세를 보였다. 보험종목별 인수실적은 수출어음보험이 34,384건에 2조2,866억원으로 금액기준 전체 인수실적의 75.4%를 차지하여 대종을 이루었다〈표 3 참조〉. 그 주요 원인은 이란, 베트남, 미얀마 등 사고위험 발생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대한 수출거래의 지원대상 확대 등 적극적인 인수방침과 아울러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동구권 6개국의 인수방침 완화, 무사고기업의 무사고할인율 적용, 마케팅과 대외홍보의 적극 추진, 기업의 포괄보험 수요증대로 가입기업이 1989년말 5개 기업에서 1993년에는 100개 기업으로 급증한데 있다.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은 인수건수 9건, 보험금액 2,867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7건, 금액은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포괄보험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1990년 이후 플랜트수출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수출보증보험은 리비아 「대수로공사」와 관련된 보증보험인수에 힘입어 1990년 인수실적이 최고치를 기록한 후 그 후 점차 감소하여 1993년에는 인수건수 34건, 보험금액 351억원을 시현 전년대비 건수는 배가 되었으나 보험금액은 59.4%나 감소하였다.

해외건설공사보험은 중동경기가 퇴조한 1984년 이후 1996년의 2건을 제외하고는 신규 부보건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해외건설공사 수주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인수실적이 전무하였던 것은 건설공사에서 연불방식에 의한 대금결제가 이용되지 않고 기성고방식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으며, 이 경우 단위기성기간이 1개월 내지 3개월에 불과하여 건설수출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계약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었던 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

일반수출보험은 1990년도 이후 수입국관행에 의거 화환어음이 개재된 거래를 기피하는 동구 및 중동지역의 신용장거래건을 주로 부보하였으며, 1993년에 들어서는 선적후위험을 담보하는 중장기연불수출보험과 연계하여 상품 제작기간 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선적전보험으로 일반수출보험을 이용토록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그 실적이 1990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1997년도(1997. 1. 1~1997. 12. 31)의 수출보험 종목별 금액 및 구성비는 〈표 4〉와 같다.

〈표 4〉 수출보험(무역보험)의 종목 및 구성비

지원대상	종 목	금액(백만원)	구성비(%)
상품수출	단기수출보험	12,017,403	78.5
	수출어음보험	1,066,136	7.0
	중장기수출보험	1,432,636	9.4
	농수산물수출보험	48,278	0.3
	시장개척보험	265	–
해외공사	수출보증보험	232,191	1.5
	해외공사보험	–	–
해외투자	해외투자보험	125,129	0.8
보 증	수출신용보증	384,371	2.5
합 계		15,306,409	100.0

자료 : 한국수출보험공사(1998년 1월), 『수출보험』, 제87호, p. 98
(금액은 인수금액임).

수출보험공사 전담기간은 수출보험종목을 정비하는 기간이었다. 또한 단기수출보험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보험종목으로 자리잡는 시기였다. 이는 수출보험의 지원이 금융기관에서 수출자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Ⅳ. 수출보험 정책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수출신용보증의 활성화

1997년도의 수출보험계약의 인수실적은 단기수출보험이 78.5%, 수출어음보험이 7.0%, 중장기수출보험이 9.4%를 차지하고 있어 이 3대종목의 합계가 약 9할(94.9%)을 점하고 있다〈표 4 참조〉. 수출계약 중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이면 단기수출보험에 부보하고 결제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는 중장기수출보험에 부보한다. 수출어음보험은, 외국환은행이 수출자가 발행한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을 매입한 후 어음 만기일에 매입한 어음을 결제를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매입은행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23]의 수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수출보험공사가 중소기업 수출자로부터 보증료를 받고 외국환은행앞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24]. 외국환은행은 이 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자에게 대출을 해 주게 되며, 만약 대출금의 만기일에 수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될 경우는 보증서의 발급자인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채무자인 중소기업 수출자를 대신해서 대출금의 상환을 해 주게 된다.

이러한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수출보험제도와 연계시키면 수출불능 또는 수출대금회수불능의 사유가 발생해서 수출보험에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동액만큼은 수출보험공사가 수출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수출신용보증제도는 단기수출보험 또는 농수산물수출보험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자는 수출보험공사에 부탁한 건별 수출신용보증과 관련한 수출거래에 대하여 단기수출보험 또는 농수산물수출보험에 부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출신용보증제도는 각종 수출금융지원제도가 철폐되는 상황에서 수출지원제도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과 보험지원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제도로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수출신용보증제도의 활용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출신용보증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2. 활용률 제고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수출보험은 통상마찰의 우려없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다. 이와 같은 수출보험의 활용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수출보험 활용률(수출보험 가입액/총수출액)은 1990년대 초 겨우 3% 수준이었다. 이것도 1989년 하반기에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제도를 시행한 결과이며, 1969년 이후 1980년대 말까지 활용률은 평균 1% 수준이었다. 수출이 비교적 안정된 선진국의 수출보험활용률은 20~3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본이 수출규모가 500억 내지 1,000억달러였던 1970년대 후반에 평균활용률이 50%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우리의 수출보

23) 1997년도 수출금액 중 중소기업이 수출한 금액의 비율은 41.8%을 점유하고 있다(이승욱·이흠무 「대일(對日) OEM방식 수출기업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보험의 유효활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3권 2호, 1998년 10월).

24) 수출신용보증제도는 1981년 3월 제5차 수출보험법개정시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 199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 5〉 수출보험활용율

년 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활용율(%)	1.1	0.5	0.8	3.3	2.7	3.3	5.2	6.5	11.4	13.0	12.6

자료 : 한국수출보험공사(1998년 1월), 『수출보험』, 제87호, p. 96.

험 활용률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수출보험의 최근 10년간의 활용율은 〈표 5〉와 같다.

수출보험은 보험 중에서도 매우 특수한 분야로서 수입자에 대한 신용위험 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비상위험까지도 아무런 담보없이 위험을 분석하여 인수하는 제도로서 담보를 확보하고 대출해 주는 관행에 젖어 있는 은행이 수출보험업무의 발전과 전문화를 주도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둘째 책임전담체제가 아니라서 적극적인 운영이 곤란하였다.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과 단순히 대행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운영결과면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셋째 특정보험종목(중장기연불수출보험, 수출대금금융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또는 보험이익의 수혜자)와 보험자가 모두 수출입은행이 됨에 따라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보험을 과감히 인수하기가 곤란하였다. 즉 대출금의 회수가 의문시 되는 수출금융을 실행하면서 수출보험에 부보하고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계는 상호구분되어 있었지만 보험사고시 금융부문의 이익을 위해 보험부문에 손해를 끼쳤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 최고 경영진으로서는 보험인수결정을 주저하는 등 소극적인 운영이 불가피하였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의 활용율이 저조한 이유는 그 동안 수출보험이 금융기관(수출입은행)의 의해서 운영되어 온 것이 기인하는 바 크다. 또한 수출보험이 수출환경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출자로 부터 외면당한 면이 있었다. 따라서 수출보험의 활용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출보험 종목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며, 포괄보험의 확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 외의 수출보험의 활용율을 확대하는 방안은 수출신용보증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수출보험은 사고발생시에 사후적으로 손해를 보전하는 제도인데 대해서 수출신용보증은 사고발생시 무조건 보증을 이행하는 제도이며 수출업자에게 금융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수출보험제도 중에서 가장 비중있는 제도이다. 더욱이 수출신용보증은 수출보험제도와 연계해서 운용되고 있으므로 수출신용보증의 활성화는 수술보험의 활용율 제고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손해율 평준화

수출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손해율 즉 수입보험료에 대한 지급보험금의 백분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수출보험에서 손해율이 100%를 상회하는 부분은 수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금인 것이다. 이와 같이 손해율이 높은 수출보험은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이는 운영되기 어려운 보험이다. 이러한 수출보험의 손해율은 최저 4.6%(1987년)에서 최고 1,521.4(1990년)%까지 분포하고 있다. 또 이상적으로 높은 손해율이 발생한 다음에는 손해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손해율이 급격히 높아진 다음에는 수출보험기금의 고갈을 염려하여 인수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6〉에서 이상적으로 높은 손해율을 기록한 1984년에는 중장기 수출보험(공급자신용)에서 2,590.3%의 손해율을 시현하고 있으며[25], 1990년에는 수출어음보험에서 2,089.9%의 손해율을 시현하고 있다[26]. 수출보험의 수입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실적의 추이는 〈표 6〉과 같다연도별 수입보험료 및 지급보험료

〈표 6〉 연도별 수입보험료 및 지급보험료

년 도	수입보험료(천원)	지급보험금(천원)	손해율(%)
1977	460,963	897,436	194.7
1978	628,718	1,019,422	162.1
1979	744,950	260,661	35.0
1980	1,923,920	2,853,552	148.3
1981	5,226,755	1,966,898	37.6
1982	4,186,481	5,731,672	136.9
1983	4,635,132	1,156,197	24.9
1984	7,853,697	119,485,439	1,521.4
1985	11,432,076	27,785,537	243.0
1986	9,561,756	3,532,630	36.9
1987	4,229,623	195,888	4.6
1988	2,033,684	268,293	13.2
1989	1,240,307	1,046,126	84.3
1990	4,389,038	44,043,507	1,003.5
1991	5,851,865	12,027,581	205.5
1992	6,179,391	14,721,674	238.2
1993	23,398,975	23,736,521	101.4
1994	31,740,445	43,314,430	136.5
1995	23,139,223	67,878,131	293.3
1996	51,510,019	71,642,289	139.1
1997	41,050,440	16,582,727	40.4
합 계	242,340,384	461,849,421	190.6

자료 : 수출보험공사(지급보험금은 인수년도 기준임).

1990년에 발생한 수출어음보험의 이상손해는 이라크지역의 사고에 기인하는 것이다[27].

우리나라의 수출은 1986년부터 3년간의 무역흑자시대를 마감하고 수출은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란·이라크전쟁 이후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국별인수한도를 설정하여 전쟁 중 인수를 중지해 오던 이란·이라크 지역에 대해서도 1989년부터 수출보험을 인수하기 시작하였다. 1986년의 이라크정부에 의한 외환송금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나마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라크의 시장잠재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라크에 대한 인수한도를 7천만 달러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1989년부터 실시된 포괄보험에 의하여 인수규모가 확대된 상태에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포괄보험에 가입한 다음의 7개 기업에 39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표 7〉 걸프전으로 인한 보험금지급액

기 업 명	건 수	지급보험금(백만원)
삼성물산	289	30,324
현대종합상사	51	6,424
럭키금성상사	2	1,244
효성물산	9	291
IDM	91	1,350
세양양행	1	203
선문통상	3	53
계	446	39,889

자료 : 수출보험공사

이상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이상손해의 발생으로 인해서 수출보험의 인수여력이 부족하게 되고 그 결과 수출보험의 인수가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상손해가 발생한 후에는 지급보험금과 손해율이 급감하는 실적으로 증명된다. 따라서 수출보험의 인수시에는 위험요소를 판단하여 손해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수출보험을 운영하는데 정책적 배려가 더욱 필요하리라고 믿는다.

25) 동년도의 중장기수출보험(공급자)의 수입보험료는 47건에 4,750,648천원이었고, 보험금지급은 12건에 123,050,523천원이었다.

26) 동년도의 수출어음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6,201건에 2,058,624천원이었고, 지급보험금은 474건에 43,023,312천원이었다.

27) 이라크지역에 대한 사고는 1차로 걸프전이 일어나기 이전인 1986년 3월 이란과의 전쟁 중에 이라크 정부가 모든 외환송금을 통제하는 긴급조치를 취함에 따라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보험에서는 삼성물산을 비롯한 5개 수출업체의 3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4. 수출보험기금 확충

수출보험을 사업성과면에서 볼 때, 1969년도 업무개시 이래 1988년까지 20년간은 몇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다소간의 영업이익이 생겨 이를 기금으로 적립해 왔다. 물론 1977년도에는 3억6천1백만원의 적자를 보이기도 했으나 영업개시 2차년도부터 1988년까지 매년 6백만원에서 2억5천여만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이러한 이익금이 수출보험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었다. 그러나 수출보험이 흑자경영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 못된다. 1989년 이후 국제수지가 적자로 되는 시기에 수출보험의 적자는 실질적으로 기금조성액에서 보전되고 있다는 것은 수출보험이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수출보험기금의 조성을 수출보험의 이익금에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보험기금의 조성은 정부출연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보험기금의 조성 추이는 〈표 8〉과 같다.

〈표 8〉 년도별 수출보험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년 도	정부출연 (A)	기타출연 (B)	이익전입액 (C)	손실보전액 (D)	합 계 (A+B+C-D)	총누계
1969	300	–	–	–	300	300
1970	200	–	33	–	233	533
1971	–	–	71	–	71	604
1972	–	–	130	–	130	734
1973	–	–	254	–	254	988
1974	–	–	6	–	6	994
1975	–	–	194	–	194	1,188
1976	1,000	–	101	–	1,101	2,289
1977	2,000	–	–361	–	1,639	3,928
1978	3,000	–	212	–	3,212	7,140
1979	2,500	–	–	–	2,500	9,640
1980	3,000	–	–	–	3,000	12,640
1981	5,000	–	–	–	5,000	17,640
1982	950	–	–	–	950	18,590
1983	1,000	–	–	–	1,000	19,590
1984	–	–	–	–	–	19,590
1985	1,000	–	–	–	1,000	20,590
1986	1,000	–	–	–	1,000	21,590
1987	1,000	–	–	–	1,000	22,590

년 도	정부출연 (A)	기타출연 (B)	이익전입액 (C)	손실보전액 (D)	합 계 (A+B+C-D)	총누계
1988	2,000	–	–	–	2,000	24,590
1989	17,000	–	–	15,000	2,000	26,590
1990	7,000	–	–	5,000	2,000	28,590
1991	42,900	5,000	–	22,900	25,000	53,590
1992	20,000	–	–	20,000	–	53,590
1993	66,400	–	–	15,645	50,755	104,345
1994	80,000	–	–	25,015	54,985	159,330
1995	100,000	–	–	17,612	82,388	241,718
1996	130,000			19,674	110,326	352,044
1997	180,000			25,451	154,549	506,593
합 계	667,250	5,000	640	166,297	506,593	–

자료 :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기금은 수출보험의 적자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다. 따라서 수출보험기금이 부족한 경우는 수출보험을 적극적으로 인수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수출보험기금을 어느 정도까지 보유하면 적정한가는 문제이다. 현재 수출보험공사는 유효계약액(보험책임잔액)의 10%[28]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말 현재 수출보험 유효계약액(보험책임잔액)은 8조8천115억원인데 비해서 수출보험기금은 5천66억으로 5.75%에 불과하다[29]. 수출보험공사가 계획한 목표액의 절반 수준이다. 이와 같은 수출보험기금의 부족은 수출보험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수출보험기금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다.

V. 결 론

수출보험에 대한 기존의 연구방법은 무역업자가 무역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무역정책을 도외시한 연구는 결과적으로 수출보험의 활용률을 낮게 했거나 활성화의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국가 전체적인 수출촉진 효과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관점을 달리해서 무역정책 측면에서 수출보험제도를 살표보고 수출보험이 수출촉진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대응 방안을 제

28) 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25년사』, p. 305.
29) 수출보험공사.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수출보험 정책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수출신용보증의 활성화이다. 정부는 수출증대를 위해서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미 중소기업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할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보증제도의 구성비는 아직도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출보증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둘째는 활용율의 제고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의 활용율이 저조한 이유는 그 동안 수출보험이 대행체제로 운영되어 온 것이 기인하는 바 크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수출보험이 수출환경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출자로 부터 외면당한 면도 간과 할 수 없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출보험 종목의 개발이 절실하다. 활용율이 저조한 또하나의 이유는 포괄보험이 일부종목에 국한되어 있거나, 포괄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수가 적은 것이다. 포괄보험의 지속적인 가입과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의 수출보험의 활용율을 확대하는 방안은 수출신용보증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셋째는 손해율을 평준화시키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거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이상손해의 발생으로 인해서 수출보험의 인수여력이 부족하게 되고 그 결과 수출보험의 인수가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보험의 인수시에는 위험요소를 판단하여 손해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로 수출보험기금을 확충하는 것이다. 수출보험기금의 부족은 수출보험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수출보험기금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李時煥(1995), 『貿易保險論』, 大旺社.
2. 李承郁 · 李洪茂(1998), 「對日 OEM方式 輸出企業의 製造物責任에 對한 保險의 有效活用에 關한 硏究」, 『貿易學會誌』, 第23卷 2號.
3. 李洪茂(1998), 「輸出保險制度에 關한 韓日 比較硏究」, 『韓日經商論集』, 第13集).
4. 錢昌源(1994), 『貿易保險實務』, 일신사.
5. 韓國輸出入銀行(1994), 『世界公的輸出信用機關』.
6.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保險』, 각월호.
7. ————————, (1994), 『輸出保險25年史』.
8. ————————, (1995), 『輸出保險 이렇게 활용한다』.

9. 韓國輸出入銀行, 「世界 公的輸出信用機關」, 1994年 1月.
10. 黃南逸 · 李洪茂(1997), 「貿易保險의 理論과 實際」, 貿易經營社.
11. 葛城照三(1959), 「海上保險硏究」, 損害保險硏究所.
12. 神田善弘(1992), 「實踐貿易實務」, ジェトロ.
13. 通商産業調査會(1988), 「新貿易保險制度」.
14. 鈴木辰紀(1997), 「保險論」, 成文堂.
15. 鈴木俊二(1995), 「貿易保險槪論」, 保險敎育出版社.
16. 新堀 聰(1992), 「貿易賣買」, 同文館.
17. 貿易保險機構(1994), 「貿易保險制度の解說」.
18. 安田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1994), 「やさしい貨物保險」, 有斐閣.
19. 李洪茂(1996), 「保險事業と規制緩和」, 成文堂.
20. D. Briggs, B. Edwards(1988), *Credit Insurance,* Woodhead-Faulkner Limited.
21. E. R. Hardy Ivamy, *Marine Insurance*(1985), London Butterworths.
22. J. K. Goodacre(1988), *Goodbye to the Memorandum,* Witherby & Co. Ltd.
23. M. A. Clarke(1989),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Lloyd' s of London Press Ltd.
24. M. J. Mustill, C. B. Jonathan Gilman(1981),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Vol* Ⅰ, Ⅱ, Stevens & Sons Ltd.
25. R. H. Brown, P. B. Reed(1981), *Marine Reinsurance,* Witherby & Co. Ltd.
26. R. J. Lambeth(1986), *Templeman on Marine Insurance,* Pitman Publishing Ltd.

Historical Perspective of the Export Insurance in Korea

Hwang, Nam-I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historical analyze the effect for the export promotion of export insurance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xpand of export credit guarantee is needed. The small size export business enterprizes are insufficient of credit. This is very big obstacles for export promotion in recent days.

Second, for export insurance to be more effective in Korea's export promotion, it is important to raise up the ratio of insured in export amount. Without cover of export insurance, export insurance can't be used by export promotion means.

Third, loss ratio of export insurance must to be constant extent over the year. Large loss in some year can cuse to insolvency of the export insurance fund. For this reason, the consequence year of the large risk can't afford export insurance sufficiently.

Finally, the amount of the fund of export insurance is not sufficient in Korea. This is very big obstacles for underwriting of export insurance.

Key-Words : export insurance, export promotion, export credit guarantee

* Proffessor of Dankook University, Ph. D.